

블랙리스트 제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백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백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2017년 7월 31일에 출범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2018년 6월 30일에 해산하였고, 같은 해 8월에 이행협치추진단이 출범하였다.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이행협치추진단은 2018년 8월 이후 2022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제도개선 과제 이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이행협치추진단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해산되지 않았지만 2022년 9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후속 기구에 잔여 임무를 승계하는 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백서』는 만 4년 동안 이루어진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을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현장이 함께 노력해온 과정들을 역사에 길이 남기고자 한다. 이는 국가범죄로 자행된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에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가 반성의 노력을 보여준 결과인 동시에 민관협치 행정모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백서』의 집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윤성천 문화예술정책실장과 이행협치추진단의 민간위원인 김미도, 이양구, 정윤희, 한승준, 현린, 황승흠이 주로 참여하였다. 이원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이행협치추진단 초기에 참여했으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오창은 교수는 이행협치추진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던 『문화예술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연구』를 수행하였다. 윤성천 실장과 김미도 위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함께 진행하고 마무리했던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여전히 미진한 진상조사는 물론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억사업에 있어 많은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마련되는 후속 기구에서 남은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

2022년 9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백서』 편집위원장

김미도

일러두기

분 류	원 명칭	약 칭
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과거사특위
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블랙리스트 조사위
위원회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행협치추진단	이행협치추진단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법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문예진흥법
법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비디오법
법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예술인권리보장법
정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또는 문화부 또는 문화관광부
정부부처	행정안전부	행안부
정부부처	행정자치부	행자부
유관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등위
유관기관	영화진흥위원회	영진위
유관기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예경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 또는 문예위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공연예술센터 또는 한팩
유관기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문연
유관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복
유관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진흥원
유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진원
유관기관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한지협
유관기관	한국영상자료원	자료원
사업·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예기금
기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권고안	권고안
기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	이행계획 검토회의

차 례

편집인의 글 / 4

제1장. 총론

제1절. 이행협치추진단의 설치 배경과 목적 및 설치 과정 / 10

1. 설치 배경과 목적 / 10
2. 설치 과정 / 12

제2절. 이행협치추진단의 주요 경과 / 14

1. 이행협치추진단의 설치까지 / 14
2.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 계획 발표와 재검토 / 16
3.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발간('19. 2) / 24
4.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 예술현장 간의 주요 협치 내용 / 26
5.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억 사업 / 31
6. 산하기관별 제도개선을 통한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 34
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21. 9) / 36
8.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주간' 신설 / 38
9.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점검 / 39
10. 백서 발간 및 이행협치추진단의 과제 이관 / 40

제2장. 이행협치추진단의 조직구성 및 활동

제1절. 조직 체계와 구성 / 44

제2절. 회의별 주요 안건 및 제도개선 주요 점검 내용 / 46

제3장. 이행협치추진단의 주요 성과

제1절. 문화행정 관련 제도개선 결과와 남은 과제들 / 108

1. 제도개선 추진 필요성 / 108
2. 제도개선 결과 / 109
3. 남은 과제들 / 136

제2절. 기관별 제도개선 이행 점검 결과 / 138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138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145
3. 영화진흥위원회 / 155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172
5. 한국콘텐츠진흥원 / 184
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190
7. 국립극단 / 200
8. 한국영상자료원 / 207
9. 영상물등급위원회 / 213

제3절. 법제도 관련 제도개선 결과와 남은 과제들 / 218

1.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권고 / 218
2. 법제도 과제 이행현황 및 경과 / 221
3.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와 예술인보호관에 의한 후속조치 / 229

제4장. 이행협치추진단 활동의 종합적 의의

제1절. 예술현장과 문체부의 소통 및 민관협치의 성공적 모델 / 234

1.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력 / 234
2. 이행협치추진단은 좋은 협치기구의 사례가 될 수 있을까? / 237
3. 문화행정 혁신을 이루는 성찰적 민관협력을 위하여 / 240

제2절.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억사업과 그 의미 / 242

1. 누구의 눈으로 기록할 것인가 / 242
2.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의 특징은 무엇인가 / 244
3. 블랙리스트 크레딧 위원회와 ‘프리뮤즈’의 활동 사례 / 245
4. 사회적 기억 사업의 의의와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 248
5.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사업의 중장기 과제는 무엇인가 / 251

제3절. 이행협치추진단의 성과와 한계 / 256

1. 이행협치추진단 운영의 사회적 배경 / 256
2. 이행협치추진단의 성과와 한계 / 258
3. 이행협치추진단 이후의 과제 / 263

부록

1. ‘팝업씨어터 공개사과 이후 -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을 시작하며’ 공청회 자료집(2019.12.2.) / 268
2.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2021.4.21) / 293
3.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문화예술표현의 자유주간 추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21.11.3.) / 447



제1장

총론

제1절. 이행협치추진단의 설치 배경과 목적 및 설치 과정

1. 설치 배경과 목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2016년 가을 국회에서 공개된 이후, 사건의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5년여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2017년 6월 30일에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준비팀(TF)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공무원과 민간위원 합동으로 발족하였고, 한 달간의 준비를 거쳐 2017년 7월 31일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조사위')가 공식으로 출범하였다. 문체부 훈령에 근거를 둔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졌으며, 민관협치를 표방하여 블랙리스트 조사위의 위원은 공동위원장 2인과 민간위원 16인 및 문체부 공무원 3인을 포함하여 총 21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블랙리스트 조사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분야를 구분하여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를 두고 조사를 전담할 민간 전문위원도 채용하였다.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2018년 6월 30일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11개월의 기간 동안 총 145건의 사건을 조사하여 사건의 병합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15건에 대해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조치,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포함하는 종합권고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중에서 2018년 4월에 블랙리스트 조사위에서 순차적으로 의결된 제도개선 권고안은 '자율, 분권, 협치'를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원칙으로 삼고, 법제도 개선, 문화행정 개선, 문화예술기관 개선 및 후속조치로 구분하여 총 85개의 세부과제를 조치사항으로 정리하였다.

한편 2018년 6월 22일 블랙리스트 조사위에서 의결된 책임규명 권고안은, 26인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과 105인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의뢰 대상은 '공무원 및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 중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직권남용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고, 징계 대상은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된 사실은 인정되나 가담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수동적으로 지시에 따른 자'로 구분하였다.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조사위가 법령에 의한 조사기구가 아닌 훈령에 의한 자문기구 성격으로서 책임규명 권고안과 제도개선 권고안이 법적 강제권을 갖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블랙리스

트 조사위 활동 종료 후에도 제도개선과제를 포함한 제반 권고사항이 확실히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고사항 이행 추진 및 이행 여부의 점검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도개선 권고안에 후속조치의 하나로 문화예술인과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행협치추진단(이하 ‘이행협치추진단’)'을 문체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권고안의 내용은 이행협치추진단을 문체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블랙리스트 조사위 활동 종료 후 설치해서 ‘(가칭)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보장 위원회’ 설립 기반 마련 후 활동을 종료하고 필수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요 업무는 블랙리스트 조사위의 권고 사항인 책임규명 권고, 제도개선 권고, 후속 조치 권고 등의 이행을 추진 및 점검하고,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권고 이행을 점검하며, 블랙리스트 조사위 기록을 검토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고, 블랙리스트 조사위 활동 결과를 담은 백서 배포 및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도식으로 표현된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표 2 블랙리스트 조사위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행협치추진단 설치 권고안

추진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간 공동으로 구성
운영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후 설치함 ○ (가칭)‘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장 위원회’ 설립시, ‘추진단’ 운영은 종료하고 필수 업무 이관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위 기록물 이관 및 정보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상조사위 기록물 보관(2년) 및 이관 ▪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공개 ▪ 아카이브 홈페이지(www.blacklist-free.kr)의 운영(계속) ○ 권고사항 이행 및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속기구 설치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 책임규명 권고의 이행 점검 ▪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행 ▪ 소속 공공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 여부 확인 점검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 결정한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기타 업무 ○ ‘표현의 자유 위원회’ 설립 전까지 필요한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인 권리 보장 관련 활동

2. 설치 과정

2018년 4월 의결된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해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표시하였다. 문체부는 2018년 5월 16일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를 발표하였는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떨어진 문화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과 민간의 문화예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논의에 기초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발표 시 도종환 장관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진상조사위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¹

또한 2018년 6월 7일 취임 1년을 맞아 <한겨레>와 실시한 인터뷰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문화예술계와 이행협치추진단을 만들기로 하였다. 제대로 지켜보며 감시하지는 거다. 이행 방식에 불만을 가진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만나 설명도 하고 이야기도 들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²

이에 따라 문체부는 2018년 6월부터 블랙리스트 조사위의 제도개선 권고안 및 책임규명 권고안 실행을 위한 이행체계 마련에 착수하였다. 기본적으로 제도개선 권고안 내용대로 문체부 공무원과 예술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체부 기획조정실에서 문화예술정책실, 감사관실과 협의하여 세부 이행조직과 참여위원 구성안을 준비하였는데, 내부 협의과정에서 수사의뢰와 징계 등을 포함하는 책임규명안의 이행은 개인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고 대외 보안인 경우가 많아서 예술계의 참여 없이 문체부가 책임지고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책임규명과 제도개선은 이행체계를 분리하여 2개의 조직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즉 책임규명을 위해서는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을 꾸려서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후속조사를 위한 실무지원팀과 법률 검토를 위한 법률자문팀을 두기로 하였다. 실무지원팀은 감사관실 소속 직원들 위주로 구성되었고, 법률자문팀은 변호사들 위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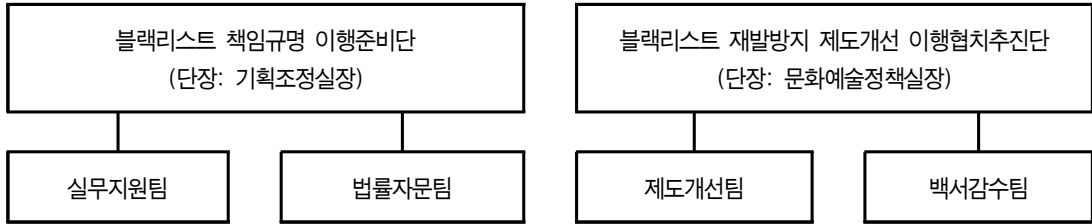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꾸려서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단장을 맡고 문체부 공무원과 예술계 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도개선팀과 백서감수팀을 두기로 하였다. 백서의 원고 집필은 블랙리스트 조사위 활동 과정에서부터 민간위원과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블랙리스트 조사위 활동기간 내에 발간까지 완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행협치추진단에 별도의 팀을 두고 백서의 교정·교열 및 감수를 거쳐 발간까지

1 이용, 「文정부, 박근혜 블랙리스트 첫 사과...“권고안 이행 최선”」, <연합뉴스>, 2018. 5. 16. <<https://www.yna.co.kr/view/AKR20180516052351005>>(검색일 : 2022. 5. 26.)

2 김은형, 노형석, 김미영 「‘블랙리스트 엄중처리하되, 제2 블랙리스트 되지 않도록’」, <한겨레>, 2019. 6. 11.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48517.html>(검색일 : 2022. 5. 26.)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문체부의 이행체계 도식은 다음과 같다.

표2.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조사위 권고안 이행체계



이 같은 내부 결정에 따라 문체부는 2018년 7월 9일 대변인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책임규명 권고안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을 가동하여 법적·행정적 검토를 거쳐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공표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실행하는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도 곧 꾸려서 외부 자문위원까지 구성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³

이어서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의 민간위원 구성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블랙리스트 조사위에 참여했던 인사 외에 예술현장 전문가, 행정학자 및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명이 민간위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약 한 달이 지난 2018년 7월 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문체부 과장 7명 및 민간위원 7명을 합하여 총 15명이 참여하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2018년 8월 20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 회의에서 이행협치추진단은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세부 운영계획을 개괄적으로 논의하였다.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에서는 2개월간의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를 거쳐 2018년 9월 13일에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조치가 미흡하다는 예술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 절차를 진행한 끝에 2018년 12월 31일에 최종 이행계획을 다시 발표하였다.

3 이웅,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 급주 본격 가동」, <연합뉴스>, 2018. 7. 9.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9113700005?section=search>)(검색일: 2022. 5. 26.)

제2절. 이행협치추진단의 주요 경과

1. 이행협치추진단의 설치까지

2017년 5월 10일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17. 7. 19.)하면서 1번 과제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선정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경우 "17년부터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협치체 설치·운영,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추진"을 약속했다.¹ 2017년 6월 19일에 취임한 도종환 문화체육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부당한 명령을 내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강조하면서 "다시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도록 이번 주 안에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²

2017년 7월 31일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조사위')가 출범하면서 문체부는 "진상조사위 출범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무너진 문체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앞으로도 문화예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정한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³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11개월간의 조사를 마치고 2018년 6월 30일에 해산했다.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장관 훈령으로 출범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위원회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훈령에 의한 자문기구로서,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 규명 조사라는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집행하기에는 권한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조건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실질적인 조사권의 부재,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자료들에 대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진상조사가 미진할 수밖에 없었다.

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국가기록원의 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 캐비닛 자료', '블랙리스트 관련 2심 재판 이후 자료', '국가정보원의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세부 자료' 등을 확보

1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전자정부 누리집)〉, 2017. 7. 1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39872>>(검색일: 2022. 5. 2.)

2 「도종환 제 50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6.19. 정부세종청사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영혼 있는 공무원' 당부-」,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2017. 6. 19. <http://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088>(검색일: 2022. 5. 2.)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본격 출범-민관 사전준비팀 최종 합의, -7.31. 첫 회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개최, 위원장 호선 등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2017. 7. 27. <http://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168> (검색일: 2022. 5. 2.)

하지 못함으로써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⁴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자유한국당이 2018년도 운영예산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이 고갈되는 바람에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2017년 7월 3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11개월 동안 총 145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이 중 115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총 9,273건의 블랙리스트(단체 342곳, 개인 8,931명) 규모에 비추어 보면 매우 미진한 조사에 머물렀다. 해산 시점까지는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승인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하여 백서 발간이 미처 이루어지지 못했다.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해산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권고하였다.

첫째, 국가의 사과 및 책임규명을 통한 정의의 실현

둘째, 피해 문화예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 치유에 관한 사항

셋째, 진상 규명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위원회’ 설립

넷째, 권고 이행을 위한 ‘이행협치추진단’ 설치⁵

2018년 5월 8일, 블랙리스트 조사위와 문체부가 함께 발표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발표」에 의하면 ‘권고 이행을 위한 ‘이행협치추진단 설치’ 부분에서 추진단 구성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간 공동으로 구성’ 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행협치추진단의 주요 업무 내용 중에는 ‘권고사항 이행 및 처리’가 있고, 그 세부 사항 중에 ‘책임규명 권고의 이행 점검’이 명시되어 있었다.⁶ 그런데 문체부는 2018년 6월 30일 블랙리스트 조사위가 해산된 이후 이행협치추진단의 발족을 계속 미루었다. 백서는 원래 블랙리스트 조사위 해산 이후 3개월 이내에 발간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행협치추진단이 구성되지 않아 백서발간 업무도 완전히 중지된 상태로 한 달 반 이상 지연되었다.

2018년 8월 20일에야 이행협치추진단의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 이행협치추진단의 민간위원으로는 김미도(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위원), 이양구(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문위원), 이원재(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위원), 정윤희(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운영위원), 한승준(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현린

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1, 위원회 활동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119쪽.

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154쪽.

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2018. 5. 8.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2층 1강의실.), 2018, 216쪽. 이 내용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166쪽에도 그대로 실려있다.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황승흠(국민대 법학과 교수)이 참여하게 되었다. 문체부는 아래와 같은 이행협치추진단의 조직도를 제시하였는데 민간위원들은 이에 선뜻 동의하지 못했다.

표 4. 이행협치추진단 조직도



이행협치추진단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 (단장: 문체부 기조실장)과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단장: 문체부 문예실장)으로 분리해놓고,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에서는 ‘제도개선’과 ‘백서발간’만 관장하라는 것이었다. 책임규명 이행 부분은 문체부 기조실장이 법률자문팀과 따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민간위원들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부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 회의 일정을 9월 12일로 잡았다. 그런데 9월 12일에 열린 이행협치추진단 2차 회의에서 책임규명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이 문체부가 9월 13일에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 이행협치추진단은 그 출발부터 심각한 난항이 예측되었다.

2.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 계획 발표와 재검토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2018년 6월 27일 마지막 전원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과 관련하여 131명에 대한 수사 의뢰 및 징계를 권고하였다. 131명 중 문체부 내의 블랙리스트 관련자는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이었는데 이에 대해 문체부는 2018년 9월 13일에 수사의뢰 7명, 주의조치 12명이라는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직원 44명 중 과장급 이상 22명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주의 4명), 퇴직(5명), 징계시효 경과 등의 사유(13명)로 징계처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처분자와 퇴직자를 제외한 13명 중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지 않은 과장급 이상 10명에 대해 문체부는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사의뢰 권고자 중 주의조치를 받을 2명을 포함하면 문체부 주의조치를 받을 직원은 총 12명이 된다”⁷고 밝혔다.

문체부 발표에 대해 문화예술계는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연극인 회의’(약칭 ‘블랙타파’)는 문체부 발표가 사실상 ‘징계 0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겨우 형사처벌 권고 7명, ‘주의’ 처분 10명을 하면서, 여기에 수사의뢰 대상자 2명을 징계 권고자 수에 포함시켜 12명의 숫자를 만들고, 여기에 특검이 이미 기소한 3명과 지난 해 감사원 감사결과 주의 처분 받은 자(9명)를 포함하여, 처분 받은 인원 27명이란 숫자를 만들고, 징계를 받지 않은 전보 조치 대상자 22명을 포함하여 조치 인원 48명이란 숫자를 만들어냈다. 숫자놀음을 통해 마치 68명 중 48명에 대한 대단한 조치라도 한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말과 숫자를 가지고 피해 예술인과 국민들을 현혹하고 기만한 것이다.

‘주의’는 경미한 비위 행위를 한 공무원에게 반성하도록 하는 것이지 징계가 아니다.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실행 공무원에게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도 아니고, 경징계(감봉, 견책)도 아니고 ‘주의’를 준 것은 향후 승진 등에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 조치에 불과하다.⁷

9월 18일에는 블랙리스트 조사위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문체부 책임규명 이행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전직 위원인 이양구 극작가는 “이런 식이라면 (도종환 장관이) 블랙리스트 팔아 장관됐다고 밖에 여길 수 없다”며 “대변인 혼자 내보내서 짧게 발표하고, 아무런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 이행권고 계획 발표도 뒤늦게야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문체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동민 전 민간위원(문화예술기획 이오공감 대표)은 “블랙리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치욕적인 사건이다. 국가범죄에 대해 관련 징계가 제로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된다. (문체부의 결정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체부를 넘어 청와대를 향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해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사과하고 진상규명 및 적폐청산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문체부의 이행계획 발표를 전면 백지화하고 검증과 토론을 통해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⁸

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한 이행계획 발표-문체부, 재외문화원장 3명 조기복귀 조치 및 재발방지 제도개선 85개 세부과제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2018. 9. 3. <http://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881>(검색일: 2022. 5. 2.)

8 블랙타파, 「블랙리스트 실행 문체부 공무원 징계 0명, 문체부 공무원 도종환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성명서, 2018. 9. 13. <<https://www.facebook.com/blacktapa/posts/618122525256018>>(검색일: 2022. 5. 2.)

9 조은정 기자, 「“적폐청산 팔이 그만”... 블랙리스트 징계 ‘0’ 후폭풍」, <노컷뉴스>, 2018. 9. 18. <<https://www.nocutnews.co.kr/news/5033643>>(검색일: 2022. 5. 2.)

이밖에도 문체부의 ‘징계 0명’ 사태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분노와 질책이 빗발쳤고 급기야 추석연휴가 시작되던 9월 21일부터 문화예술인들의 일인시위가 시작되었다.

연극인 4864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 ‘대학로엑스(X)포럼’은 지난 22일부터 매일마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모여 ‘문체부의 셀프 면책 블랙리스트 실행 공무원 징계 0명 규탄 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무용인 617명이 활동하는 ‘무용인희망연대오롯’(이하 오롯)과 국립국악원 무용단 비상대책위원회도 지난 22일부터 매일마다 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문체부는 징계 0명인 블랙리스트 이행계획 발표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향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적폐청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라”고 주장했다.

김미도 연극평론가는 지난 22일 서울역에서 기자를 만나 “도종환 장관에 대한 배신감에 다시 거리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과제 1호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가 지금 어떤 난관에 봉착했는지 좀 살펴보시라”고 말했다.¹⁰

예술인들은 서울역, 아크코예술극장,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실행기관 앞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갔다. 광화문, 청와대, 국회 앞 등에서도 일인시위를 벌였으며 점점 많은 인원이 가세하였다. 수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문체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쏟아냈고, 연일 문체부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넘쳐났다.

이러한 반발에 대해 문체부는 10월 1일에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131명의 징계 권고 중 징계 0명’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난해 6월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들었다. 당시 감사를 통해 이미 3명이 징계를 받았고 6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22명 중 4명은 이미 처분을 받았고, 5명은 퇴직했으며, 5명은 징계 시효가 경과됐고, 8명은 처분의 형평성 사유로 징계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1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항변했다.

‘주의’는 공무원법상 징계가 아니어서 사실상 징계가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 문체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관여 직원들이 주의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주의’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결과 처분의 하나이며, 주의 처분대장에 등재되고 관리돼 향후 승진, 전보, 상훈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10 박정환 기자, 「예술인들 다시 거리에 서다... 추석연휴 ‘문체부 블랙리스트 이행계획’ 규탄, 〈news1〉, 2018. 9. 26. (<https://www.news1.kr/articles/3435609>)(검색일: 2022. 5. 2.)

하위직 공무원들은 ‘주의’ 조차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문체부는 권한이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웠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에 협조한 것을 감안했다고 해명했다.¹¹

이에 대해 블랙리스트 조사위 민간위원들은 10월 4일에 다시 문체부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첫째로, 문체부는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이미 일부 징계가 이뤄졌고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는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공무원 징계제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위원들은 지적했다. 공무원법상 동일한 비위에 대해 징계와 형사처벌을 병행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을 뿐더러, 이번에는 동일한 비위가 아닌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주의’도 불이익이 있는 징계의 일종이라는 문체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주의는 명백하게 법률적으로 징계의 종류가 아니다”며 “징계는 과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는 법률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마지막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주의’ 조차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 “관료주의에 기반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고, 범죄 행위를 할 경우 상관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부하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는 주장이다.¹²

블랙타파 역시 10월 4일에 다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11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감사원 감사, 특검 등에서 밝히지 못한 여러 사건들을 밝혔다. 감사원 감사결과 그 자체도 문체지만 새롭게 추가된 범죄행위가 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이 복종해야 할 지시는 ‘공무’ 이지 ‘범죄’가 아니다. 상관의 지시였다고 해서 범죄에 가담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했다.¹³

문체부의 재입장 표명은 예술인들을 더욱 분노로 들끓게 했다. 예술인들의 일인시위는 더욱 거세게 번져갔고, 결국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위원들과의 만남을 제안해왔다. 10월 14일에 국립현대미술관 회의실에서 도종환 장관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위원들 사이에 4시간 30분

11 조은정 기자, 「블랙리스트 징계 ‘0’은 오해 VS “분노에 기름 붓나”, 〈노컷뉴스〉, 2018. 10. 1. <<https://www.nocutnews.co.kr/news/5038736>>(검색일: 2022. 5. 2.)

12 조은정 기자, 「블랙리스트 징계 0명 아니라고? 도종환 장관 공개토론 하자”, 〈노컷뉴스〉, 2018. 10. 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151335?sid=103>>(검색일: 2022. 5. 2.)

13 블랙타파, 「당신들에게 권한이 없다」 성명서, 2018. 10. 4. <<https://www.facebook.com/blacktapa/posts/628337560901181>>(검색일: 2022. 5. 2.)

동안이나 설전이 오갔다. “신학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前)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진상조사위 민간위원 12명은 도중환 장관에게 △이행계획 전면 재검토 △이를 위해 민간이 참여한 재검토위원회(가칭) 구성 △대국민 토론회 개최 등 3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도중환 장관은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계에 설명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에 사과했으나, 문화예술계의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¹⁴

도중환 장관은 이 회의에서 즉답을 주지는 않았는데 장관의 답변을 기다리는 사이, 10월 16일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단¹⁵이 문체부의 책임규명 이행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리인단은 “문체부 공무원들은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에 철저하게 복무하였으면서도 그 실제적 진실의 일부가 밝혀진 오늘, 이들은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반성 없는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직급에 관계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징계절차를 이행하라”고¹⁶ 강조했다.

일인시위는 동시다발로 매일 이어졌고 11월 3일에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주관으로 문체부를 규탄하는 ‘2018 문화예술인 대행진 <블랙리스트 블랙라스트(Blacklist Blacklast)>’가 국회를 출발하여 청와대까지 이어졌다. 이 날 행진에 앞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블랙리스트 불법 공모 131명 책임규명 권고안 즉각 이행,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이행 축소·왜곡·방해·셀프면책·책임자 문책, 블랙리스트 미진한 진상규명 관련 대통령·정부·국회의 구체적인 대책 즉각 수립, 문화예술 정책·행정 등 민관협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화 시행 등 크게 4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131개 단체, 2166명이 참여했다.

<블랙리스트 블랙라스트> 대행진을 앞두고 문체부는 결국 책임규명 이행계획 재검토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월 7일에 문체부와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들의 첫 번째 협상 테이블이 이루어졌다. 문체부와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들이 합의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이하 ‘이행계획 검토회의’)는 문체부 추천 변호사 2인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변호사 1인, 법학교수 1인, 전 진상조사위 위원 1인 등 모두 5인으로 구성되었다. 민간 검토위원 3인은 재검토 기준안을 도출하면서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들과 수시로 협의했고, 최종 이행계획안을 놓고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현장 예술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말까지 이어진 재검토

14 박정환 기자, 「도중환 문체 ‘블랙리스트 해법’ 위해 예술계 만나 ‘의견 청취」, <news1>, 2018. 1. 14. <<https://www.news1.kr/articles/?3449874>>(검색일: 2022. 5. 2.)

15 대리인단은 2017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 명이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참여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부수석비서관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16 김상훈 기자,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참회 없는 도중환 장관의 문체부 규탄한다!’ 성명 발표», <뉴스페이퍼>, 2018. 10. 16.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71>>(검색일: 2022. 5. 2.)

끝에 2018년 12월 29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들은 문체부에 이행계획 기준을 최종 권고했고, 12월 31일에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방안 최종 확정’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보도자료에서 “검토대상인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 징계권고 44명)에 대해 수사의뢰 10명, 중징계 1명(감사원 징계 3명 미포함), 주의조치 33명(감사원 주의 4명 포함)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는 9월 13일에 발표했던 이행계획안에서 수사의뢰 3명, 징계 1명이 추가된 숫자다. 문체부는 징계 받지 않은 수사의뢰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기소하더라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13일 발표에 있었던 사무관급 이상 관련 공무원 전원(17명)에 대한 엄중 주의조치도 추가하였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할 계획¹⁷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책임규명 이행계획 재검토 과정에서 문체부는 수사의뢰 3명, 중징계 1명, 사무관급 이상 전원 주의조치를 추가한 셈이다. 블랙리스트 조사위가 책임규명 이행계획안을 세울 때부터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무관급에 대한 징계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었다. 우선 사무관급에 대한 징계가 중요하다고 본 민간위원들의 관점은 문체부 산하 기관들에서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산하기관에 지시를 내린 문체부 사무관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은 큰 모순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문체부는 사무관급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며 상관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사무관급을 징계하는 데 있어 마지막 걸림돌은 블랙리스트 실행에 실질적으로 많이 가담했던 사무관급들의 징계 시효가 대부분 만료되었다는 점이었다. 문체부가 애초에 사무관급을 징계하지 않고 재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석 달 이상의 시간이 경과했고 더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 시효 만료라는 면죄부를 받게 되었다.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들은 징계시효가 남아있는 일부 사무관급 공무원들이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사무관급은 전원 주의조치를 하는 대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상관들을 추가로 수사의뢰 하고, 그 가담 정도가 가장 심각한 서기관 1명(사건 당시 사무관)의 중징계를 권고하기로 했고 문체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행계획 검토회의’에 참여했던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문위원 이양구는 최종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페이스북 ‘대학로X포럼’ 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공개한 바 있다.

검토위원 3인의 권고안을 받은 문체부는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들과 이 권고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1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이행방안 최종 확정 - 문화예술계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민관 협치 지속 다짐-」,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2018. 12. 31.
(http://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059)(검색일: 2022. 5. 2.)

‘기준[저울]’에 대하여 토론했습니다. 특검과 법원의 판단 기준, 감사원 처분 기준, 예술계의 의견을 반영한 기준, 산하기관에서 적용된 징계 기준, 이미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버린 다른 핵심 실무자들과의 관계…… (머리에서 떠올릴 수 있는) 모든 기준을 적용하여 저울의 수평을 최대한 엄격하게 맞춰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기준[저울]을 검토하는 시간동안 징계시효가 만료되는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재검토에 돌입한 시점에서 이미 대다수 실무자들의 징계시효는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재검토 결과 못지않게 재검토 과정을 그 자체로 신뢰와 협치의 회복이라는 목표로 생각할 만큼 주의 깊게 진행했습니다.

어떠한 결론을 내리더라도 징계 대상자들에게 형평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상황에서 가능한 미세한 간극이라도 좁혀보려는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그 결과 문체부는 사실상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남아 있었던 실무자 6명 중 관여 정도가 중한 1명에 대하여만 중징계를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징계 대상자로 남아 있는 실무자들 중 5명은 상대적으로 관여 정도가 낮은 점, 해당 업무 전임자가 핵심 실무자 역할을 하였으면서 이미 징계 시효가 만료되어 버린 점, 해당 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산하기관 직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거나 하였던 점, 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상급자 등 3명에 대하여 문체부가 추가 수사의뢰 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 책임에서 제외하는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¹⁸

사무관급에 전원 주의조치를 내리는 대신 이행추진단 민간위원들은 장관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겸하여 최종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문체부의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산하기관들에 사과하는 내용을 발표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발표 장소에 문체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모두 나와 함께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9월 13일에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과 달리 12월 31일 재검토 발표를 앞두고 문체부는 보도자료 문구 하나하나까지 민간위원들과 세심하게 협의했다.

문제는 2018년도 연내에 책임규명 이행계획 발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표 공지가 행사 하루 전에 나가는 바람에 예술현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고 행사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던 점이다. 심지어 12월 31일 국립현대미술관 행사장에서는 행사 안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행사장에서는 ‘대국민 사과’라는 타이틀이 삭제된 채 발표가 진행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를 맡은 문체부 대변인은 현장예술가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기자들 질문만 받겠다는 말실수를 하여 예술인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행사가 파행을 빚었다. 사태를 수습하러 나온 기조실장은 그동안 여러 번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발언으로 또 빈축을 샀다. 마지막에 신임 김용삼 1차관이 나와 행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에

18 이양구, 「지난 해 마지막 날 있었던…」, 〈대학로X포럼〉, 2019. 1. 4.

(<https://www.facebook.com/groups/1524165964529525/posts/2294474370832010/>) (검색일: 2022. 5. 2.)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고 예술계와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행사는 가까스로 마무리되었다.

문체부의 징계 재검토 완료와 더불어 산하기관들의 징계도 모두 마무리되었다. 최종 책임규명 이행계획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 문체부의 책임규명 이행계획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 내역				해당기관 이행 내역
구분	기관		인원	
수사 의뢰 권고 (26명)	중앙 부처 (15명)	문화체육관광부	12명	수사의뢰 7명(감사원 징계 3명, 주의1명 중복), 주의조치 2명
		외교부	1명	퇴직
		국가정보원	2명	해당기관 검토 중
	공공 기관 (11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명	수사의뢰 2명(퇴직 3명 중)
		영화진흥위원회	3명	수사의뢰 1명, 퇴직 2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명	퇴직 2명
		한국문학번역원	1명	퇴직
		예술경영지원센터	1명	퇴직
		국립극단	1명	퇴직
처분 소계		26명	수사의뢰 10명, 주의조치 2명	
징계 권고 (105명)	중앙 부처 (46명)	문화체육관광부	44명	중징계 1명 주의조치 31명(감사원 주의 4명 포함)
		외교부	1명	민간임용 퇴직자
		대통령비서실	1명	민간임용 퇴직자
	지자체 (3명)	대구광역시	3명	주의 3명
	공공 기관 (56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3명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 주의 3명, 징계시효 경과 3명 주의, 퇴직 4명, 민간위원 2명
		영화진흥위원회	14명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5명, 견책 3명, 퇴직 4명
		예술경영지원센터	4명	주의 2명, 퇴직 2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명	사실관계 불명확 2명 민간위원 1명, 퇴직 1명
		국립극단	3명	경고 1명, 퇴직 2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명	징계시효 경과 1명, 하위직급 1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명	퇴직 1명, 징계사유 없음 1명
한국영상자료원	2명	퇴직 2명		

	한국문학번역원	1명	퇴직 1명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명	경고 1명
처분 소계		105명	중징계 1명, 해임 1명, 징직 5명, 감봉 8명, 견책 7명, 경고 2명, 주의 42명 (감사원 주의 4명 포함)

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가장 엄중하게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연극계와 직접 관련이 많은 예술위는 징계 권고 대상자 23명 중 퇴직 6명, 선행처분 1명, 징계시효 종료 3명 등 10명을 제외한 13명에 대하여 징직 4명, 감봉 3명, 견책 4명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영진위는 징계 권고 대상자 14명 중 퇴직자 4명을 제외한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해 해임 1명, 징직 1명, 감봉 5명, 견책 3명 등의 처분안을 냈다.

3.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발간(19. 2)

이행협치추진단이 가동됨에 따라 백서발간 업무는 ‘편집실무팀’을 꾸리고 신속히 이루어졌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백서발간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도가 편집실무팀을 이끌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 전문위원으로 직접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이양구 위원,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최지현 전문위원, 백서발간소위원회의 송윤정 전문위원, 이행협치추진단의 정윤희 위원이 팀원을 이루었다. 출판사로는 경성문화사가 선정되었다. 문체부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부터 백서발간소위원회를 지원했던 문체부 기획조정실의 윤성천 혁신행정담당관이 계속 지원책임을 맡기로 했다.

교열 및 교정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률자문을 통해 비실명화의 원칙과 방법 등이 논의되었고, 2018년 11월부터는 백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기로 하고 그 처리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의신청 접수 결과 총 58건이 검토대상에 올랐다. 개개 사안별로 직접 조사를 담당했던 전문위원들의 확인과정 및 이의 제기자들에 대한 면담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수용, 불수용, 주식 병기 등으로 분류하여 백서에 포함시켰다.

2019년 2월에 드디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가 발간되었다. 백서는 본권 4권과 부록 6권으로 총 10권, 6,600여 쪽에 이른다. 아래는 백서 발간시 배포된 문체부 보도자료 전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

위원장 도중환·신학철, 이하 위원회)의 활동과 결과물을 정리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본책 4권과 부록 6권으로 구성되었으며, 분량이 총 6,600여 쪽에 이른다.

본책은 ▲ 제1권 ‘위원회 활동 보고서’, ▲ 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 제3권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 제4권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으로 이루어졌다. 제1권에서 제3권까지는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이 집필을 담당해 11개월간(2017. 7. 31.~2018. 6. 30.)의 위원회 활동 내용과 진상조사 결과물, 제도개선 권고안을 정리했다. 제4권에서는 주로 외부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해 블랙리스트 사태를 좀 더 거시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록은 총 115건의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전문을 망라해 ▲ ‘기관별’(부록 1권), ▲ ‘공연 분야’(부록 2, 3권), ▲ ‘문학·출판 분야’(부록 4권), ▲ ‘영화 분야’(부록 5권), ▲ ‘시각예술 및 기타 분야’(부록 6권) 등으로 구분했다.

백서의 구성과 원고 집필은 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백서의 교정·교열 및 감수 과정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 문체부 공무원과 민간 공동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이행협치추진단(단장 문화예술정책실장)에서 담당했다. 지난해 10월 말에 1차 편집이 완료된 후 관련 당사자들에게 가편집본을 열람하도록 하여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 3개월간의 추가 소명과 사실 재확인 과정을 거쳐 백서의 최종 수정 보완 작업을 마무리했다.

도중환 장관은 발간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일이다.”라며, “이 기록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반성의 거울로 삼아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공정하게 창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쇄된 백서는 블랙리스트 피해자, 국회 등 주요 기관과 도서관, 문화예술단체 등에 우선 배포되며, 디지털 파일은 2월 27일(수)부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의 ‘주요정책’과 위원회 누리집(www.blacklist-free.kr)의 ‘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¹⁹

블랙리스트 백서가 발간되기까지는 사실 많은 애로가 있었다. 2017년 7월 31일에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2018년도 예산을 배정 받지 못함에 따라 원래 백서 발간에 쓰일

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발간 -부록 포함 10권, 위원회 활동 내용과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수록-,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2019. 2. 27.
(http://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137)(검색일: 2022. 5. 2.)

예산이 2018년도 진상조사위 경상비로 투입되었다.

이행협치추진단 구성 이후, 백서 발간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5천만 원이었다. 마지막까지 발간 작업에 매달린 백서발간팀 5명은 최소한의 회의비를 받으며 헌신적으로 책임을 다했다. 백서발간이 진행되는 중에 이행협치추진단이 책임규명이행계획을 놓고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었기에 문체부와 함께 하는 백서발간 작업 분위기도 냉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도종환 장관이 책임규명이행계획의 재검토를 결정하면서부터 백서발간 작업은 예산 문제를 제외하고는 문체부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특히 윤성천 혁신행정담당관과 조은호 주무관의 전폭적인 협조로 가장 복잡했던 비실명화 작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4.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 예술현장 간의 주요 협치 내용

가. 김용삼 차관과 블랙리스트 피해 연극인들과의 간담회(‘19. 1. 22)

2018년 12월 31일에 최종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한 도종환 장관은 2019년 1월 초부터 예술위, 영진위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보를 보였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위원이기도 했던 김용삼 1차관은 2019년 1월 22일에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가들과 간담회(대화로연습실 다목적실)를 갖고 전년도 12월 31일의 행사 파행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김용삼 차관은 “12월 31일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여러분들과 언론과도 충분한 대화를 하면 좋을 걸 그랬는데 준비과정이나 현수막 등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면서 “상처를 치유 받으러 왔다가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상처를 더 받는 일 발생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김 차관은 “블랙리스트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문체부로서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입장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라며 “상처를 치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의견을 주시고 문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²⁰고 말했다.

예술현장의 불만과 비판 여론은 여전히 남아있었으나 김용삼 차관과의 간담회는 문체부와의 골 깊은 응어리를 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문체부는 적어도 재검토를 수용한 시점부터는 민간과

²⁰ 김세운 기자, 「문체부 차관과 블랙리스트 피해 연극인, 어떤 이야기 나왔나」, 〈민중의 소리〉, 2019. 1. 23.
(<http://www.vop.co.kr/A00001373445.html>)(검색일: 2022. 5. 2.)

의 협치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성실히 노력하였다.

나. 수사의뢰자 3인에 대한 인사 문제

2019년 7월 1일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규모 인사 개편을 단행하였는데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의뢰자 3명이 문체부 소속기관에 발령(6월 28일자)이 났다는 사실이 7월 8일 박양우 장관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드러났다. 7월 1일 언론 보도를 통한 문체부 인사 발표에서는 이들의 명단이 없었다가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체부 스스로 이들의 인사발령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일었다.

이 사태로 문체부와 이행협치추진단은 다시 큰 갈등을 빚게 되었다. 특히 이행협치추진단은 수사의뢰 대상자들 외에도 블랙리스트 사태 당시 예술정책과 과장이었던 자를 예술정책관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항의하였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의 항의 성명을 비롯하여 예술현장에서도 강력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행협치추진단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더이상 협치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고까지 문체부에 맞섰다. 이행협치추진단은 김용삼 문체부 차관과의 간담회에 이어 박양우 장관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문체부는 결국 3인의 수사의뢰자 중 기관장격인 국립한글박물관장을 다른 자리로 보냈고, 예술정책관에 대해서도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블랙리스트 실행자들에 대한 인사 문제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의 항의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월 1일 단행된 국장급 인사 일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30일 ‘최근 문화예술현장의 블랙리스트 관련 문체부 국장급 인사(7.1.) 비판’에 대한 입장을 내고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항의를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1일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블랙리스트 수사의뢰 대상자들을 포함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당사자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인사를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았다.

이에 블랙리스트 피해 단체들이 모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지난 7월 17일에는 이들과 문체부의 논의 기구인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이하 이행협치추진단) 회의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였던 민간위원들(김미도, 이양구, 이원재, 정운희, 현린)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민간위원들은 문체부의 인사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블랙리스트 관련 ‘주의’ 처분을 받은 예술정책관 인사에 대해서도 추가로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박양우 장관)는 “2018년 10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수사 의뢰된 3인이 6개월 이상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등, 소속기관 국장급 5개 직위가 장기 공석으로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며 인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해명했다.

수사 의뢰된 3인으로 지난 7월 1일 인사에 포함된 이들은 김아무개 국립한글박물관장과 김아무개 해외 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기획관, 용아무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 등이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문제가 공개될 당시 해외문화원장 등으로 있다가 귀국해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다. 예술정책관은 조아무개 콘텐츠정책국장이 전보됐다.

문체부는 “위 3인 관련 검찰 수사는 관련 재판 종결 이후에나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사 및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며 소속 기관 국장 직위는 기관장을 보좌하고, 문체부 본부 등 외부 기관과 원활한 업무 연계를 수행하는 자리로, 소속 기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위 3인에 대한 전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6개월 이상 대기발령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사정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현장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들의 문제 제기 와 계속되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관과 차관이 7월 26일과 8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이행협치추진단과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행협치추진단과 논의 결과 ▲ 관련 법령에 따라 6개월 이상 대기 발령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의뢰자 3인 중 기관장 직위에 해당하는 1인과 인사검증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예술정책관 전보 인사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하기로 하고 ▲ 수사 의뢰자 3인에 대하여는 향후 검찰에서 형사 기소가 제기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 조치를 하고(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불기소처분시에는 중징계를 하겠다는 당초 합의 내용(2018.12.31.)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 블랙리스트와 같은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지 않고, 신뢰받는 정부 부처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 블랙리스트 관련자는 당시 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위로 배치하여 당시 담당 분야 외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 블랙리스트 사태 수습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신규자를 포함하여,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교육 계획을 수립해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행협치추진단과 함께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을 계획해 수립해 추진하고, 분야별 제도 과제 이행을 위하여 문화예술현장과 함께 더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²¹

한 번 단행한 인사를 반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문체부는 이행협치추진단을 매개로 한 예술현장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한 셈이었다.

21 성하운 기자, 「블랙리스트 관련자 인사 ‘재검토’... 한발 물러선 문체부」, 〈오마이뉴스〉, 2019. 8. 31. <<http://omn.kr/1kptu>>(검색일: 2022. 5. 1.)

다. 예술위 위원 선임절차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제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선 권고’에서 예술 위 위원 선임 절차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한 바 있다.

- 예술 현장과의 소통, 위원 선임 및 위원회 구성 원칙과 기준, 민주주의 절차를 통한 위원 선출,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객관화 된 평가 체계 등이 실종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진행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 23조(위원회의 구성) ①항의 다음 규정 이외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음.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의 위원으로 구성한다.”²²

이처럼 문체부 장관이 위원 선임의 결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조는 블랙리스트 사태 당시 예술 위 위원들 중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는커녕 블랙리스트 실행에 순응하고 협조하는 참사를 낳았다. 2005년 합의제 민간위원회로 전환한 예술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철저히 파괴된 것이다.

예술위 위원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은 2018년 ‘아르코혁신TF’ 보고서에서도 심각하게 지적된 바 있다. 아르코혁신TF는 개선 방향으로 위원 구성절차에 대해 참여적 구조를 활성화하여 위원 선임과정이 현장으로부터 추대되는 절차 중심의 구조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위원추천위 구성(권한)을 예술위에 ‘위임(단기)/이관(장기)’ 하고 위원추천위는 공모와 심사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존 위원 선임절차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과정이다. 위원추천위원회는 말만 ‘추천’ 이지 사실상 위원 공모에 응한 지원자들을 단순 심의하여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올리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위원추천위원회를 또 문체부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문체부의 의도가 개입할 여지가 컸다.

문체부는 예술위 7기 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가면서 2019년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14일간 ‘위원추천위원회’를 공개모집했다. 여기에 33개 단체, 총 59명(문학9, 미술8, 연극15, 전통예술9, 문화일반18)이 신청했다. 문체부 장관은 이를 토대로 총 20명(장르별 12명, 문화일반 8명)의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²²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95쪽.

그런데 법인으로 등록된 협단체로부터의 추천과정이 문제가 되었다. 특정 협단체에 속한 추천위원들이 협단체장 출신들을 위원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컸고, 부분적이지만 결국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위원 후보자 16명이 전원 남성으로 추천되었다는 점이다.

예술위 위원 후보자들이 전원 남성으로 추천된 것에 대해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이하 ‘성반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019년 11월 14일 성반연은 성명서를 통해 여성후보자가 없는 것뿐 아니라 위원 후보 추천과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모에 있어서 여성 후보자가 적었다면 자격의 적격성, 추천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적절한 여성 후보자를 발굴하려고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매년 위원 공모에 있어서 후보자가 많지 않고, 공모 시기가 짧다는 관행에 대해서 이를 극복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였는가? 현장이 요구하는 대표성과 전문성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점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특히 연극분야는 해결되지 않은 전 협회장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만주전선을²³ 통해 협회가 지닌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여전히 장르협단체만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는가? 더하여 문화예술위원회 내에서 현장소통소위원회와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바, 문예위 위원을 공모하는 이 과정에서 그러한 소위원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귀를 기울였는가?

“예술정책과 행정에 대한 이해”가 단체의 고위직을 경험해 본 기득권 인사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인식 역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문체부와 문예위는 장년-남성의 얼굴만이 아닌, 문화예술계 전체를 대표하기에 보다 적합한 후보자 군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종 후보자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역시 그 추천 방법에 있어 법인인 문화예술단체에게만 열려있다는 것은 문제적이다. 법인이 아닌 문화예술단체가 대다수인 문화예술계에서 최초후보자에서 최종후보자의 실질적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추천위원회를 추천하는 것조차 법인 문화예술단체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소위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²⁴

예술위의 지원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검증하는 ‘성평등예술지원소위원회’도 11월 15일에 입장을 내고 “역대 예술위원 63명 중 여성은 16명으로 25%인데, 이대로 7기 위원이 구성되면 그 비율은

23 극단 소울씨어터의 만주전선은 제 35회 강원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아 2018년 대한민국연극제에 강원도 대표작으로 참가했으나 주최측인 한국연극협회(이사장 정대경)의 미숙한 행정에 의해 본선 심사에서 배제된 바 있다.

24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최종 후보자에 관한 성명서」, 2019. 11. 14. <<https://www.facebook.com/theaterwithyou/posts/450116612313752>>(검색일: 2022. 5. 2.)

낮아진다”면서 “예술위 위원과 추천위원회의 성비·연령비 구성을 40% 이상 또는 남녀동수로 명문화하는 ‘성평등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²⁵고 요구했다.

문화예술계의 반발이 크게 확산되자 문체부는 11월 28일에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위원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대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문체부의 전격적인 결정을 문화예술계가 환영하면서 곧바로 공문화 과정에 돌입했고 총 3회의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2020년 1월 30일에 열린 3차 토론회에서는 예술위 위원 선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이 대략 정리되었다. 무엇보다 특정 성별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위원들을 50:50으로 조정함으로써 세대 간 비율도 고려하기로 했다. 20대가 위원으로 추천될 확률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위 내의 소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청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법인 미등록단체와 개별예술인까지 추천 주체를 확대함으로써 추천위원회가 현장으로부터 신뢰받는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유례가 없는 현장과의 적극적 소통 끝에 2020년 5월 6일 제 7기 예술위 위원들이 위촉되었다. 최종 결과는 남·여가 각 4명(50%), 30~40대와 50~60대가 각 4명(50%)으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였고, “분야별 전문성과 함께 최근 융·복합, 다원예술 활동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경험을 고려했으며 차별 없는 문화예술 지원을 위해 장애인예술·복지 관련 전문성도 감안했다. 청년들에게 실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30대 청년예술가를 위촉했으며 지역화와 문화분권을 고려해 지역예술 활동가도 포함했다.”²⁶

공문화 과정을 통해 개선된 예술위 위원 선임 절차는 결국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와 아르코혁신 TF가 권고했던 개선안과 같은 방향성을 지향하게 되었다. 예술위 위원 선임과정의 개혁은 예술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감으로써 예술위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혁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7기 위원 선임과정이 상당히 지연되었으나 문체부의 전향적인 결단 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은 문체부가 현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5.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억 사업

이행협치추진단은 2019년 4월 3일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인 5월 초부터 ‘블랙리스트

25 배덕훈 기자, 「“여성후보 없어” 문체부, 신입 예술위원 선임 중단», 〈노컷뉴스〉, 2019. 11. 28. (<https://www.nocutnews.co.kr/news/5251043>)(검색일: 2022. 5. 2.)

26 박정규 기자, 「7기 문화예술위원 8명 위촉... 절반은 여성·30~40대」, 〈뉴스1〉, 2020. 5. 6.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6_0001015680&cID=10701&pID=10700)(검색일: 2022. 5. 2.)

피해자 명예회복 및 사회적 기억사업’을 요구했고, 박양우 장관은 이를 선뜻 수락했다. 이후 이행협치 추진단은 사회적 기억사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세미나 활동을 하며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2019년 12월 2일 ‘팝업씨어터 공개사과 이후 -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을 시작하며’를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장관이 직접 ‘팝업씨어터’ 사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을 다짐했다. 팝업씨어터 사건은 공연예술분야의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공연 중에 ‘세월호’를 암시하는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예술위 직원들이 고의적으로 공연을 방해하고 대본 검열을 실행한 바 있다. 공청회가 열린 장소는 바로 2015년 10월에 팝업씨어터 사건이 발생했던 씨어터카페(대학로 예술극장 1층)였다.

이 공청회가 열리기 전까지 팝업씨어터 피해자들과 예술위 사이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2019년 7월 19일에 예술위가 역시 씨어터카페에서 ‘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 팝업씨어터 사과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한 적이 있다. 그 날의 사과는 이행협치추진단과 예술위 측이 사전에 수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였다. 그러나 이 날 예술위의 사과는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했고, 참가자들 사이에 격앙된 고성도 오가기도 했다. 직접적인 가해자들이 사과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채 예술위 위원장이 대표로 사과하는 형식은 팝업씨어터 사태로 상처받은 다수의 예술가들을 근본적으로 위로하지 못했다.

12월 2일 공청회에서 박양우 장관의 사과에 이어 박종관 예술위 위원장도 피해자들에게 재차 사과했다. 이날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으며 특히 팝업씨어터 사태를 공익제보했던 김진이의 발제 「‘팝업씨어터’ 후속 조치는 왜 필요한가? - 우리에게 남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위하여 -」는 참가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오늘 공청회가 열리는 이곳, 씨어터카페는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 방해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씨어터카페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팝업씨어터’ 기획 취지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한 ‘일상’적인 장소인 셈입니다. 공연 방해는 은밀한 장소에서 조심스럽게 실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4년 전 퇴사 이후, 저는 이 장소를 차마 오지 못했습니다. 이곳을 떠올리기만 해도 제가 살아가는 일상의 장소가 언제나 방해와 검열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상조사 결과에도 밝혀져 있듯, 제가 ‘팝업씨어터’를 담당하면서 섭외하고자 작성했던 예술가들의 이름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신원검증 리스트로 바뀌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저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했을까요?

그는 “다시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고 했다. “아마

우리에게 상처의 기억들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지금 이 순간이 그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민간위원이었던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조발제인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 및 사회적 기억의 원치과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피해와 상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을 지울 수도 없다. 마치 피해자 명예 회복 정책 한 두 개나 금전적인 피해 배상이나 보상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구는 것이야말로 3차 가해다. 사과하는 가해자의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겠지만, 사과는 말 한마디와 함께 고개 한 번 숙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복적 정의는 국가범죄의 상처를 회복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국가체제, 헌법체제의 원기를 회복하는 일이어야 한다.

피해자를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아 있지 않게 하는 일이 회복적 정의다. 피해자가 민주시민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동료 민주시민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피해자의 요구이자 권리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과 배상 그리고 회복을 넘어 사회구조의 혁신을 정면으로 추구하는 변혁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다.

문체부 장관이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사회적 기억사업을 약속했다는 것은 블랙리스트 사태의 후속조치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기억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문체부는 2020년 12월 24일에 연구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앙대학교 오창은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았고, 이행협치추진단의 김미도, 이양구, 정윤희 위원과 김종휘 변호사가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이 연구는 「문화예술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업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2021년 4월에 완성되었다.

이 용역 연구를 바탕으로 2021년 11월 3일에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이행협치추진단과 국회의원 도종환·박정·유정주가 공동주최하는 형식이었다. 토론회가 열린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시발점이 되는 국립극단의 <개구리>(박근형 연출, 2015.9)가 공연되었던 장소이다. 이 날 책임연구자인 오창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예술현장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인 임인자(전 서울지방연극계 예술감독), 남인우(연출가), 원승환(인디스페이스 관장), 정원옥(대한출판문화협회 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토론에 나선 원승환은 “블랙리스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가 복원된 것이 없”다면서 “표현의 주간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기획·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우는 “관료들의 관리를 받는 한 블랙리스트 구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며, 산하기관 등과 상하관계가 아닌 협업관계가 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체계를 마련해주길” 바랐다. 임인자는 “예술검열은 지금도 반복되는 상황”이므로 “과거로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기억사업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정원옥은 “새로운 관계 맺기 관점에서 접근하여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성찰,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²⁷

6. 산하기관별 제도개선을 통한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실행이 가장 극심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운영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의 핵심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으로부터 제외하고 호선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행협치추진단은 2018년 10월부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준정부기관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공기관운영위 의결을 통해 예술위와 영진위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면 『공공기관운영법』 상의 법률상 의무가 해제되어 호선제 도입이 가능하고, 경영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예술위는 원래 2005년 설립 이후 호선제로 위원장을 선임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2008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을 임명해왔다. 호선제에서 임명제로의 전환 이후, 정권 입맛대로 기관장을 임명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다.

문화예술계는 두 기관장이 임명제로 바뀐 이후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쉴어내기’가 시작됐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이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짜고 당시 김정현 예술위원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이른바 좌파 예술인으로 찍힌 수십 명을 축출했고 주요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삭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영진위는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2015년 반토막 내는 등 최소 5건의 블랙리스트 이행 사례가 드러났다. 두 기관이 블랙리스트의 수족 노릇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화예술계의 호선제 복원 요구도 거셌다.²⁸

27 「이행협치추진단 34차 회의자료」, 2021. 12. 3.

28 안동환 기자, 「[단독] 영진위·문예위 위원장 호선제 복귀... 문체부, 10년 만에 임명권 놓는다」, <서울신문>, 2018. 2. 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02006007&wlog_tag3=naver>(검색일: 2022. 5. 2.)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2019년 1월 30일자로 예술위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였다. 2020년 5월 20일에는 『문화예술진흥법』(『문예진흥법』) 개정안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 기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한 제도개선 안이기도 하다.

문예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문예위는 앞으로 12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제를 통해 위원장을 선임하게 된다.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현행 3년과 2년에서 모두 3년으로 변경된다. 또 위원장과 위원 모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호선제를 통한 문예위원장 선임은 이르면 2022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 박종관 문예위원장의 임기는 2021년 11월 1일까지이며 지난 5월 6일 임명된 7기 위원들의 임기는 2022년 5월 5일까지다. 문체부 관계자는 “8기 위원부터 호선제를 통해 위원장을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예위는 2005년 설립 이후 호선제로 위원장을 선임했다. 그러나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을 임명해왔다. 문체부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월 31일자로 문예위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장 호선제 도입이 다시 가능하게 됐다.

영비법 개정안도 문예진흥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영진위 위원들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현 오석근 영진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1월 7일까지다.²⁹

예술위와 영진위는 다시금 호선으로 위원장을 뽑을 수 있게 되어 자율성 확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채택

이행협치추진단은 블랙리스트 사태에 있어 예술위가 문체부로부터 내려오는 상명하달식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와 예술위 사이에 자율운영 협약 체결을 제안하였다.

29 장병호 기자, 「문예위·영진위원장 호선제로 뽑는다... 블랙리스트 권고안 반영」, <이데일리>, 2020. 5. 22.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30806625771544&mediaCodeNo=257&OutLnkChk=Y>>(검색일: 2022. 5. 2.)

2021년 3월 10일에 문체부 황희 장관은 예술위 박종관 위원장 및 위원들과 연수회를 개최하고 ‘문예위의 자율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 문체부-문예위는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최선을 다하며, ▲ 문체부는 현장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 문예위는 법령에 근거한 자율과 책임 원칙 내에서 문예기금을 운용하고, ▲ 문체부-문예위가 수립·집행하는 사업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희 장관은 “지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 예술인들과 단체가 입은 피해와 상처에 마음이 아프다. 다시 한 번 문체부를 대표해 깊이 사과를 드린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예술정책의 기본원칙을 되새겨서 창작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채택한 공동선언을 기반으로 양 기관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 몰입하고 국민은 문화가 있는 삶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박종관 위원장은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과오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의미”라며, “문체부와 예술위가 자율과 책임의 원칙하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 창작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³⁰

이 ‘자율운영보장공동선언문’에는 예술위가 예술현장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문체부에 문화예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문체부 장관과 예술위 위원장 및 위원들 간의 전체회의를 연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와 예술위는 2021년 12월 30일에 첫 번째 공동연수회를 개최하였다.

7.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21. 9)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사태는 장기간에 걸쳐 국가기관과 공무원, 민간인이 동원되어 다양한 기제를 통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실증한 사례이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신고, 조사, 피해구제, 처벌 등을 포함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³¹하다고 보았다. 이에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문화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3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채택」,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2021. 3. 10. <http://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8719>(검색일: 2022. 5. 1.)

3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

방지할 수 있는 기구로서 (가칭)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장 위원회’ 설립을 권고하였고, 이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기구로 설립되어야 하기에 『문화기본법』의 개정 또는 ‘문화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률 신설을 권고하였다.

이행협치추진단은 활동 초기인 2018년 10월 4차 회의부터 지속적으로 (가칭)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하여 2018년 10월부터 (가칭)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TF’ 가 가동되었는데 여기에는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여성문화예술연합,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등이 참여하였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이라는 명칭으로 확정된 이 법안의 제 1조는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접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으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제 7조의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와 제 8조의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은 2020년도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 후 법안 재정비와 공청회 등을 거친 후 2021년 8월 31일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제정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설치,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여야 간의 협의를 거치는 동안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던 강력한 장치들이 축소되었다.

무엇보다 권리보장법 탄생을 촉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해자들에 관한 처벌 규정이 부재했다.

이동민 기획자는 “권리보장법 자체가 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한 축으로 하고 있지만,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이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다”며 “이 법이 기습적으로 통과될 때 처벌 조항은 다 빠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서 처벌이라곤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정명령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재정지원을 중단하든지 두 가지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문체부가 문화예술을 검열했을 때 문체부에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³²

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164쪽.

32 김세운 기자, 『“예술인권리보장법 무엇이 문제인가?”』, <민중의소리>, 2022. 3. 19. (<https://vop.co.kr/A00001610145.html>)(검색일: 2022. 5. 2.)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처벌 규정이 부재한 대신 ‘예술인 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 예술인 보호관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계 기관에 시정 권고, 시정 명령을 하거나 재정 지원 중단·배제 등을 통보할 수 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했을 때 “가해자에게 여죄를 추궁할 수 없다, 즉 조사하고 경고는 하더라도 처벌은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부여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³³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되므로 2022년 5월 현재 시행령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시행과 해당 기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권과 재원 확보의 문제이다. 아무리 명분 있고 정당해도 인사권과 재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³⁴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시행령이 보다 실천적이고 실효적으로 잘 정비되어야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문체부는 2022년 4월 21일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5월 24일에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8.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주간’ 신설

이행협치추진단은 박양우 장관이 2019년 12월에 약속한 바대로 2020년도부터 블랙리스트 사태의 ‘사회적 기업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1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예산 불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억사업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이행협치추진단은 문체부와 협의하여 연구용역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중앙대학교 오창은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아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를 2021년 4월에 완성했다.

2021년 11월 3일에 이행협치추진단이 개최한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문화예술표현의 자유주간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오창은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 발표와 함께 이양구 이행협치추진단 위원이 「표현의 자유 주간 사업 등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였다.

이양구 위원은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 및 실천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제안하며 블랙리스트 실행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표현의 자유 예술작품 공모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기억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용역보고서에서 제안한 대로 ‘표현의 자유’ 예술 실천 프로젝트 공모 및 연구조사 활동 지원 공모도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러한 공모사업들을 토대로 하여

33 박성혜, 「공연예술인의 바라본 두 가지 법안 - 예술인 권리보장법과 예술인 고용보험법」, 『연극평론』, 한국연극평론가협회, 2020년 겨울호, 35쪽.

34 위의 글, 39쪽.

표현의 자유 주간 사업으로는 예술작품 공모 사업 선정작, 예술 실천 프로젝트, 관련 학술 연구 발표 등을 제안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으로 20억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최종 통과되지 못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협치추진단은 2022년도부터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사업’의 시행을 적극 주장하였고, 황희 장관은 2022년 2월 17일기자간담회에서 “‘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³⁵이라고 약속했다.

9. 제도개선 권고 과제 이행 점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서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조치사항들을 블랙리스트 백서에 적시하였다.

이행협치추진단은 2018년 8월 출범 이후 2022년 4월까지 총 35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들의 이행 여부를 꾸준히 점검해 왔다. 이행협치추진단의 제도개선 점검 과정에서 국립극단,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점검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2022년 2월까지 문체부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제시했던 총 85개의 과제에 대해 완료 62개(72.9%), 정상추진 13개, 검토 10개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월 27일 황희 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서 배포된 자료에 명시된 제도개선 이행현황은 다음과 같다.

□ 제도개선 이행현황 : 총 85개 과제에 대해 완료 62개(72.9%), 정상추진 13개, 검토 10개

- (법·제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21.9.)
- (문화행정) 새예술정책 수립(’18.5.), 문예위 자율운영보장 공동선언(’21.3.)
- (후속조치)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장관 사과, ’18.5, ’18.12. ’19.12.), 국가배상소송 4건 종결(화해결정 2.5천만원/조정 8천만원/판결 1.3억원/판결 15억원 등)
- (기관별 과제) 6개 기관 62개 과제(완료 50개, 정상추진 5개, 검토 7개)

35 「문체부 장관, 문화예술 현장이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약속-2.1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성과와 과제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2022. 2. 17. (http://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388)(검색일: 2022. 5. 2.)

- * (문예위) 호선제 도입('20.6.), 균형적 위원회 구성('20.1, '21.2.), 현장소통 강화(현장소위 운영), 사무처 역할 재정립(조직개편, '19.3, '20.1, '21.2.) 등 완료
- * (복지재단) 예술인복지위원회 구성('19.8.), 의제별 이사회 구성('19.3), 상담·불공정신고 대응을 위한 예술인 고용('19.8.), 예술인의 삶과 사회적 가치 보고서 제작('21.12월) 등 완료
- * (영진위) 호선제 도입('20.6.), 위원회 정책역량 강화(박사급 전문연구인력 채용, '21.7.), 사업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21.6.) 등 완료

○ (검토 과제(10개)) 법체계를 수정해야 이행가능하거나, 기관의 인사·조직 관련 사항

- *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등 법체계 수정 필요) 헌법 개정 및 신설, 국정 홍보기능 분리, 영화기금 실링제 도입 등
- * (기관 인사·조직 관련) 문체부 조직 기능+장르 체계로 개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 위원추천위 구성 권한을 예술위로 이관, 영화진흥위원회를 영화위원회로 전환 등

10. 백서 발간 및 이행협치추진단의 과제 이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이행협치추진단의 운영기간에 대해 (가칭)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장 위원회’ 설립 시, ‘추진단’ 운영은 중요하고 필수 업무를 이관하라고 명시한 바 있다.³⁶

2021년 8월 31일에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법률』은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 보호관’을 지정했다. 예술인 보호관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계 기관에 시정 권고, 시정 명령을 하거나 재정 지원 중단·배제 등을 통보할 수 있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한 셈이다.

이 법안이 2022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행협치추진단은 곧 해단하고,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지정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로 종결되지 못한 과제를 이관하게 될 것이다.

문체부와 이행협치추진단의 동행은 처음에 불편한 관계로 출발했으나 점차 상호간에 신뢰가 쌓이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조치의 대부분을 실행에 옮겼다. 문체부 이행협치추진

³⁶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106쪽.

단 활동은 민관협치의 모범적인 모델로 남게 될 것이라 자부한다. 그러나 이행협치추진단 백서 집필 중에 문체부 전직 고위 관료 12명이 블랙리스트 사태에 연루된 후배 관료 2명에 대한 구명에 나섰다는 뉴스는 이행협치추진단을 비롯하여 예술현장의 분노를 사고 있다.

‘문체부 간부 공무원 징계 관련 청원’ 문건을 보면, 유진룡·박양우 전 장관과 오지철·나종민·송수근·김정배 전 차관, 최규학 전 기획홍보관리실장, 심장섭 전 종무실장 등 12명은 지난 5일 황희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문체부 현직 관계자들에게 ‘문체부 김낙중 국장과 용호성 국장에 대한 중징계 추진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제가 달린 청원서를 보냈다. 두 사람이 지난 4년여 동안 충분한 불이익을 받았고, 검찰 조사 결과 징계할 만한 근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징계 절차를 멈출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관료는 용호성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과 김낙중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으로, 이들은 지난 2017~2018년 활동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백서에 블랙리스트 작업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용 처장은 2014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파견돼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예술계 배제인사 명단을 문체부에 전달했다. 또한 그해 영화 <변호인>의 파리 한국영화제 출품을 배제하라고 지시했고, 이듬해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 재직 당시엔 국악원 공연에 박정희 풍자극 <개구리> 등을 만들었던 박근형 연출가의 작품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지시해 이를 관철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단장 역시 2014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청와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문체부에 전달한 이력이 드러났다.

이에 문체부는 2018년 이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4년간의 수사 끝에 대선 이튿날인 지난달 10일 문체부에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2018년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도중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 처장과 김 단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라는 판단에 따라 검찰의 결론과는 별도로 수사가 종료되면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황희 장관이 중징계 절차에 들어가자, 전직 장·차관들이 연명해 징계를 멈춰달라는 요구를 전해온 것이다.³⁷

2018년 12월 31일에 도중환 장관은 애초에 발표했던 책임규명이행계획을 번복해가며 수사의뢰자 3명을 추가했고 문제의 2인은 여기 포함되어 있다. 도중환 장관은 당시 검찰 수사결과와 별개로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황희 현 장관은 약속대로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며 자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들을 구명하겠다는 탄원에 유진룡 전 장관과 박양우 전 장관이 참여했다. 박양우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시 수사 의뢰자 3인을 요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가 이행협치추진단과 예술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인사를 번복한 바 있고, 이때 2018년도 문체부의 약속을

37 노형석, 「[단독] 문체부 전 장관, ‘블랙리스트’ 실무자 구명운동 논란, 〈한겨레〉, 2022. 4. 11.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38368.html)(검색일: 2022. 5. 2.)

재확인한 바 있다.

탄원서에는 “(이들이)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건 당시 보직이 부당한 명령을 전달해야 하는 통로에 해당됐기 때문이며 그 위치에 있었으면 누구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공무원들은 다시 상부로부터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된다.

문체부가 이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지난 4년간 이행협치추진단과 함께 문체부는 예술 현장과의 신뢰를 가까스로 회복해 가고 있다. 2018년 ‘징계 0명’ 사태에 분노하며 장기간 일인시위를 벌이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했던 수많은 예술가들과의 약속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행협치추진단은 2022년 9월경,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설치될 새로운 조직에 남은 업무를 이관하고 해단할 것이다. 그에 앞서 만 4년여에 걸친 제도개선 활동을 이 백서에 담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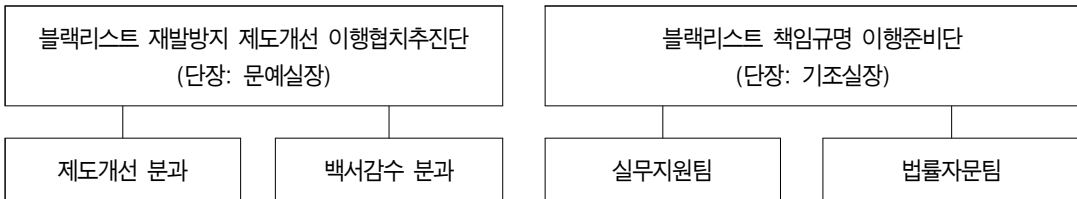
이행협치추진단의 조직구성 및 활동

제1절. 조직 체계와 구성

1. 조직체계 및 구성

2018년 8월 20일 제1차 회의를 통하여 정해진 이행협치추진단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은 제도개선 분과와 백서감수 분과로 나누고,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준비단에는 실무지원팀과 법률자문팀을 두도록 하였다.

표 1 권고안 이행 추진체계



한편 문체부가 첫 회의에서 제안한 분과별 위원 등은 다음과 같았다.

표 2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15명

제도개선 분과 (11명)	내부 (7명)	예술정책과장, 혁신행정담당관, 문화예술교육과장,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문화산업정책과장,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사무관(간사)
	외부 (4명)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현 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한승준 서울여대 행정학 교수 황승흠 국민대 법학 교수
백서감수 분과 (4명)	내부 (1명)	혁신행정담당관
	외부 (3명)	이양구 연극연출가,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전문위원 정윤희 문화인천네트워크 대표 김미도 연극평론가,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원

2. 분과별 운영계획

가. 제도개선 분과 운영계획

- (운영) 분기별 정기회의 / 사안별 수시회의
- (기간) '18. 8월 ~ '19. 8월, 1년간 운영
- (역할) 블랙진상조사위 권고안의 과제별 이행 상황 점검
 -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 보완사항 검토 등
 - 주요 과제 및 기관 혁신 완료 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 추진과제 이행 관련 권고안 취지 달성에 대한 자문

나. 백서감수 분과 운영계획

- (일정) 8월 원고 편집, 9월 출판사 교정 및 발간 (부수 결정)
- (운영) 주간 단위로 업무분장 및 점검회의

제2절. 회의별 주요 안건 및 제도개선 주요 점검 내용

1. 1차 회의

1차 회의는 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이행 및 백서 발간을 추진할 민관 협력기구로 '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며, ② 이행협치추진단에 참여하는 내·외부 위원 간 상견례 및 운영계획 공유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 자리였다. 1차 회의에는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을 비롯하여 내·외부 위원 등 15명이 참석하였다.

가. 회의개요

- (일시/장소) 2018. 8. 20(월) 10:00 /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새마을)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15명
- (회의안건) 이행협치추진단 운영계획, 권고안 이행현황 등

□ 안건 관련 주요 발언요지

[이행협치추진단 운영 관련]

- (이원재) 진상조사위 후속조치 권고안 중 하나가 이행협치추진단이며, 민간전문가 및 예술현장의 지속적 참여가 중요함. 이행협치추진단은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중간 이행조직이라 생각함
- (이양구) 이행협치추진단에서 책임규명 이행 관련 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해 이의제기,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의견
 - * 문제부 참석자들이 제도개선 이행과 책임규명 이행의 성격이 다른 점 설명하였고, 책임규명 이행 부분은 이행협치추진단에서 민간위원과 논의할 수 없는 사항임에 대해 양해를 구함. 이양구 위원은 일단 알겠다고 함
- (김미도) 이행협치추진단 구조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한 점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백서 관련 구체적 계획(장소, 예산, 인력, 교열, 출판사, 기간, 실명공개 등 법적 문제 자문) 논의 필요함에 대해 주로 발언
 - * 김미도 위원은 제도개선과 책임규명이 분리된 구조보다는 제도개선과 백서감수가 분과로 분리

된 부분에 대해 주로 문제제기 하였으며, 분과별로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백서 관련 주요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정윤희) 어느 분과에 들어가게 될지 이야기 들은 바 없음. 백서보다는 제도개선에 관심 많음. 백서감수 이후 제도개선 분과 지속 참여 희망
 - * 백서 발간 마무리하고 백서감수분과 위원은 이행협치추진단 지속 참여 여부 결정
- (종합) 분과별 활동, 주요사안은 전체회의에서 논의, 백서분과 밑에 실무팀 마련, 백서 발간 이후 추진단 구조는 재논의

[권고안 이행현황 관련]

- (이양구) 예술위 지원사업 개편 관련 현장예술인이 지속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
- (김미도) 예술위원장 호선제 도입 가장 중요한데 기재부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 다른 방안도 생각할 순 없는지 문제제기
- (이원재) 이행완료된 과제가 실제로 이행완료 되었는지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이행협치추진단이, 과제 이행이 단순히 수치로 몇 프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2. 2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18. 9. 12(수) 18:00~21:00 / 서계동 제4회의실
- (안건) 백서 발간 관련 진행상황 보고 및 쟁점 조정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 외부 : 김미도 연극평론가, 정윤희 대표, 이양구 연극연출가, 현린 위원장, 황승흠 교수 (5명)
 - 내부 : 혁신행정, 예술정책, 출판인쇄, 공익법무관, 사무관

나. 회의 결과

1) 백서 진행상황

- (인쇄업체) 주변 추천 및 견적서 확인을 거쳐 수의계약 대상으로 경성문화사 선정(경험, 신속성 양호) * 예산: 5천만 원
- (분과회의) 8.24, 9.6 회의에서 디자인, 용지, 색상 등 2차례 협의
- (편집실무팀) 5인(감수위원 3인 + 실무 2인)이 8.28, 9.6 작업을 통해 4권의 본권 및 부록 편집 완료
- (향후 일정) 9.17 대지 작업 및 본권 초교, 10.1 부록 교정, 10.4 본권 재교, 10.11 본권 삼교 예정
* 인쇄소에서 진행

2) 쟁점사항 논의결과

- (실명 공개) 정무직(청와대 비서관 포함)과 공공기관장만 실명 공개
- (비실명화 방법) A,B,C(문체부)와 김○○(예술계) 방안 추가 협의 필요
- (부록 추가) 법원 판결문, 감사원 보고서는 포함하지 않기로 함
- (이의신청 처리)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추후 확인 필요
- (인쇄 부수) 당초 5,000부 예정이었으나 예산을 고려, 본권 3,000부, 자료집 500부로 조정. 조사 신청인 등 개별 수취 희망자 파악 후 자료집 부수 조정 가능
- (온라인 제공) PDF 파일 형태로 홈페이지 자료실 등에 공개

3. 3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18. 9. 27(목) 15:00~16:40 /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
- (안건) 백서 발간 관련 진행상황 공유 및 쟁점 조정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 외부 : 김미도 연극평론가, 이양구 연극연출가, 현린 위원장, 황승흠 교수(4명)
 - 내부 : 혁신행정담당관, 예술정책과장, 사무관
- (특이사항) 예정된 안건과 별도로 책임규명 이행계획의 내용 및 규모 축소 불가피성에 대해 감사담당관이 설명. 외부위원들은 산하기관 및 예술계 현장을 대상으로 장관의 사과 및 공개 해명 요구

나. 회의 결과

1) 백서 진행상황 및 일정

- '18.9.17.~현재. 출판사 대지 작업 및 본권 1교 진행
 - 제3권 첨부(토론회 발제문 등) 및 제4권 집필자에게 확인 진행
- '18.10.1 부록 교정(세종), '18.10.4 본권 재교, 10.19 본권 3교

2) 쟁점사항 논의결과

- (비실명화 방법) 완전한 비실명(A,B,C)이 적절하다는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예술계 요구와 인격성을 감안하여 김○○ 방식으로 결정. 다만, 회귀 성씨는 선별적으로 A,B,C 방식으로 처리
 - 현재 직위는 표기하지 않기로 하되, 가급적 원문 존중
- (이의신청 처리방안)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담당조사관 확인을 거쳐 백서(자료집) 수정 여부 결정
- (국감 대비) 국정감사(10.10) 이전에 상임위 위원들에게 비실명 처리된 백서 가제본 제공

4. 4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추진목적) 백서 발간 전 최종 협의 및 제도개선 과제 관련 논의
- (일시) 2018. 10. 26(금) 10:00~12:00
-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3층 2세미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9명
 - 김미도 교수, 이양구 연출가, 현린 위원장, 정윤희 대표, 황승흠 교수
 -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혁신행정담당관, 주무관

나. 회의 결과

- 백서 발간 진행상황 공유

- 백서는 본서 4권, 부록 6권으로 구성되며, 예산을 감안하여 예비 보관용 포함 1,500세트 제작 예정
- 백서 발간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배포는 우선 문화예술단체, 언론계, 공공도서관, 입법, 행정부 중심으로 할 예정이며 사법부 배포는 1차 배포 후 추후 검토
- 백서 발간 전에 가해자 및 피해자 등 관련자 회담을 통해 피해자 의견수렴 및 가해자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 확보
- 이를 위해 홈페이지에 백서를 게재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경과 후 홈페이지에 백서를 계속해서 게재할지 종료할지 검토 예정
- 홈페이지 게재 시 유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blacklist-free.kr에 백서를 게재하고 비밀번호를 걸어 관련자에게만 공개
- 파일은 열람만 가능하고 다운로드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 검토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여부는 추후 이의신청 접수 추이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며 내부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원칙 정립 검토

- 피해자가 실명공개를 거부할 경우 최대한 반영 검토
- 이의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이의신청할 백서 부분(페이지), 이의신청 내용, 근거 등을 적시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는 진술서상 본인의 진술을 우선하며 근거에 대한 제시 필요
- 이와 관련하여 필요시 조사관 참여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별도의 재조사는 진행하지 않음

- 이행협치추진단 제도개선분과와 관련하여 당분간 이원재 소장의 회의 불참에 따라 다른 위원들과 함께 제도개선분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결정
- (가칭)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관련 TF 구성·운영 관련
 -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TF를 구성하여 주요 쟁점을 해결하고 예술계 의견 수렴기능 강화 추진
 - 예술인 권리보장법 TF는 11월까지 주 1회 논의를 추진

〈1차 회의(10.24) 주요 내용〉

- 이동연 새문화정책준비단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회차별 주요 쟁점 및 주요 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11월 말 공청회를 통해 연내 발의 추진
- 성희롱·성폭력 관련하여서는 입법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함
- 여성 할당제의 경우 논란이 크고 법의 체계 및 내용과 맞지 않아 논외로 함
- 예술인이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예술인이 아닌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처벌 범위를 확대

- 예술인이 권리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신고 시 해서는 안 될 불이익 조치에 예술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의 기회를 제한·배제하는 경우도 추가하여 불이익 조치 금지 확대
- 예술보호관을 예술인보호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 전체의 취지 및 보호의 대상을 명확히 할 예정

- 성폭력 문제는 여가부에서 총괄하고 각 부처에서는 성평등담당관을 두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행안부, 여가부 등 관련부처 협의 필요
 -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정보공개, 절차참여, 공동의사결정 과정 중에서 정보공개와 절차에 대한 참여 부분을 예술인들에게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
- 예술위·영진위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제외 관련
- 단기적으로 공공기관 유형변경을 통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고 법 개정은 기재부 설득을 위한 논거 개발 후 장기적으로 추진
 - 공공기관 유형변경을 통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위원장(3년)과 위원(2년)의 임기를 통일하는 방안 검토
 - 문화예술 현장을 반영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문화접대비, 후원활성화 등을 이슈화하여 사회적 가치에 편입하는 방법 등을 통해 문화예술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담는 과제 개발 및 기재부 설득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 고려

5. 5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추진목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침해 금지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및 백서 이의신청 처리방안 논의
- (일시) 2018. 11. 15(목) 17:00~18:30
- (장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8층 회의실(누리로)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9명
 - 김미도 교수, 이양구 연출가, 현린 위원장, 정윤희 대표, 황승흠 교수
 - (문체부) 혁신행정담당관, 사무관, 주무관

나. 회의 결과

○ 표현의 자유 침해 관련 협의

-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지원심사 등에 있어 예술인의 참여 등 절차적 차원의 권리보장 조항이 필요
- 국가 행정조직을 이용하여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예술 자유의 침해 금지 등을 지시한 경우 조직적 범죄에 준하는 처벌조항 필요
- 예술지원 차별금지(8조)에 인용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사유를 법률 조문에 명문화 검토 필요
- 사무국 구성은 법률에 규정할 사안이라기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협의사항인 만큼 법이 통과 되더라도 조직 협상은 별개의 문제임

○ 백서 발간 관련 이의신청 처리방안 관련

- 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은 보고서 작성자(조사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위원회가 책임질 문제로 별도의 조사관 이름 명기는 하지 않기로 진상조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협치추진단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백서에 대한 문제는 위원회 공동책임임
- 수사 의뢰된 사람의 경우, 개인의 방어권 확보 차원에서 백서의 관련 내용 전면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근거가 열악하면 전면삭제는 부적절하며 균형을 잡아서 개인적 판단은 제외하고 Fact(사실) 위주로 기술 필요. 필요할 경우 조사관 설명 등 소명 기회 제공·정리
- 진상조사보고서는 공식(비공식)문서, 문서작성자 진술,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자(상급자, 하급자, 관련기관 담당자) 진술 등을 판단근거로 작성되었음.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 또는 사정에 따라 소명 기회가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명을 많이 듣고 수용 여부 검토 필요
- 백서 발간은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이의신청 및 검토 결과 등을 기록을 남기는 과정이 중요.
- ① 필요시, 중립적 언어로 교체(ex: 연루 → 참석), ② 병기는 근거가 있어야 하며 개인의 단순 주장은 반영하지 않음, ③ 사안별로 의견 검토, ④ 기존 집필 내용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재조사는 없으나 필요시, 조사자 의견을 들어볼 필요, ⑤ 진술 반복은 최초 진술을 우선으로 하고 이의제기 사항은 근거 필요
- 기본적으로 일자, 장소 등 구체적 사실에 대한 교정 등 사실이 확인된 것은 수정하고 판단 영역은 기존의 기초를 유지

- 상반된 주장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본인의 1차, 2차 진술이 바뀐 경우 병기 여부 등 객관성과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은 심의 진행하면서 결정
- 백서 발간은 시한을 정하지 않고 해를 넘기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보완
- 다음 회의까지 이의신청 분류작성 우선 진행. 이양구 위원이 ① 추진단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조사관 확인이 필요한 사항, ③ 관련자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을 3단계로 분류 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위한 프로세스(process) 구축 논의

6. 6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추진목적) 백서 이의신청 처리방안 논의 및 검토
- (일시) 2018. 11. 23(금) 17:30~19:20
- (장소) 서울사무소 제4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9명
 - 김미도 교수, 이양구 연출가, 현린 위원장, 정윤희 대표, 황승흠 교수
 - (문체부) 혁신행정담당관, 예술정책과장, 주무관

나. 회의 결과

- 백서 이의신청 1차 검토결과 공유(이양구 위원)
 -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는 총 3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총 51건 중 이행협치추진단 확인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1단계, 29건), 전문위원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단계, 14건), 당사자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단계, 8건)로 정리하였음
 -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당사자 진술 보장, 문구 수정 요청 등은 1단계에서 가능하나 핵심 사실관계를 부정하거나 진상조사위 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등은 2단계 또는 3단계의 처리가 필요함
 -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본인 및 다른 사람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되었음에도 이의신청자가 다른 사람의 진술을 모른 채 이의제기를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전문위원 확인이 필요한 2단계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위원 개

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유선통화로 확인 예정

- 3단계는 전문위원 검토 후 선택적으로 소명이 필요한 경우와 필수적으로 이의신청자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
- 향후 백서 이의신청 처리방안 논의
 - 이의신청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이의신청자 본인에게 충분한 설명과 증거(근거) 자료 제시 필요(예: 다른 사람의 진술, 보고서, 공문 등)
 - 타인의 진술로 결론이 난 경우는 결론에 대한 수정 여지가 있으며, 본인의 진술 삭제, 수정도 수용 여지 있으나, 타인의 진술을 바꾸는 것은 곤란
 - 백서에 문체부 등 관련자들이 저항한 측면은 기재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를 이행한 측면만 부각하여 내용적 균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음. 마지막 절차로 이의신청 당사자가 직접 와서 소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됨
 - 백서 작성 시, 근거자료로 활용된 특검(잠정 사실) 및 재판기록(확정된 사실) 역시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신청자와 전문위원 간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 병기하는 방안 고려
 - 백서 부록의 진술 부분은 너무 상세해서 조정이 필요하며, 벤처투자 등 민간기업 의견은 수용할 필요가 있음
 - 1, 2단계 판단은 이행협치추진단(이양구 위원)과 문체부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간은 일주일 정도 예상하며, 전문위원 및 이의신청자 면담이 가능한 장소 제공과 사무보조를 위한 직원 지원 필요
 - 우선, 이양구 위원이 전문위원 확인 및 이의신청자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 장소 및 pc, 직원 지원 여부는 검토하여 별도로 알려 드리겠음

7. 7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추진목적) 백서 이의제기 관련 사안별 검토결과 공유
- (일시) 2018. 12. 6(목) 16:00~18:00
- (장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무궁화 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9명
 - 김미도 교수, 이양구 연출가, 현린 위원장, 정윤희 대표, 황승흠 교수
 - (문체부) 혁신행정담당관, 예술정책과장, 주무관

나. 회의 결과

- 백서 이의신청 사안별 검토결과 공유(이양구 위원, 혁신행정담당관)
 - 백서 이의신청에 대해 1차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안별로 “수용, 불수용, 병기, 전문위원 확인 필요, 당사자 면담 필요” 등으로 분류하였음
 - 또한, 개별 사안별로 일부 전문위원에게 유선 통화 및 방문을 통한 확인절차를 거쳤으며,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도 유선(문자 포함) 통화 및 방문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
 - 이 과정에서 이의 신청자에게 관련자 진술,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자가 계속 사실관계를 부정하거나 진술자 간 내용이 엇갈리는 경우 각주에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
 - 개인의 명예훼손이 일어날 수 있는 개인(사적)정보는 공개되지 않도록 기 조치
- 백서 이의신청에 대한 쟁점사항 및 향후 처리방안 논의
 -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임을 이유로 “○○○ 본인이 작성한 자료(리스트)에 대한 비공개 요청”에 대해 동 자료는 수사기관이 획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주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리스트를 삭제할 경우, 백서 전체 구성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용 불가
 - “지시 vs. 지시 전달”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예: 지원배제를 지시→지원배제 지시를 전달)
 -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배제 방침을 몰랐다거나 그것을 관철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경우가 있으나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하는 지원배제 방침”은 진상조사위에서 블랙리스트를 정의하여 권고안에 일관되게 사용한 문구라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가 적용된 경우는 수정이 불가하며, 당사자의 주장을 병기하는 것으로 정리
 - 백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한 최종 수정본을 이의신청 당사자에게 제공하여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음
 - 이의제기 과정에 대한 경과를 알려두기 또는 편집방향에 추가로 기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백서의 내용은 형사적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행정적 관리 책임을 기술한 것임을 명

시할 필요가 있음

- 블랙리스트 이행에 있어서 예술위 내부 직원들이 나름대로 저항했던 노력을 백서에서 균형 있게 반영해 줄 필요가 있다는 예술위 전(前)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예술위 전(前) 위원장으로 부터 병기할 문구 접수·검토 등 백서에 수정·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검토
- 추측성 진술, 전해들은 사실 등을 백서에 기재할 경우, 백서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근거 없는 추측 부분은 삭제

8. 8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추진목적) 백서 이의신청 관련 사안별 검토 진행상황 공유
- (일시) 2018. 12. 20(목) 14:00~16:00
- (장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통일 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9명
 - 김미도 교수, 이양구 연출가, 현린 위원장, 한승준 교수, 황승흠 교수
 - (문체부) 혁신행정담당관, 예술정책과장, 주무관

나. 회의 결과

- 백서 이의신청 사안별 검토 진행상황 공유
 - 추가 접수를 포함하여 제출자 기준 총 58건(기관은 1건으로 간주)의 이의제기에 대해 1차 검토 완료
 - 개별 사안별로 수용, 불수용, (의견이 엇갈린 경우) 주석 병기 등으로 분류하고 전문위원의 확인과 당사자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예술위 전 위원장과 영진위 1명은 추후 면담을 진행할 예정
 - 1차 검토결과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추가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
 - 백서 이의신청에 있어 전문위원의 성향에 따라 이의신청 반영 편차가 있음. 백서는 개인 저작물이 아니고 위원회 전체의 책임이므로 일부 수정 및 보완여지 있으며 가치 판단의 문제 등은 이행협치추진단에서 결정하는 방안 필요

- 백서 이의신청에 대한 쟁점 및 논의사항
 - 모태펀드 관련, 한국벤처투자(주)로부터 추측성 결론, 정황이 확정 사실로 기술되어 회사 명예와 신용 실추, 사업 손해 발생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음.
 - 이에 대해 추측성 결론은 수정하여 확인된 사실 위주로 기술하고 회사명, 진술자명 등은 감사원 공개문 수준으로 최대한 비실명화(AA, AB 등) 처리하고 수정된 내용을 회람하여 확인받기로 함
 - 공익제보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우려에 대비하여 본인에게 실명 공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백서에 실명이 공개되어 발생하는 문제는 공익제보자 본인이 감당할 문제)
 - 기관별 책임규명 과정에서 비위행위 없음으로 최종 결론난 경우 백서에서 해당 비위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삭제는 어렵고 기관별 검토경과 및 개별 당사자별 검토결과를 주석에 병기하기로 결정
 - 사건별 보고서 일부에 포함된 비위내용 및 사실관계 표와 권고의견은 백서에서 삭제하고 책임규명 권고안에만 포함
 - 오류 발생에 대비하여 온라인 사전공개(PDF파일)와 책자 인쇄 사이에 시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온라인 공개가 책자 발간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온라인 사전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
 - 면담 특이사항으로 ○○○국장은 문제될 사업에 대해 청와대의 양해를 구할 목적으로 리스트를 받아오게 하였으나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억울해 함. 그러나 블랙리스트를 받아 온 이후 하급자가 지속적으로 실행했음을 감안할 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상급자로서 블랙리스트 적용거부 등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함

9. 9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추진목적) 백서 이의신청 관련 사안별 검토 진행상황 공유
- (일시) 2019. 1. 9(수) 14:00~16:00
- (장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통일 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9명
 - 김미도 교수, 이양구 연출가, 정윤희 대표, 한승준 교수, 황승흠 교수

- (문체부) 혁신행정담당관, 예술정책과장, 주무관

나. 회의 결과

- 백서 관련 추가 진행상황 공유
 - 한국벤처투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결과 접수('18.12.24) 및 진상조사보고서 수정('19.1.4 완료)
 - 이의신청 당사자 소명 지속 추진(면담, 유선통화 등, 3명)
 - 백서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대한 추가의견 접수(4명)
- 백서 추가의견에 대한 논의
 - 조사보고서 수정에 맞추어 백서에 수사의뢰 협의 내용 수정 요청에 대해 수용
 - 합리적 추론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이행협치추진단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국립국악원, 해외영화제, <설국열차>, 뉴욕문화원장 건에 대한 내용 수정 요청은 수용불가, 병기하는 것으로 정리
 - 극단 진일보 배제사건에 대한 각주 병기 수용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관련 보고서 확인 후 수용 여부 판단
 - 문화예술정책TF는 형식적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1차관 주재로 문화예술정책TF 회의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병기
- 기타 백서 관련 논의사항
 - 유관기관별 이의신청 접수에 대한 공지가 미흡하여 백서에 포함된 일부 대상자의 이의신청이 누락된 경우가 없는지 확인 필요
 - 백서 발간 과정에서 중간에 누락된 사람이 없도록 각 기관별 창구를 마련하여 백서 이의신청에 대한 소명 기회 제공 필요
 - 다만,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실관계에 관련된 사람의 경우 이들의 진술에 대해서까지 이의신청을 받는 것은 곤란
 - 현재 백서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기관 담당을 통해 초판본을 전달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검토위원 연락처를 제공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바로 연락하도록 안내하여 일주일 내 마무리

- 당시 재직기간, 담당직무 등을 통해 대상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익명 처리 외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로 특정되는 것 자체도 꺼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비실명처리, 관련 내용 삭제 등 추가 보완 필요
 - 이의제기에 대한 환류가 중요하므로 수정분에 대한 당사자 확인 필요
 - 1월 30일 발간 일정에 맞추기 위해 1월 18일까지 수정할 사항을 인쇄소에 송부하고 1월 23일~25일까지 인쇄 최종본 확인
- 블랙리스트 재발방지교육 실시 관련
- 피상적 개선이 아닌 근원적·철학적 고찰이 필요하고 예술계와 공무원 간의 인식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필요
- 2019년 이행협치추진단 운영 관련
- 백서발간 이후에 백서분과 위원 모두 그대로 전체회의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보다 필요시 사안별 수시개최로 운영

10. 10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추진목적)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소송 항소결정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등
- (일시) 2019. 2. 15(금) 15:00~18:00
-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3층 1세미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9명
 - 김미도 교수, 이양구 연출가, 정윤희 대표, 현린 위원장, 황승흠 교수
 - (문체부) 혁신행정담당관, 예술정책과장, 주무관

나. 회의 결과

- 백서 발간 일정 지연에 대한 설명
 - 백서 발간일 조정(당초 1.31 → 변경 2.26)

- 백서 분량이 방대하여 비실명화, 오타자 수정을 위한 상당 시일 소요. 2.8 장차관 보고 시 오타자 등이 다수 발견되어 내부 감수단을 구성하여 백서를 재검토하고 발간일을 2.26로 연기(발행일은 일자 기재 없이 2월로 기재)
 - 배포 관련, 기관 외 개인이 신청한 건(기존 57명+추가 3명)에 대해 백서 전권 또는 일부 필요 여부 확인 후 배포 예정
 - 유관단체 등 배포처 리스트 업데이트 예정
-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소송 관련 정부의 항소결정에 대한 논의
- (민간위원 의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한 결과, ① 정부는 청구지법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할 것, ②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에 대한 국가배상 입법 추진 등 다른 배상방법을 논의할 것을 요구함
 - 지금까지 진행된 블랙리스트 피해보상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예술인들의 피해 회복에는 미흡했음.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
 - (정부 입장) 블랙리스트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청구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한 진행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소송은 현재 8건이 진행 중이며, 지난 1월 24일 청구지법에서 최초로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음. 이에 대해 대전고검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에 본건을 상정함. 이에 문체부는 1월 28일 대전고검에 항소 포기 의견을 제출하고 1월 30일 상소심의위원회에 국장급이 참석(통상 사무관급 참석)하여 우리부의 항소 포기 입장을 설명하였으나, 상소심의위원회에서는 위법성 및 국가책임 인정하더라도 배상액 기준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음. 대검찰청은 상소심의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 제기를 최종 승인함.¹
 -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 및 지원 배제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데에 문체부 외 법무부, 검찰청에서도 이견이 없음. 다만, 검찰청은 청구지법의 1심 판결이 배상액 산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일률적 금액만 판단하였기에 상급심의 심리를 통해 배상액 산정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예술계의 혼란과 비효율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상소를 결정하게 됨
 - 국가가 상소를 하지 않을 경우, 청구지법의 판결에 따른 배상액은 1,500만 원, 2,000만 원으로 확정됨. 그러나 서울과 광주 등 배상 신청액이 100만 원인 소송에서 원고(예술인)가 승소할 경우 원고가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최대 100만 원인 점에서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액

¹ 국가배상소송에서 항소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법무부(10억 이상 사건), 검찰청에 있음(문체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이 최대 2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채 동일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상액 차이가 크면 향후의 배상 논의에 있어서 혼란이 커질 것임. 특히 향후 입법을 통한 배상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고등법원 이상 상급심의 배상액 산정 기준 유무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 추진과 관련하여, 법안 마련은 법무부, 기재부 등 관련기관 협의와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배상기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법원의 판례와 별개로 배상기준과 관련하여 예술계 논의도 필요함
- 국가배상 등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주장하는 원고(예술인)측이 피해 사실 및 배상액 산정에 대한 근거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고가 체계적으로 쟁점에 대한 제기를 해야 하며 피고인 정부가 쟁점을 제시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음. 다만, 배상기준 마련을 위한 공론화 논의의 장이 마련되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 국장 관련 논의사항

- ○○○ 국장의 미디어국장 재직시절, 초록샘플,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지원배제 행위가 이루어졌으나 ○○○ 당시 담당 과장이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진술하여 담당 국장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종결된 사안임
- 이에 대해 출판협회에서는 블랙리스트 지원배제가 ○○○ 국장의 진두지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 국장은 명예훼손으로 출판협회를 고소함
- 예술계에서는 문체부 관료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문체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 국장은 문체부가 직원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비판하는 상황임
- 문체부는 ○○○ 국장의 명예훼손 고소가 개인적 차원의 행위이므로 제재방법은 없으며, 소송이 제기된 이상 검찰의 조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블랙리스트 지원배제에 대한 추가 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권리보장법 발의 계획 관련

-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현재 국회 법제실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해야 할 법률적인 사항이 많아 검토에 시일이 소요. 우상호 의원실에서 법제실 검토 완료 후 발의할 예정임
- 예술인 고용보험관련 법 개정²은 고용부에서도 개정의지는 있으나, 국회 상황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지속적으로 고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3월부터 제도개선 TF가

재개될 예정임. 제도 적용관련 문화예술 용역 인정범위, 세부 실행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정책 연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음.

11. 11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논의안건) 제도개선(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기관 유형 변경 관련 후속조치, 문화기본법 개정 계획) 및 블랙리스트 소송 관련 예술계 의견 수렴, 향후 회의운영방안 논의 등
- (일시) 2019. 3. 8(금), 16:00~18:00
- (장소)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9명
 - 김미도 교수, 이양구 연출가, 정윤희 대표, 한승준 교수, 현린 위원장, 황승흠 교수,
 -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주무관

나. 회의 결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기관 유형변경 관련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른 예술위의 공공기관 제외 및 호선제 도입을 위해 기재부 협의를 통해 예술위원회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되었음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예술위원장 호선제 도입을 위한 문예진흥법 개정안이 신동근 의원실을 통해 발의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음
 - 공정성과 투명성이 시대정신인 만큼 위원 선임 시스템의 변화 필요. 신임 예술위원 선임 과정에서 현장에서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및 차기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위원의 선임시기를 맞추는 것이 필요
 - * 위원 후보자 응모 시, 본인 추천 외 타천 허용 여부 및 심사위원 풀(pool)제 도입, 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청회 도입 등을 다각도로 검토

2 고용보험법 및 관련 징수법 개정안('18.11.6/한정애의원실 대표발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18.12.6/안민석의원실 대표발의)

- 또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술위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방안 검토 필요
 - * 기관 운영의 효율성 중심의 기재부 평가방식과 달리 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및 평가방안 개발 추진. 이를 위해 현재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문체부-예술위 간 MOU 준비 중

○ 문화기본법 개정계획 관련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문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참여·협치 원칙’, ‘정보공개 원칙’ 과 ‘(가칭) 문화비전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현재 문화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안민석 의원실과 협의 중에 있음

○ 제도개선 과제 추진현황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 과제 추진현황에서 과제별 진행상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진행상황 표기 다양화 필요
- 권고안에 대해 일정시간 경과 후 과제 자체에 대한 재검토 논의
- 85개 제도개선 과제 중 39개 과제가 이행완료로 되어 있는데 이행완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³
 - * 제도개선 과제별 특성을 고려한 진행상황 표기방식 다양화 검토

○ 블랙리스트 소송 관련

-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블랙리스트 소송 관련 정부 입장을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에 전달하였으며 실천연대에서는 숙고를 거듭한 결과 정부의 항소 포기과 정부의 원고 지원을 재요청
 - * 문체부는 항소 포기 입장을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에 설명하였으나, 항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검찰청에 있으며 대검찰청은 상소심의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 제기를 최종 승인하고 항소 제기를 한 것임.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음

○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 법률 제정은 현재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안이 제출되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 기간 시일 소요 예상
- ☞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대법원 등 상급법원의 누적된 판

3 예) 블랙리스트 책임자 및 가해자 처벌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임에도 완료 표기 등

례가 필요

- 소송과 관련하여 정부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요청
 - ☞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은 피해자에 있음(모든 재판 동일). 블랙리스트 소송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을 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의 소지가 있음

- 향후 회의 운영 관련 논의
 - 향후 이행협치추진단 회의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일정 조율이 필요할 경우 위원 간 협의하여 조정
 - 신임장관의 예술계 현장 간담회 제안

12. 12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논의안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보고, 세종도서사업 운영개선 추진현황,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 추진방향 논의 등
- (일시) 2019. 4. 19(금), 16:00~18:00
- (장소) 서울사무소 제4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11명
 - 김미도 교수, 이양구 연출가, 정윤희 대표, 현린 위원장, 황승흠 교수,
 -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출판 담당 사무관, 예술위 담당 사무관, 주무관

나. 회의 결과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보고
 - 금일(4.19) 법안 발의.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필수. 최대한 공청회가 빨리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상임위 소위, 전체회의 → 법사위 소위, 전체회의 → 본회의 전체회의 등 단계별 진행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음

- 다만 정치적 문제로 국회 차원의 상임위 논의 등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우려되며, 법안 발의 후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의제기(예산, 직제 등)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논거 마련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세종도서사업 운영개선 추진현황
 -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작년 8월부터 민간, 진흥원, 정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총 4차례 회의를 진행
 - TF 논의에서 민간중심의 ‘세종도서운영위원회’ 설치에는 합의하였으나, 출판계의 요구⁴ 사항에 대해 정부는 국고보조금 집행의 권한과 책임 및 회계처리 등 문제발생 우려 제기
 - 이후 출판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TF 논의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실현가능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세종도서운영위원회 규정(안)’을 마련, 진흥원 이사회에서 의결함(4.10)
 - 이에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정부가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합의사항을 파기하였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황임
 - 세종도서 사업은 국민독서진흥과 영세 출판인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목표를 가진 공공성이 필요한 사업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특정단체의 이해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며, 현 세종도서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정부 측 위원은 없음⁵
 - 열악한 영세출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세종도서 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구성(4월), 교양부문 사업공고(5월), 학술부문 사업공고(7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 추진방향 논의
 -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은 제도개선 후속조치 ‘피해자 명예 회복 및 피해보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교훈을 사회적으로 기억, 기록, 보존, 전승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이와 관련하여 예술위에서 ‘2020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들(가제)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사업의 원칙과 방향성 정립이 선행되어야 함

4 세종도서운영위원회 사무기구를 대한출판문화협회 내에 설치, 세종도서운영위원회 규정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둘 것을 명시

5 이행협치추진단에서 세종도서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관련 이사회 회의록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차기 이사회 보고(5.15) 후 알리오시스템(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 예정

-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은 일부 단체에 제작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가 주체가 되어 피해자 목소리를 담은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⁶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하여 해당 의견을 예술위에 전달 요청

○ 기타 논의사항

① 제도개선 과제 재점검 관련

- 현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는 법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31개 과제가 있으며 이를 세분하여 85개 과제로 나누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음⁷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 차원에서 추진가능한 과제가 있고 헌법 개정과 같이 문체부에서 추진할 수 없는 과제⁸가 혼재되어 있어 제도개선 과제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
- 또한, 제도개선 추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완료 여부에 대한 정부와 민간 간의 이견⁹이 있어 이에 대한 조율 필요
-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예술계에서도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이행현황 관련 토론회를 진행(5.13)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의
* 해당 토론회를 이행협치추진단 주최로 진행 가능한지와 패널로 정부 측 인사가 참석 가능한지 문의(내부 검토 후 회신 예정)

② 예술위 위원 선임절차 개선 관련

-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예술위 위원 선임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실무자 검토 중에 있음. 당초 연극 분야 위원 선임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의 의원면직, 장관 교체 등 상황변화에 따라 검토가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 바람
- 법 시행령상 예술위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¹⁰ 추천위원회에 추

6 백서 발간 및 배포 역시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대한 과정이 중요함.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 사례에 대한 피해자의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자문 및 세월호 사례 등을 비교,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7 85개 세부과제 중 49개 세부과제 완료(이행율 57.6%)

8 헌법개정 및 신설, 국정홍보 기능 분리, 국가예술위 설립 등

9 입장 1)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는 문체부 차원에서 2~3차례 장관의 사과로 완료처리 하였으나, 예술계에서는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완료 처리 가능 입장

입장 2) 책임자 및 가해자 처벌은 문체부 차원에서 자체 징계 및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완료 처리하였으나, 예술계에서는 수사의뢰 결과에 따라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 처벌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

10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천권을 부여하더라도 공모절차는 진행하여야 함. 또한, 예술위 위원 선임을 위해서는 심사를 위해 본인의 향후 예술위에서의 역할, 업무추진방향 등을 제출받아야 판단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 추천을 받았더라도 당사자의 서류제출 필요

- 타 응모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 필요

13. 13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논의안건)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 추진 협의
 - * ‘사회적 기업 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5.15.(수)) 결과 공유
- (일시) 2019. 5. 17(금) 15:00~17:00
-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세미나실1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11명
 - 김미도 교수, 이양구 연출가, 정윤희 대표, 현린 위원장, 황승흠 교수, 한승준 교수, 이원재 소장
 -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사무관, 주무관

나. 회의 결과

- 장관 오찬 간담회 결과 공유
 - 이행협치추진단 오찬 간담회(5.7)에서 장관이 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 추진 약속
 - 85개 제도개선과제 이행상황 점검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예술현장 대토론회(5.20)를 통한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가급적 제도개선 과제 소관 부서장(필요시 해당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추진상황을 논의할 예정
 - 제도개선과제 이행을 위해 이행협치추진단 외의 채널은 운영하지 않음
- 팝업씨어터 진행경과 공유
 - 팝업씨어터 사과문 작성과 관련, 현재까지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사과문에

포함하는 2차(안)까지 논의

-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된 사과문은 기관 차원에서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므로 조율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 3차 사과문 작성을 위한 회의는 5월 28일 예정
- 사과문은 정확한 사실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실확인 → 사과 → 실질적 피해보상 → 기억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포함) 순으로 진행되어야 함

○ 피해자 명예회복 및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 추진방향 논의

-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은 제도개혁이 전제되어야 하며 진상조사위 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개별 사건별 · 기관별 · 장르별 주요 피해 유형과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조사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가해의 침해성 위주로 기술되어 피해자 관점과 상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의 범위 내에서 피해사례를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며, 피해사실을 선별하고, 피해자 인터뷰를 통한 재 기술 필요
- 우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상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피해사례를 유형화하여 정리하고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 원칙 수립
-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피해자 참여 중요. 전문가 추천 및 피해사건 대표자, 피해단체 몇 건을 추려 시범적으로 논의테이블 마련 건의
- 사회적 기억 사업은 피해자가 존중받고 있다는 피해자 신뢰 회복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조심스럽게 조금씩 오래 진행되어야 함
- 우선,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피해자 접촉방식 등을 논의하고 공론화 장 마련까지 세월호 사례, 광주 사례 등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운영
- 백서 발간과 마찬가지로 이행협치추진단 내부에 소위를 구성하여 진행 상황 공유
- 14차 회의 이전에 이양구 위원 중심으로 위원 간 일정 조율 후 전문가 개별방문 및 면담, 녹취 후 다른 위원 공유

○ 기타 논의사항

- 문예위 위원 공석에 대한 추가 선임 요청에 대한 피드백 없음
 - * 문예위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은 단순히 위원을 선임하는 문제가 아닌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으로 실무적으로 많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현 위원 임기 만료(금년 11월) 및 위원장 호선제 도입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문예위와 협의도 필요. 11월 이전에 위원 선임절차 진행 예정
- 예술현장 대토론회(5.20) 결과 공유 및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14차 회의 후, 세부적으로 논의

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 관련 기관 참석 검토

- 문예위 위원 선임 진행상황, 국가의 사과, 기억 작업을 위한 세미나 개최를 차기 안건으로 요청
-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레벨 구분, 과제 수행의 용이성, 단순성을 고려하고 현장을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 필요

14. 14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논의안건) 백서내용 수정요청 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누리집 유지 건, 제도개선과제 이행상황 점검
- (일시) 2019. 6. 21(금) 16:00~18:00
-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1세미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16명
 - 김미도 교수, 이양구 연출가, 정윤희 대표, 현린 위원장, 황승흠 교수, 이원재 소장
 - (문체부) 기획혁신담당관, 예술정책과장, 문화예술교육과장(대참),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대참),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문화산업정책과장

나. 회의 결과

- 백서내용 수정요청 건
 - 최○○ 보좌관(당사자) 이의제기 내용을 백서 수록 당시 당사자의 주장 부분이 요약 서술, 문체부 관련 공무원의 재반론 내용 추가됨
 - 이에 대해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하며 백서 PDF 수정을 요청¹¹
 - 이의제기 기간에 제출했던 내용이며, 당사자와 이양구 위원간의 사전 약속이 있었음. 또한 인쇄본 수정이 아닌 PDF 수정으로 어렵지 않은 작업임.
 - PDF 수정 시 각주로 표기하되, 기존 인쇄본과의 연계를 위해 페이지 번호는 수정하지 않는

11 이의제기 내용 원문 전체를 수록해줄 것을 요청

것으로 결정

- 다만 향후 이의제기 기간에 요청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 수정요청이 들어오는 다른 사례에 대해서는 수정이 제한됨
-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누리집 유지 건
 - (김미도) 후속기구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리집 폐쇄 곤란
 - 중요한 것은 외부 검색채널에서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도메인은 유지하면서 서버·데이터를 문체부 누리집으로 이관하여 현재 누리집의 자료는 영구적으로 보존
 - '19.8.25.까지는 현 상태 유지, 그 이후 1년간은 위 방법으로 운영, 유예기간 종료시점에 재검토를 통해 유예기간 연장여부 결정
- 제도개선 이행상황 점검
 - ① 한국콘텐츠진흥원
 - 민관협치 과제수행에 있어 민간동원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정책과정에서 현장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려움. 향후 참여민간 풀(POOL)을 다양화하여 민간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며 오해를 해소하겠음
 - (이원재) 이행과제 추진정도에 따라 퀘도에 올라선 과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고, 협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위주로만 논의
 - ② 영화진흥위원회
 - 모태펀드 직접관리에 대해 영진위 위원들은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려움 공감. 제도개선이 권고된 목적(=사건재발방지)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의 탐색을 위해 심화토론¹² 등의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세부과제 80(예산실링제 도입) 역시 현실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과제임에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하여 대체가능한 수단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진행
 - 제도개선 권고안이 영진위 이사회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19.6.19. 실시된 이사회에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12 문체부, 영진위, 영화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

③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세종도서 선정사업 개선 TF에서 사업 자체는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출협에서는 운영위원회 사무기구를 출협 소속으로 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위원회 등 참여과정 불참
-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사무기구와 간사를 출협 소속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우선 운영위원회 중 출협에 할당된 2명을 공식으로 남겨두어 출협이 협의체에 참가하여 협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제공함과 동시에 사업 진행
-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폐지가 될 경우 실제 해당 기능이 타 부처에서 부활 할 수 있음.¹³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토론 등 추가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진행해야 함

④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전체적으로 제도개선 논의 구조에서 예술강사노조가 배제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음. 예술강사는 문화예술교육에서 핵심적인 파트너이므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 현재 예술강사와 관련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강사와의 소통·협치기구를 2개 정도 운영하고 있음. 동 내용을 이행현황자료에 추가하여 자료를 보완하겠음
- (김미도) 교육진흥원은 아직 블랙리스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사과를 하지 않았음

⑤ 헌법개정 및 문화행정 협치 기반 조성 및 제도화

- 기존에 유은혜 의원실, 문화정책국, 헌법학자가 참여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향후 전체적인 헌법 개정 논의가 있는 경우 해당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현재 구상해놓은 개정안에 대해서 공유 요청(이양구 위원)

- 세부과제 12, 13에 대해서 지난 이행협치추진단 회의에서 초안을 공유하였으며, 문화기본법 내 다른 조항의 개정을 일괄추진하기 위하여 안민석 의원실과 논의 중에 있음. 개정이 너무 지연되는 경우 분리해서 추진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음

13 실제 문체부의 음반심의 기능 폐지 후 여가부에서 부활하였음

○ 기타 논의사항

- 지난 토론회에서 많이 지적받은 부분이 예술인복지재단 부분임. 문체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했음. 향후 복지재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추진완료로 표시된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김미도) 세부과제 16, 17, 18에 대해서 추진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으로 표시 요구. 또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교육에 대해서 향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줄 것을 요구
- (현린) 제도개선 권고 당시에는 장기과제가 아니었으나 논의과정에서 장기과제로 전환된 과제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의 문체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향후 회의 운영 관련 논의

- 토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프로세스 구축 필요
- 블랙리스트 관련성이 적은 일부 과제들에 대해서는 적합성을 가지도록 해석·수정하는 작업이 필요
- 금일 논의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
- 사회적 기억사업에 대해 다음 회의 전 실무협의를 통해 기본안을 구상 후 15차 회의에서 논의

15. 15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논의안건) 백서내용 수정요청 건
- (일시) 2019. 7. 17(수) 14:00~16:00
- (장소) 서울스마트워크센터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10명
 - 김미도 교수, 이양구 연출가, 정윤희 대표, 현린 위원장, 황승흠 교수, 이원재 소장
 -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사무관, 주무관

나. 회의 결과

- 문체부 국장급 인사이동 관련

- 수사의뢰 후 중징계 약속까지 했던 인사들에 대한 직위발령 문제 제기 및 예술정책관 인사이동 건에 대해서 해명 요구
 - * 공무원 직위해제 요건¹⁴에 따라 수사의뢰 대상자들이 기소되는 경우 직위해제 하겠음
 - 장관 취임 100일사 관련 현장 반발감 존재(조직사기진작 등의 언급). 예술정책관 인사에 대해서는 재검토 필요하다고 생각
 - 문체부의 해명·후속조치에 따라서 이행협치추진단 운영 여부 결정
- 백서내용 수정요청 건 (* 민간위원 : 이양구, 황승흠 위원 참석)
- 다른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백서에 모두 반영해줬음에도 형평성 측면에서 당사자 입장 전문 게재

16. 16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논의안건) 문체부 입장발표, 블랙리스트 관련자 인사원칙, 피해자 명예회복·사회적 기억사업 추진방향,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교육계획 공유, 영화 분야 논의기구 구성
- (일시) 2019. 8. 14(수) 15:00~17:00
- (장소) 서계동 4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8명
 - (민간위원) 김미도, 이양구, 이원재, 정윤희, 현린
 -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예술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나. 회의 결과

- 영화 분야 논의기구 구성
 - 동 협의체를 통해서 인디스페이스 대표 등 다른 영화계 관계자 참여 여부, 논의 방법(공청회 등) 등 논의하여 진행

1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①(4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 이행협치추진단에서는 정윤희, 이원재 위원 참여
- 피해자 명예회복·사회적 기억사업 추진방향
 - 팝업씨어터 후속조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정·방법 등 논의
 - 이행협치추진단(김미도, 이양구), 예술정책과장, 문예위 관계자, 팝업씨어터 피해자 참여하여 구성 *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리 마련 또는 참여
 - 백서 외에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백서내용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스스로 기록하는 방향으로 추진
-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교육계획 공유
 - 1월 교육(한상희 교수)시 활용했던 교육자료 공유 부탁
 - 문체부 내 정기교육 중 한 분야(약 10분)로 하여 진행¹⁵
- 블랙리스트 관련자 인사원칙
 - 당시 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위로의 배치, 당시 담당 장르·공공기관이 다른 경우 업무 수행 가능
- 문체부 입장(안)
 - 파일 공유를 통해서 문구 등 수정하기로 합의

17. 17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논의안건) 16차 회의 결과 점검, 팝업씨어터 실무협의체 구성, 제도개선 이행현황(문예위, 복지재단)
- (일시) 2019. 9. 20(금) 15:00~17:00
- (장소) 서계동 6회의실
- (참석자) 예술정책과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7명

¹⁵ 백서 낭독, 피해자 초청강연 등 강연 내용·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 (민간위원) 김미도, 이양구, 정윤희, 현린
-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담당 주무관

나. 회의 결과

○ 16차 회의 결과 점검

- 영화 분야 논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에 이행추진단 위원들에게 향후 진행계획 공유 요청
- 9월 재발방지 교육자료 공유 요청
- 이행추진단 보도자료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회의결과 및 회의안건 사전에 공유 필요, 회의결과를 다음 차수 회의 자료 초반에 작성 요청
- 지난 예술기관 제도개선 이행상황 점검 후속조치 공유 요청

○ 팝업씨어터 실무협의체 구성

- 공청회 시 책임자급 인사말 전달과 관련하여 참석자 검토 요청
- 지정토론을 별도로 진행하는 대신 질의응답 시 실무자급 배석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 제안
- 질의응답은 별도 시간제한 없이 진행할 것을 요청
- (민간위원측) 잠정적으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 10.31(목) 진행
 - * 이음홀(11.1) 가능하다면 해당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 병행

○ 제도개선 이행현황

- 문예위, 복지재단 이행점검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 문예위 제도개선과제 관련 논의 내용
 - 문예위로부터 별도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 마련해줄 것을 요청
 - (과제24) 단순한 기관명 변경이 아닌 창작지원과 향유사업의 분리와 관련한 문제
 - (과제27) '법령 개정 필요'임을 명확히 표시
 - (과제31) 심의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 자료 공유 요청
 - (과제35, 36) 조직개편 전·후 비교표 요청

18. 18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논의안건) 공공기관 제도개선 점검 이후 후속조치 상황 점검, 보고안건(문예위 추천위 구성, 재발방지 교육 등)
- (일시) 2019. 10. 11(금) 15:00~17:00
- (장소) 서계동 4회의실
- (참석자) 예술정책과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11명
 - (민간위원) 김미도, 이양구, 이원재, 정윤희, 현린, 황승흠
 -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3명, 기관 담당자 1명

나. 회의 결과

- 공공기관 제도개선 후속조치 상황
 - (교육진흥원) 예술강사가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협치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사업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교육의 파트너로써 인정 필요, 제도개선 협의체 14차 회의내용 공유 요청
 - (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진흥회(행정위원회) 구성의 내용과 참고자료 요청, 심사평가제도 개선(세부과제83번)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상황 공유 요청
 - (출판진흥원) 연구용역 수행 시 간행물윤리위원회 TF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
 - (복지재단) 세부과제 51번과 관련, 협치역량강화라는 제도권고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듯함. 확인 필요
- 문화예술위원회 관련
 - 위원추천위원회의 명단 공개 검토 요청
 - * 이는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로 추천위원 개개인 동의를 있는 경우에 한해 공개 가능
 - 문체부-문예위 협약체결 관련, 산하기관과의 협약체결이 아니라 예술계와의 약속이라는 상징성의 측면에서 진행해줄 것을 요청

○ 기타사항

- 블랙리스트로 인해 폐지된 사업들의 복원 여부 확인 요청

19. 19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논의안건) 팝업씨어터 후속조치 과정 공유, 복지재단 이행현황 점검, 국립극단 <날아가 버린 새> 배제 후속조치 결과 공유
- (일시/장소) 2019. 11. 21(목) 15:00~18:00, 서계동 6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8명
 - (민간위원) 김미도, 이양구, 정윤희, 현린, 황승흠
 - (문체부) 문예실장, 담당 사무관, 주무관, 복지재단 본부장

나. 회의 결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도개선사항 논의
 - 예술인복지위원회 논의 및 문체부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예술정책과장을 예술인복지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위촉¹⁶
 - 블랙리스트 연루자가 심의 등에 참여하지 않도록 단위 사업별 심의위원회 구성 시 내용 검토 등 면밀한 사전 점검 실시
 - 지역예술인 대상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 추진 (3~5개 권역별, '20. 1분기)
 - 예술인복지위원회 및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격상을 위해 각 운영지침의 문체부 승인 및 규정 정비 필요에 대해 ⇒ (재단 의견) 예술인복지위원회 및 지역협력위원회는 재단 정관에 따라 '재단의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음. 재단 자체 위원회 운영규칙상 문체부 승인 사항은 아니나, 향후 운영개선에 관해 문체부와 논의할 계획임
 - 협치주체발굴 과제 관련, 현장예술인 교육지원사업을 복원하기 보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운영개선 필요에 대해 ⇒ (재단 의견) 현장예술인 교육지원사업은 예술장르별 협·단체가 기획·

16 재단 이사회 및 예술인복지위원회(12.4.) 부의안건 의결 후 운영규정 개정 및 적용 ('20.상)

수행하는 소속 예술인 대상 수월성 교육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협치주체발굴'의 취지와는 다른 측면이 있음. 이후 재정당국의 예산 반영을 토대로 취지에 맞는 사업 발굴·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작품 검열 논란 관련, 문체부와 관련 없음
 - '문화도시선정위원회'에 서귀포가 선정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 아시아문화의전당 프로그램 청탁 의혹 관련, 지역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노력차원에서 진행
 - 향후 공식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의견 접수
- 문예위 위원후보자 관련, 여성후보자 부재 및 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협·단체 중심의 협소성 지적
 - 현재 지원자 대상 재추천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음

20. 20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논의안건) 재발방지 교육(산하기관 대상, 신규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선임 후속조치 공유, 팝업씨어터 후속조치 논의
- (일시/장소) 2019. 12. 20(금) 15:00~18:00, 국립극단 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8명
 - (민간위원) 김미도, 이양구, 정윤희, 현린
 - (문체부) 문예실장, 예술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문예위 극장운영부장

나. 회의 결과

- 재발방지 교육 : 산하기관, 신규자 대상
 - 본부에서 산하기관에 공문으로 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임. 다만 협조요청 수준으

- 로 자체교육 권고하는 방안 검토
 - 백서가 교재개발과 교육의 기준이 되어야 함. 백서내용 중 핵심을 추출·소개하고, 추가적인 내용은 백서를 참고할 수 있도록 연계
 - 교재는 블랙리스트 사건 및 관계자들의 태도가 문제되었던 사례(책임부정 등)를 중심으로 작성. 장르·영역의 특성도 반영 검토
 - 교재개발이 완료되면 제도개선권고기관¹⁷ 및 국립극단에 자료를 공유하고, 자체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문예위원선임 후속조치 공유
 - 1차 공론화 시 문예위 기능과 문예위원 역할에 대해 소개 요청
 - 추천위의 역할을 추천위 공모할 때 명확히 공지 필요. 간혹 추천위 자체적으로 후보를 발굴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음
 -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개인에게 확대하되, ‘추천자-피추천자’를 함께 공개하여 무분별한 추천남발을 억제하는 방안 제안
 - 문화일반 중 지역문화 전문가 위촉 시 문화재단 소속직원이 많다는 문제가 있음. 이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
- 팝업씨어터 후속조치 논의
 - 팝업씨어터 후속조치는 문예위가 피해자와 협의하여 주도적 진행
 - 블랙리스트 전체에 대한 사회적 기억·명예회복 작업 전담인력·공간 필요. 이행협치추진단의 전담위원과 이를 지원하는 인력을 확보하여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함

21. 21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논의안건) 문예위원 공론화 결과 및 검토내용 공유, 피해자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관련, 사회적 기억사업 사전강연 제안 건

¹⁷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출판문화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콘텐츠진흥원

- (일시/장소) 2020. 1. 17(금) 16:00~18:00, 서계동 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7명

나. 회의 결과

- 문예위원 선임 관련
 - 개별예술인 추천 시 서명인원의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천사유서를 첨부하는 방식 제안
 - 후보자 검증은 부정적 요소 체크가 아닌 긍정적 요소 발굴이라는 관점에서 진행하되, 사전에 추천기준을 논의하는 절차가 있다면 결과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임. 검증을 위해 공개PT 방식 제안
- 피해자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관련
 - 장르를 구분하되, 문학은 출판과 별도로 추가하는 방식 검토
 - 인력, 예산 등을 고려하여 후속조치는 개별사건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적합
 - 재발방지 교육자료는 백서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만 활용 원칙
- 사회적 기억사업 사전강연 제안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심리상담이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동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음
- 장르구조 개편 관련
 - ① 연구팀에서 이행추진단 인터뷰, ② 현장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TF 등 협의기구 구성, ③ 22차 회의에서 진행상황 공유 등을 제안

22. 22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논의안건) 서울프린지네트워크 후속조치 공유, 제도개선 영화분과 진행상황 공유, 2015년 서울

연극협회 공연장 대관배제 관련, '조직개혁' 과제, 교재개발 관련 논의, 팝업씨어터 후속조치 상황 공유, 사회적 기억사업 예산 논의

- (일시/장소) 2020. 2. 6(목) 16:30~18:30, 서계동 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7명

나. 회의 결과

- 제도개선 영화분과 진행상황 공유
 - 문체부·영진위가 현장요구에 응답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요청
 - 영화파트는 블랙리스트 피해범위에 대해 견해차이가 다소 있음
- 2015년 서울연극협회 공연장 대관 배제 관련
 - 사회적 기억사업을 진행할 때,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행추진단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명확히 해야 함
- '조직개혁' 과제, 교재개발 관련 논의
 - 내용을 현장과 공유하고, 현장에서도 준비를 시작하겠음. 간담회 등을 통해 공유·의견수렴 병행 요청
 - 명칭을 '교재'가 아닌 '백서 보급본'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합
 - (1단계)백서 요약은 지금도 가능하나, (2단계)매뉴얼·재발방지 가이드라인은 향후 판결확정 등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 필요
 - 현장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요청(원칙 설정 단계, 원고 마무리 단계)
- 팝업씨어터 후속조치 상황 공유, 사회적 기억사업 예산 논의
 - 논문 공모전(예: 서울연구원 '작은 연구사업')처럼 현장참여 사업 가능
 -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공모전도 가능

23. 23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논의안건) 서울연극협회 블랙리스트 소송 추진현황,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방안, 기타 제도개선 이행상황
- (일시/장소) 2020. 5. 27(수) 10:30~11:3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참석자) 예술정책관(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10명

나. 회의 결과

- (이원재 위원) 이행협치추진단 지속여부 관련 법적 검토 필요
- 팝업씨어터 사건은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후속조치는 어려우며, 위원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추진 필요
 - 관련 직원은 현재 부당전보조치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피고 :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서울연극협회 소송 관련해서 실제 배제가 되었던 단체들이 원고로 포함되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임
- 고용보험 관련해서 그간 노력해온 사람들이 고용부 주관 간담회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음
- 백서보급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피해자 아카이빙 사업을 위한 사전연구 필요
-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자 회복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및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이라는 명시적 타이틀 하에 예산확보 필요
-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 재점검 필요
 - (검토내용) 관계기관 대상으로 추진상황 재점검, 의견조율 추진

24. 24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논의안건) 이행협치추진단 구성원 조정(이원재 위원), 제도개선 이행현황 점검(예술인 복지재단), 사회적 기억사업 예산확보 관련, 기관별 피해자 명예회복 등 추진현황 공유
- (일시/장소) 2020. 6. 29(월) 13:00~15:00, 서계동 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8명

나. 회의 결과

- 이행협치추진단 구성원 조정 관련
 - 이원재 위원이 문예위원으로 위촉('20.5.6)됨에 따라, 이행추진단의 중립적 업무 추진을 위해 제외 및 결원보충 미실시(잠정)
- 예술인복지재단 제도개선 이행현황 점검
 - 예술인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과정에서 현장의견 적극 수렴 필요.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의제설계·수립과정에서 현장예술인 참여 간담회 적극 개최
 - 제도개선 이행현황을 민간과 함께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7월~)
-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
 - '21년 일반회계 내 신규(내역)사업(피해자 중심 구술·채록사업, 백서요약본 제작·배포 등) 편성 추진¹⁸

25. 25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일시) 2020. 7. 29(월), 16:00~18:00
- (장소) 서계동 스마트워크센터 제4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 및 내·외부 위원 등 8명
 - (민간위원) 김미도, 이양구, 정윤희, 현린, 황승흠

¹⁸ 부처안 기준 문예기금 내 5억원 반영 후 기재부 심의 중. 다만 이행협치추진단 측에서 일반회계로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사업' 타이틀로 추진해주시기를 요청

-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예술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나. 회의 결과

1) 복지재단 제도개선 현장간담회 사전회의 결과 공유

〈복지재단 제도개선 현장간담회 사전회의 결과〉

□ 개요

- (일시/장소) 2020. 7. 10.(금) 15:00 ~ 17:00/예술인복지재단 회의실
- (참석자) 이행협치추진단(현린), 현장예술인(하장호 前 제도개선 위원), 복지재단(사회보장부장, 정책기획팀장), 문체부(담당 주무관)
- (안건) 복지재단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 세부사항 논의

□ 간담회 논의 내용

- (필요성) 이행협치추진단 외 현장예술인들도 참여하여 복지재단의 블랙리스트 과제 이행 현황 공유 및 논의하는 자리 마련

- ▶ 문예위·영진위 기 실시('19년), 복지재단은 올 상반기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지연
- ▶ 단순히 과제 불이행 지적이 아닌 시스템, 여건 등 기관의 입장 공유하고, 현장 의견 반영하는 것이 주 목적

- (시기) 간담회 2회 실시(8월 말~9월 초, 1차 쟁점사항을 2차에서 논의)
- (진행방식) 문체부·복지재단·이행협치추진단·현장예술인(10여 명) 참여, 집담회 방식으로 진행
 - ①제도개선 권고 취지 설명(하장호 위원) → ②권고에 대한 기관의 입장 및 이행 추진 현황(복지재단, 문체부) → ③현장의견 수렴

2) 영화 분과 제도개선 점검 회의 결과 공유

26. 26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논의안건) 2021 사회적 기억사업 예산 반영,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누리집 유지 건, 블랙리스트 관련 소송 대응 현황, 예술인 권리보장법 추진현황, 국립극단 후속조치, 영진위 후속조치 추진현황
- (일시/장소) 2020. 9. 18(금) 16:00~18:00, 서계동 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11명

나. 회의 결과

- 사회적 기억사업 예산 반영 관련
 - 용역착수가 늦은 점은 아쉬움. 빨리 추진 요청하며, 과정 공유 요청
-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누리집 유지 건
 - 누리집 폐쇄 전에 사전 공지가 없었던 점에 이의제기, 누리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필요
 - * (추가요청) 20.10.8, 이행협치추진단 측에서 누리집 오픈 재차 요청. 현재 진행 중인 블랙리스트 관련된 소송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만이라도 유지 필요
 - ** (문예실장 의견) 누리집 폐쇄로 인해 우려되는 갈등이 큰 상황으로, 유지 필요
- 블랙리스트 관련 소송 대응 현황
 - 다툼 것과 다투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작성했으면 좋았을 것
 - 장관·위원장이 공식사과를 한 것으로, 다툼만한 쟁점이 없지 않은지
- 영진위 후속조치 추진현황
 -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시즌2가 아니라, 영화계와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건설적인 논의로 가는 것이 중요함
 - 소통의 구심점을 만들어서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통한 협치 필요

27. 27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일시) 2020. 11. 6(금), 10:00~11:30
- (장소) 서계동 스마트워크센터 제4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 및 내·외부 위원 등
 - (민간위원) 김미도, 이양구, 정윤희, 현린, 황승흠
 -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예술정책과장, 담당 사무관

나. 회의 결과

1) 국립극단 <날아가 버린 새> 후속 조치 계획 공유

〈간담회 추진 경과〉

- (1차 간담회, '19.12.24) 후속조치로서 공연기회 제공이 아닌 국립극단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 (2차 간담회, '20.10.8) 국립극단 자체백서 제작, 국립극단의 약속 보완 등 <날아가 버린 새> 관련 극단 후속조치 진행상황 공유 및 향후 계획 논의

- (자체백서 제작) 블랙리스트 백서 내 국립극단 관련 사건 내용 취합, 날아가 버린 새 사건 관련 정리('20.10월~)
- '날아가 버린 새' 관련한 내용은 블랙리스트 이후의 추가 피해 경위와 간담회 결과 등을 포함하여 최종 과정까지 기록 보존 예정¹⁹
- (국립극단의 약속) 피해당사자, 국립극단, 문체부, 이행협치단 외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인단(현장연극인)을 구성(안), 절차 등을 마련하여 3차 간담회 시 논의 예정(12.16)
 - (이양구 위원 의견) 3차 간담회 시, 결과물 보고가 아닌 향후 방향, 절차, 방안을 설명할 것을 제안 → 국립극단 측에서 간담회 참석자의 의사 확인 예정
- (임직원 교육)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교육 실시(박선영 문화연대 문화

¹⁹ 향후 피해자측 및 이행협치추진단 이양구 위원과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전체 구조 및 내용에 대해 추가 협의

정책센터 팀장, 11.11 예정)²⁰

- (법인운영 독립성) 공익법인으로서의 국립극단의 자체 위상 정립을 위해 ① 이사회 결정사항 최대한 존중, ② 연극계 출신의 비상임이사 교체에 따른 후보자 마련 시 연극계 현장의견 수렴 등 방안 검토

2) 26차 회의 후속조치(진상조사위 누리집, 연구용역, 기억사업 예산) 공유

- (진상조사위 누리집) 진상조사위 누리집 운영 재개*²¹(’20.11.16~’21.11.15). 1년 동안 운영하고, 소송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재연장 논의
- (기억사업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포함 3,000만원 가액. 공개 입찰 방식이며, 응모자 중 기술보유자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결정
 - * 신속한 수행을 위해 입찰기간은 7일로 설정
 - 응모자 대상 기술평가 및 계약 체결(11.17~30) → 용역 수행(12월~’21.2월)
- (기억사업 예산) 국회 증액 위해 의원실 방문 설명(10.29, 도종환 의원실). 향후 소관 상임위·예결위 등 국회 대응 지속

3) 아르코예술극장-팝업씨어터 논의 관련

- (진행경과) 팝업씨어터 사건에 대한 사과(’19.7, 12월) 이후 후속조치를 아르코극장-팝업씨어터 관계자 중심으로 추진예정이었으나,
 - 극장장 채용 당시 면접내용 일부 공개, 이후 팝업씨어터 관계자 중심으로 극장장 답변에 대한 문제제기 후 상호 간 공식적 만남 부재
 - 이에 대해 극장은 현장소통 소위·국민신문고를 통해 입장²² 전달

4) 문예위원-이행협치추진단 미팅

- (배경) 문예위 측에서(홍태림 위원) 이행협치추진단 측에 ‘문예위원과 이행협치추진단’ 간 만남 제안

²⁰ (주요내용)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배경(블랙리스트, 미투운동), 입법과정에서의 쟁점 및 향후 과제 등

²¹ 도메인, 누리집 구성 등을 기존 누리집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 예정

²² 팝업씨어터 사태는 블랙리스트로 인해 발생하였던 것으로, ‘예술과 검열을 둘러싼 투쟁의 장이자, 기억과 기록, 이야기와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담론의 장’이라고 생각

28. 28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논의안건) 문예위 이행과제 점검, 팝업씨어터 미팅 결과 공유, 차관 주재 산하기관 점검 결과 공유
- (일시/장소) 2020. 12. 16(수) 16:00~18:00, 화상회의
- (참석자) 예술정책과장(주재) 및 내·외부 위원 등 8명

나. 회의 결과

- 문예위 이행과제 점검 관련
 - (김미도) 단순히 제도개선과제 이행여부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블랙리스트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의 자체노력도 필요. 심의위원 전문성 문제, 대한민국연극제 사업 명칭 변경, 원로연극제 사업을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원로예술인 지원 등 블랙리스트 때 생겼던 사업들에 대한 개선 필요
 - (현린) 이행과제들은 위원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지, 코로나19 TF 활동경과 설명 요청
 - (이양구) 문예진흥법 개정안 연구 최종보고서 공유 요청, 문예진흥법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은 이행 요청, 자율운영협약을 대신할 수 있는 계획을 공유 요청, 심의위원 전문성 문제를 손볼 때가 됐음²³
 - (정윤희) 위원선임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 바뀌는 과정과 노력도 상세히 현장에 설명 필요,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위한 로드맵 필요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조항을 문예진흥법에도 규정, 문예진흥법 시행령에 있는 위원자격 요건 10년을 n년으로 낮추어 청년참여 기회 확대
- 팝업씨어터 미팅 결과 공유
 - 사과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문예위 측에서 안을 가지고 나와서 이행추진단에서 협의하여 결정 필요. 우선 문예위 극장 측에서 기본안을 가져와주기를 요청

23 블랙리스트 이후 개방·공정성 측면에서 집중해왔던 문제 해소 필요

- 차관 주재 산하기관 점검 결과 공유
 - 복지재단의 ‘협치주체 발굴 및 현장 역량강화 사업’은 예술인과의 거버너스를 확대하자는 과제임. 이 과정에서 협·단체뿐만 아니라 개별예술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복지재단의 현장역량 강화사업은 추후 이행추진단 회의에서 자세하게 공유 요청

29. 29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 2. 22.(월) 14:00~16:15/인스파이어 비즈센터 F2회의실
- (참석자) 예술정책관(주재) 및 내·외부 의원 등 11명
- (논의안건) 영화진흥위원회 이행과제 점검, 사회적 기억사업 연구용역 추진현황, 예술인 복지재단 권고사항 현장간담회 개최계획 등

나. 회의 결과

- 영화진흥위원회 이행과제 점검 관련
 -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사업추진 시 반드시 영화계 현장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진행할 필요²⁴
 - 영화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현장 소통 채널이 매우 다양하여 균형성 있게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
 - 현장과의 소통 자체는 영진위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되, 현실적, 구체적인 추진체계 구성 및 계획을 마련하여 협치단과 상황 공유
-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현황 관련
 - 연구진에서 요청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진술조서(2건) 제공과 관련하여,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해당 연구는 기록사업 자체가 아닌 기록사업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에 해당하며, 진술조서를 직접 인용하는 일은 지양하고 사실관계 확인, 당사자 인터뷰 준비용 등으로만 활용할 필요

²⁴ 과거사 특위 2기 구성 과정 등에서 피해자는 제척하는 등 현장 소통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

- 해당 연구에서 진술조서 활용 등 기존 자료를 기록사업으로 연계할 때 필요한 법적 검토도 반드시 포함할 필요
- 연구용역 결과를 국립극단, 문예위 등 관련 기관의 후속조치 연구·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기관들의 연구 진행 과정도 공유해주길 바람
- 예술인 복지재단 권고사항 현장간담회 관련
 - 3월 넷째 주까지는 현장간담회를 차질없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협치단 30차 회의 시 정리하여 공유해주길 바람
 - 현장간담회에는 장르, 지역, 세대별 현장인들을 균형 있게 포괄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협치역량 강화사업 등 조치과제는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
- 이행협치추진단 운영 방향 관련
 - 이행협치추진단 운영을 격월 혹은 분기별 개최로 전환하기 전에 기관별 주요 과제들의 공식적인 정리²⁵와 기관별 협치단 위원 담당자 지정이 선행될 필요
 - 또한 각 기관에서 주체적으로 과제를 진행할 때 적용되어야 할 공통적인 대원칙을 마련하고, 협치단은 격월 혹은 분기별로 기관을 지정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구조로 검토
- 소송 진행 관련
 - 정부의 형식적 답변서가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상처가 되지 않도록 진행상황 및 취지에 대해서 이행협치단 등을 통한 소통 강화 필요
- 30차 회의 등 후속 관련
 - 4.9.(금) 오후 2시, 서울(예정)
 - 주요 논의 내용은 복지재단 권고과제 추진계획 점검 등
 - 새로운 장관 부임 이후 블랙리스트 관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25 문예위-자율운영협약, 예술인복지재단-주요 과제 방향성 확인, 영진위-현장 중심 논의 구조 확립 등

30. 30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4.9.(금) 14:00~16:30/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
- (참 석 자) 문화예술정책실장, 예술정책과장, 추진단 위원 5명 등
- (논의안건) 영화진흥위원회 관련 영화계 요구사항 및 후속조치 계획, 예술인복지재단 권고사항 현장간담회 개최 결과 등

나. 회의 결과

- 영진위 관련 영화계 요구사항 및 후속조치 계획 관련
 - 피해자 중심의 사후조치 실시가 되도록 영진위-(피해자 중심)기구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하되, 영화계의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는 추진방향 및 향후일정 등에 대해 협치단과 공유 필요
 - 위원장·위원 등 기관이 관련 사태 해결에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영진위-피해자 간 절차와 원칙에 입각하여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진행할 필요
 - 위원장 임기 등을 고려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관련 활동,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후속조치 등을 적시에 진행할 필요
 - 인사 이슈 관련, 기관 운영상(노조 합의사항 등) 한계가 있겠으나, 현장과의 소통에서 충분히 설명을 구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고, 피해자가 2차 가해라고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예술인복지재단 권고사항 현장간담회 개최결과 관련
 - 관련 과제들은 블랙리스트 후속조치이면서 기관 10주년 중장기 과제로 접근하여 추진 중, 후속조치 과제이지만 예복에서 진행하는 각 사업에 전반적으로 녹아들어야 할 필요
 - 기존 협·단체 중심으로 진행하던 사업들을 개인, 소그룹 및 네트워크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예술인들의 현장 의견수렴을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할 필요
 - 예술활동증명 등 현장에서 신청수요가 급등하는 반면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인원 확충, 협업 기관 역할분담 등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음
 - 예술인복지위원회의 국가 소속으로의 전환 여부 검토에 앞서, 그간 위원회 및 소위의 다양한

활동을 정확한 평가에 기반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요청사항) 한국문화관광연구원(박소현 교수(서울과기대) 참여)에서 추진 중인 예술인복지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21.8월 완료 예정) 공유 요청

- 관련 논의는 특정 장르 협·단체 중심이 아닌 다양한 주체 발굴(의제·직능 중심, 성평등, 노동권 등)을 통해 정책의제 논의과정(예. 포럼) 등을 거쳐 진행할 필요

○ 31차 회의 등 후속 관련

- 5.28.(금) 오후 2시, 서울(예정)
- 주요 논의 내용은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계획, 영진위 후속조치 진행 경과 공유 등
- 각 기관의 인사 이슈 관련, 피해자가 2차 가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장관 면담, 기관장 워크숍 등 계기 시 관련 문제의식 공유 추진 답변)

블랙리스트 이행협치추진단 장관 면담 결과

(1) 면담 개요

- (일시/장소) '21.4.9.(금) 15:00~16:00/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
- (참석자) 장관, 문화예술정책실장, 장관정책보좌관, 예술정책과장 등
 - (민간위원) 김미도(한국연극평론가협회 회장, 진상조사위), 이양구(연극연출가, 진상조사위), 정윤희(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현린(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황승흠(국민대 법학과 교수)

(2) 주요 내용

〈모두말씀〉

-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이행 등을 위해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구축이 관련 과제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함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라는 예술지원 기본 원칙을 되새기며 문예위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통해 관련 의지를 약속하였음
 - 현장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문예위 워크숍에서도 소위원회 등 다양한 예술현장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업·과제들을 진행할 것을 요청 하였음

〈관련 논의〉

- (정윤희 위원) 블랙리스트 청산은 국정과제 1호로,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국가 사과, 사회적 기억사업 등 후속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하며, 이를 대외적 의지 표명 등을 통해 약속할 필요
- (김미도 위원)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사회적 기억사업 예산 확보 등 실천적 측면에서 진행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필요
 - 각 기관의 인사 이슈 관련, 피해자가 2차 가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 (장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한 재발방지 제도화를 위해서 공청회 실시, 국회 논의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적절한 계기 시(예. 권리보장법 공포 등) 정부 의지(사과 등 포함)를 대외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인사 관련 이슈는 공공기관장 워크숍 등 계기 시 문제의식을 공유하겠음
- (황승흠 위원)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은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함. 법안 공포 시 국가 사과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정윤희 위원)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힘이 되고자 예술인 캠페인, 국회의원 면담 등을 추진하고 있음
 - ⇒ (장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은 당정협의 시 안건 상정 등 여야 합의에 기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이양구 위원) 사회적 기억사업은 피해자 회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블랙리스트 사태는 벗어나야 하는 꼬리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술현장을 비롯하여 관련 국가·공공기관 당사자들이 문제의식을 내재화하고 인식과 태도의 변화로 보여줘야 할 문제임
- (현린 위원) 예술현장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 주도 사업 시 현장의 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사업 참여 예술인들의 노동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장관) 문화뉴딜 등 주요 사업 진행 시 현장 중심이 되도록 사업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사회적 기억사업 중 관련 아카이빙, (가칭) 표현의 자유 주간 행사, 재발방지 교육 등은 표현의 자유 등 예술의 근간이 되는 내용으로 매우 의미하다고 생각함. 사업 필요성 등을 잘 발전시켜 재정 당국에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31. 31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5.28.(금) 14:00~15:30/인스파이어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 예술정책과장,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영진위 사무국장, 추진단 민간 위원 4명 등
- (논의안건) 영진위 후속조치 계획,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계획 등

나. 회의 결과

- 영화진흥위원회 후속조치 계획
 - 영진위-현장이 중심이 되어 현장의견을 폭넓게 수용한 방향으로 기구 구성 및 후속조치를 실시하되,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협치단에 공유 부탁드림
 -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현장 피해자 그룹이 존재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
 -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예. 인사 등)와 관련하여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해당 문제를 완화해가고자 노력하겠으며, 담당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장, 단기적으로 계속 협의해나갈것음
-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요청사항 관련
 -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내역 확인 요청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은 협치단 점검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피해자 회복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소관 부서(영상과)에서 영화계 연대 모임 관계자, 피해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관련 기관들과 논의하여 주요 결과를 정리한 후 협치단과 공유하겠음
-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계획 관련
 - 예산 반영을 위해 적당한 시점에 사업 관련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 추진 필요
 - 사업명은 현재대로 유지(‘블랙리스트’ 워딩 명시)하되, 기재부 대응 등 정부안 진행 과정에 따라 현장과 전략적으로 논의 필요(예, 표현의 자유, 다양성 사업 등)
 - 전체 예산(20억 원) 반영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사업 간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도 고려할 필요
 - 사회적 기억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왔음, 그간의 진행 경과 등에 대해 현장과 공유하는 자리 마련 검토
 - * '19.12월 팝업시어터 공청회 연속선 상에서 다양한 장르 예술계 현장을 대상으로 연구용역 결과, 예산반영 노력사항 등 그간의 경과 공유 등 현장간담회 검토
- 32차 회의 등 후속 관련
 - 7.9.(금) 오후 2시, 서울(예정)
 - 85개 세부과제 추진현황, 이행협치추진단 진행경과 업데이트
 - 예술인복지재단 권고사항 추진 경과(협치역량 강화, 활동단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행과제 점검 등 검토 예정

32. 32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7.9.(금) 14:00~16:00/인스파이어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 예술정책과장, 문예위 정책혁신부장, 예술인복지재단 정책기획팀장, 민간위원 5명 등
- (논의안건) 문예위·예복 이행과제 현황,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현황 등

나. 회의 결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행과제 추진현황

- (심의제도 전문성) 심사 개방성·공정성 부문은 많이 해소되었지만, 결과의 전문성·책임성 제고 부문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전담심의위원회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
- (동료평가 제도) 다원예술 지원사업에서 실시한 동료평가 결과 중 일부 부적절한 내용이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되어 문제가 됨
 - * 대체적인 만족도는 높았으나 일부 자극적인 케이스가 문제, 온라인 심사 한계도 공존, 평가에 대한 사전 약속(부적절한 내용 처리방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
- (공모제도 본질) 전문가는 공모·심사 기준을 만들고 심사 자체에 대한 환류·개선을 통해 심사위원이 누가 되어도 정형화·보편화된 심사결과가 나오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공모제도의 본질임
 - * ‘예술’이란 가치 영역의 차원에서도 계량화·객관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 (현장신뢰 제고)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납득, 신뢰할 수 있는 심사결과가 나오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 * 사업목적, 대상 및 심사기준 명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 (위원회 구성)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개인·단체 예술인 추천 및 추천위 명단 공개를 법령 등으로 명문화하는 요구 관련
 - * 반드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이 아니며, 이미 현장소통을 통해 약속한 사항으로 지속 유지할 예정임, 다만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사항으로 사전에 추천위원에게 개별 동의를 받아 진행 필요
- (참여형 사업) 현장소통 소위원회 운영 외에도 현장예술인 참여형 사업 및 평가 환류 과정 등에도 참여 필요
 - * 사업설계 및 공모 등 일련의 절차 전반에 예술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정기공모 전 예술인 대상 사업설명회 정례화 추진
- (검토 중 과제) 당장 추진하기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인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 필요
 - * 과제 설정 취지를 고려하여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검토 필요

○ 예술인복지재단 이행과제 추진현황

- (예술인복지위원회) 그간 위원회의 다양한 활동 및 한계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파악할 필요, 자문기구 한계 극복을 위해 분야별 소위 TF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 '21.8월 3기 위원 선임에 앞서 해당 점검을 통해 장르별 현장 목소리도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에 노력하겠음
- ((가칭)권리보장활동단) 사업으로 진행하다보니 공모·선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한계가 발생하고, 채용·과견지원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특정한 채용에는 부담이 있고, 공모 등으로 하기에는 취지에 안 맞는 한계 봉착, 공모 외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검토 필요

33. 33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8.27.(금) 14:00~16:00/인스파이어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 예술정책과장, 민간위원 5명 등
- (논의안건) 사회적 기억사업 현장간담회 추진계획(안), 기타 현안 등

나. 회의 결과

- 사회적 기억사업 현장간담회 추진계획(안)
 - (행사명) 민간위원 협의 후 제안 예정
 - * 기존 사업명('사회적 기억사업') + 새로운 사업명('표현의 자유') 적절히 연계
 - (사업명) 민간위원 협의 후 제안 예정
 - * '(3안)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워딩을 살리되 '기억', '회복' 등의 기존 워딩도 최대한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 '표현의 자유 주간' 전략적 사업명을 활용할 시 기존 사업 내용은 살리되 사업 구조를 '표현의 자유 주간'에 맞게 조직화
 - (주최) 이행협치추진단-문체위 의원실²⁶ 공동
 - (일시) 의원실 섭외 진행 과정에 따라 확정(잠정 9월 마지막주)
 - * 의원실 공동주최 예정 행사로, 의원실 일정에 최대한 협조

²⁶ 문체위원장 변경 예정에 따라 의원 구성 변동 추이를 보고 협의

- (장소) (1안) 국회 의원회관²⁷, (2안) 국립극단, (기타) 씨어터카페
 - (참석) 공공기관(문예위, 영진위, 예북) 참석 요청(토론 참여 등)
 - * 토론패널로 현장예술인 참여(민간위원 제안 예정)
 - (운영) 진행(김미도 위원), 토론 전 제언²⁸(협치단 위원)
- 기타 현안
- (국립극단) 후속조치 일환으로 피해자 간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8.19. 간담회는 사건 당사자 사과를 이끌어 낸 의미 있는 사례
 - (아시아문화원) 사실관계 명확화를 위한 아시아문화원의 추가 조사 등 후속 조치 예정
 - * 공동조사단 조치 의견 중 문체부의 진당에 대한 후속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에 대한 확인 요청
 - (권리보장법) 통과 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등을 활용, 대통령 사과 요청
- 그 외 기타사항
- (34차 회의) 사회적 기억사업 현장간담회(9월 예정) 진행에 따라 일정 논의, 안건은 영화계 관련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 요청
 - * 영진위 후속조치 진행경과(공청회 이후 구체적인 세부 계획),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요청 사항 중 영상자료원의 피드백은 있었으나 영등위 관련 내용은 피드백이 없는 상황으로 확인 요청
 - (사회적 기억사업) 현장간담회는 2안으로 추진(9월 중/추석 직후), 문체부+문예위+영진위 등 참여 범위를 확장하고, 각 장르별 다양한 예술인이 참여하여 논의 시간을 가지는 방향으로 초안 검토
 - * 문예위 블랙TF 논의사항, 영진위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토, 발제+토론 중 각 장르별 예술인이 참여하는 토론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
 - (소송 문서송부촉탁) 송부촉탁에 응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제출 여부는 문서 처분권 보유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 소송 사안과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
 - * 생산문서가 아닌 수집문서는 보유 여부만으로는 처분권이 없으며, 처분권이 있는 생산주체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영업비밀 포함 여부 등 검토 필요, 문서제출명령은 응해야 할 의무가

27 코로나19 상황으로 발제자 외 출입 제한, 온라인으로 시행 필요

28 새로운 사업명 제안, '표현의 주간' 구체적인 날짜 제안 등

있어 제출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불복 시에는 이의제기

- (33차 회의) 8.27.(금) 14:00~15:30, 서울 / 사회적 기억사업 현장간담회 준비 현황(계획 초안은 사전에 공유 요청)

34. 34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1.12.3.(금) 14:00~15:30/인스파이어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 (참석자) 문화예술정책실장, 예술정책과장, 국립극단 홍보마케팅 팀장, 민간위원 3명 등
- (논의안건)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후속사항, 기타 현안 등

나. 회의 결과

-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진행 상황 점검
 - (후속조치 현황) 모든 피해 사례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사례집 제작을 위한 협조 요청을 완료함. 내년도 사례집 책자 발간 및 국립극단의 약속(가칭) 제정을 목표로 노력 중임 (국립극단)
 - (제도개선) 블랙리스트 관련 예술감독 선임과정의 제도화 등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몇 가지 가능한 안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추진 필요
 - * 극단과 비슷한 조직에 대한 통일된 관점, 승인권 유지가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할 필요. 유사 조직 및 규정 관련 현황 파악 후 말씀드리겠음(문화예술정책실장)
-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이후 시행령 제정 등 진행 상황
 - (진행 상황) 하위법령 제정을 현안으로 하여 이해관계자에 의견수렴 등 진행 예정(예술정책과)
 - (권리보장위원회 구성)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하여 문체부가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요건(추천위원회 구성, 명단 사후 공개 등)을 고려해야 함. 12월 의견수렴 시 관련 사항 고려 필요하며, 공론화,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촘촘히 하여 법안 마련 필요. 블랙리스트 후속조치에 대한 협치단의 승계사항 등은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음

-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사업 예산 편성 현황
 - (표현의 자유 주간 사업 추진) '22년 예산 미반영되었으나, 시범적으로라도 사업 추진 필요
 - (교육교재 개발) 재발 방지를 위해 검열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바, 백서 요약본을 활용한 교육교재 개발 연구용역 추진 필요
- 기타 사항
 - (장관 면담) 빠른 시일 내 장관 면담 희망
 - (35차 회의 및 검토사항) 회의 일정은 장관 면담 이후 논의, 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과제 이행 현황 및 극단 예술감독 선임과정 검토사항 추후 논의

35. 35차 회의

가. 회의 개요(장관 간담회)

- (일시/장소) ' 21.12.30.(목) 14:00~15:30 / 서계동 회의실
- (참석자) 장관, 문화예술정책실장,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3명
 - (민간위원) 김미도(한국연극평론가협회 회장, 진상조사위), 이양구(연극연출가, 진상조사위), 정윤희(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나. 주요 내용

-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이행상황 등 관련 장관 기자회견 제안
 - (장관)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변화된 상황(제도 및 체계의 개선 등)과 향후 과제에 대해 공유할 것을 제안
 - (정윤희 위원) 협치단 활동을 통한 성과가 나와야 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해야 함
 - (이양구 위원) 기자회견 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함
-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사업 추진을 위한 TF 구성 등 제안
 - (장관) 문예위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역할 분담을 통한 사회적 기억 사업 추진 제안

- (이양구 위원) 기자회견 시 TF 관련 사항 포함
 - (정윤희 위원) 교재개발도 포함하여 추진 필요
 - (김미도 위원) TF 구성시기, 사업 추진시기에 대한 일정표 요청
- 이행협치단 활동 백서 제작
- (협치단) 과제 이행 사항에 대한 성과 공유를 위해 백서 제작 필요
 - (이양구 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정리 필요
- 후속조치 계획
-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사업 추진을 위한 TF 구성 및 기관별 사업계획 수립²⁹(1월 중)
 -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이행상황 및 사회적 기억 사업 관련 사전점검회의(협치단 참석, 1월 말~2월 초)
 - 블랙리스트 제도개선 이행상황 등 관련 장관 기자회견(1월말~2월)
 - * 사회적 기억 사업 추진을 위한 TF 시 논의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기 검토
 - 이행협치단 활동 백서 작성(협치단 및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TF, ~3월)

36. 36차 회의

가.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2.2.8.(화) 14:00~15:30 / 서울역 인근 회의실
- (안건) 블랙리스트 기자간담회(2.17. 예정) 이행협치추진단 사전 협의
- (참석) 문화예술정책실장,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5명 등

나. 주요 협의 결과

- (명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후 5년, 제도개선 성과와 과제
 - * 블랙리스트 명칭 직접 언급 필요 및 간담회 취지 등 고려하여 결정

²⁹ 제도개선 이행 관련 6개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 (내용) 성과 홍보보다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지속 필요성 및 정책 의지 피력에 방점
 - (제도개선 성과 부분) 제도개선 이행과제에 대해 정량적 기술(62개 완료 등 표현)은 지양하고 메시지와 사례 중심으로 부각(백서발간, 문예위 운영 개선 등)
 - (과제 부분) ① 제도의 공고화(제도 검토-시행-보완의 과정 지속), ② 피해자 회복 및 예술인 권리보장(권리보장법 정착), ③ 사회적 기억 사업(교재 개발, 표현의 자유 주간 등)으로 정리
 - *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미이행 과제에 대한 향후 계획 등 포함하여 준비 필요
- (기타)
 - (개최 시기(2.17. 예정))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설명이 주 내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
 - (참석자) 문화예술기관 대표로 문예위 및 영진위 참석 필요, 민간위원 3명 참석 확정(김미도, 정윤희, 황승흠)
- 향후 계획
 - 기자간담회 및 보도 자료(안) 공람 및 의견수렴(2.9.~))

다. 기자 간담회 관련 자료

1) 장관 기자 브리핑 말씀자료

기자브리핑 말씀자료 (2.17./목)

[인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국회에서 공개된 이후 5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중차대함과 문화예술계에 남긴 상처에 깊이 공감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과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1심 판결을 다투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기울여 온 그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경과)

2016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된 후, 사건의 조사와 그에 따른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2017년 7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출범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활동과 예술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18년 5월 ‘공정한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체부는 동 권고안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같은 해 7월 현장예술인, 행정·법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과제,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하고 이행협치추진단과 40회 가까운 회의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2022년 2월 현재 85개 세부과제 중 62개 과제는 이행을 완료하였고, 13개는 추진 중, 10개는 지속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제도개선 성과를 정량적 지표로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70퍼센트 이상의 세부과제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그간 문체부와 예술계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어 법제도 개선, 예산 확충 등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도개선 등 주요 성과)

2018년 5월 문체부는 과거의 문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예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향후 예술정책의 방향과 기본과제를 담은 ‘새 예술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새 예술정책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보호,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등으로 문체부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3월 10일에 채택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은 이러한 새 예술정책의 목적 실현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또한 예술인 개개인의 인권과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이 제고될 때 실질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의 보장이 이루어진다는 인식하에 예술인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불공정행위,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예술인 피해 신고 상담 창구 운영 및 피해 예방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20년 12월), 창작준비금 및 예술인 용자 도입·확대 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창작준비금) '17. 120억원 → '22. 603억원
(예술인 융자사업) '19. 76억원(최초시행) → '22. 230억원

무엇보다도 예술인 보호를 위한 최대의 성과는 정부와 학계, 예술 현장의 오랜 논의와 노력 끝에 2021년 9월 24일「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동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하고 권리 침해 시 구제 방안을 법제화함에 따라 예술인의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체부 차원의 정책적 개선 노력과 함께 소속 문화예술기관의 자율성 보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합의제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문체부 장관이 임명해 왔으나, 관련 법을 개정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했습니다.('20년 5~6월)

예술위, 영진위 등 각 기관별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개방형 직위, 움부즈맨 및 공정심의평가관, 공개 제안 제도, 민간이 참여하는 협치 기구 등을 도입하여 각종 지원사업에 현장 예술인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구조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제: 제도개선의 공고화, 예술행정 문화의 혁신과 사회 인식 변화]

조직이나 제도의 개선은 한번에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완료’로 관리하고 있는 과제 또한 지속적인 이행 점검이 필요하며, 완료되지 못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의 제 개정, 사회적 합의 도출, 예산의 확보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현장에 안착되도록 보호대상 예술인, 피해 구제 조치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예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오는 9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술인의 권리 보장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와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예술인 복지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술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원인력들의 인식과 조직문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변화된 사회인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우선 3월에는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고 점검해 온 과정과 현장의 의견을 담은 「이행협치추진단 활동 백서」(가제) 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동 자료는 진상조사위원회가 2019년에 진상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담아 방대한 규모로 발간한 진상조사위 백서와 함께 중요한 사료이자 예술 정책 담당자들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하여 예술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해 다양한 교육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분야에서 예술행정을 담당하는 인력들에 대해서는 ‘예술인 권리보호 및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하여 예술인과의 접점인 현장에서부터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개개인들의 상처와 목소리에도 좀 더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피해자 회복을 위해 지속적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한편, 구술·채록 사업 및 연구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립극단 등 예술단체별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피해 사실을 재조명하는 한편,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또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을 계기로 문체부와 소속 예술기관이 협력하여 ‘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 주간에 예술의 자율성과 중요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 세미나, 전시·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온라인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등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마무리)

지난 5년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예술 현장과 문체부, 문화예술기관이 변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신뢰와 협치를 바탕으로 변화된 예술행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향후에도 후속 조치를 책임 있게 수행하고, 예술계의 회복과 제도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3 장

이행협치추진단의 주요 성과

제1절. 문화행정 관련 제도개선 결과와 남은 과제들

1. 제도개선 추진 필요성³⁰

가. 문화행정 관련 제도개선의 배경

블랙리스트 사태는 특정 권력자, 정부기관, 사건, 피해자로 한정되어 진행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정보원과 경찰’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대다수 문화공공기관’이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해서 실행한 불법 정책인 동시에 국가 범죄로 확인되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권력기관 중심의 문화정책 이원화, 국민의 참여와 비판의 차단 등 문화민주주의 훼손, 표현의 자유와 문화다양성 등 문화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점들이 문화행정 전반에 걸쳐 구조화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권력기관으로부터 문화정책의 자율성과 합리성 확보, 문체부를 비롯한 문화행정 체계의 정상화, 문화예술전문기관의 독립성과 기관 내 민주적 운영 체계 확보, 국민과 문화예술인의 참여 및 비판에 기초한 문화행정 민주화 등의 개혁 조치가 엄중하고 구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제기되었다.

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청와대·국정원 등 국가권력의 문화행정 도구화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08. 8)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13. 3) 등 문화정책·행정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과 통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헌법과 문화기본법 등이 명시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원리, 문화예술인의 권리 등에 대한 국가권력의 일상적인 침해 구조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문체부에 대한 외부 권력의 압력과 통제로 인해 문화적 가치와 원리를 벗어난 문화행정이 반복되었다. 국가 문화정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문화예술 공공기관보다 청와대, 국정원, 기획재정부 등이 중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형적인 문화행정 구조가 존재하였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권력에 의해 문화행정의 자율성과 문화적 가치 훼손이 일상화된 결과물이라

³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80~90쪽을 요약 정리하였다.

할 것이다.

2) 문체부 소속기관과 문화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 침해

현행 문화행정 체계는 청와대-기획재정부-문체부-문화예술공공기관(소속기관)-지역문화예술기관-민간문화예술계로 위계화, 서열화, 구조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문화행정은 현장 문화예술생태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나, 문화적 가치가 아닌 권력 구조와 예산 권한에 따라 정책과 지원이 결정되는 구조였다. 블랙리스트 사태 이전부터 문화행정의 구조적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의 문화행정 개선안은 블랙리스트 범죄만이 아니라 문화행정(문화예술지원체계)의 체계적인 개혁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 담당부서에서 인사권과 예산권을 바탕으로 소속기관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며 통제하기 수월한 행정구조, 문화예술지원 경로 전반에서 중앙정부에 의해 협력 주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다. 국가 문화행정 전반에 대한 협치구조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확인되듯이 문화행정에 대한 참여, 평가 등 사회적 통제 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였다.

3) 참여와 협치가 부재한 문화행정 구조

대다수의 문화행정 기관에서 위원회, 이사회 등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왔다. 블랙리스트 범죄와 연계해서는 더욱 더 심각하게 비민주적인 문화행정이 반복되었다. 대다수 문화행정 기관에서 협치를 통한 사회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원정책, 심의, 집행 등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블랙리스트 범죄가 발생하였다.

대다수 문화예술지원 기관이 문체부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되었으며, 일방적인 기관 운영에 따라 정책, 심의, 집행 등의 원칙과 절차가 무력화되었다. 지원사업의 폐기, 심의위원 풀 통제, 지원 절차 개입, 심사결과 조작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행위가 자행됨에 따라, 문화예술 전문 지원기관으로서의 자율성, 투명성, 협치 역량 등이 심각하게 퇴행된 상황이었다.

2. 제도개선 결과

가. 문화행정 관련 제도개선 개요

2017년 7월 31일에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조사위’)는 ‘법제도’, ‘문화행정’, ‘후속조치’, ‘주요 문화예술기관, 4개 분야에 대해 권고사항을 85개 세부과

제로 제안하였다. 2018년 제도개선 권고 이행 및 백서 발간을 추진할 민관 협력기구로 ‘이행협치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이행협치추진단 제도개선팀 민간위원으로 문체부 추천 2명(행정·법률), 진상조사 위 추천 2명 등 4명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2018년 7월에 행정학·법률 전문가 검토를 통해 2명의 행정 및 법률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였다. 이행협치추진단은 이행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으며, 2022년 5월 기준으로 85개 세부과제에 대해 62개(72.9%) 과제는 이행을 완료하였고, 13개는 추진 중, 10개는 지속 검토 중인 상황이다. 문화행정 관련 과제는 총 4대 대표과제와 10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문화행정 관련 대표과제와 세부과제

권고	대표과제	세부과제
문화 행정	국정운영 차원의 문화정책 정체성 확립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국정 홍보기능 혁신 및 조직 분리 검토	국정 홍보 기능 분리
	문체부 조직 개혁을 통한 소속기관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	문체부 조직 기능+장르 체계로 개편
		국공립 예술기관 기능·역할 조정
		문체부-예술위 성과협약 체결
		문화예술 지원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문화행정 협치 기반 조성 및 제도화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 명시
		문화기본법에 정보공개의 원칙 명시
		정책수립과정에 문화분야 전문가 참여 의무화
		참여와 협치 기반 문화행정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출처: 이행협치추진단 35차 회의자료(2021.12.30.))

나. 국정운영 차원의 문화정책 정체성 확립

1) 과제

문화국가 원리에 대한 청와대,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등 주요 권력기관의 인식 제고의 필요에 따라,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칭)「문화국가의 원칙 확립 및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는 특정 부처나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운영 철학으로서 문화적 가치 확산과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의 태도를 재정립하기 위함이다.

「문화국가의 원칙 확립 및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

화국가의 원리와 원칙 확립, ‘팔길이 원칙’을 넘어 ‘자율, 분권, 협치’의 시대에 적합한 문화행정의 원칙 수립, 문화와 예술에 대한 국가의 태도와 접근 방식 설정, 문화민주주의, 문화기본권 등에 기반을 둔 문화행정 혁신방안 마련, 문체부나 문화정책 차원이 아니라 국가정책과 국정운영 차원에서 수립 등이 제시되었다.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사회적 성찰 및 재발방지,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치와 방향, 문화적 가치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담은 (가칭) ‘문화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선언’ 발표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 선언이 아니라 문화예술인, 국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토론과 의지를 담아내는 선언 활동으로 기획한다.

문체부의 역할을 ‘개별 문화사업 관리 및 통제’에서 ‘국가 문화정책 기획조정 및 협치’로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의 주요 역할을 국가단위 문화정책 기획조정, 국정운영의 문화적 가치 확산, 국가 단위 문화사업 관련 부처 간 협력, 전국 단위 지역문화 연계, 문화 관련 국제교류, 문화 관련 R&D 등으로 확장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구조화한다.³¹

2) 추진실적

문체부는 2018년 5월에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이하 「문화비전2030」)³²을 발표하면서, 도종환 문체부장관이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사과하였다. 도종환 장관은 「문화비전2030」 발표에 앞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문화비전과 예술정책에 담았다.”라고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의 수립 취지를 밝혔다.

「문화비전2030」은 최초로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면서 완성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 비전이다. 그동안 각종 중장기 계획 수립 시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행정이 주도해왔던 사례와는 차별화된다. 더불어, 이는 지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3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85~86쪽.

32 문체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보도자료」, 2018. 5. 16

인해 떨어진 문화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있다.

2017년 12월 7일에 발표된 문화비전 기초에서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3대 가치로 하여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3대 방향으로 정했다.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현장토론회, 포럼, 지역인 집담회 등 8,000여 명이 참여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거쳐 9가지 정책의 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 등을 담아 「문화비전2030」이 만들어졌다.

표 2 「문화비전2030」 가치와 정책의제

3대 가치와 방향	정책의제
개인의 자율성 보장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성평등 문화 실현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출처: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발표 보도자료, 2018.5.16.)

‘의제2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에서는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제정을 추진하고,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며, 문화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의제5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에서는 문화 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며,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를 도입해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 기준을 장르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디지털 음원 수익구조 개선 방안 마련, 교과용 도서보상금 단계적 인상 등 저작권 수익 징수·분배 기준도 합리화해 나간다. ‘스포츠윤리센터(가칭)’를 설립해 스포츠 공정성 확립, 인권 보호, 비리 근절 등을 총괄하고, 독립기관으로서 스포츠 비리에 대해 조사·심의·징계하고, 분쟁을 조정·중재하도록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공모사업에 ‘예술다양성 지원 분야’를 신설해 새로운 분야와 비주류 예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의제6 지역문화 분권실현’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 등이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

고 사업을 요청할 수 있는 '주민참여 문화예산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형 지역문화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은 정부 주도의 기존 중장기 계획과 달리 예술계와 정부가 함께 구상하는 숙의형·개방형 계획으로 마련됐다. 160여 회의 분야별·장르별·지역별 토론회·간담회를 개최와 2017년 10월부터 민관 협치 구현을 위한 새 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정책방향과 과제를 발굴하였다.

향후 5년간의 예술 정책 기본방향으로 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지원체계의 혁신, ② 예술의 자유, 인권 등 예술 참여 주체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 ③ 지역 분권 및 수평적 협치 체계로 전환, ④ 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 및 미래지향적 예술생태계 구축을 설정하였다.

다. 국가 홍보기능 혁신 및 조직 분리 검토

1) 과제

국정 홍보 정책(사업)의 패러다임이 국가 기관의 일방적인 홍보구조를 극복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협치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국정홍보 정책(사업)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블랙리스트 범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낡은 국가주의 패러다임 구조에서 진행된 국정 홍보(공보) 조직은 국민 소통보다는 정권의 일방적인 홍보, 홍보사업의 이권화 등을 반복해 왔다.

표현의 자유, 문화 다양성을 핵심가치로 삼아야 하는 문체부가 내부에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국정홍보 조직을 두는 것은 종속적인 관계를 유발해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문체부와 국정 홍보기능을 조직구조상 분리 또는 전면 혁신함으로써, 문체부가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문화적 가치와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문체부 조직에서 국민소통실을 분리(전면 혁신)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국정 홍보 조직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협치 기반 마련 등을 중심으로 방향성을 재정립하여 추진한다.³³

2) 추진실적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폐지하여 민정수석-교문수석-문체부로 이어졌던 블랙리스트 실행의 중간 고리를 삭제하였다. 그러나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 업무는 그대로 두었다. 문체부는 국정홍보기능 혁신 및 조직분리 과제는 문화정책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범정부조직 개

3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87쪽.

편 논의 사항으로 국정운영 전반의 종합적 시각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체부 차원에서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문체부 조직 개혁을 통한 소속기관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

1) 과제 개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공공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예술인들을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문체부 내의 예술지원과와 소속기관 사이의 위계적이고 비효율적인 직렬구조를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이 같은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와 같은 문체부 내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³⁴

이들 부서가 담당하던 예술정책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법적으로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는 예술현장 중심의 합의제 위원회인 ‘국가예술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전담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된 문체부와 소속기관 사이의 위계적이고 비효율적인 직렬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문체부 스스로 소속기관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정구조 혁신 및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 담당부서들이 소속기관을 통해 단위별 사업을 지시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위계적인 행정구조와 문화를 개혁하여 소속기관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지역 간, 부처 간, 국가 간 문화정책 기획조정 능력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모색한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지원 사업 및 심의기능은 소속기관에 통합적으로 일임하고, 문체부는 통합적 정책기능에 집중한다. 제도, 성과평가, 예술가 권익보호, 시장분석, 연구 등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예술계 주요 정책 이해관계자 간 협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산편성에 따른 지원사업의 집행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 및 유관기관·단체에서 주도하고, 문체부는 장르별 특성에 따른 제도 개선 요구를 지원한다. 문체부-예술위 및 문체부-현장 등 중층적 협치 구조를 확보한다.³⁵

문체부 조직 개혁을 통한 소속기관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의 세부과제로는 4가지가 제안되었다.

34 「진상조사위 “문체부 예술정책기능 분리해 독립기관에 넘겨야”, <연합뉴스>, 2018. 4. 17.
<<https://www.yna.co.kr/view/AKR20180417061100005>>(검색일 : 2022. 6. 29.)

3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87~89쪽.

- 첫째, 문체부 조직 기능+장르 체계로 개편
- 둘째, 국공립 예술기관 기능·역할 조정
- 셋째, 문체부-예술위 성과협약 체결
- 넷째, 문화예술 지원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2) 추진 실적

가) 문체부 조직 기능+장르 체계로 개편

개편 방향으로는 심의기능은 소속기관에 일임하고, 문체부는 통합적 정책기능에 집중하여 중층적 협치 구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조직을 ‘기능+장르’ 체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문체부는 ‘예술인권익과’ 신설 및 현행 과별 직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 협의 및 문체부 직제개편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앞서 쟁점도출 연구를 2019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진행하면서 현행 법령이 반영하지 못하는 예술현장의 변화·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조직개편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하는 것이므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별도로 진행하였다. 2019년 상반기에 행안부에 직제 개편안을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

현재 공모사업 심의는 소속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정책수립과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소속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 통과 시 ‘기능(권익보호)+개별 장르’에 따른 조직체계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2021년 12월 30일 제35차 이행협치추진단회의에 보고하였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술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입법추진 특별전담반과 수차례의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예술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2021년 9월 24일에 제정되었다.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 체계를 이행할 수 있는 예술인권리보장과 신설과 전문조사관 직위 신설을 위해 2022년 9월 1일 7명으로 구성된 ‘예술인지원팀’을 신설하였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8조는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① 예술인은 국가기관 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 ② 국가기관 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또는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과 관련된 사항,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사항,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9조는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① 국가기관 등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예술지원기관에 작성을 지시하여 이를 이용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에 참여하는 자는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관련 문서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도록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종료된 심사 결과를 변경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자에게 예술지원의 포기를 강요하거나 강요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³⁶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정책과 관련한 실질적 권한이 문체부와 기재부에 있다. 예술위가 위원들의 합의제를 표방하면서도 실상 상임 위원장과 사무처 중심의 행정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독임제에 가까운 국가권력의 수직적 위계적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예술 정책 입안과 집행 전담 국가기관으로 입법, 사법, 행정 3부에 소속되지 않는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준).

36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블랙리스트 관련 문화예술 기관 제도개선 연구』, 2018. 1.

표3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제안 내용

구 분	내 용
근거	『국가예술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문체부 예술정책 기능 이관
기능	▲ 예술정책 수립 및 집행, ▲ 소위원회에서 상정된 정책 최종의결, ▲ 국립극장 등 시설과 국공립예술단체 운영 기획조정
위원 구성	예술현장의 추천/공모/호선을 통해 위원 선임(16~20명 규모) * 장르, 세대, 기능별 추천위원회를 통해 8개 소위원회에서 각각 호선된 2인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소위원회 구성	문학, 시각, 공연, 전통, 융합, 예술교육, 국제교류 등 8개의 소위 구성(7명씩 총 56명), 현장요구를 반영한 주요 사업 상정
사무기구	사무처장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장 예술인 중에 임명, 일부 간부직은 예술인으로 개방형 운영(최소 30%)
재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국가예술기금으로 전환, 재정독립구조 마련
기관 통합	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예술인복지재단 통합

예술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제도 차원으로 정립하기 위한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제안에 대해 문체부 예술정책과는 2018년 2월에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2018년 12월에 ‘아르코 혁신 TF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가 열린 이후로 더 진행된 바가 없다.³⁷ 2020년 10월 예술위 전체회의에서는 아르코 혁신TF 의제 추진 현황 검토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위원회 차원에서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문체부는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제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³⁸

첫째, 법적 위상의 문제; 헌법상 행정권은 행정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조직에서 완전히 독립된 국가기구가 예술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 『헌법』 제66조 제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정부조직에서 독립된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

둘째, 위원 구성의 문제; 예술 현장으로부터 위원 추천 및 공모 과정을 거쳐 위원 후보자 구성을 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을 하는 임명권자가 불분명하다. 방통위는 여당과 야당 추천인사, 인권위는 국회추천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 정치적 영향 소지가 있다.

37 홍태립, 「국가예술위원회 전환, 다시 논의를 시작합니다」, 〈문화정책리뷰〉, 2020. 11. 5. (<https://culture-policy-review.tistory.com/141>) (검색일: 2022. 6. 29.)

38 문체부 예술정책과,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 2018. 2. 21

- 인권위/방통위도 국회 등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함
- 셋째, 사무기구 직원 신분의 문제; 예술정책 수립(법안제출 포함)을 위해서는 직원의 공무원 전환이 필요하다.
-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권한을 민간기관에서 수행할 수 없음(舊방송위원회 직원이 민간인 신분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시 공무원으로 전환)
- 현장 예술인이 국가예술위원회 직원으로 되려면 공무원 채용 절차를 거친 임용 과정이 필요하다.
- 공무원 전환은 기존 조직인 문체부 및 예술위 직원 신분 전환 등의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조직) 및 인사혁신처(인사) 협의가 필요
- 결국 독립제 부처에서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로 바뀔 뿐, 정부가 예술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자율성 확보 문제는 상존한다.
- 넷째, 문예기금 사용 책임의 문제; 정부예산 사용에 따른 행정책임 확보를 위하여 예산편성시 엄격한 통제(기재부, 국회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국가재정법」 예술위 예산 편성(위원회 의결) → 문체부·기재부 검토 →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정부안 확정) → 국회 심의 및 최종 확정
- 결국, 국가예술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한다고 해도 문예기금 사용에 따른 예산 편성, 정부평가, 국회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방통위도 예산 편성시 기재부·국회 심의를 받고, 정부평가, 국회 국정감사 대상
- 인권위는 예산 지원기관이 아닌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기관으로, 국가예술위원회의 예술정책 수립 및 집행 기관 역할과는 구분 필요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정책 결정(재원 배분)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기관을 통한 공정한 배분이 필요하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는 ‘청와대 → 문체부 → 산하기관’으로 전달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산하기관의 자율성, 독립성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예술지원은 집행의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예술위원회위원(장) 선임방식 및 지원사업 개편, 문체부-예술위 간 협약체결 등으로 행정의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협력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나) 국공립 예술기관 기능·역할 조정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과 「새 예술 정책」 보고서에 담긴

공연예술분야의 주요 계획들을 반영하고, 두 보고서의 비전과 방향을 수렴하여 새로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특히 문화예술계에 가장 큰 이슈로 등장했던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운동’이 공연예술계에 던지는 의미와 개선과제들을 반영하여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블랙리스트와 미투운동으로 인해 고통 받은 공연예술인들이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방안들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담고자 하였다.³⁹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⁴⁰

첫째, 공연예술인의 위상과 권리보장; 공연예술지원 중장기계획은 그동안 공연예술 인프라, 지원체계, 공연콘텐츠 개발 및 유통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온 반면, 공연예술인 자체에 대한 관심과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최근 예술인들의 생활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운동을 거치면서 공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문제가 문화정책의 중요한 해결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공연예술인들의 창작의 권리, 표현의 자유, 공정한 활동의 보장, 처우 개선, 재교육 등의 문제들도 공연예술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둘째, 지원체계의 혁신;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지원체계를 혁신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원체계란 공모 지원사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예술 콘텐츠들이 극장과 무대에서 관객과 만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과정의 지원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체계의 혁신은 지원 법 제도의 혁신, 지원사업의 혁신, 지원 대상과 방법의 혁신, 지원 정보의 혁신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셋째, 대안적인 공연 생태계 조성; 공연생태계는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공연예술 환경 등의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공연예술의 트렌드, 콘텐츠, 시장, 인력, 관객개발 등에서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공연예술기본계획의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다.

- (정책방향 설정)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18. 11~’19. 7)
- 공연예술 기본계획 수립 준비포럼(’19. 7), 전문가 자문회의(’21. 2)
- (TF 구성 및 계획안 마련) 문체부·공공기관 TF 구성, 기본계획 초안 마련(’21. 2)
- (현장 의견수렴) 협·단체, 종사자, 지자체, 국립단체 대상 의견수렴 (’21. 3. 12/ 3. 18)

39 이동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방향과 전략」,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포럼〉 발제자료집』, 2019. 7. 10.

40 이동연,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의 방향과 전략」,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포럼〉 발제자료집』, 2019. 7. 10. 5~7쪽 인용

- (장관주재 보고회) 내부 보고회 개최 ('21. 3)
- (공청회 및 의견조회) 부내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21. 6~7)

다) 문체부-예술위 성과협약 체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예술지원의 성과를 무리하게 계량화하지 않고, 질적인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예술분야 평가지표 개발 등 별도의 성과 평가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⁴¹ 문체부는 가치 지향적 평가지표 개발을 검토하고 예술위는 2019년에 성과평가총괄부서에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평가지표의 경우 공통지표 외에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관들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규정(문체부 훈령)에 따른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였다.

예술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대상 기관에서 예술위와 영진위를 제외할 것을 권고('18)함에 따라, 기재부와 협의하여 2019년 1월에 공공기관 유형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예술위는 기재부 공공기관 평가를 받지 않게 되었다. 현재 예술위는 문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및 단체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예술위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개입 소지를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문체부와 예술위 간 성과협약 체결 및 가치 지향적인 성과 체계 마련을 권고하였다. 새 예술 정책을 발표하면서 문체부와 예술위는 협약을 체결하여 정책방향과 성과를 공유하여 긴밀히 협력, 독립성 보장하면서 책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문체부 새 예술 정책

문체부와 예술위는 협약을 체결하여 기능과 역할을 명문화하고, 정책방향과 성과를 공유하여 긴밀히 협력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파트 내 명시)

4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89쪽.

아르코혁신TF 23대 혁신의제

단기적으로 위원장 3년 임기 동안 예술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 장관과의 자율운영협약서를 체결하고, 문체부와의 역할정립을 마련하여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을 제도화함
(혁신의제 7번 문체부-예술위 간 수평적 협력관계 제도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의 모든 공적 지원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 내에서 이루어짐을 재확인하는 문체부-예술위 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을 2021년 3월 10일에 체결하였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은 ① 문체부-예술위는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에 최선을 다하며, ② 예술위는 예술현장을 대표하여 정책제안을 하며, 문체부는 검토하여야 하고, ③ 문체부는 기금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예술위가 기금을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면서, ④ 예술위는 법령에 근거한 자율과 책임 원칙 내에서 문예기금을 운용하고, ⑤ 문체부-예술위가 수립, 집행하는 사업은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문화예술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현장에 대한 지원을 하여왔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의 차이나 사회적 참사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을 이유로 실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겪으며 예술현장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본 선언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가 예술정책의 실체이자 기본 원칙이며 독립제 진흥원을 합의제 위원회로 전환한 기본 정신임을 되새기면서, 문화예술지원에서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예술의 가치가 특정한 이해관계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현장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언제나 문화예술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정책제안을 검토하여 회신해

야 한다. 문화예술 정책제안 및 검토 결과는 필요할 경우 양 기관이 협의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심의 결정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적 여건을 조성한다.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정책 방향에 따라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법령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자율과 책임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심의 과정에 특정한 이해관계의 간섭이나 영향을 미치려는 일체의 접촉과 시도를 차단하고,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외부에 이를 알려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립·집행하는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은 예술표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도 예술현장과의 소통을 통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 간의 전체회의는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본 선언문의 효력은 양 기관의 기관장이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중도 퇴임하는 경우에도 유지되며 언제든지 본 선언문의 기조는 후퇴될 수 없다. 이 선언문의 사본은 양 기관의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며, 양 기관은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2021년 3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 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 중 관

라) 문화예술 지원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문체부와 문체부 소속 주요 문화예술 지원기관들과의 상설적인 협의 기능이 필요하며, 지역문화재단과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활성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체부는 중앙과 지역 간 협치를 위해 2019년부터 문체부 소속 기관들 및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기관들과의 협의를 강화해 왔다. 그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위와의 협의 실적**(가) 문체부-예술위 정책워크숍**

2019년 4월 9일에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전체 및 공연분과’, ‘정책분과’, ‘시각분과’ 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문체부에서는 예술정책과·공연전통예술과·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사무관 등 11명이, 예술위는 사무처장, 각 본부장·부장, 실무자 등 17명이 참석하였다.

□ 주요 안건(안) - 공통사항

- ① 2020년 문예기금 편성 관련
 - 주요 투자방향(분야별, 장르별), 2020년 추진 주요사업 등
 - 재정 지방이양(지역대표공연예술제) 관련 대응방안 등
- ② 2020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공모 전환 추진
- ③ 예술요원제도 운영 방안 : 예산·인력 확보 및 관련 규정 개정 등
- ④ 극장 및 아르코미술관 운영체계 개편 추진경과 공유

□ 주요 안건(안) - 과(부서)별 소관사항

- ▶ 예술정책과-기획조정부
- ⑤ 문체부-예술위 자율운영협약 검토
- ▶ 공연전통예술과-공연기반부/공연창작부/국제교류부/극장운영부/예술인력개발원
- ⑥ 2019년 신규 및 주요사업 추진계획
 -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청년예술가 해외진출 지원 등
- ⑦ 탈장르, 융합 창작활동 및 관련 예술가·기획자 등 지원트랙 개발
- ⑧ 제6차 한-EU문화협력위원회(’19. 5. 한국) 개최 관련 EU 및 EU 회원국과의 공연예술 분야 사업(국제 교류 포함) 발굴
- ▶ 시각예술디자인과-시각예술부
- ⑨ 전통미술(한국화, 서예 등) 분야 지원 강화 방안
- ⑩ 건축물 미술작품 선택적 기금 활용 방안
- ⑪ 시각예술 신규 사업 발굴 등

(나) 문체부-예술위 정례협의체 운영계획 회의

2019년 9월 5일 문체부 대회의실에서 문체부-예술위 관계자 8명이 참석하여 정례협의체 운영계획

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 주요 안건

- '20년 예산편성 결과 및 '21년 예산편성 절차 개선방안 논의
- '문체부-예술위-지원기관' 간 협의체 구성
- 예술가의 집 공간 활용 방안
- 아르코 2030 비전·전략 체계 수립 관련
 - 문체부-문예위 간 자율운영협약서 체결 검토
- 문체부-문예위 사업 공유방안 개선

(다) 예술국-예술위 공동연수

2020년 6월 25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문체부(예술국)·예술위 관계자 37명이 공동연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전체 논의 안건

- 유사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한 방안 논의
 - * 긴급예산편성권한, 지원사업운영, 공연장 운영 매뉴얼 등
- 수탁사업 안정적 운영을 위한 문예기금 이관 추진 방안
 - * 문학 분야 우수문학도서보급, 도서관상주작가지원 및 예술기록원 사업 등

□ 예술정책과: 기획조정부, 정책혁신부, 문학지원부

- (문예기금) 사업 규모 확대, 소통 강화, 협약체결, 사회적 기억사업 등
 - 문예기금에 한정된 지원 경향성에서 벗어나, 전체 지원 규모 확대 필요
 - 예술국-문예위 간 긴밀한 사업 방향 논의를 위한 소통 강화 방안 모색
 - 사회적 기억 사업 추진 방안
- (문학) 문학 분야 한류 진출을 위한 지원사업 방향 모색
 - 세계적인 작가군 양성을 위한 창작 지원 강화
 - 국내 독자층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학 향유 사업 논의
 - 기존 일반회계 사업(문학나눔 도서보급사업) 문예기금으로 이관 검토
 - 코로나19 이후 문학 분야 피해 관련 향후 대응 방안

□ 공연전통예술과: 공연창작부, 공연기반부, 예술인력개발원, 국제교류부, 극장운영부

- 공연예술계 코로나19 지원 대책 사업 추진현황 점검
 - 1차 기금계획변경사업 추진현황 및 3차 추경 일자리 창출사업 준비현황 점검
 - * 청년예술가 지원, 공연예술 특성화극장 운영 지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 공연제작비 추가지원, 공연 온라인 생중계 지원,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 등
 - 코로나 19 대응 사업 진행사항 공유 및 향후 추진계획(극장 포함)
 - 코로나 이후 대학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오픈 스튜디오 조성 추진

□ 시각예술디자인과: 시각지원부

- 공공미술프로젝트와 공공예술사업 간 유사성에 따른 운영 개선방안 논의
- 전시 관람료 추진사업 세부 추진 내용 검토

(라) 문체부-예술위 워크숍

2021년 3월 10일에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문체부 장관, 문화예술정책실장, 예술정책관, 예술위 위원 12명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안건1: 제도개선 관련 현안 논의

- 예술위 자율운영 보장 공동선언 추진
- 예술계 불공정행위 공동대응체계 마련
- 성주류화·성폭력 대응 협력체계 구축
- 팝업씨어터 사건 공익제보자 민사소송 대응 관련

□ 안건2: 기금·신규사업 관련 제안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도 등 정책 제안
- 문화뉴딜 연계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사업 제안
- 문예기금 등 위원회 핵심 사안 관련 제안

(마) 문체부-예술위 공동연수회

2021년 12월 30일에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장관, 문화예술정책실장, 예술정책관, 예술위 위원 12명이 참석하여 문화예술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 **안건 논의**

-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 문화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문화예술계 안전망 필요
- 워드코로나 시대의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 <코로나19, 예술로 기록>사업 성과 확산 방안
- 2022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3월 공동연수회 논의사항 추진현황 공유(서면)

(바) 문체부-예술위 공동연수(실무워크숍)

2022년 1월 25일에 예술위 본관에서 문체부 및 예술위 사업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22년 주요사업 계획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 **주요 안건**

-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위탁운영 계획
- 노후화된 문화예술 운영시설 리모델링 계획
- 재교부사업 일반회계 및 복권기금 이관편성 계획
- 한국문화진흥(주) 경영 지배구조 개선(안)

(2) 지역 문화예술 지원기관들과의 협의 실적

(가)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임시총회 및 긴급현안 회의

2019년 6월 19일에 문체부 예술정책과(2명), 예술위원회(5명),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1명), 광역 시도(14명), 광역재단(27명),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이하 '한지협')(2명) 총 51명이 임시총회를 개최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주요내용 설명 및 국고지원사업 지방이양 방침에 따른 지역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논의 등 향후 지방이양 관련 의제 논의 창구 역할 수행을 협의하였다.

2020년 2월 19일에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1명), 예술위원회(3명), 광역재단(11명), 한지협(2명) 등 총 17명 참여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를 대비하여 관련 지역 문화예술계의 대응 현황 공유 및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다.

(나) 예술현장 의견수렴 권역별 라운드테이블

2019년 8월에서 9월까지 호남·제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수도권 권역별 라운드테이블을 진

행하였다. 예술위원회 사무처, 예술위원회 지역협력소위원회, 한지협 외 광역시도 및 문화재단 관계자, 기초문화재단 관계자, 지역별 예술단체 대표자 등이 참여하였다. 지역별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정부 자치분권 추진 계획에 따른 문화분권 관련 권역별 현안과 예술현장 의견 종합하여 콜로키움 형식으로 논의구조를 확대하였다. 지역소위 위원 및 기초 단위 관계자, 예술단체까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다) 한지협 회원기관 통합워크숍

2019년 12월 26일에 광역시도(3명), 광역문화재단(46명), 예술위원회(17명), 한지협(2명) 등 총 70명이 참석하는 통합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예술위원회 및 한지협의 지역협력 성과 공유 및 부산문화재단 기초예술진흥기금 출연 사례 발표, 정책의제/실행의제 발굴을 위한 본부장급/실무자급 분임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지역재단 출연금 확보 사례 전파, 광역시/광역도로 의제 발굴 단위를 달리하여 분권 이후의 상황에 대비 노력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라)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 관련 간단회의

2020년 6월 8일에 예술위 본관에서 예술위원회(5명), 광역문화재단(19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1명), 한지협(2명) 등 27명이 참석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를 대비하여 관련 지역 문화예술계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 권역별 정책 간단회

2020년 6월에서 7월에 수도권 · 강원권, 충청권, 호남 · 제주권, 경상권별로 예술위원회 코로나 추경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지원 사업설명과 지역 참여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을 협의하였다.

(바) 제1회 아르코 현장대토론회 공동주관

2020년 12월 16~18일에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예술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및 현장예술인 및 예술단체, 관계기관 등이 참석하여 예술위가 소위원회, TF 등을 통해 논의해온 어젠다와 쟁점들을 확인 · 공유하는 토론회 기획하여 문화예술정책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아) 지역거버넌스협력체계구축 권역별 워크숍

2020년 11월에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별로 예술위원회(12명), 광역재단(39명), 한지협(1명)

등 총 52명이 참석하는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중앙-지역 간 공연지원체계 분석을 통하여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사업 통합공모 운영방안 논의를 통해 중앙-지역 간 중복지원 해소 및 효율적인 예술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모색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자) 현장소통 소위원회 지역간담회

2021년 5~6월 2개월 간 9개 권역별로 총 9회의 지역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권역별 예술가 대상 온라인 사전신청자 및 현장 접수자, 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관계자 등 총 256명이 참여하였다. 심의제도(심의위원 구성, 유형 및 장르, 결과안내 등), 지원사업(사업설계 단계부터 공모, 교부, 사업수행, 정산, 결과환류 개선 의견), 예술생태계(활동 환경 조성, 지역자원 활용, 거버넌스 구축), 기타 의견(창작지원금, 공정계약, 기부금, 장애예술인 등)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

(차) 제2회 아르코현장대토론회 지역문화예술 세션 공동주관

2021년 12월 8~20일에 총 12개 세션을 구성하여 온라인 줌 웨비나 및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술위 임직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 TF 팀원 등, 현장 예술인 및 예술단체, 문화예술지원기관, 문화예술정책 관련 학계 등이 참여하였다. 문화분권시대 중앙-지역 협력적 거버넌스 모색을 주제로 지역간담회, 예술회의99에서 다루었던 이슈를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카) 예술회의99 시범운영

2021년 11~12월 2개월 동안 총 9회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예술인, 광역재단(지자체), 기초재단(지자체), 예술위원회, 유관기관(단체), 기획자, 협력업체, 예술대학, 기타분야의 유형 중 총 18명이 참석하였다. 지역문화 전달체계 관련 현안, 운영 주체간 사업현황 공유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무적인 협조사항,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매개를 위한 네트워크 역량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타) 공연예술분야 협력·발전 권역별 간담회

2021년 5~6월 동안 총 9회의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광역문화재단 공연예술지원사업 관계자 35명, 예술위원회 담당자 9명 등 총 44명이 참석하였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방이양 이후 우려되는 지역별 문제점 위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청취하였다.

마. 문화행정 협치 기반 조성 및 제도화

1) 과제

첫째, 문체부의 행정구조 개혁과 협치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다양한 국민, 문화예술인,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치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국가 조직범죄, 권력형 부패 등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 개혁이다. 현재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국가 문화행정을 개혁하고, ‘자율, 분권, 협치’에 기반한 문화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협치 정책의 수립과 제도화가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의 협치 행정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행정 관련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 책임’ 등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문화행정의 의무와 책임으로서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협치 보장’을 『문화기본법』을 개정하여 명시하고 협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 책임을 의무화한다.

셋째, 국가 중장기 재정 수립, 정부 기관 평가 등에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한다. 국가 단위 정책 수립 과정에 문화적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한다.

넷째, 참여와 협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한다. 평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추천시스템 도입, 평가위원 선정 과정 공개, 국민평가단 운영 및 실질적 배점 부여, 문화행정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개혁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⁴²

2) 추진실적

가)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 명시

문체부는 타법 사례, 규정 방식 등에 대한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19)를 바탕으로 『문화기본법』 개정안 마련하였다. 안민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6월 19일에 재 발의되었다.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행정의 투명성과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의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 책임” 등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한 바에 기인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행정의 마련과 집행과정에서 개인 및 단체의 참여를 확보하고, 공개와 협치의 원칙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

⁴²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89~90쪽.

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발의안에 따르면 문화정책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문화진흥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문화진흥을 위한 제도의 개선·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문화정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문화기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에 관계부처 의견조회, 문체위 전체회의 상정, 2021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어 21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나) 『문화기본법』에 정보공개 원칙 명시

이행협치추진단 제11차 회의('19. 3. 8)에서는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보공개 원칙에 관해서 문체부는 2가지 안을 제안하였다.

1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유·관리하는 문화정책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정책 관련 정보 중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알권리와 문화권 보장을 위해 문화정책 관련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여야 간의 합의 도출의 어려움과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 재발의되어 현재 계류 중이다.

다) 정책수립과정에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의무화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에서는 실행과제의 하나로 중장기 재정 수립, 정부 기관 평가 등에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보장을 통해 국가 단위 정책 수립 과정에 문화적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콘텐츠 비전('17. 12), 관광진흥 기본계획('17. 12), 2030스포츠비전('18. 3), 새 예술정책('18. 5) 등 계획 수립 단계에서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가 이루어졌다.

새 예술정책 5개년 계획('18~'22)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야별·장르별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2회), 예술지원(9회), 예술인복지(4회), 공연예술(7회), 시각예술(64회), 문학(5회), 문화예술교육(4회) 등 총 105회
- 장관 참석 :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 시각예술 분야 간담회
- 분야별·장르별 지역 순회 토론회 개최: 예술인복지(3회), 공연예술(4회), 문화예술교육(20회), 시각예술(13회) 및 문화정책포럼(4회) 등 지역의견 수렴 총 44회
- 민관협치 구현을 위한 새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TF) 구성·운영: 10개 분과 53명(예술계·학계 등 35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체부 협업)
- 분과활동 : △총괄(17회), △예술지원체계(12회), △예술표현의자유 법제화(9회), △예술인복지(13회), △공연예술(12회), △예술시장지원(6회), △장애인예술(8회), △시각예술(미술진흥 중장기계획 특별전담팀 대체), △문화예술교육(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대체), △문학(문학진흥정책위원회 대체)

라) 참여와 협치 기반 문화행정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문화행정 개선사항으로 평가에 ‘국민 참여 및 환류 강화’를 권고함에 따라 문체부는 2018년 말에 자체평가 국민참여 평가(설문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일반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성과관리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57개에 대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⁴³ 분과별 자체평가 시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효과성 평가에 반영하였다. 2019년과 2020년 말에도 문화체육관광 관련 관리과제에 대해 대국민 평가를 진행하여, 정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해당정책을 통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 향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일반국민의 평가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참여 기회와 보장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였다.

⁴³ 총 66개 관리과제 중 홍보분과 소관 9개 관리과제는 업무성격상 제외하였다.

표 4 2020년 문화체육관광 정책체감도 조사 대상 과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일련 번호
I.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① 기초 문화생활 보장	1
	② 국민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	2
	③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 기능 강화	3
	④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4
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① 지역문화 활성화	5
	② 전통문화 진흥	6
	③ 국어 발전 기반 조성 및 진흥	7
	④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 지원	8
3. 국민 체감형 문화시설 지원 및 운영을 활성화한다.		
	① 국립중앙박물관 국민행복 서비스 활성화	9
	② 국립민속박물관 민속문화 보급·선양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10
	③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열린 역사문화공간 구축	11
	④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지식정보자원 확충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	12
	⑤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13
	⑥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14
4.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를 확산한다.		
	①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15
	②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16
5. 아시아 문화예술 향유의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를 조성한다.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	17
	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18
	③ 옛 전남도청 5·18 당시로 복원	19
II.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강화	20
	②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21

성과 목표	관리과제	일련 번호
	③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22
	④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활성화 (위 쪽으로 이동)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한다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23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인재 육성	24
	③ 국립국악중고 국악인재 육성	25
	④ 국립전통예술중고 전통예술인재 육성	26
3. 전통공연예술을 활성화 한다.		
	① 국립중앙극장 공연 활성화	27
	② 국립국악원 국악진흥	28
Ⅲ. 콘텐츠산업 재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경쟁력을 견인 한다		
1. 공정한 환경에서 문화콘텐츠 창의 발현 생태계를 구축한다.		
	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29
	② 콘텐츠 금융 활성화	30
	③ 4차 산업혁명시대 융복합 콘텐츠 기반강화	31
	④ 세계 속 한류 확산과 타 산업 동반진출 지원	32
2. 핵심콘텐츠의 집중육성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강화 한다.		
	① 영화산업 및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33
	② 게임산업 육성	34
	③ 음악산업 및 만화산업 육성	35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을 도모한다.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36
	②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37
	③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조성	38
4. 미디어 산업 융복합 및 미디어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한다.		
	① 디지털 뉴미디어 경쟁력 강화	39
	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40
	③ 원천 콘텐츠로서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	41
Ⅳ.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성과 목표	관리과제	일련 번호
	① 심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42
	② 관광객 수요자 맞춤형 인프라 개선	43
2. 인바운드 관광 질적개선 및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한다.		
	① 한국형 관광콘텐츠 육성	44
	② 방한시장 경쟁력 강화	45
3.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① 관광산업 발전기반 조성	46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47
	③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48
V.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①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49
	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50
	③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51
2. 국제스포츠 역량강화로 경기력을 향상하고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52
	②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53
3. 스포츠산업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①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54
	②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기반 조성(R&D)	55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①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56
	②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57
5. 국제경기대회 사후활용 체계를 개선하여 대회 유산을 내실화한다		
	① 대회개최 이전 계획 내실화 및 국제기구 협업 강화	58

출처: 문체부, 「문화체육관광 관리과제 국민평가 조사 조사계획서」, 문체부, 2020. 11.

2020년 국민평가(설문조사) 결과 문체부 과제 전반에 대한 평가는 ‘과제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반면, ‘성과만족도’ 및 ‘국민의견 반영’은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과제 자체의 필요성은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성과 및 국민의견 반영 등의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한다.

표5. 2020년 문화체육관광 정책체감도 조사 대상 과제 만족도 평균

구 분	설문항목				총점
	국민 삶에 필요성	목표달성을 위한 내용의 적절성	추진 성과에 대한 만족도	국민의견 반영 정도	
57개 과제(평균)	65.9	63.8	61.2	60.6	62.9

출처: 문체부, 「2020 자체평가 관리과제별 국민평가(설문조사) 결과」, 문체부, 2021. 1. 4

57개 관리과제 중 우리 말, 박물관, 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시각예술, 관광여가 사회 실현, 종교문화 활동 등 특정 분야 및 수혜자 중심의 과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표6. 만족도 상위/하위 과제

구 분		설문항목				총점
		필요성	적절성	성과 만족도	국민의견 반영	
상위	1. 국립한글박물관 운영으로 한글의 가치와 문화 확산	70.0	68.6	65.1	65.4	67.3
	2.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69.7	68.1	65.3	65.0	67.1
	3.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72.4	67.7	63.2	63.9	66.8
하위	55.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62.6	61.3	59.3	59.2	60.6
	56. 쉼표가 있는 관광여가 사회 실현	65.6	61.1	57.6	58.2	60.6
	57.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 지원	57.1	58.7	55.9	55.9	56.9

출처: 문체부, 「2020 자체평가 관리과제별 국민평가(설문조사) 결과」, 문체부, 2021. 1. 4.

문체부는 부처 자체평가에서 정책효과 평가와 관련하여 관리과제별 국민평가(설문조사) 결과를 가감점 ± 2 점 이내로 반영하였다. 2021년에는 국민평가단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과제별 국민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18~'19 자체평가위원 구성·운영(임기: '18. 3~'20. 2) 시 평가위원 30명 중 여성위원을 확대하고, 교수 편중을 완화함으로써, 참여와 협치 기반 문화행정 평가 및 환류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반면 시민추천시스템 도입 권고와 평가위원 선정 과정 공개에 대한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남은 과제들

문화행정 관련 세부과제 10개 중 5개 과제는 완료, 3개 과제는 추진 중, 2개 과제는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문화행정 분야에서의 대표적인 추진성과는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수립(’18. 5), 문체부-예술위 자율운영보장 공동선언 실시(’21. 3), 문화예술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문화비전2030」, 새 예술 정책(’18. 5) 등 계획 수립 계에서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 자체평가 시 국민평가(설문조사) 도입(’18~)이라 할 것이다. 주요 문화예술 분야 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분야별·장르별 의견을 청취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표7. 문화행정 관련 대표과제와 세부과제 추진 현황

과제 완료(●), 추진 중 (○), 검토 중(△)

권고	대표과제	세부과제	완료여부
문화행정	국정운영 차원의 문화정책 정체성 확립	증장기 종합계획 수립	●
	국정 홍보기능 혁신 및 조직 분리 검토	국정 홍보 기능 분리	△
	문체부 조직 개혁을 통한 소속기관 자율성 및 전문성 확보	문체부 조직 기능+장르 체계로 개편	△
		국공립 예술기관 기능·역할 조정	○
		문체부-예술위 성과협약 체결	●
		문화예술 지원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
	문화행정 협치 기반 조성 및 제도화	문화기본법에 참여와 협치의 원칙 명시	○
		문화기본법에 정보공개 원칙 명시	○
		정책수립과정에 문화분야 전문가 참여 의무화	●
		참여와 협치 기반 문화행정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

출처: 이행협치추진단 35차 회의자료(2021. 12. 30)

문화행정 관련 제도개선 과제 중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미행의 원인을 파악하여 증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정홍보기능 분리는 정보조직개편 사항이라는 점에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제도개선위가 문체부에서 국정 홍보 기능을 분리할 것을 권고한 배경은 ‘블랙리스트 실행’과 같은 위법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국정홍보정책과 문화기본권 확대 정책은 그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44 이행협치추진단 35차 회의자료(2021. 12. 30)

따라서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부처가 국정 홍보 업무를 맡는 것이 어떤 파급효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의 의견 피력과 전문가들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요구된다.

둘째,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과제는 정부조직개편 사항으로 문체부가 단기간에 독자적으로 이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한다.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에 있어 갖는 영향과 의미를 분석하고, 관련부처를 설득하는 작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참여와 협치 원칙과 정보공개 원칙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계류될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록(’21. 6. 23)을 보면, 여야 간 이견에 대해 다음 소위원회 때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되었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문화기본법』 개정안을 재발의하여 여야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관심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노력으로 인해, 문체부는 각종 계획 수립과 평가에서 문화예술계와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2021년 이후의 문화예술 지원기관 협의회 운영 실적과 문체부 자체평가 시 국민평가 미실시 등을 볼 때, 문체부의 관련 제도 실행에 대한 관심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단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체부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절. 기관별 제도개선 이행 점검 결과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가. 기관 소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전신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¹에 근거하여 2005년에 출범하였으며, 동법 제16조²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나.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³ (요약)

1) 추진 배경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설립된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기관이자 합의제 민간기구이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실행기관으로 확인되었다. ②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블랙리스트 수행 과정에서 문화예술 지원기관으로서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③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 사업 선정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용이한 실행을 위해 정기공모에서 수시공모로, 공모 사업에서 기획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물론 기존 사업을 폐지하고 신규 사업을 신설하는 등 문화예술지원 정책 및 사업 자체를 왜곡시켜왔다. ④ 블랙리스트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국가 예술 정책 및 지원 사업 정상화가 시급하다.

1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②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요약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91~102쪽)

2) 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가) 예술 지원을 위한 합의제 민간위원회의 위상 훼손

① 합의제 민간위원회 지위와 위상이 훼손되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사무처 등 주요 구성원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순응하고 동참하였다.

나) 예술위의 자율성 · 전문성을 위협하는 행정구조

① 예술위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 ②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면, 예산 편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③ 예술위 위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무처 사업계획의 추인’으로 권한이 제한된 상황이다. ④ 문예진흥기금 고갈에 따른 불안정하고 의존적인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 장르별 대의 구조의 한계 및 현장 소통 부재

① 예술위는 장르별, 원로 중심의 위원 선임 관행이 구조화되면서 ‘장르별 대의 구조의 한계, 현장과의 소통 부재, 협회 및 단체 안배 등 현장 민원 대응 수준의 위원회 구성’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② 예술현장과의 소통 부재 등 폐쇄적인 위원회 운영이 구조화되어 있다.

라) 예술행정의 전문성 부족

① 현장 변화를 수렴하지 못하는 경직된 지원방식을 가지고 있다. ② 예술행정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 ③ 예술정책의 통합적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공급형 향유사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3) 개선방안

가) 예술 지원정책의 인식 전환과 원칙 수립

① ‘국가 주도의 진흥’에서 ‘예술가의 협치와 지원’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② ‘계량화된 기능’에서 ‘내재화된 가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③ 새로운 예술 지원체계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운영 혁신

① 독립적 예술 지원 조직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②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재정 구조의 독립성과 안정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④ 사업 운영의 개방성과 전문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⑤ 사무처 혁신을 통한 위원회 개방성 및 전문성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⑥ 소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통해 현장성 및 민주주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통한 예술정책의 자율성 · 전문성 강화

①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설립 검토 및 추진이 필요하다. ② (가칭)‘국가예술위원회’ 설립과 연계하여 주요 예술지원기관, 국립예술단체 등을 유기적으로 이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③ 법적 지위와 위상을 확보한 실질적인 합의제 위원회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④ 재정구조의 독립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⑤ ‘자율, 협치, 분권’의 가치에 기반한 책임 있는 운영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4) 조치 사항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부처	조치기한
예술 지원정책의 인식 전환과 원칙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예술 지원체계의 목표 및 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1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운영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상과 역할 재정립 : 기관명 변경, 『공공기관 운영법』 제외, 호선제 도입,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권한 이관 외 • 조직운영의 투명성 강화 : 회의 운영 공개, 연차보고서 발간, 심의제도 혁신 외 • 정 구조의 독립성과 안정성 강화 • 사업 운영의 개방성과 전문성 확보 : 사업구조 개편, 사업모니터링단 운영 외 • 예술 현장과의 협치 기반 마련 : 사무처 직위 개방, 소위원회 활성화, 참여형 사업 운영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기획재정부 • 국회 	2019.12.
(가칭)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검토 및 추진 : 국가예술위원회 설립 추진단 구성 및 단계별 사업 추진 외 • 국가예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국회 	2020.12.

다. 과제별 이행 현황 및 경과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운영혁신

가) 한국예술위원회로 기관명 변경

기관 명칭 변경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사항이고 국가예술위원회 설립과 연동된 과제여서 충분한 논의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미이행 과제로 남게 되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창작과 문화향유의 선순환 구조 마련과 통합문화이용권 등 예술위 수행 문화향유 사업 등을 고려할 때 현 기관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였다. 문화와 예술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우며, 문화향유 사업이 예술소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예술위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 위원장 호선제 도입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협의 과정('18. 5~)을 거쳐 2019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고, 문화예술진흥법도 개정('20. 6. 9.)되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법 제24조2항),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5조1항)

다) 장르별 기능별 균형적인 위원회 구성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비상임 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19. 9~11.)하였으나 최종 2배수 후보가 전원 남성으로 예술현장의 반발이 확산되었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예술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모두 3차례('20. 1. 7, '20. 1. 20, '20. 1. 30)에 걸쳐 진행하였다.

공청회 실시 이후 재공모 과정('20. 3. 20~4. 2)을 거쳐 성별, 연령, 장르 등을 고려한 균형 갖춘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7기 위원회 선임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강화되고 성별 연령별 균형과 대표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주요 위촉절차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추천위원 추천 주체 확대 : (기존)문화예술단체⁴ → (변경)문화예술단체, 개별예술인, 예술위. ② 추천위원 명단을 추천위 활동 종료⁵ 후 공개 ③ 최종후보자 추천 및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연령별 균형적 구성으로 예술위의 문화예술현장 대표성 강화. ④ 현장 중심으로 구성된 추천위 주관 면접으로 후보자 비전·역량 확인 강화가 그것이다. 다만 7기 위원회 구성 이후

4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도 추천 가능

5 추천위는 문체부 장관에게 최종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활동 종료.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이어지지 못하여 개선 사항이 제도화하지는 못하였다.

라)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권한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사항(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으로 법률 개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법률 개정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장예술인을 중심으로 외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를 공개하는 등 투명·개방적 절차를 통해 위원 선임 중에 있다.

마) 위원회 회의록 공개

알리오 경영공시 통해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바) 연차보고서 발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18. 하) → 2018년 연차보고서 작성('19. 1~7) → 발간('19. 7) 및 홈페이지 게시 완료되었다. 2019년도 연차보고서는 2020년 8월에 발간 및 누리집 게시가 완료되었고, 2020년도 연차보고서는 2021년 12월 말 발간 및 누리집 게시 예정이다.

사) 심의제도 개방성 및 전문성 강화

- ① 2018년에는 심의제도 개방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개심의제도 시범운영, 심의자료 심층검토제 시범도입, 지원 외압신고제 도입, 움부즈만 제도 적용범위 전면 확대하였다.
- ② 2019년에는 예술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원심의제도 전면 개선을 추진하였다. ㉓ 심의제도 총괄업무 수행을 위한 공정심의부 신설('19. 3) 및 지원심의제도개선 TF 운영 및 예술현장 토론회 개최('19. 7~10) ㉔ 심의전문가등록시스템 구축으로 심의 후보단 관리 체계화 ㉕ 관객평가제, 심의참관제 등 공개심의 적용사업 확대 ㉖ 심의자료 심층검토제 운영(8개 사업 시범 적용 → 49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 ③ 2020년에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심의위원회 확대 적용 등 운영방침 수립 및 중간 심의 결과 발표를 전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지원심의제도 개선 현장 라운드테이블 개최('20. 8. 25)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개편 추진하였다.
- ④ 2021년에는 현장수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운영을 하였다. ㉗ 2021년도 지원신청 접수결과 및 심의절차 사전 안내 시범 운영(2건) → 2022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전체 제도 반영('21. 12. 7) ㉘ 지원심의 운영 관련 가이드라인(6종) 및 심의양식(15종) 운영으로 통일된 심의절차, 방식 운영 ㉙ 권익위 제2021-428호 권고사항 이행 : 심의위원 후보단 정기적 현행화 진행('21.

8) 및 후보단 선정 관리 검증 강화('21. 9~10), 심의위원 제척회피 사유 구체화 및 제재사항 반영완료('21. 1. 11)하였다.

아) 문예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및 재원 운용 협치 강화

① 문예기금 안정화 : ㉠ 2019년 예산, 일반회계 500억, 체육기금 1,000억, 관광기금 500억, 복권기금 1,055억 전입 ('18. 12) ㉡ 문예기금 안정적 수입확보를 위한 관광진흥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 '18. 11) 발의 → 20대 국회 계류 및 폐기되어, 문예기금 안정화를 위한 법제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타 기금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 2020년 예산, 일반회계 210억, 체육기금 1,000억, 관광기금 500억, 복권기금 1,223억 전입 (총 2,933억 원) ㉣ 2021년 전입금 2,815억 ㉤ 2022년 전입금 3,009억 원. ② 재원 운용 협치 강화를 위한 과제는 추진되지 못하였다.

자) 단순 수탁형 사업 정비

국고 수탁 사업 (여가친화기업인증, 인문정신문화온라인서비스 등) 타기관 이관, 단순 수탁형 사업 정비가 이루어졌다.

차) 지원사업 체계 구조 재설계

창작지원을 우선시하되 창작과 향유가 연계되도록 지원사업 체계 구조를 재설계
예술위 중장기과제로 설정하여 재설계 검토하였다. ① 아코비전2030 실행 과제로 설정하였다. ②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혁신TF 운영('20. 7~12) 및 2022년도 창작지원사업 개선(안) 도출하여, 다년간 지원체계 확대 적용, 과정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 ③ 2021년에는 2022년 예산 편성 시 문학 및 시각예술 창작지원 사업 및 공연예술 예산을 확대하였다. 문학창작육성(15억 원), 시각창작육성(16억 원), 대한민국공연예술제지원(10억 원),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18억 원) 증액 추진하였다.

카) 예술 현장 특성 고려한 지원 사업 개편 및 사업 관련 공청회 토론회 정례화를 통한 현장 소통 강화

현장소통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예술계 의견수렴, 공모사업 운영주기 안착(사업시행 4~5개월 전 사업 설명회 및 공모 시작) 등을 시행하였다.

타) 사무처 역할 재정립

① 사무처 조직개편을 통한 사무처 역할 재정립('19. 3) - 정책혁신부, 공정심의부, 공간운영본부

신설 ② 아르코비전2030 실행을 위한 사무처 조직 재정비(' 20. 1) - 전략사업부 신설, 예술극장, 미술관 본부급으로 격상 ③ 중점 추진 과제를 반영한 조직 개편(' 21. 2) - 예술창작본부(창작사업운영 전담 조직 일원화), 전략사업본부 신설, 인력개발원 본부급 격상, 전략개발팀, 미래사업부, 지원총괄부 신설.

파) 사무처 직위 개방

① 예술위 아르코예술극장, 아르코미술관 개방형 채용 완료 ⑦ 개방형 직위 도입 및 운영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 규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의결(' 19. 8. 19) ④ 전체 위원회 의결(' 19. 11. 29) ④ 개방형직위에 대한 공모절차 실시(' 20. 1~) ④ 예술극장장, 미술관장 개방형 직위 채용 완료(' 20. 4) ② 사무처장은 기존 공모직 운용.

하)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권한 강화

① 현장예술인 중심 소위원회 구성(' 18. 5)- 현장소통, 예술정책·지원, 예술확산·지역협력, 재원확충, 미래전략 등 5개 소위원회. ② 2019년, 10개 소위로 확대 구성·운영(사업평가, 성평등예술지원, 예술가치확산, 남북 및 국제교류, 한국예술공론화 등 의제중심의 5개 소위 추가 운영) ③ 2020년에는 상설소위는 3개로 두고, 비상설 워킹그룹형 소위원회, TF형 소위원회 등으로 실질적 일하는 소위원회 구현 및 운영 시도(8월 중 상설소위원회 확정 예정) ④ 2021년에는 3개 기능적 상설 소위원회 및 현안중심의 3개 TF 구성 및 운영 중에 있다.⁶

거) 참여형 사업 운영

현장소통소위 상시 소통채널 구축 및 현장소통단 모집을 통한 현장 예술인 참여를 제도화 하고 있다.

6 (3개 소위원회) - 현장소통, 정책혁신, 성평등예술지원. (3개 TF) 코로나19 대응, 아르코예술기록원활성화, 블랙리스트개발 방지와 회복을 위한 TF.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가. 기관 소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2012년 11월 19일 설립된 기타공공기관으로, 『예술인복지법』 제1조에 따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선 권고 사항⁷

1) 추진 배경

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설립초기부터 조직의 미션과 정책적 방향성이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 채,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수직적으로 통제하며 사업과 운영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조직적 한계는 블랙리스트라는 범죄가 작동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었다. ②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2014년 현장예술인교육지원 사업의 폐지와 2014년과 2015년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선정 과정에서 문체부, 국정원, 청와대가 개입하여 블랙리스트를 작동시킨 것이 확인되었다. ③ 이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반복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체성과 정책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 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가) 기관 독립성과 자율성의 부재

① 예술인복지와 관련한 사업과 정책은 현장 예술인의 삶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서로부터 직렬화된 구조로 운영되어 기관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블랙리스트 작동구조에서도 확인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4년 두 차례 정관 개정 이후, 재단으로서 독립

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요약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103~112쪽.

성은 약화되고 다양한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결정한 사업을 집행하고 수행하는 기구로서 성격이 강해졌다.

- ② 재단의 이사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방향과 운영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회는 그 구성부터 예술현장의 대표성과 예술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2012년 창립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이사회가 13회밖에 개최되지 않고 사실상 사업 계획과 결산 승인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등, 형식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되었다.

나) 불투명한 사업관리와 조직운영 체계

- 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통합적이고 투명한 사업관리가 어려운 직제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적 일관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에 대한 조직의 안전장치가 부재하였다. 2014년 박계배 대표 취임 이후, 조직구조를 사업의 특징과 업무를 알 수 없는 구조로 개편하였는데, 이 구조에서는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관리가 어렵고, 정책 방향과 사업이 일치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감시, 견제하기 어렵다. 2018년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기존의 1~3팀 구조를 ‘창작준비지원팀’, ‘예술가치확산팀’,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의 구조로 개편하였으나, 여전히 단위사업 중심의 조직구조라는 한계를 보여, 단위사업 간 칸막이 구조로 인한 문제점은 남아 있다.
- ② 비정상적인 고용구조로 인해 조직 내 건전성을 저하시키고 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다. 2017년 1/4분기 기준, 정규직 정원 34명에 정규직 전일제 21명, 비정규직 2명이며, 정원 외 인력 총22명(파견직 21명, 용역직 1명)으로 정원 외 인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파견 직원의 위상을 고려하면, 이 조직구조는 책임 있는 사업집행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사업 수행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져도 내부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견제하기 어렵다.

다) 예술 현장과의 협치 구조 부재

- ① 예술인복지는 정책 특성상 예술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예술인의 삶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경우, 관리 차원에서 재단 지원 단위사업 참여자 네트워크 외에 별도의 현장 예술인과 소통, 협력할 수 있는 협치 구조가 부재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전달받아 수행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에 대한 대상화와 예술인복지 사업의 서비스화로 인해 현장과 괴리가 발생했다.
- ② 협치 구조의 부재로 인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이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다. 사업 수립과 집행, 심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예술인 없는 예술인복지 정책과 사업이 반복되었다. 이로 인해 예술인복지재단의 위상과 역할 자체가 모호해지고 관련 사업의 경우 정책적 방향 없이 단순 지원 사업화되었다.

3) 개선방안

가) (가칭)‘예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예술인복지재단 정체성 확립

(1) 예술인복지 정책의 통합적 수립과 관리를 위한 (가칭)‘예술인복지위원회’ 설치

① 예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과 통합적 운영을 위해서는 예술인복지정책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현장 예술가 및 전문가 중심의 협치 체계가 필요하다. ②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예술인복지와 관련된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현장예술인,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예술인복지와 관련된 의제를 설정하고 통합적 관리, 실행을 위한 협력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③ (가칭)‘예술인복지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위원회로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민간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정부의 예술인복지 정책 중장기 계획과 운영, 정부 부처 및 다양한 관련 주체간의 정책적 조율 등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④ (가칭)‘예술인복지위원회’는 예술노동에 대한 정의,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범위와 기준, 예술인복지 실행을 위한 부처간 협력, 예술현장의 불공정 문제대응에 대한 조율 등 주요 예술인복지 의제에 대한 포괄적 논의와 조율 역할을 수행한다.

(2)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예술인복지 정책 수립

① 단위 사업화되어 있는 예술인복지 정책을 통합적인 국가 정책으로 재설계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② 이를 바탕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위상과 역할, 중장기적 비전 등을 새롭게 설정하고, 필요할 경우 이에 기반을 둔 『예술인복지법』의 정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기관 구조 개편 등을 통해 주요 문화예술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을 포괄하는 지원체계와 구조를 설계한다.

나) 예술인의 참여에 기반을 둔 개방적 구조 마련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회 구조 개혁 및 활성화

① 개방적인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진 공개 추천과 선정을 진행하고, 상

임이사 선임 방식을 개선하여 현장예술인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한다. ② 이사 및 이사장 선임 과정의 공개 절차와 개방성을 확대하여 인물 중심의 선임에서 벗어나 정책과 전문성에 기초한 선임 정책 및 제도를 전면화한다. ③ 이사진 구성 시 당연직 비중을 낮추고, 장르와 정책의제를 고려한다. ④ 개별 이사가 참여하는 의제별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2) 민간 전문가,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확대 도입

①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조직 확장과 업무에 따라 임기제 개방형 직위를 확대 도입하여 예술현장과 밀착한 새로운 기관운영의 구조를 마련한다. ② 예술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예술인복지 지원 등에 대한 상담, 경력관리, 불공정 신고 대응 등의 직무에 예술인을 상담 전담 비정규 인력으로 고용하여 해당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술인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한다.

다) 정책역량 강화와 사업구조 및 운영방식 개편

(1) 정책역량 강화와 통합적 사업관리를 위한 조직구조 개편

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순한 예산지원과 사업관리 기구가 아닌 예술인복지제도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책역량과 통합적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②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전략·홍보’ 팀에서 경영전략수립을 위한 조사와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정책개발 관련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③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개발과 사업설계, 의제 발굴, 예술현장에 기반을 둔 평가체계 마련 등의 업무를 추가하여 상임이사 직속으로 (가칭) ‘정책기획팀’ 을 신설한다.

(2) 예술인의 삶과 사회적 가치 보고서 제작

①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예술인복지 사회화 전략을 구축한다. ② 현재의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결과보고 형태가 아닌 기본적인 통계/조사에 기초한 정책보고서 형태로 제작한다. ③ 연구용역 위탁 방식이 아니라 (가칭) ‘정책기획팀’ 또는 재단 자체 연구 방식으로 진행한다.

(3) 예술인복지 정책 사업에 대한 공개 제안 제도 도입

① 예술현장과 예술인의 삶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제안 제도’ 를 도입한다. ② 기존의 단순 청원 형태가 아닌 정책을 설계-집행-평가하는 과정 자체를 현장 예술인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구조로 설계한다.

(4) 투명하고 개방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운영 현황과 사업, 지원, 조직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담 인력 확보와 공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② 블랙리스트가 작동했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심의 시스템의 경우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서 심의위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③ 지원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심사위원 풀 제를 도입하고 별도의 심사시스템 관리 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라) 예술 현장에 기반을 둔 협치 구조 확대**(1) 예술인복지정책 평가회 개최**

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책, 사업, 운영 등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정기적인 평가회 개최가 필요하다. ② 평가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들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예술현장에 기반을 둔 평가와 환류 구조를 마련한다. ③ 이를 바탕으로 예술인복지 관련 민관 협치 체계를 구축한다.

(2) (가칭)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

① 현행 『예술인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지역 기반의 예술인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② 중앙정부는 예술인복지와 관련한 제도 설계와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예술인 지원과 실행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이 실행하는 방식으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 ③ 이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역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예술인복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를 구성한다. ④ 이를 통해 예술 활동증명, 창작준비금지원 등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지역 이관 및 실행체계 구축, 관련 기관 및 부처 간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단순히 예산을 지역으로 내리는 방식이 아닌 사업의 운영 전반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여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협치 주체 발굴과 강화를 위한 민간 지원 확대

① 다양한 민간 주체 발굴과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마련하여 예술인복지 협치구조를 확대하고 강화한다. ② 장기적으로는 민간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현장 지원사업의 경우 민간단체나 주체가 직접 실행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조치 사항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부처	조치기한
(가칭)예술인 복지위원회 설치와 예술인복지재단 정체성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예술인복지위원회’ 설치 - 예술인복지 증장기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2019.12.
예술인의 참여에 기반을 둔 개방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추천과 선임을 위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임원 추천위 구성 • 이사회 당연직 비율 축소, 의제별 이사 배분 • 이사가 참여하는 의제별 소위원회 구성 • 개방형 직위 도입 • 상담, 경력관리, 불공정신고대응을 위한 예술인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12.
정책역량 강화와 사업구조 및 운영방식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정책기획팀 신설 • 예술인의 삶과 사회적 가치 보고서 제작 • 예술인복지정책 공개 제안 제도 도입 • 심사위원 풀제 도입과 별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9.12.
예술현장에 기반을 둔 협치 구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복지정책 평가회 정기 개최 • (가칭)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 • 협치 주체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지역문화재단 	2018.12.

다. 과제별 이행 현황 및 경과

1) 예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예술인복지재단 정체성 확립

가) 예술인복지위원회 설치

① 2019년 7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회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산하에 예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의결하였다. ② 2019년 8월, 1기 예술인복지위원회 위원, 2020년 8월, 2기 위원을 위촉하였다. ③ 2019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예술인복지위원회 전체회의 7회, 소위원회 28회를 개최하였다. ④ 그러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예술인복지위원회를 문체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으나, 제도 개선 이행 권고 기간 내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산하에 우선 설치하고, 향후 문체부 산하 기구로 위상을 높여 가기로 하였다. ⑤ 대신 예술인복지위원회 의결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을 당연직 이사로 포함시켰다.

나) 예술인복지 증장기 계획 수립

① 2019년 12월, 증장기 계획 방향 수립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② 2020년 하반기,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사전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기본계획 의제를 설계하였다. ③ 2021년 9월까지 ‘제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에 협력한다. ④ 2022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증장기 계획(안)을 수립하였다. ⑤ 2022년 하반기, 현장의견수렴을 통하여 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한다.

2) 예술인의 참여에 기반을 둔 개방적 구조

가) 이사 추천과 선임을 위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임원 추천위 구성

① 2018년 7월, 이사회 정관을 개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⁸ ② 2018년 12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③ 2019년 3월,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어 취임하였다. ④ 2021년 12월, 차기 이사회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⑤ 2022년 3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되어 취임하였다.

나) 이사회 당연직 비율 축소, 의제별 이사 배분

① 2019년 1월,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당연직 이사를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였다. ② 당연직 이사를 배분하여 예술인복지위원회 의제별 소위원회에 배치하였다.

다) 이사가 참여하는 의제별 소위원회 구성

① 2019년 7월, 이사회에서 예술인복지위원회 내 의제별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을 의결하였다. ② 2019년 8월, 의제별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19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28회의 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

8 제8조(임원의 선임) ③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와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제8조의2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가 선임하는 외부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외부위원의 정수를 위원정수의 2분의 1로 할 수 있다.

④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라) 개방형 직위 도입

① 2018년 8월, 팀장 등 개방형 직위 도입을 위한 직제규정 개정을 완료하였다.⁹ ② 그러나 개방형 직위, 즉 계약직 운영의 기재부 반대 기조에 따라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지 못했다.¹⁰

마) 상담, 경력관리, 불공정신고대응을 위한 예술인 고용

① 2018년 12월부터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위촉을 시작하고, 교육개선 및 강사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및 강의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진행하였다. ② 공모사업 참여 시 예방교육 의무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협회·단체 등 예술인, 예비 예술인 대상 교육현장 추가 개설 및 연계 등 2019년 4월부터 강사들의 활동을 지원했으며, 1~3기 강사 총 51명을 배출했다. ③ 2018년부터 15인의 예술인을 불공정신고·상담 현장컨설턴트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정책역량 강화와 사업구조 및 운영방식 개편

가) 정책기획팀 신설

① 2018년 7월, 재단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정책기획팀 신설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2018년 12월, 정책기획팀 신설 조직개편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였다. ③ 2019년 2월, 정책기획팀을 신설하였다. ④ 정책기획팀 인원은 4명(팀장 1, 팀원 3)으로, 정책연구, 홍보 및 대외업무, 경영기획 및 평가 업무를 수행 중이다. ⑤ 추후 정책기획팀의 증원 및 역할 확대를 모색 중이다.

나) 예술인의 삶과 사회적 가치 보고서 제작

① 2019년 4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연차보고서를 예술인의 삶과 사회적 가치 보고를 포함하여 발간하였다. ② 2020년 12월, 예술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 연구를 완료하였다. ③ 2021년 12월, 「예술인의 삶과 사회적 가치 보고서」 제작을 위한 연구를 완료하였다. ④ 「예술인의 삶과 사회적 가치 보고서」와 (별책)「예술인의 사회적 삶 보고서」를 발간하고 누리집에 게재하였다.

9 제5조의2(개방형직위) 상임이사는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정원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10 현행 법·규정상 재단의 비정규직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 비정규직 운영 시 채용 2년 이내 정규직 전환 의무가 있으며, 재단의 신규인력 운영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원증원 및 예산 승인이 필요하여 개방형직위로 운영이 곤란하였다.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 제24조(비정규직 관리) 공공기관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하되 비정규직(간접고용을 포함한다)에게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정규직 전환 기준

- 상시·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 이상 계속)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대상

- 단시간(시간제)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주15시간 미만 근로) 포함)도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다) 예술인복지정책 공개 제안 제도 도입

① 2019년 6월, 예술인 복지정책 공개제안을 위한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였다. ② 단, 예술현장이 참여하는 ‘설계-집행-평가’ 구조 구축이 운영 과제인 점을 감안하여, 현장예술인과의 소통 창구의 상설화와 숙의를 통한 정책 환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 심사위원 풀제 도입과 별도 운영

①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공개추천 및 모집을 진행하였다(149개 예술협·단체 및 문화재단 대상 추천 요청). ②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후보 대상 우선순위 선정 자문회의('18. 8)를 개최하고 159명 심의위원 위촉 후보를 결정하였다(기 심의위원 69명, 신규추천 후보 90명). ③ 이 과정에서 안정적 심의 진행을 위해 기존 심의위원과 신규 심의위원 혼합 구성·운영하였으며,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 비율(40%)을 반영했다. ④ 2018년 9월,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위촉 인원을 구성하고 문체부 승인요청을 하였고, 문체부 장관 승인에 따라 심의위원 97명을 위촉하였다. ④ 예술활동증명 심의 및 심사시스템 관리 부서를 팀(예술인지원팀)으로 승격('19. 1)하고, 예술활동증명 담당 인력을 증원(2018년 6월 4명 → 2019년 3월 5명)하였다. ⑤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회 위촉 시 심의위원 풀을 활용하고 있다.

4) 예술현장에 기반을 둔 협치 구조 확대

가) 예술인복지정책 평가회 정기 개최

① 2018년 12월, 2018년 평가회를 개최하고, 평가회 결과를 2019년 사업에 반영하였다. ② 이후 2021년까지, 매년 12월 평가회를 개최해 왔다.

나)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

① 2019년 2월,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총회에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지역 연계를 위한 지역협력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② 2019년 10월,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③ 2019년 11월, 지역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④ 2021년 10월, 예술인복지 지역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는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다) 협치 주체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① 2018년 6월, 협치 주체 발굴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체육기금)을 진행하였다. ② 문화예술분야 현장전문가 성평등 교육과정과 자살예

방 생명지킴이 교육과 같은 현장예술인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기획 및 운영해 오고 있다. ③ 2018년부터 예술협단체와 연계한 불공정행위 신고접수창구(15개 단체) 및 예술인으로 구성된 현장건설턴트를 위촉하여 상담을 운영해 오고 있다. ④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점검을 위해 개최한 현장간담회('21. 3. 25)에서 나온 의견에 따라, 불공정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에 기존 협단체 외에 더 다양한 협단체 및 개인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3. 영화진흥위원회

가. 기관 소개¹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4조에 따라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기타공공기관²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영화 진흥기본 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영진위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개정·폐지, 영상 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예술영화·지역 영상문화 진흥 등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영화비디오법』 제32조에 의해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독립된 회계로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영화발전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영화 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등에 의해 구성되는데,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나.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영화진흥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³

1) 추진 배경

영화진흥위원회는 중앙부처에 종속적인 공공기관의 제한된 위상과 ‘합의제 자율행정기구’로서 위원회의 역할이 훼손됨에 따라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재하였고 블랙리스트가 실행될 수 있었다. 영화진흥위원회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민주적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① 영진위는 감사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보고서」(’17. 6)에 적시된 5건의 지원배제사업 이외에도 독립영화제작지원, 다양성영화개봉지원 사업 등에서 지원배제가 이루어졌음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②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 7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관련 판결(’18. 1. 23)을 통해 청와대와 문체부가 국정원의 업무협조를 받아 리스트를 관리하고, 이를 영진위를 통해 실행하였음이 드러났다. ③ 영진위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5.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영화』, 문화체육관광부, 2019, 181~182쪽.

2 2019년 1월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고시 변경됨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112~122쪽.

위원장과 위원 중 일부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하여 부처 실무자로부터 지원배제를 지시받았고, 영진위의 담당 실무자가 국정원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지원배제 실행에 적극 가담했음을 확인하였다. ④ 이러한 배제는 주로 심사제도를 활용해 이루어졌는데, 사전에 심사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고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 일부에게 문제영화의 키워드를 전달하거나 혹은 특정 영화, 단체 등을 지목하여 배제 시키는 방법 등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다.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사례인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축소의 경우, 심사제도 및 9인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⑤ 사업 및 정책 변경을 통한 배제 실행도 이루어졌는데, 독립영화전용관·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등에서는 특정 영화관이 사업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⑥ 블랙리스트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영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과 아울러 영진위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민주적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2) 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가) 영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부재

① 중앙부처에 종속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제한된 위상과 그에 따른 폐해가 누적되어 왔다. ② ‘합의제’ 자율행정기구로서 위원회의 역할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 장기적 비전과 철학 없는 단기 정책의 나열

① 영화 정책 중장기 비전(Vision)의 부재로 급변하는 영화 환경 속에서 영진위의 위상을 재정립하지 못했고, 진흥 사업을 파편화하고 세분화하면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를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었다. ② 문화적, 산업적 가치지표가 없는 성과 위주의 사업을 실시하면서 특정한 단체(개인)은 배제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특혜지원사업을 양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 왔다.

다)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영화행정의 구조화

① 영진위는 운영체계 전반에 공정성, 투명성 등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 원리가 부재하며 불투명한 운영을 해왔다. ②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파편화된 단체(개인)을 제한적으로 참여시키는 칸막이 협치 구조를 통해 비판적인 단체를 인위적으로 배제하여 영화계의 정보 격차 야기 및 현장의 반목을 조장했다. ③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영화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협치 체계 확립 또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현장에 대한 책무성과 같은 ‘본질적, 실질적 가치’ 보다는 효율적 기금 사업 운영 및 행정적 성과 관리라는 ‘형식적이고 관료주의적 가치’가 우선시 되는 수직적 관료주의로의 조직 성격의 변화

가 야기되었다.

라) 권한 없는 위원회의 한계

예산 편성 및 사업평가 권한이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있으므로 경영평가 위주의 사업 및 직제 양산을 초래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3) 개선방안

가) 영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① 영화인들과의 협치로 운영되는 자율적 행정 자치기구로서 위상 확립을 위해 위원장 호선제를 복원해야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2배수 위원 추천권 보장, 문체부 장관의 최종임명, 현재 법률상 존재하는 위원회 구성의 모호성(전문성과 경험의 판단기준, 성(性)과 연령의 균형)과 분야(영상산업/영상문화/노동복지 등) 및 의제(문화다양성/분권/공정환경 등) 등 구체화 된 구성 요건을 갖추고, 현장의 추천을 의무화하여 위원 선임 절차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나) 영화‘진흥’에서 영화‘가치확산’으로 정책혁신

① 영화 분야 비전을 구축하고 영화의 가치를 확산하는 기구로 위상 재정립하기 위하여 ‘영진위’에서 ‘영화위원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② 자율성, 다양성, 창조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가치와 영역을 지원해야 한다. ③ 가치 지향성, 전문성 등에 기반을 둔 정책 구조를 확립하여 영화 현장의 문제제기에 제도적 권한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④ 중장기 의제(agenda)를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조직 개편(예, 영상문화, 영상산업, 노동복지)이 필요하다.

다) 영화 행정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위한 실질적 전환

① 현장 영화인이 주요직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제를 공정환경조성센터, 정책센터부터 우선 실시한다. ② 위원회 주요 업무에 연관된 소위원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③ 영화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조와 논의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정책실명제’, ‘참여예산제’를 통한 현장 의견 반영 보완,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각 주체 참여 및 심의, 중장기 발전계획안 공청회와 사업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영화 행정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라) 위원회 권한 및 책임 강화

① 영진위가 영상전문투자조합(모태펀드)을 직접 관리하여 공정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② 예산 실링제 도입으로 부분 기금 운영 자율성을 확보한다. ③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불공정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조사권)을 확보해야 한다.

4) 조치 사항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부처	조치기한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호선제를 위한 영화비디오법 개정 • 위원의 단체추천 의무화 •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비의 최대비율 명문화 • 의제와 분야에 따른 위원 구성 명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련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기획재정부 	2019.12
영화 '진흥'에서 영화 '가치확산'으로 정책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위원회'로 명칭 변경 • 자율성, 다양성, 창조성에 기반을 둔 가치 중심 지원 • 위원회 정책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련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영화진흥위원회 	2018.12.
영화행정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위한 실질적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형 직위제 실시 • 모든 주요업무에 소위원회 신설 • 소위원장 호선제 실시 • 참여예산제 실시 • 정책실명제 실시 •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개선 • 중장기 발전계획안 공청회 의무화 • 사업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영화진흥위원회 	2019.12
위원회 권한 및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 영화계정 직접 관리 • 영화발전기금 중 영화진흥위원회 자율적 집행 실링제 도입 • 불공정 조사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련 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영화진흥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기획재정부 • 중소기업청 	2018.12

다. 과제별 이행 현황 및 경과

1) 영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호선제 복원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유형 변경(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신청('18. 10)을 변경 완료('19. 1)하였고, 위원회의 안건 논의('19. 6. 19)를 통해 호선제 복원을 의결하였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20. 6. 9)되어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폐지하였던 위원장 호선제가 복원('20. 9. 10. 시행)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21. 1. 12, '22. 1. 7) (제8조3항)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제10조1항)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10조2항)

나) 위원 선임절차 혁신

비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 현장 단체 추천을 시행('17. 7~)하여 영화 단체 등 영화 현장의 추천을 통해 성비, 의제, 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위원 선임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영진위 소위원회의 의견수렴('19. 3~4)을 하고 이행협치추진단 영화분과⁴ 회의를 개최('19. 10~12, '20. 7. 24. 4회차)하였으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영진위 위원 선임절차 혁신에 대하여 동의한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과 방식, 권한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규정, 규모 확대 등 위원 선임절차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9인 위원회는 위원 후보자 현장 단체 추천('17), 위원장 호선('21) 등 임원 선임절차 혁신 중으로, 위원추천위원회 등 기 제도 개선 시행 경과를 살펴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결하였다.

4 이행협치추진단 영화분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에서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과제 이행 현황 점검 예술현장 대토론회>를 개최('19. 5. 20)하여 제도개선 및 블랙리스트 피해자 회복과 사회적 기억 등의 후속 조치 과제를 각 기관과 해당 분야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현장 예술인들과 공유·소통·합의하여 이행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에 제안하였다. 이에 이행협치추진단은 협치와 소통, 분권을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권고의 취지대로 영화분과를 구성하여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계 현장(한국독립영화협회, 블랙리스트 피해자모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행협치추진단이 참여하여 제도개선 권고과제 검토와 후속조치 과제와 추진방식을 논의하였다('19. 10. 3, '19. 11. 14, '19. 12. 4, '20. 7. 24.)

표 1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혁신에 대한 9개 소위원회 의견수렴 발췌

의견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선임) 호선제 복원에 동의하며, 위원 성비(홀수기준) 남녀 40-50% 명문화 제안 ○ (위원구성) 직업분야 이외의 '정책', '지역' 등 카테고리 다양화 필요. 세대 대표성(세대별/연령별) 명문화 및 다양한 연령층, 쿼터, 이주민 등을 포괄하도록 위원 구성인원 확대(11명 이상) 필요 	한국영화성평등 소위원회
<p>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현행 임명제 및 현행 위원 수 (9명 이내) 유지</p>	영화정책자문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호선제 찬성 ○ 단체 추천, 특정 성비의 최대비율 명문화 찬성(최대5명) 	독립예술영화인정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인 위원회 방식이 이대로 존속되어도 좋은지를 먼저 제고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임방식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위원회체계의 전면적인 검토 필요 ○ 호선제 방식에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원을 2인으로 확대(독립영화계 의견) -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호선제로 자율성은 확대되겠지만 예산관련사항 등은 독립에 역행 우려 - 호선 시 각 위원이 이미지만을 가지고 호선하는 문제 - 임추위는 악용될 소지가 있어 불필요 ○ 블랙리스트 제도개선권고안의 내용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판단 요망 ○ 직능단체 중심의 위원 추천은 이해관계가 있어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능 대표로서의 위원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정책 등) 필요 - 영진위 정책방향, 사업비중, 지역할당요구 등에 따른 위원 구성비 조정 필요 ○ 위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규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배분 권한 부여 여부 등 	지역영화문화진흥 소위원회
<p>기술분야 등 영화분야의 세분화 및 매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문별 대표할 수 있도록 위원회 규모 확대 필요</p>	영화기술 소위원회
<p>위원장 호선제 찬성</p>	남북영화교류 특별위원회
<p>별도 의견 없음</p>	독립예술영화지원 소위원회
<p>별도 의견 없음</p>	비디오산업진흥 소위원회
<p>별도 의견 없음</p>	공정환경조성 특별위원회

2) 영화 '진흥'에서 영화 '가치 확산'으로 정책혁신

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위원회로 전환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위원회'로의 기관명 변경과 관련하여 영화계 의견을 수렴('19. 4~ 6)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그 결과('19. 6. 19) 찬반 의견이 비등하여 기관명 변경을 보류하기로 하였다.⁵

표 2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위원회'(한국영화위원회)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소위원회 의견 발취

	의 건	비 고
동 의	'한국영화위원회'를 추천하며 동의	한국영화성평등 소위원회
	'한국영화위원회'를 추천하며 동의	남북영화교류 특별위원회
	'한국영화위원회'를 추천하며 동의	영화정책자문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구축과 영화 가치 확산에 실제적인 기획 예산(안) 계획 필요 ■ 매체 변화에 따라서 '영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영화라는 명칭 안에 중점을 두고 영화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적 비전 제시 ■ 영화비디오법 개정 시 '비디오물' 단어 사용에 대한 논의 필요 ■ 영화비디오법에서 산업과 진흥에 관한 비중이 높기때문에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 역할 변화 필요(협소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영상, 플랫폼 문제, 방송과의 관계를 정리(확장)한 공공적 기능 강화) 	독립예술영화 지원소위원회
동의	독립예술영화 인정소위원회	
반 대 · 기 타 의 건	진흥'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없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 현재 명칭 유지가 필요함.	비디오산업진흥소위원회
	기술 및 독립영화 분야 등 지원의 의미가 필요하므로 현 명칭 유지. 다만, 그럼에도 변경시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워딩 고민 필요.	영화기술 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진흥'이라는 단어를 뺄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 '진흥'이라는 명칭에는 정부가 공공부문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음. '영화위원회'는 지원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음. ■ '영화위원회'라는 명칭은 기존의 명칭에서 '진흥'을 제외시킴으로써 마치 한국영화산업의 진흥이 이미 이루어졌고, 더 이상 진흥이 필요없는 것 같은 인상을 줌. 영화발전기금 징수 연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명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공정환경조성 특별위원회

5 9개 소위원회 동의 5, 반대 4. 9인 위원 의견 동의 4, 반대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변경 및 선임방식에 대한 공론의 장을 위원회가 마련할 것을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변경이 왜 필요한지 선 비전제시 후 명칭변경 ▪ 20년간 지속되어온 '위원회'의 명칭에 대한 재평가 및 전환 필요 ▪ 별도의 공론화 장 마련 필요 ○ 온라인 등 유통환경 변화추세에 따라 '영상' 개념 포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예술위원회, 국가미디어위원회 등 큰 프레임의 전환에 반해 영진위는 영화로 한정, 고립되고 위축되는 느낌 ▪ 해외 영화진흥기구에 비해 영진위는 폐쇄적이며 사업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 ▪ 영화의 고유한 가치와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어필 필요 	지역영화문화 진흥소위원회
--	------------------

나) 자율성, 다양성, 창조성에 기반을 둔 가치 중심 지원

(1) 가치 중심의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 예산 및 사업, 지표개발 추진

① 다양성/창조성 기반의 조직개편('18. 4)을 위해 독립예술영화지원팀, 영화문화교육팀을 신설하였다. ② 독립예술영화 제작 강화 및 유통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을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46.8억 원 증액하였고, 특히 유통배급 종합지원을 위해 20억 원을 신규 배정(종합지원센터 신설 및 비즈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하였고 영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청소년 영화교육 사업 신설('19) 및 시범학교 운영('20. 2개교) 등을 지원(2억원)하였다. ③ 「독립예술영화의 사회적 가치 지표개발 기초연구」('20. 7)를 추진하였다.

(2) 위원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본부 신설 및 박사급 연구인력 운용

① 영화정책연구원 위상을 본부급으로 격상 완료하였고 원장 외부공모('18. 4)를 추진하였다. ② 내부 조직으로 정책사업본부를 신설,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역량 제고 지원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20. 3) ③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2020년 1인, 2021년부터 2인의 박사급 전문연구인력 운용에 합의('20. 6)했다. ④ 박사급 전문연구인력을 채용('21. 7)하였다.

3) 영화행정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위한 실질적 전환

가) 개방형 직위제 관련 규정완비 및 실시

① 「센터장 임기 및 임용절차 정부 개방형직위제 권고안」을 준용하여 「공정환경조성센터 운영규정」을 제정('18. 10. 8)하고 ② 민간전문가를 공정환경조성센터장으로 채용하였다.('18. 12. 1) ③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규정」을 개정('18. 12. 24)하고 ④ 민간전문가를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으로 채용

(' 19. 8. 1)하였다. ⑤ 직제규정 개정(민간전문가 임명 가능 직위 적시)을 추진(' 20. 2. 27)하였다.

나) 소위원회 확대

위원회 주요 업무에 관련하여 소위원회를 배치를 완료(' 18. 7)하였다. 현재는 공정환경조성, 한국 영화성평등, 독립예술영화지원, 독립예술영화인정, 지역영화문화진흥, 사회적가치경영, 비디오산업진흥, 영화기술, 영화인권리증진, 애니메이션 10개의 소위원회를 운영중이다. 모든 소위원회는 호선제 방식으로 소위원장을 선출(' 18. 7~)하고 있다.

다) 참여예산제

영화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국민참여를 통한 재정 운영위 투명성, 예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 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사업 국민참여제안」을 도입·실시하여 의견수렴 채널을 확장하고자 한다. 2018년에는 예산편성 시, 주요 영화단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했고 2019년부터는 주요 단체 외 「영화진흥사업 국민참여제안」 제도를 도입·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을 확장하여 운영 중이다. 「영화발전기금 관리운용규정」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국민참여제안 제도 운영을 명문화 하였다.

2023년 KOFIC 국민참여예산 공모 안내

「2023년 KOFIC 국민참여예산」공모 안내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에서 이겨내자! 한국영화!

KOFIC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영화진흥사업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내년도 예산반영을 위한 제안을
2022년 1월 19일에서 2월 4일까지 접수 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안대상) 영화 관련 필요 사업
-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참여방법)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공지사항 확인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koficplan@kofic.or.kr)
- (접수기간) 2022년 1월 19일(수) ~ 2월 4일(금) 18:00 마감
- (제출서류) ① KOFIC 국민참여예산 신청서 1부
*한글파일(hwp) 원본 1부, 서명 날인된 스캔본(jpg, pdf, png) 1부
*전자서명 가능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명 날인된 스캔본(jpg, pdf, png) 1부
*전자서명 가능
- (제안선정) 제안사업이 선정될 경우 사업숙성 과정을 거쳐 관련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예산안에 반영 추진
- (문의처) 기획예산팀 정하선 대리(t.051-720-4837)

※ 본 제도를 통해 선정된 제안사업이라도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실제 사업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라) 정책실명제

매년 12월 혹은 위원 임기만료 전 최종 회의 시 주요 사업·정책별 발의자를 회의록에 게재, 공개하는 것으로 위원회 안건 논의 완료('19. 6. 19)를 시행하고 있다. 이행협치추진단 영화분과에서는 정책이 실현되는 시점에 정책실명제가 시행되어야 함을 권고('19. 12. 4)하였다.

마)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에 각 주체 참여 및 심의

① 영화분야 각 주체별 대표성을 가지는 위원들로 구성된 영진위 회의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중이며, 이를 기금운용심의회로 간주하고 있다.⁶ ② 매년 초 '예산 편성 TF'를 구성하면서 분야별 현장 전문가(위원 중 3인)가 참여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바) 중장기 발전계획안 공청회 의무화

① 매년 중장기 발전계획안 수립 시에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② 「2019-2021 한국영화 발전 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19. 3)하였다. ③ 영화계 현장 22개 분야 46인 전문가, 기획위원회 및 199명 정책패널, 8명의 외부 전문연구원이 참여하는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추진단'⁷('20. 9~)을 추진하여, <현안인식포럼>('20. 11), <정책과제포럼>('21. 2) 등 공개 세미나 개최를 통해 단계별 의견을 수렴을 하고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 2022」를 발표('21. 10)하였다.

사) 사업평가 결과 공개 의무화

① 평가결과 자체공시 의무화를 위한 경영공시 지침 개정을 완료('16. 7. 29)하고 ② 세부사업별 평가를 외부에 공개 완료하였다(자체공시). ③ 자체 사업평가 체계를 신규도입('20. 7)하여 자체 사업평가(사업수행군) 외부공개의 의무화를 명시하고 자체공시를 완료('21. 6. 30)하였다.

4) 위원회 권한 및 책임 강화

가) 모태펀드 직접 관리

① 모태펀드 영화계정 운영에 영화계 현안이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모태펀드 탈퇴는 탈퇴 시 출자금 회수불가, 감사원 지적사항 등의 추진상의 애로점이 있다.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가재정법 제74조 및 영진위 정관 제12조

7 '포스트코로나 영화정책추진단'은 △영화계 21개 각 분야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기획위원회' △전업 영화인, 예비영화인, 관객 등이 참여하는 '영화정책패널' △실무와 정책보고서 집필을 담당하는 '추진TF'로 구성하고 있다.

② 이행협치추진단 영화분과는 이를 감안하여 영진위에서 전문가들과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과제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협의하였다.(’19. 10~12/ 3회차) ③ 이에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심의회 외부위원(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19, 모태 3명 : 외부 4명→ ’20~, 모태 2명 : 외부 5명)하고 ④ 메인펀드조합 투자심의회 운영 시, 외부 전문가 활용(0명→2명)을 확대하였다.

나) 예산 실링제 도입으로 기금 운영 자율성 확보

지출한도 내 자율편성이 가능한 현행 제도 하의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영화계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매년 영진위 비상임 위원 등이 참여하는 ‘예산편성 TF’와 2019년부터 ‘영화진흥사업 국민참여제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영진위와 문체부(영상콘텐츠산업과)간 예산협의 시 문체부는 영진위의 사업별 우선순위를 대부분 수용 중이다. 그러나 영진위는 현재 국가재정법 하에서 모든 기금·회계 등 재정을 관리 운용하고 있어서 예산실링제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재정시스템(예산편성안 제출(기금관리주체)→ 편성안 협의 조정(기재부)→ 대통령 승인→ 국회 심의·의결)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 헌법 제54조에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제안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제한이 없으며, 심의과정에서 타당성 검토 후에 반영할 수 있다.

다) 불공정 행위 조사 법적 권한(조사권) 확보

불공정 행위의 위반 여부 및 서면계약 미체결에 대한 문체부 장관 권한으로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예술인복지법 제6조의 4, ’19. 12. 3)

라) 영진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피해자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1) 이행협치추진단과 영화계 현장(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인)간 소통과 협력

(가) 블랙리스트 피해자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권고

정부와 기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개선 및 후속 조치 과제들에 대한 예술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① 2019년 5월 20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에서 개최한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과제 이행 현황 점검 예술현장 대토론회>에서는 국정과제 1호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의 맥락에서 문체부 및 권고 기관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미비점과 후속 조치의 미이행 문제가 공론화되었고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은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에 각 기관이 해당 예술현장과 함께 과제

이행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② 2019년 10월 16일에 개최된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문제해결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은 이 토론회에서 확인한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사 진상 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블랙리스트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방안을 제안하며 영진위가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하기를 요구했다. ③ 이행협치추진단은 영진위가 권고 과제 이행을 기관 중심의 공급 방식을 탈피하고 영화계 현장에 우선적인 권한이 있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이행과제를 검토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토록 권고하였다.

(나) 이행협치추진단 영화분과

이행협치추진단은 제도개선 권고안과 후속조치 과제에 영진위, 영화계 현장과 해당부처가 참여하여 과제 이행이 영화정책 환경의 환류 체계 구성과 영화계 현장과의 협력 프로세스 형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영화분과를 구성하였다. ①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계 현장(한국독립영화협회, 블랙리스트 피해자모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제도개선 권고과제 검토와 후속조치 과제 추진방식을 3차례에 걸쳐 논의하였다(’19. 10. 3, ’19. 11. 14, ’19. 12. 4). ② 영진위는 9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제별 추진사항을 조속히 진행하고 의견수렴 프로세스, 공청회 등등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③ 영진위는 코로나 위기 등 자체적인 사정으로 8개월을 지연했고 분과 회의에 참석하는 영화계 현장에 사정 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④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은 이를 지적하고 20년 7월 24일 4차 회의를 열어 당초 영화계 현장과 합의되었던 내용을 추진토록 협조했다. ⑤ 영화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조와 논의 프로세스를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3 이행협치추진단 영화분과 주요 논의내용 일부 발췌 (2019년 12월 4일)

구 분	논의내용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위원회로의 명칭 변경도 사실 명칭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지원체제의 변화의 관점에서 언급한 것 : 과거부터 이어진 진흥, 지원체제의 종료, 새로운 사업체제의 도입 등 ■ 본 부분은 일단 문체부에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함
영화 ‘진흥’에서 영화 ‘가치 확산’으로 정책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을 받고 심사에 따라 지원자를 결정하는 경쟁지원방식 외에 새로운 방식 고민 필요. 가령 배급 사라면 배급사의 연간 계획을 베이스로 해서 통으로 지원하고 배급사가 유통성 있게 연내기간 동안 활용하는 방법 ■ 지금은 작품 완성 후 개봉까지 전제로 하고 지원을 하는데, 가령 작품화는 안 됐더라도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면 지원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말그대로 창작지원제도, 경쟁심사가 아닌 가치심사가 되는 것 ■ 문체부 : 기재부 방침이 직접지원을 가능하면 줄이라는 것. 반면 문체부의 대다수 사업들이 직접지

	<p>원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진위뿐만 아니라 영화계 전반의 정책역량이 약화된 상태. 위원회 외에 민간영역의 정책역량을 같이 강화할 필요 ■ 영진위 정책적 전문성 강화의 핵심은 외부 전문가 유입 + 지속가능성(순환보직 제외) + 민간과의 거버넌스 ■ 현재와 같은 연구원장/공정센터장 겸직 상태에 대한 문제제기
<p>영화행정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위한 실질적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이 필요한 내부 포지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그걸 규정화할 필요 ■ 참여예산 제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안된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체크하고 알릴 필요 ■ 참여예산 본연의 취지상 단순히 단체에 공문 보내서 의견 취합하고 취사선택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역량 부족한 단체들에 관련사항을 사전에 설명할 필요 ■ 정책실명제는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실현되는 시점에 이름이 붙어야 함 ■ 기금운용심의회는 일종의 전문가 집단이 이사회를 견제하는 성격 아닌지. 그렇다면 9인위원회가 이를 겸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지 의문 ■ 의견수렴 프로세스, 공청회 등등 전반적인 진행과정에서 현장과의 접점 유지 및 확대에 총력을 두어야 할 필요
<p>위원회 권한 및 책임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태펀드는 문체부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 있다는 것 잘 인지하고 있음. 전문가들과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것부터 ■ 공정경쟁 관련 조사권 확보 문제는 공정위에서 가장 반대하고 있기도 함. 법안 내용, 취지, 20대 국회 통과 계획 등을 정리해서 공유하는 것부터

(2) 블랙리스트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향한 시행착오의 과정

(가)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과거사특위)⁸

영진위를 비롯한 영화계는 자체적으로 제도개선과 진상조사를 추진하고자 했다. ① 영화계에서는 당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권고한 제도개선 및 후속 과제를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② 영진위는 자체적으로 '과거사특위'를 구성하고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회복을 위한 조치,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③ 영진위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로부터 권고안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후 2019년 6월이 되어서야 9인 위원회에 보고했다. ④ 그런데 과거사특위의 진상조사 관련 활동은 체계적 조사

8 영진위에서는 영화계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실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영진위의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자 2018년 5월 8일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과거사특위)'를 출범하였다. 과거사특위는 영화계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실행 관련 영진위의 역할과 진상규명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영화진흥사업의 변경, 폐지, 배제 등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하여 영화진흥사업과 관련한 심사위원 구성·운영 및 심사 과정 상의 의혹 제기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 하고자 했다. 모태펀드 등 영진위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의혹제기와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파악,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규명된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 수립 등에 관한 조사와 심의·의결을 하는 것이었다. 2018년 6월 4일 조사위원 3인을 선임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문체부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최종결과보고서 중 영진위 해당사건, 직권조사 사안, 영화계 조사신청 사안 등을 조사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

시스템의 부재, 조사 관련 피해자 관점 부재, 조사방법, 공유 및 소통의 측면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 결과 과거사특위의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독자적인 조사결과로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되었다.⁹ ⑤ 2021년 3월 9일 영화진흥위원회가 개최한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사 진상 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신청인 및 피해 영화인들은 3월 27일 과거사특위의 블랙리스트 조사가 피해자를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일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누락하는 등 영진위 블랙리스트 실행을 축소·왜곡하였으며, 발표된 조사결과 보고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진술조서 등을 무단으로 발췌한 것이며, 재발방지대책도 발표하지 않는 등 결과보고서의 정당성을 이미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3월 27일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을 위한 연대 제안서’를 발표하여 영진위에 전달하였다. ⑥ 영진위는 6월 11일 공문으로 기존 과거사특위 운영과 활동 경과 보고서에 대한 부족함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였으며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백서에서 확인된 피해자를 포함한 범 영화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과거사특위와 관련된 자료는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 가능한 자료를 절차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과거사특위 활동 승계가 아닌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나)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① 9인 위원회는 2021년 제12차 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과거사특위 활동 승계가 아닌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다.¹⁰ 2020년 제20차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현 과거사특위를 개편하여 진상조사 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마무리하고, 후속조치 사항은 사무국이 영화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9인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한 사항을 수정한 것이다.

②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정하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며 한국영화 등에 대한 공정한 지원정책의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8일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특별위원회의 업무는 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 위원회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지원정책 등 제도개선 계획 수립 및 실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의 치유·회복 및 기억을 위한 활동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9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초연구」, 2021, 26~34쪽.

10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록」, 2021. 12. 29.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이다.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21. 12. 29~'22. 12. 28)이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당연직 2인) 및 민간위원 10인으로 구성되었고, 월별 약 1회 회의를 개최하며 소관 부처는 영진위 '블랙리스트제도개선TF'이다. 3월 27일에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을 위한 연대 제안서」를 발표한 영화인들은 이행협치추진단의 협조를 구했고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들은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표 4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관련 활동의 주요 경과

'17.12.15.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발족
'18.04.04.	영진위 대국민 사과와 혁신 다짐 기자회견
'18.04.11.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18.04.24.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 권고안 내부 토론회 개최
'18.05.08.	과거사특위 발족
'18.05.08.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최종 조사결과 발표
'18.07.03.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 관련 징계의뢰 대상자(14명) 송부
'18.07.12.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 관련 수사의뢰 대상자(3명) 송부
'18.07.25.	과거사특위 1차 조사대상 사건 확정 의결 * 영진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권고안 포함 사건 등
'18.10.10.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인 15명 초청 간담회 개최
'18.11.28.	과거사특위 2차 조사대상 사건 확정 의결 * 모태펀드 등
'18.12.11.	과거사특위 1차 조사대상자 확인조사 보고서 완료
'18.12.21.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징계 권고 대상자 인사위원회 개최
'18.12.27.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징계 권고 대상자(10명, 퇴직자 4명 제외) 징계 처분 (해임 1명, 정직 1명, 감봉 5명, 견책 3명) 완료
'19.03.15.	문체부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백서 발간 및 배포
'19.05.20.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에서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과제 이행 현황 점검 예술현장 대토론회 개최
'19.10.16.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문제해결 현황과 과제 토론회 개최
'20.03.16.	(공정환경조성센터 산하) 블랙리스트후속조치TF팀 신설
'20.07.24.	블랙리스트이행협치추진단 영화분과회의 개최 * 문체부 진상조사위 영진위 기관개선권고 이행과제 현황 점검
'20.09.25.	(2020년 제20차 위원회 정기회의) 과거사특위 향후 운영방안(안) 심의·의결 * 현 과거사특위를 개편하여 진상조사 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마무리하고, 후속 조치 사항은 사무국이 영화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9인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
'21.03.09.	과거사특위 활동경과보고서 발표회 개최

- '21.04.01. 블랙리스트후속조치 업무 정책연구팀 이관
- '21.04.06.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을 위한 연대 제안서 수신
(발신 : 과거사특위 활동결과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결 사건 신청인 및 피해자 일동)
- '21.05.06. (2021년 제1차 과거사특위 회의) 과거사특위 활동 자료 공개 심의의결
- '21.06.04. (2021년 제12차 위원회 정기회의) 과거사특위 향후 운영방안(안) 수정 심의·의결 * 과거사특위 활동 승계가 아닌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
- '21.06.11.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을 위한 연대 제안서에 대한 회신
- '21.08.11.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자 공청회 개최
- '21.09.16.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위한 준비단 운영
- '21.09.27. (사무국장 직속) 블랙리스트제도개선TF팀 신설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초연구」, 2021.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가. 기관 소개¹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²으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의 규정³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 7월 27일 개원하였다.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와 조사, 통계 작성,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를 지원,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전자출판의 육성, 지원, 국외진출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김기춘 외 3인 1심, 2심 형사판결문과 2017년 6월 문체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에서 2014년 9종, 2015년 13종이 선정 배제되어, 국민의 문화권과 문화 다양성이 침해되고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저해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작동된 기관으로 확인되었다.

나.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선 권고 사항⁴

1) 추진 배경

① 박근혜 정부는 출판, 도서 분야에서도 블랙리스트 범위를 시행했으며,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인쇄독서진흥과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원 배제 등이 작동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김기춘 외 3인 1심, 2심 형사판결문」과 ‘2017년 6월 문체부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세종도서-교양 및 문학부문 선정·보급 사업’에서 2014년 9종, 2015년 13종이 선정 배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③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세종도서 선정사업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 등에서도 블랙리스트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④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명단 배제 적용, 적용을 위한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4.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문학·출판』, 문화체육관광부, 2019, 382쪽.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목적)

3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요약한 것이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123~134쪽)

명분 발굴, 심사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시보고, 심사위원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배제 요청, 심사표 조작, 심사위원 회의록 허위 작성 등이 이루어졌다. ⑤ 문화체육관광부는 북스타트, 독서동아리지원, 문학나눔 등 민간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이관하는 등의 과정에서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및 잦은 사업 변경으로 출판 및 독서 관련 정책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수직적 지시전달체계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사업 추진구조가 블랙리스트 범위를 실행하는 체계로 활용되었다. 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출판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흥함으로써 국가 지식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관 제1장 총칙, 제3조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블랙리스트 범위 이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정상화,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한 조직 개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2) 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 독점과 수직적 관계

(1)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결정과 지시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사업으로 수행해야하는 수직적·위계적 구조

① 출판 관련 정책 입안, 사업 수립,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이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요구에 따라 수립된 사업을 수행하는 수직적 관계이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이의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가 블랙리스트 범위 실행의 효율적인 작동체제로 활용되었다. ③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공모사업 심사결과조차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검토를 받는 것이 익숙해질 정도로 자율성과 전문성을 상실하였다.

(2) 소속기관에 대한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와 인식을 구조화, 일상화 해온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 문화

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블랙리스트 범위를 지시하고 강요했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관료들은 소속기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행태를 정당한 행정행위라 주장한다. ② 소속기관의 권한, 자율성 등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과 태도가 부재할 정도로 문화체육관광부 구성원들의 소속기관에 대한 일방적이고 위계적인 행정문화가 구조화되어 있다.

나) 출판문화 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성 부족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개편하여 설립되었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체계를 확립하지 못함

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간행물윤리위원회라는 과거 규제 기구의 존속'과 '출판문화산업 진흥이라는 새로운 기구의 역할'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출범하여 태생적,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② 한국출판문화 전반에 대한 전문기관, 지원기관 등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 그리고 사업체계 등이 심도 깊게 고민되고 수립되지 못한 채 개별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당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인력을 승계함으로써, 규제 업무를 담당하던 실무자들이 진흥 업무에 배치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기구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반복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수용 절차가 부재하였다.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의 간행물윤리위원회 존속

① 간행물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제도 변화, 실질적인 효과와 기능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존속하고 있다. ② 현행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 지정과 관련된 최소 업무 외에는 사회적 역할이 소멸된 상황이다. ③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업무와의 연계성이 없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규제기구로서 존속해야 할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④ 출판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 표현물에 대한 규제와 등급서비스 정책 및 제도의 혁신 등을 고려하여 간행물윤리위원회 운영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 기관 운영의 민주주의와 협치 부재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및 이사 선정의 자격기준, 임면 방식 모호

① 원장과 이사의 자격, 출판인의 비율, 임면 방식 등에 대한 세부조항이 법과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⁵ ② 임원 임면의 제도적 근거가 모호한 채로 출판 경력이 없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임원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5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의3(진흥원의 임원)에서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고'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외 원장과 이사의 자격기준 없다.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파행 반복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사 결원이 발생하였는데도 진흥원은 2017년 4/4분기가 끝나갈 때까지 보선하지 않았다.⁶ 정관 제9조 제3항에서는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임기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전까지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 고유사업 부재, 세종도서 선정사업 편중 등 왜곡된 사업구조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기구로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사업 개발이 없고 단순 사업예산의 분배와 집행을 반복

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할 자체 사업 개발 예산은 부족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위탁 사업 예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②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예산은 약 450억 원 규모, 위탁사업 예산이 자체 예산의 3배로 기형적인 사업구조이다. ③ 본예산에서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예산은 65억 원에 불과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 전문기관으로서 정책 및 제도 연구·조사·기획, 유통선진화, 통계정보시스템 구축과 같은 중장기과제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 및 예산 구조이다.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 및 예산 구조 내에서 ‘세종도서 선정 지원’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① 2018년 현재에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체 예산에서 ‘세종도서 선정 지원’ 사업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2.6%에 이를 정도이다.(2014년의 경우, 55.4%) ②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세종도서 선정 지원’ 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평가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왜곡된 사업구조를 보이고 있다.

(3) 신규 위탁 사업 시행 시 기존 사업과 연계 통합 등을 통한 정책목표 설정 등 정책적 역량 및 재량권 부족 문화체육관광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단순 위탁된 사업만을 수행하는 사업 기관으로 구조화되었다.

6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위원장과 문체부 당연직 이사 2명만 존재. 사업계획 관련 의결을 할 수가 없어 2017년 1월 19일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정관에 따르면, ‘제18조 (소집)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전일인 18일 100쪽이 넘는 회의 자료를 메일링하고 이사회 개최.

3) 개선방안

가) 기관 위상 및 이사회 권한 정립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위상 재정립

① 블랙리스트 사태를 극복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위상 재정립과 자율적 권한 보장이 우선 과제이다. ②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수행 단위가 아니라 국가의 '출판문화 관련 국가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민관 협치 및 지원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의 출판문화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민관 협치 체계 활성화

①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계 사이에는 전자출판, 유통, 국제교류, 독서진흥 등 분야별로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단체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분야별·사안별 민관협의체 운영의 확대 및 상설화가 요구된다. ②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민관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 현장을 잇는 출판문화 관련 협치형 지원기관으로서의 공공성, 개방성, 전문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임원 구성 및 이사회 권한 재정립

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관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명시하여 임원 구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정관에 임원의 자격 및 이사회 구성을 명시하여 임원 구성 과정의 개방성, 전문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③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의 속기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이행하고, 이사회 외에도 주요 회의들에 대한 회의록 공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④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 개최를 정상화, 정례화하여 기관운영의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매월 1회 정기이사회 개최를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8년 4월 현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등의 사전 권고 내용에 따라 정관 일부를 개정하였다.

나) 출판문화 지원기관으로서의 운영 혁신 및 전문성 강화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개방성,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 직위 제도 도입 및 활성화

① 인적 쇄신, 기관 전문성 제고, 현장 친화적 사업집행을 위한 개방형 직위 제도의 도입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개방형 직위 5% 권고사항 시행, 이와 관련하여 예산 집행, 정관 개정 등 실행이 필요하다. ② 사무처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 제도 적용, 인사규정에 사무처장의 자격과 임명 방식 명시이 필요하다. 사무처장은 일정 기간 이상 출판 관련 종사한 자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개방형 직위로 선임할 필요가 있다. ③ 개방형 직위와 관련하여 정관에 문화체육관광부 퇴직 관료 임명 방지 조항 명시이 필요하다.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 (가칭) '출판문화연구센터' 설립

① 출판문화와 관련된 정책, 지원 사업, 제도개선 등을 중장기적이고 일상적으로 연구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②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전문성을 축적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 실태조사, 빅데이터 구축, 중장기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③ 중장기 출판문화산업 지원정책 연구, 출판현장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현안 연구과제 수행이 필요하다. ④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

(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 및 평가 관련 정보 공개

①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배정, 사업성과와 결산을 출판계와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사업성과 관리 시스템 및 대내외 평가시스템을 마련 및 공개할 필요가 있다. ② 공시 항목 중 현재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는 대내외 평가(국회지적사항, 감사원/주무부처 지적사항, 경영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지적사항,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감사 직무실적 평가결과, 이사회 회의록, 내부 감사결과) 내용을 공개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③ 정보공개에 책임 의무화, 정보공개에 관한 원칙과 범위 재설정 : 청구행위 이전에 사전 공개의 원칙 명시이 필요하다.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각종 지원 사업 선정결과 목록을 공표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송하여 검토 및 승인받는 과정 폐기

업무 협의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이 과정으로 인해 블랙리스트 범죄 발생은 물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5) 심사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① 심사위원의 확인 서명을 별지에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 작성 후 본문에 확인 서명하는 방법으로 변경, 심사위원회 회의록 임의 수정 및 허위 작성 방지가 필요하다. ② 초록·샘플 번역 지원 사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심사 결과를 심사위원에게 통보하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사위원에게 심사표를 문서 변형이 어려운 형태의 파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다) 표현의 자유 확대와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1) 간행물윤리위원회 필요성 미미

① 현재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에 집중되어 있다. ②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한 간행물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제2항), 이에 대한 최소한의 업무만이 수행되고 있다.

(2)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① 표현의 자유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표현물에 대한 국가 기관의 검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심의기관이 등급서비스 중심으로 폐지 또는 전환되었다. ②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유해매체 관련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어 왔다. ③ 이에 표현의 자유 확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기관 정체성 재정립 등을 위해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추진이 필요하다. ④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제도 보완, 법제도적 공백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추진체계 마련하여 검토 및 집행할 필요가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와 제도보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가칭)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위한 TF’ 구성하여 추진하고, 표현의 자유 확대 맥락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 제도적 보완 추진이 필요하다.

라) 사업구조 혁신 및 ‘세종도서 선정사업’ 민간위탁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정체성과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면 혁신

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정체성, 위상, 사회적 역할 등을 고려한 사업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제한적 역할과 한계 극복이 필요하다. ② 출판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출판문화 정책의 핵심 과제는 ‘출판 수요 창출 및 출판유통 선진화, 출판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미래산업으로서의 출판문화 생태계 형성’ 등이 필요하다. ③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기관의 정체성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출판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유통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민간영역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구축한 사업과 분야는 민간이관, 민간위탁 등을 통해 민관 협치 실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서울북인스티튜트’의 경우처럼, 민간 영역 활동과 경쟁하고 중복투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는 민간 영역의 자생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북인스티튜트’는 출판인들이 자체적으로 건립한 건물에서 이미 10년 동안 매년 30여 개의 과정을 개설하여 신규 출판인양성교육, 재직자 및 신규창업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3) (가칭)‘세종도서 선정사업 개선 TF’ 운영을 통해 민간위탁 과정 진행

① 세종도서는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심의 권한을 침해한 블랙리스트 실행의 대표적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수직적 관계에서 소속기관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도서의 우수성을 심의하는 사업을 국가 기관이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행정력을 동원한 선택과 배제의 위험성 상시 존재) ③ ‘세종도서 선정사업’에 대한 정책 평가 및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세종도서’는 교양, 학술 분야 우수도서 선정 보급 사업과 문학나눔 사업을 통합하여 브랜드화한 사업이고, 문학나눔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향수 사업으로 진흥원에서 운영하던 우수도서 선정 보급 사업과는 정책 목표가 다르다. 저자 및 출판사 지원, 소외지역 향수권 지원, 도서관 지원 등 복합적인 정책 목표가 도리어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⁷ ④ 국가가 우수도서를 선정하여 보급하는 사업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위계적인 권력구조 및 이에 대한 신뢰 저하로 민간위탁 요구가 높다. ⑤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세종도서 선정사업 개선 TF’를 설치하고 사업평가 및 개선안 마련, 민간위탁 등 진행이 필요하다. 현재 사업 내용에 대한 정책적 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협치형 TF 활동을 통해 민간위탁 타당성, 추진방안 등 협의할 필요가 있다.

4) 조치사항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부처	조치기한
기관 위상 및 이사회 권한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위상 재정립, 민관 협치 체계 활성화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임원 구성 및 이사회 권한 재정립 :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의 구성 요건, 이사회 개최 정례화 등을 정관 개정을 통해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9
출판문화지원기관으로서의 운영 혁신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형 직위 제도 도입 (가칭)출판문화연구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 	2018.12.

7 ‘세종도서 문학나눔 사업’은 「제1차 문학진흥 기본계획」(2017. 12. 19. 발표)에 따라, 2018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사업 이관.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및 평가 관련 정보 공개 • 사업선정 결과 문체부 보고 방식 폐기, 심사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진흥원	
표현의 자유 확대와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9.
사업구조 혁신 및 '세종도서 선정사업' 민간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과제 도출 및 사업 구조 전면 혁신 • (가칭) '세종도서 선정사업 개선 TF'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12.

다. 과제별 이행 현황 및 경과

1) 기관 위상 및 이사회 권한 정립

가)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위상 재정립, 민관 협치 체계 활성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확대 및 상설화를 시행하였다. ① 2017년('17. 2~'17. 8, 출판정책협의회 3회) ② 2018년('18. 1~'18. 10, 해외진출분과 8회/전자출판분과 3회) ③ 2020년('20. 2~'20. 6, 산업분과 6회/국제분과 4회 /독서분과 3회 등 분야별 월 1~2회 실시로 민관협치 활성화 노력 지속)

나)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임원 구성 및 이사회 권한 재정립

① 출판진흥원 위상 재정립을 위해 핵심기능 중심 조직 개편(출판유통선진화센터, 정책연구통계센터 신설 등/직제개정, '18. 5)을 통한 출판유통 부문 선진화를 하였다. ② 임원추천위원회 도입(정관 개정, '18. 4)으로 임원구성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고, 원장, 이사, 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하였다. ('18. 7 원장 임명, '18. 12 이사·감사 임명, '19. 7 감사 임명, '19. 12. 이사 임명, '21. 1, 이사 및 감사 임명) ③ 출관계 의견 반영한 이사진 구성을 하였다.(총 8명 중 출관계 5명, 서점 1명, 출판학계 1명, 당연직 1명/'17. 12~)⁸ ④ 연 12회 이사회 개최 의무화(정관개정, '18. 12) 및 매월 이사회 경영보고 도입('19. 1~)으로 기관운영의 책임성·투명성 확보 체계를 마련하였다.

8 이사진 중 인쇄업계 1명을 출판학계 인사로 보완하였다.

2) 출판문화 지원기관으로서의 운영혁신 및 전문성 강화

가) 개방형 직위 제도 도입

개방형 직위 도입(인사규정 개정, '18. 5)하여, ① 정책연구통계센터장(개방직 채용 '19. 1. 1) ② 사무처장 직위 공모 신설(인사규정 내 근거조항 마련 '20. 10. 14)하고, 사무처장 개방직 채용을 하였다.('21. 5)

나) (가칭)출판문화연구센터 설립 운영 및 평가 관련 정보 공개

① 정책연구통계센터 신설(직제개정, '18. 5)하여 정책연구, 출판통계조사, 산업동향조사 등 추진 중이다. ② 정책연구관리규칙 제정('20. 2)하여 정책연구 전문성 제고 및 연구결과물 활용 확대 등을 위한 정책연구심의회위원회 및 정책연구평가위원회 운영을 도입하였다. ③ 진흥원 운영 및 평가 관련 정보 지속 공개(홈페이지, 알리오 등)하여 정책연구과제 결과물, 사업성과 발표회 자료, 사업설명회 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 사업선정 결과 문체부 보고 방식 폐기, 심사 및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① 사업선정 결과 문체부 사전보고 절차를 없앴다. (지속실시 중) ② 감사실 신설(직제개정, '18. 6)하여, 공모지원사업 심사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심사계획 및 심사결과 등 일상감사를 도입하였다. ('18. 9) ③ 공모지원사업 심사운영지침 제정('18. 9)하여,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 구성, 심사위원 제척 및 공정심사 서약 제도 운영, 의사록 작성 의무화, 심사결과물 보존, 내·외부의 강요 및 청탁 신고제도 운영 등을 시행하였다.

3) 표현의 자유 확대와 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

가) (가칭)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

① TF 구성·운영('18~'19, 6회)하였으나, 위원회 폐지에 대한 각 기관, 단체 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문체부) 간윤 기능 존치, 표현의 자유 강화를 위한 법령조항 개정 및 위원회 명칭 변경
 (출협) 간윤폐지, 자체 자율심의위원회 구성(정부 예산지원 필요),
 (출판인회의) 간윤폐지, 심의기능 청소년보호위원회 이관
 (여성, 청소년단체) 문체부안 찬성

② 간행물윤리위원회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도출하였다.('19. 10~'20. 5) ③ 간행물윤리위원회 제도개선 TF 제7차 회의('21. 2. 24),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간윤 제도개선 TF 참여 단체를 중심으로 대안 협의를 진행하였다. ④ 간행물윤리위원회 제도개선 TF 제8차 회의('21. 6. 11), 대안별 쟁점 검토 결과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외부전문가(변호사)는 문체부 안에 동의, 출판계는 향후에 대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 표명하였다.⁹

4) 사업구조 혁신 및 '세종도서 선정사업' 민간위탁

가) 핵심 과제 도출 및 사업 구조 전면 혁신

① 핵심과제 중심 조직개편-출판유통선진화센터, 정책연구통계센터 신설(직제개정, '18. 5)하여, 출판유통정보 통합전산망 등 유통 선진화를 위한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 추진(출판유통선진화센터, '18~'21. 8), 진흥원 정책연구과제 수행 '정책연구통계센터'로 일원화('19. 2), 정책연구통계센터 연구직 신설 등 내부 연구역량 향상 방안을 추진하였다.('20. 12)

나) (가칭)'세종도서 선정사업 개선 TF' 구성 및 운영

① TF 구성·운영(4회)을 통한 민간중심의 '세종도서사업 운영위원회' 설치 합의:「세종도서사업 운영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였다.('19. 4. 10. 출판문화진흥원 이사회 의결) ② 2019년 민간(출판, 학술, 도서관, 시민단체) 중심 '세종도서사업 1기 운영위원회'(총 9회 회의 개최) 주도로 사업추진: 2019년 세종도서 사업 계획 의결('19. 5), 2019년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보급계획을 의결하였다.('19. 8) ③ 19년 세종도서 신청 출판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19. 12): 설문조사 결과를 개선방안 수립 등에 반영하였다. ④ 2019년 세종도서 사업 보고 공청회 개최하였다.('20. 1. 29): 심사기준, 심사단계 정비 등 주요개선사항, 세종도서 선정 및 보급결과 등. ⑤ 2020년 제2기 세종도서사업 운영위원회' 구성('20. 2) 및 사업 운영 중에 있다.: 2020년 세종도서 사업계획을 의결하였다.('20. 3), '20년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을 의결하였다.('20. 5) ⑥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을 실명공개하였다.('18~'21. 6. 현재) ⑦ 2021년 제3기 세종도서 사업 운영위원회 구성('21. 1) 및 운영하였다.('21. 6. 현재까지 회의 총 4회 개최): 2021년 세종도서 사업계획 의결('21. 2), 2021년 세종도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 의결하였다.('21. 5)

⁹ 출판계(대한출협)는 최초 주장한 내용(출판법에 출판계가 설립한 자율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 규정, 예산 지원)을 다시 제출하였다.(2021. 11. 2)

라. 주요 미이행 과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제도개선 과제 중 주요 미이행 과제는 ‘(가칭)간행물윤리위원회 폐지를 위한 TF 구성 및 운영’이다.

5. 한국콘텐츠진흥원

가. 기관 소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5월에 설립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콘텐츠산업에 발전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산업 진흥 총괄 기관으로 방송, 게임, 음악, 패션,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실감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산업의 성장을 위해 기획·창제작, 유통·해외진출, 기업육성, 인재양성, 연구개발 등의 지원사업과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나.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 개선 권고 사항¹

1) 추진 배경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블랙리스트의 실행 반복을 막고, 문화산업 지원기관으로서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제도개선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문화산업 지원체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2) 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가) 중앙부처에 종속된 위탁수행기관의 한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장 및 임원 임면, 예산 편성, 조직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중앙부처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율성·독립성의 한계가 뚜렷하며, 중앙부처와 위계적 관계는 상급부처의 비전문적 관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문화산업 지원체제 전반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산업 현장의 관계를 살펴보면, 콘진원의 본원 소재지 등 지리적으로 업계 현장 방문 및 소통의 한계에 부딪히는 등 대의 구조 취약성에서 비롯된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¹ 문체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요약한 것이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134~140쪽)

나) 기능통합형 조직구성 문제: 전문성 부족

‘기능통합형 거대기구’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특정 장르를 기반으로 독립 생태계를 구성하는 문화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리한 기관 통합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전문성이 약화되고, 정체성 위기가 심화되었다. 장기간에 걸친 비장르·기능적 업무 수행과 순환보직 결과, 임직원의 전문 역량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조직 구성에서 비롯된 문제는 구성원과 업무의 전문성 부족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전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다) 심사평가제도의 불공정성·비전문성 문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심의지침은 두 차례(’15. 5, ’16. 2)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2015년 5월 심의지침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직원이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라) 문화산업 행정의 비제도화 및 불합리성

문화산업 정책의 기획·심의 제반 과정이 제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정책과 사업이 ‘비제도화 된 정책 커뮤니티’(예. 임시적인 협의체 등)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 자원을 산업 현장에 다양한 방법으로 분배하지 못하고, 지원 방식의 차이점 등을 고수하였다. 가치와 감성, 창의성이 중요한 문화산업 분야에 기술 중심·시장지상주의적 정책 비전과 행정공학에 입각한 계량적 성과 지표를 장기간 운용해 온 결과, 정책과 사업이 현장 변화와 정책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곁도는 상황이다.

3) 개선방안

가) 장르 중심의 조직 개편을 통한 전문성 있는 문화산업 지원기관으로의 재탄생

사업 부서를 콘텐츠 장르 생태계 구성에 맞도록 ‘방송영상, 대중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연예매니지먼트, 대중문화예술인’ 등 7개 지원센터로 재편하고 센터장은 개방직으로 공모하며, 센터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를 위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슈별 기능통합이 필요한 부문은 ‘문화기술본부’, ‘산업정책본부’, ‘수출진흥본부’, ‘지역·협치본부’, ‘운영지원본부’ 등 직할본부를 둔다. 현행 한국콘텐츠진흥원 체제를 해체한다면, 그 대안으로는 복수의 장르별 진흥원으로 분화, 협의체 진흥기구(문화산업진흥위원회)로의 전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문화산업 지원체제의 기능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R&D, 수출지원 관련 본부를 독립적 진흥기구로 분리 추

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심사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심사위원 추천 과정의 행정적 투명성 제고하고, 심사평가 과정의 모니터링, 리뷰,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며, 심사위원 풀(pool)을 사전 공개한다. 현재와 같이 심사를 통해 소수를 선별하여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심사 평가 제도에 가중되는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지원 중심(예. 제작 지원 등)에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 지원하는 간접 지원·인프라 지원(예. 인프라 구축, 융자·마케팅·행사 지원 등) 방식으로 지원 사업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원 사업의 총량 중 일부를 쿼터 방식으로 집행하는 방안도 추진하여 문화산업 중 다양성을 확산하고, 창의성을 강화(예. 인디 쿼터, 창의성 쿼터, 신사업 쿼터, 미래쿼터 등을 일정 비율로 배정하는 방식)할 필요가 있다.

다) 협치 기반의 정책 심의 및 지원체제 구축

문화행정의 비제도성 극복을 위하여 가칭 ‘문화산업전략위원회’를 설립하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합의제 행정기구 위상을 부여하며, 해당 위원회는 문화산업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을 포함한 문화산업 전반의 정책 심의를 담당하도록 한다. 공동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민간전문가가 맡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국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장르별 민간단체 추천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장르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정책 심의를 진행하고, 위원회 규정에 따른 장르별 소위원회 위원 위촉 등으로 자율성 제고한다. 장르별 센터체제와 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장 기반의 대의 구조를 구축하고 협치 체제의 기반으로 활용한다. 산업 현장 및 민간 영역과의 실질적인 협치 운영을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영 사업 중 가능한 부분은 민간 위탁을 추진한다.

민간의 협치 역량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협치 행정은 새로운 방식의 민간 동원에 그칠 수 있으므로 교육, 연대, 위탁 등 민간 협치 역량 제고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문화콘텐츠협치지원센터’를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에 설립한다. ‘문화콘텐츠협치지원센터’는 기업협회, 대중문화예술인 조합, 단체, 기구, 대학, 소비자 단체, 모임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하고, 센터 운영도 민간에 위탁한다.

4) 조치 사항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부처	조치기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혁신위원회 운영 • 한국콘텐츠진흥원조직혁신(안)도출 • 문화산업기본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정책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6. (법개정 제외 일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 평가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제도개선위원회 운영 • 한국콘텐츠진흥원평가제도개선(안) 도출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 평가 지침 개정 • '심사평가 옴부즈맨제도' 등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8.
'문화산업전략위원회'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기본법』 개정 <연내> • 문화산업전략위원회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4
협치 지원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협치형 사업 공모 • 문화콘텐츠협치지원센터 운영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3

다. 과제별 이행 현황 및 경과

1) 장르 중심의 조직 개편을 통한 전문성 있는 문화산업 지원기관으로의 재탄생

① 2017년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 업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콘텐츠진흥원 혁신 TF가 발족·운영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7년 12월 13일에 혁신 TF가 제안한 과제를 반영한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개선 기본방향과 조직혁신안을 도출하여 발표하였다. 개선안은 사업추진체계 개선, 조직 개편, 전문성 강화, 소통 활성화, 지원사업 투명성 개선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도출되었다.

② 2018년 2월에 장르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장르 전담조직으로 게임본부, 방송본부, 대중문화본부 등 3본부를 신설하여 8본부 1국, 2단, 2실, 31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였다. 장르전담 조직 외 기능보장을 위한 개편이 2018년 12월에 있었는데, 지역콘텐츠단을 지역사업본부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조직구성은 9본부, 1국, 1단, 2실, 32팀이 되었다.

③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장르 중심으로 조직 개편하여 문화산업 지원기관으로 재탄생케 하는 과제는 2018년의 장르 중심 조직개편으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도개선 권고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체제를 해체한다면, 그 대안으로는 복수의 장르별 진흥원으로 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법률 개정이 수반된다는 점과 장르별 진흥원으로 분화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장르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전문성있는 문화산업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심사평가제도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심사평가 제도개선 TF를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였다. 2018년 3월에 심사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심사평가 제도개선 TF에서는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방안, 콘텐츠기업 부담 경감 방안(보증증권 폐지, 정산 간소화) 등을 도출하였다.

② 심사평가 제도개선(안)은 3차례에 걸쳐 수립·시행되었다. 2018년 4월부터 수립·시행된 1차 심사평가 제도 개선(안)의 내용은 심사평가위원 명단 실명공개(2018년 전면시행), 평가위원회 분업 등 전문성 기반한 평가 진행, 협의/토론방식 심사 도입 및 총평 강화, 간사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였다. 2018년 5월부터 수립·시행된 2차 심사평가 제도 개선(안)은 평가위원 후보 구성 시 영상녹화를 시행하고, 심사평가위원 검증위원회, 옴부즈만제 도입을 위한 관련규정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2018년 7월부터 수립·시행된 3차 심사평가 제도 개선(안)에서는 전문가 자격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였고, 심사평가위원 검증위원회 운영 근거규정과 공정평가 담당관(옴부즈만)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③ 심사평가 규정인 「콘텐츠지원사업 평가 및 심의 지침」은 2018년 9월 10일에 최종개정이 완료되었으며 2018년 11월에는 공정평가 담당관이라는 명칭의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되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심사평가위원 검증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풀 검증 및 전문분야 재분류가 진행되었다. 총 7회에 걸친 심사평가 검증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기존 전문가 풀 검증 및 전문분야 재분류를 완료하였고 이후 분기별 심사평가 검증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전문가 풀의 신규 등록 검증을 하였다.

④ 심사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권고한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제도개선위원회 운영, 한국콘텐츠진흥원평가제도개선(안) 도출,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 평가 지침 개정, '심사평가 옴부즈만제도' 등 도입 과제는 완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문화산업전략위원회 설립

문화산업전략위원회 구성 과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개정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직접 추진보다는 실현가능한 방식으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먼저 실감형콘텐츠진흥위원회가 2019년 4월에 출범하였다. 이 해 4월에서 9월까지 전체회의가 4회, 분과회의가 6회 개최되었다. 문화산업 전반에 걸친 위원회인 문화산업전략위원회의 설치를 위해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개정이 요구되었으므로 이보다는 문화산업과 사실상 동일 범주라 할 수 있으며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이 추진되었다.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는 2020년 12월에 구성을 완료하였다.

4) 협치 기반의 정책 심의 및 지원체제 구축

① 민간협치형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 주도 콘텐츠 플랫폼인 콘텐츠 누림터 사업, 민간협력 연구인 게임과몰입 국제공동연구, 민간 전문가 참여형 인력양성사업인 게임스쿨 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② 민간협치를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협의 네트워크’가 운영되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산업계의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대외 소통과 협치를 위한 창구로 장르별 8개, 기능별 2개로 10개의 협의체가 운영되었다. 2018년 10월에 정책 분야가 추가되어 기능별 분과가 3개로 확대되었다.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총 55회의 협의체 분과회의가 진행되었다. 2019년 9월에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공유 및 의견청취를 위한 회의가 산업 전문분야에 걸쳐 개최되었다.

③ 민간 협치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 혁신단 신설이 추진되었다. 2019년 5월부터 혁신제안 및 의견 수렴을 위한 대학생 시민참여혁신단과 지역사회공헌 및 상생,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 시민참여 혁신단을 운영하였다. 이 해 5월에 대학생 시민참여혁신단 시범운영을 완료하였고 9월에 국민체감형 혁신제안 수렴을 완료하였다. 2020년 7월에 ‘2020 민간협치형 시민참여혁신단’이 출범하였다.

④ 민간 협치를 위한 MOU가 추진되었는데 2018년부터 민간 협회·단체, 기업 등과 66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제작·유통·해외진출·공정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⑤ 민간협치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인 민간 협치형 사업 공모와 문화콘텐츠협치 지원센터 운영 공모 과제는 민간협치형 사업 추진, ‘콘텐츠산업 정책협의 네트워크’ 운영, 시민참여 혁신단 신설, 민간 협치를 위한 MOU 사업 추진으로 볼 때 달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가. 기관 소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개개인의 문화예술 향유능력 및 창의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해 2005년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연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나.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개선 권고 사항¹⁾

1) 추진 배경

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진상조사TF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및 국가정보원의 문체부에 대한 배제지시 하달, 문체부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대한 개입 및 작동 등을 통해, 시민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 사업 ‘시시콜콜’ 공모사업(2016년), ‘2016 문화파출소 조성·운영’ 사업, 2016 문화예술 명예교사 사업 ‘특별한 하루’ 등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다. 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와 구조로 인하여, 문체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여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후보자 명단을 수정하여 발송하는 등 문체부의 직접적 개입과 활동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③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본래 설립 취지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의 자율성, 전문성, 개방성 등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④ 또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블랙리스트 사태의 원인에는 문체부(문화예술교육과)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 개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 제도 현황 및 문제점

가) 문체부의 과도한 개입과 수직적인 관리체계

1 문체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요약한 것이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140~153쪽)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난 2005년 설립 이후 가파른 조직 및 사업 확장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문체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직·사업 관리가 자연스럽게 구조화되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신생 기관으로서 설립 초기부터 문체부의 사업 구조 선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직 구조 자체가 문체부의 사업 구조와 일치될 정도로 위계적·수직적 관계가 구조화된 기관이었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수직적으로 직렬화된 구조는 블랙리스트 범위가 손쉽게 작동될 수 있는 환경으로 활용되었다.

②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수직적인 구조로 인하여, 문체부의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심사에 참여하고, 심사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후보자 명단을 수정하여 발송하는 등 부당하고 부적절한 행위가 구조화되어 있었다. 또한 문체부 주무부서 사무관, 주무관의 업무 분장에 따라 부서별,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관리·승인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논의과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하될 뿐 아니라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③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관 전체가 아닌 문체부에 의해 사업별로 예산이 교부되는 구조로 인해 개별 사업은 물론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종속성이 심화되어 왔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회를 통해 전체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구조이기는 하나, 세부 사업별 예산은 담당 사무관·주무관과 진흥원 담당부서 간 협의를 통해 승인하는 사업체계로 구조화되었다.

④ 불필요한 상임이사직 신설로 인해 기관 자율성 침해, 낙하산 재취업 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불필요한 상임이사직 신설로 기관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었고, 상임이사직 자체가 '퇴직 공무원의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 재취업'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재의 상임이사직 구조는 부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로 기관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

나) 기관 운영의 정체성 상실과 협치 구조 부재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 이후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보다는 일자리의 양적 창출을 강요받아 왔다.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나 의미는 실종되고, 국가 정책의 층위에서 교육정책과 문화정책이 연계하고 통섭하며 자립적인 주체를 형성하는 교육적 가치는 사라진 채 왜곡된 일자리 사업을 반복했다. 문화예술계 일자리 창출의 주요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도구화되면서, 노동환경을 무시한 예술강사 사업의 확대, 무리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제도 도입 등 정책 왜곡과 혼란이 심화되었다. 문체부의 주도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사업의 파행, 도구화 등이 심화되면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정체성 역시 혼란을 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문화예술교

육진홍원의 사회적 협력 구조는 약화되고 문체부에 대한 종속성은 심화되었다.

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설립 이후 문체부의 사업 수행 기관으로 구조화되면서, 문화예술교육 현장 등과의 협치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기관 미션 및 사업 구조의 특성상 예술강사, 지역문화예술교육기관 등과의 일상적인 관계성과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최근까지 조직구조 자체가 문체부의 사업별 수행구조를 그대로 적용했을 정도로 조직의 정체성과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했다. 예술강사, 지역문화예술교육기관 등과의 협치형 조직구조는 물론 최소한의 협의 테이블, 상설적인 소통 체계조차 마련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 왔다.

③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 배제, 주요 협력 주체와의 협치 기반 부재 등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민주적 운영과 사회적 통제에 취약한 기관으로 구조화하였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진행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기간 동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폐쇄적인 운영, 문체부에 의한 과도한 사업 지시와 개입 등이 심화되었다.

다) 심사 제도의 개방성과 투명성 부족

① 높은 비율의 지원 사업 구조에 비해 심사 제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취약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 구조는 대다수가 민간경상보조를 통한 지원 사업(전체 사업의 약 80%) 구조이다. 민간경상보조를 통한 지원 사업의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사업별로 각기 상이한 심사 절차나 방식으로 인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차원에서도 심사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및 검토된 바 있다. 지원 사업 심사 체계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이 적극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면서, 문체부를 비롯한 외부의 개입과 압력이 수월해지고, 이러한 구조에 기반하여 블랙리스트 사건이 작동하였다.

② 심사위원 풀 제도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체계가 미흡했다. 현재 심사위원 구성과 위촉이 해당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정관 및 제 규정(위원회 운영규정)상 사업별로 담당팀장 제청에 의해 원장이 임명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으며, 위원 선발은 최종 선정위원수의 1.5배 수 이상을 1차 선정 후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선정하도록 되어있으나 해당 내용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 구조 상 다수의 자문 및 심사가 사업별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 및 심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왔고, 소수 인원이 다수 사업의 자문 및 심사에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반복했다.

③ 문체부 직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원 등의 과도한 심사 참여 관행이 있었다. 심사위원 구성은 규정 상 내·외부 인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과반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은 심사위원으로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 담당 관리자급이 참여하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블랙리스트 작동 과정에서 확인되듯이,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직원의 일상적인 심사 참여 구조는 지원 사업 선정에 있어 부당한 개입과 부적절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④ 심사제도 관련 기관 규정 대내·외 공포 및 제도화가 미흡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는 다수의 지원 사업이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제도나 지침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부분이 미흡했다. 심사 과정과 결과 전반에 대한 공개성이 부족하여 블랙리스트 사태를 비롯한 부적절한 심사 개입 및 부정행위에 취약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3) 개선방안

가) 기관 위상 재정립과 문체부의 수직적인 사업 구조 해체

(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문체부 역할의 재정립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문체부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개입,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권한 등은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다. 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2)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으로 위상 재정립

①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의 수행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민관협치형 문화예술교육 전문기관으로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 ② 국민, 문화예술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의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협치 플랫폼이자 지원기관으로 재설계하고 조직 구조를 개편한다. ③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정책의 도구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을 정상화한다.

(3)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를 포함하여 기관 간 역할 재정립

① 지역 및 수요자 중심, 기관별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한다. ② 지역중심으로 국민의 수요, 지역 내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

-지역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③ 문체부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물적, 인적, 제도적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④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원 사업 총괄, 연구 및 조사,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중심으로 전국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자율적 협치·전문 기관화를 추진한다.

(4) 운영지원 예산 구조 개편을 통해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지원 예산에 연구개발, 연수 등 기반 조성 사업 및 선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②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분산 편성된 기반 조성 및 모델 개발 사업 예산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예산으로 통합 편성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예산은 특수계층 사업 등 중앙 위탁사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단계별 분권화를 통해 지역별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③ 보조금이 총 예산의 80%에 이르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재정구조 상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유지하되, 공공기관 예산 조기교부 및 소액단위 집행의 자율성 보장, 기관운영 보조금의 경우 인건비, 경상운영비, 경상사업비 통합 지원, 보조사업 심사제도 개선을 통한 보조사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구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5) 상임이사직 폐지 또는 상임감사제도로 변경

① 기관 자율성 침해, 공공기관 낙하산 재취업 의혹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임이사직을 폐지한다. ② 상임감사제도로 변경하여 운용할 경우 감사 자격요건 강화하여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 방지를 제도화한다.

나)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협치 기반 마련

(1) 의사결정기구(이사회) 운영 정상화

① 이사회를 재정, 법률 등 영역별로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고, 조직 운영과 사업 추진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특히 외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내부감사 등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2) 조직 구조 자체에 협치 관련 상설조직 설치

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민주적인 운영, 다양한 주체의 참여 보장, 협치 기반 마련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개혁을 추진한다. 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중요한 협치 대상인 예술강사(학교문

화예술교육), 지역문화예술지원기관(지역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등과의 상설적이고 능동적인 협치 기반을 마련한다. ③ 이와 관련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조직 구조 자체에 협치 관련 상설조직을 설치, 이를 통해 조직 운영의 개방성, 투명성, 전문성 등을 강화한다. ④ 현장 중심의 토론과 정책을 생산해내고 이를 통해 외압을 견제함으로써 현장의견에 힘을 보태고, 기관의 정책과 사업운영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사업 구조 내에 참여예산제도 기반 지원 사업 구조 마련

① 최근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 구조 내에 참여예산제도 기반형 공모사업을 제도화한다. ②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구조 자체에 참여형, 협치형 구조 활성화하는 전환점을 마련한다.

(4)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

①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제도화된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하며 강력한 중앙중심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② 중앙정부 주도의 규격화된 정책 사업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할당하는 공급자 중심의 정책관점으로는 지역·계층별로 다변화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수요를 섬세하게 담아낼 수 없다. ③ 정책 도입기를 경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요가 질적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지역분권·자율형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④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의 지역 중심 추진체제로 개편한다.

(5) 협치 기반 마련을 통한 국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공교육 내 활성화·제도화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 추진

다) 지원 사업과 심사 제도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1)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사업 구조 혁신

① 2010년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점진적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관되고 있으나, 지원 방식은 예술강사 파견지원, 프로젝트 중심의 공모지원 일변도로 추진되고 있다. ② 1년 단위의 프로젝트형 공모지원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추진 과정, 교육효과 측면의 분절성을 심화시키는 한편, 사업 성과가 지역사회에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③ 기존 단년도 프로젝트 사업을 다년간 지원방식으로 확대하여 중기적 관점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의 재생산 구조를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다. ④ 중기적 관점의 다년간 지원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3년 혹은 5년 단위의 (가칭) '중기 문화예술교육재정협약' 을 근간으로 당해년도 실행예산의 다소간 편차가 발생하더라도 중기적 관점에서 사업 및 예산운영 자율성과 연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⑤ 중기적 관점의 다년간 지원제도가 신규 사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평가체계를 전문화해야 한다.

(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규정·조직·행정체계 개선을 통한 투명성 강화

① 청탁 대응을 위한 전담 부서 지정을 통해,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② 청탁 및 행동강령 등 지침 보완 및 안내 강화를 통해 외부 청탁 및 부당한 지시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특히 심사·선정 과정에서 이권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내부 신고 및 처리 절차 등 규정·서식뿐 아니라 직원의 업무프로세스(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안내한다. ④ 문제제기 또는 신고를 했을 때 직원이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와 제도 안에서 본인의 의견과 입장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내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3) 외부 신고체계 개설

① 청탁 및 부당지시와 관련하여 그동안 진흥원 내부적으로 상부 보고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되었다. ②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신고와 감시체계가 설치된다고 해도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③ 따라서 외부 청탁과 부정 지시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이 외부에 설치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4) 심사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성·전문성 확보

① 전문가 풀 DB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제고한다. ② 전문가 풀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한다. ③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내부 인력 참여 제외 제도화를 검토한다.

(5) 심사위원 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

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위원 관리를 위해 심사위원에 대한 평가 등 전문가 풀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심사위원 평가 결과는 차기년도 전문가 풀 구성 시 반영한다.

(6) 심사 옴부즈만(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①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건이 접수될 경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추진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② 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고려하여 사업 유형별,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 조치 사항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부처	조치기한
기관 위상 재정립과 문체부의 수직적인 사업 구조 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위상과 역할 재정립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제고를 위해 기관 간 역할 재정립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지원 예산 구조 개편을 통해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상임이사직 폐지 또는 상임감사제도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3.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협치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의사결정기구(이사회) 운영 정상화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에 예술강사, 지역문화예술지원기관 관련 상설적인 협치 조직 설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사업 구조 내에 참여 예산제도 기반 지원 사업 구조 마련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 재정립 및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국회 	2019.12.
지원 사업과 심사 제도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사업 구조 혁신: 다년지원제도 확대, (가칭)중기 문화예술 교육재정 협약 도입 등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규정·조직·행정 체계 개선을 통한 투명성 강화 • 외부 신고체계 개설 • 심사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성·전문성 확보 • 심사위원 평가제도 도입 및 운영 • 심사 옴부즈만(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체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12. [지원사업 구조개편의 경우 2019. 12.]

다. 과제별 이행 현황 및 경과

1) 기관 위상 재정립과 문체부의 수직적인 사업구조 해체

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관발전 전략」 계획 수립

2018년 9월, 진흥원 「기관발전 전략」 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기관 운영 예산 자율성 확보를 위한 운영 지원 예산구조 개편 및 인력 증원

① 학교 예술강사 고용주체를 일원화하고, 심사제도 운영관리, 생활SOC 사업 운영을 위한 정규직 과 인건비를 증원·증액하였다(2020년 학교 예술강사 18명, 심사제도 운영 1명 등 정규직 19명 증원, 2021년, 학교 예술강사 9명, 생활SOC 1명 등 정규직 10명 증원)하였다. ② 2021년부터 사업비 내 인건비를 기관 운영비로 일괄 통합 편성하여 기관 정원인력(공무직 포함) 운용의 안정성·자율성·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다) 상임이사직 폐지 및 상임감사제도로 검토·협의

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상임이사직 폐지 관련하여 기재부와 협의하였다. ② 2022년 4월 기재부의 사무처장직 폐지 통보가 확정되어 같은 해 7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관 내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을 완료하였다.

2)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협치 기반 마련

가) 이사회 운영 정상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대 이사진 구성('18. 7), 「임원 직무 청렴 계약 규정」제정('18. 7),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18. 9), 이사회 간담회 개최('20. 6) 등을 통해 이사회 운영을 정상화하였다.

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구조 개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자율적 기획과 재량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 보조사업 통합 개편('18. 12)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구조를 개편하였다.

다) 중앙-지역 간 협력 강화

2018년 1월부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상설적 협치 조직인 '지역협력위원회'를 발족 및 운영하고 있다.

라) 상설적 협치 조직 설치 완료

① 2018년 1월, 지역협력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2018년 7월부터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 2017년 8월부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④ 2018년 7월, 학교예술강사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마) 국민정책제안제도 계획 수립, 시범 공모 시행

① 2019년, <내가 만드는,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공모 및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했다(정책제안형 61건, 아이디어제안형 129건 등 총190건 공모작 중, 124건 선정 및 시상). ② 2020년, 국민정책제안 공모 선정 과제 실행 및 반영 방안을 검토하였다.

바) 국민정책제안제도 지속 운영체계 기반 마련 및 공모 시행

①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국민참여형 정책 아이디어 공모 <일상을 밝힐 아이디어 ‘반짝이는 예술생각’>을 추진하였다. ② 총 192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고 49건을 시상하였다.

3) 지원 사업과 심사제도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구조 개편

2018년 2월, 지역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 보조사업의 이관 및 통합 개편을 진행하였다.

나)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① 2018년 9월, 청렴위원회 운영규정 및 임원직무 청렴계약규정을 제정하였다. ② 2018년 4월, 임직원 행동강령을 전면 개정하였다.

다) 청탁, 부당지시 관련 신고체계 개설

① 2018년 9월, 기관 내 청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②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 연계 신고체계 개선을 협의하고, 2020년 5월, 개선을 신청하였다.

라) 심사제도 개선

① 「전문가명단(POOL) 운영규칙」 및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였다('18. 12). ② 불성실 및 불공정한 심사 평가 경력이 있는 자는 향후 2년간 참여를 제외하도록 하였다.

마) 시민 감사관제 운영

「심사고충처리 읍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18. 12) 2019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7. 국립극단

가. 기관 소개¹

1) 국립극단의 미션 및 현황

(재)국립극단(이하 ‘국립극단’)은 1950년에 창단되어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연극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공연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힘써왔다. 이런 역사를 바탕으로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창작 작품 개발과 국립극단의 예술적 성과 및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우수 연극을 제작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립극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립극단은 연극 전용극장 3개(명동예술극장 총 558석, 백성희장민호극장 190석, 소극장 판 80석)를 보유하고 있다. 국립극단은 연극 작품의 창작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연극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연극 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한다는 목적(2조)을 가지고, 1. 연극작품의 창작과 공연 2. 연극예술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3. 연극작품의 보급 및 관객개발 4. 연극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5. 우리말의 보전 및 세계화 6. 명동예술극장의 운영·관리사업('15. 4. 1. 신설) 7. 기타 법인의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실행 개요(요약)²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 사실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가 개막하고 2013년 9월 6~7일 경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서 문체부로 <개구리> 공연이 굉장히 정치편향적이라는 문체 제기가 있는 후 문체부가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 보고」 문서를 작성하여 청와대 보고하였다. 이 문서에서 문체부는 <개구리> 대본의 결말 등 수정 조치를 하였다고 하면서 향후 국립예술단체에서 정치편향적인 작품은 배제 예정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② 국립극단 공동제작공연 <알리바이 연대기> :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 관련 현안보고」 문서에서 ‘향후 조치계획’ 대상에 국립극단 공동제작공연 <젊은연출가전(1)-알리바이 연대기>가 포함되어 있고, 손진책 예술감독이 <알리바이 연대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을 하였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김윤철 예술감독의 경우 <알리바이 연대기> 재공연을 반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주장이 엇갈렸으나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③ 국립극단 기획공연 <구름>에서 대본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3.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공연2』, 문화체육관광부, 2019, 241쪽.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3.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공연2』, 문화체육관광부, 2019, 284쪽.

수정 조치 : 국립극단 사무국장이 (예술감독에게 전달받은³) 특정 대사에 빨간 줄이 그어진 대본을 가지고 극장에 찾아와서 연출가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⁴ ④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에서 <빛의 제국> 등에 대한 양해조치 : 2015년 1월 경 5개 작품 <빛의 제국>, <문체적 인간 연산>,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Saint Joan>, <아버지와 아들>을 비롯하여, 이윤택 연출의 <혜경궁 홍씨>, <키 큰 세 여자>, <어머니>에 대하여,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문체부가 국립극단·명동예술극장 측에 공연의 취소 가능성을 물어보았으나 공연 취소 시의 파장을 고려하여 그대로 진행하라는 양해조치가 있었고, 2016년부터는 해당 작품의 연출가들(이윤택·김광보·고선웅)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⑤ <3월의 눈>(손진책 연출) 배제 :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前 정부, 특정 문예인 지원배제 소위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중 ‘문체부 조치사항 관련 출력물’에서 <삼월의 눈>(16. 3. 13~29)이 물의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김종덕 장관이 2015년 3월 6일 경 취소 시의 파장을 고려하여 공연을 그대로 진행하되 차기년도에는 배제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통하여 <3월의 눈>이 배제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만, <3월의 눈>이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된 것인지 김윤철 예술감독과 손진책 예술감독 사이의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공연을 하지 않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였다. ⑥ 국립극단 공동제작 <조치원 해문이>, <망루의 햄릿> 홍보물에 대한 수정 : 문체부의 지시를 받은 국립극단이 국립극단 기획대관공연 <조치원 해문이>(15. 8. 24~9. 13) 공연에 대하여 포스터 등 홍보물에서 ‘그린피그’, ‘윤한술’ 등의 이름을 빼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그린피그는 ‘그린피그’, ‘윤한술’의 명칭을 뺀 별도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국립극단에 보내주고 국립극단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망루의 햄릿>(15. 6. 26~7. 5)의 경우, 문체부의 지시를 받은 국립극단이 문체부 지시라는 사실은 숨긴 채 극단 측에 포스터 수정을 요청하여 포스터가 수정되었다. ⑦ 2016년 국립극단 젊은연출가전에서 전인철 연출가가 배제 : 전인철 연출가가 2015년 상반기 2016 국립극단 젊은 연출가전에 섭외되었다가 2015년 하반기 문체부 지시에 따라서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되었다. ⑧ 어린이청소년연구소의 <날아가 버린 새>가 배제 : 장지혜 작·전인철 연출의 <날아가 버린 새>가 전인철 연출가가 블랙리스트여서 배제되었다. ⑨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양해 조치 : 고선웅 연출가가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 대상이었으나 박민권 차관 등이 국정원(K)과 청와대(B)의 동의를 얻어 양해조치되었다. ⑩ 국립극단 공동주최 제7회 현대일본희곡낭독공연 취소 : 2015년 10월 초순 경 국립극단에서 공동주최하기로 되어 있었던 제7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국립극단 공동주최의 건에 대하

3 이러한 사실은 국립극단 간담회에 참석한 전 사무국장이 확인하였다.(‘21. 8)

4 다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서 손진책 예술감독이 <구름> 공연 대본에 빨간 줄이 쳐진 일에 대하여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연전통예술과 김OO이 <구름> 대본에 빨간 줄이 그어져 대본을 연출가에게 전달한 일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국립극단 손OO 피디가 문체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없고, 빨간 줄이 쳐진 대본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관련자의 의견은 국립극단에서 2022년 9월 현재 제작 과정에 있는 “국립극단 사례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여, 김광보 회장이 블랙리스트여서 문제가 되어서, 한일연극교류협회 낭독공연 직전 문체부에서 일체의 외부 단체에 극장을 빌려주지 말라는 방침이 내려와서 국립극단이 취소하였다. ⑩ 2016 ‘작가의 방’의 경우 :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장이 ‘작가의 방’ 참여 작가들에게 ‘국립극단으로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모든 작품을 국립극단이 공연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는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발언은 국립극단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작가들의 집필 작품에 대한 소재의 제한, 검열이 있을 수 있었다. ‘작가의 방’ 참여 작가 선정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적용이나 양해조치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작가의 방’ 프로그램을 공모제를 회피하였던 방식 자체에 블랙리스트 작가가 응모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못하였다.

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립극단 후속조치 이행 계획⁵

- 5 국립극단 작성,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국립극단 후속조치 이행 계획」. 한편 국립극단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대상 기관이 아니었으나, <날아가 버린 새> 사건에 대한 공개 사과(‘19. 10. 21)를 계기로 후속 조치 대상 기관으로 포함되었다.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의 계기가 된 일기에 관련 경위가 담긴 사과문을 전문 게재한다.

[전문]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아가 버린 새>의 장지혜 작가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립극단은 연극작품의 창작과 인재양성을 통하여 연극예술의 발전을 선도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연극작품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민족문화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극단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도화선이 된 <개구리>(아리스토파네스 원작, 극본·연출 박근형)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 걸쳐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따른 예술가 차별과 배제를 직접 실행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통하여 밝혀졌습니다. 국립극단은 이에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립극단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5월 14일 당시의 발표문에서 국립극단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리며 피해자께도 직접 사과드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립극단은 사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블랙리스트로 지목되어 작품과 공연에서 배제된 예술가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작업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작품과 공연에서 배제된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누락된 것입니다. 아래에 기술하는 <날아가 버린 새>의 장지혜 작가님이 바로 이런 경우라 하겠습니다. 국립극단은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립극단의 블랙리스트 배제 및 그 후의 부족한 조치로 인해 많은 상처와 아픔을 느끼셨을 장지혜 작가님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작품을 함께 준비하셨던 배우 및 스태프, 그리고 관람기회를 박탈당하신 관객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2015년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연출가 및 단체(블랙리스트)를 배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 후 국립극단은 다음 해 공연사업 중 하나인 ‘젊은연출가전’에 전인철 연출가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해당 연출가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시한 배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前예술감독은 사무국회의에서 당시 재직 중이었던 공연기획팀장에게 전인철 연출가를 직접 만나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시킬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공연기획팀장은 전인철 연출가를 만난 자리에서 ‘2016년에는 작업이 어려울 것 같으니 2017년에 다시 잘 진행해보자’라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2016년 공연사업에서 전인철 연출가를 배제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한다는 미명 하에 자행된 폭력이었습니다. 부당한 지시와 명백한 외압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극단은 블랙리스트에 의해 예술가 배제를 직접 실행하는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 후 2015년 12월 4일과 5일 양일 간, 국립극단 사무국 산하 어린이청소년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작품개발사업 ‘예술가청소년창작벨트’를 개최하여 <날아가 버린 새(장지혜 작, 전인철 연출)>를 비롯한 세 작품의 낭독 쇼케이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쇼케이스 직후 연구소는 연구소 차원의 내부 논의를 진행하여 장지혜 작, 전인철 연출의 <날아가 버린 새>를 2016년 공연사업 후보로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진행된 사무국 회의에서는 2016년 공연사업계획을 검토하였고 당시 연구소 부소장이 회의석상에서 ‘연구소 내부 논의를 거쳐 <날아가 버린 새>를 2016년 공연 후보작으로 선정하였음’을 보고하자 前예술감독은 앞서 기술된 ‘젊은연출가전’ 사례와 유사하게

1) 목적

- 향후 국립극단에서 블랙리스트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날아가 버린 새> 사건 관련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이다.

2) 사업 내용 개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국립극단 후속조치로서 ①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② 국립극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등 총 2개 과제 이행이 있다.

3) 사업 방향

전인철 연출가와의 작업을 연기하자고 제안하는 방식을 지시하였고, 결과적으로 <날아가 버린 새>는 공연 사업 후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립극단은 전인철 연출가 블랙리스트 배제 조치를 실행하여 <날아가 버린 새>의 장지혜 작가님께도 동일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2019년 4월 국립극단은 서울문화재단 2019 예술작품지원사업에 <날아가 버린 새(극단 돌과구, 장지혜 작, 전인철 연출)>가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5월 19일 <나는 살인자입니다(호시 신이치 원작, 전인철 각색·연출)> 서울공연 중연 간담회에서 전인철 연출가를 만난 이성열 현예술감독은 <날아가 버린 새>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인철 연출가는 ‘2016년에 <날아가 버린 새> 공연을 못하게 된 것은 당시 연출이었던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장지혜 작가가 피해를 입은 것이 마음에 걸린다. (본인이) 직접 연출하지 않아도 좋으니 국립극단에서 <날아가 버린 새>를 공연하면 좋겠다’는 뜻을 현예술감독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후, 5월 말경 현예술감독은 장지혜 작가님과 직접 만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서 확인된 <날아가 버린 새> 공연 배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작가님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지혜 작가님은 국립극단에서 <날아가 버린 새>를 공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현예술감독은 내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답했습니다. 이후 국립극단 사무국 회의에서 <날아가 버린 새> 공연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에 의해 국립극단에서 예술가들이 배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에 해당하는 모든 예술가의 작품을 다시 공연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어렵다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날아가 버린 새> 공연 추진 역시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월에 다시 장지혜 작가님을 만난 자리에서 현예술감독은 이러한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작가님과 통화에서 “내가(장지혜 작가)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맞느냐”는 질문에 현예술감독은 “장지혜 작가의 <날아가 버린 새>는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차원에서 2016년 공연사업 후보로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현예술감독의 반대로 공연이 무산되었다. 현예술감독의 반대가 블랙리스트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예술감독으로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장지혜 작가님은 백서에 <날아가 버린 새>가 블랙리스트 피해 작품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들며 “백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현예술감독은 “백서가 백퍼센트 맞다고 볼 수는 없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지혜 작가님께 본인이 블랙리스트 피해자임을 부정당했다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그 후 국립극단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과 다시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국립극단은 이러한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깨닫고 장지혜 작가님이 논의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블랙리스트로 인하여 배제를 당한 피해자인 것으로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장지혜 작가님께 사과드립니다. 국립극단은 장지혜 작가님께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2015년 국립극단의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날아가 버린 새>가 공연배제 됨으로써 전인철 연출가와 동일한 피해를 입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은 이후 발표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통해 ‘장지혜 작·전인철 연출의 <날아가 버린 새>가 전인철 연출가가 블랙리스트여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장지혜 작가님께 아무런 합당한 사죄의 뜻을 직접 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지혜 작가님은 이렇듯 두 번에 걸친 국립의 잘못 때문에 두 배로 큰 상처와 아픔을 느꼈을 겁니다. 이 모두가 국립극단의 과오이고 불찰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늦었지만 너른 마음으로 저희 국립극단의 사과를 받아주시길 장지혜 작가님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국립극단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소신을 갖고 일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지혜 작가님을 비롯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립극단

-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회적 기억을 기록 및 보존하기 위하여 과정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 국립극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하고 예술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4) 세부 이행과제

가)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구 분	세부업무
국립극단 사례집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이하 백서)’ 중 국립극단 사례 정리 • <날아가 버린 새>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정리 • 기타 백서 내용 이외의 국립극단 사례 파악 및 정리 •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파악 • 블랙리스트 피해자 접촉 → 대면 및 서면 인터뷰 • 국립예술단체 임직원의 직무 윤리에 대한 기고문 의뢰 • 출판 원고 정리 • 블랙리스트 피해자, 자문위원, 외부 전문가 출판 원고 검토 • 출판 관련 업무 진행(디자인, 인쇄 등) • 배포리스트 작성 및 진행(단체 및 기관, 극단 임직원 등) • 결과보고 등
국립극단약속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파악 • 블랙리스트 피해자 접촉 → 대면 및 서면 인터뷰 • 초안 작성 • 블랙리스트 피해자, 자문위원 대상 초안 검토 및 수정 • 대외발표 • 결과보고 등

나) 국립극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구 분	세부업무
예술감독 선임 과정의 투명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현장 및 주무부처와 세부 협의 • 운영 관련 제도 개선 결과보고 등
이사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다. 과제별 이행 현황

1)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가) 국립극단 사례집 제작

날 짜	내 용
'19. 12 ~'2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아가 버린 새> 후속조치 간담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극단, 외부자문위원, 문체부 참여 - 1차(19.12), 2차(20.10), 3차(20.12) 진행
'2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임 김광보 예술감독 취임 기자간담회 (김광보 예술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적극적 해결 의지 공식 표명 • 월간 과제이행점검 시행
'2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계획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국립극단 사례집 제작, 국립극단 약속 제정), 운영 관련 제도 개선 확정. • 월간 과제이행점검 시행
'2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단 운영 제도개선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세부 협의 • 피해자 규모 파악 및 내외부 자료 조사 관련 협치단 협의 • 김광보 예술감독, <날아가 버린 새>('21.3.23~4.4,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 공연 관람 및 전인철 연출, 장지혜 작가 간담 진행 • 월간 과제이행점검 시행
'21.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면담 및 원고 요청 세부 계획 수립 • <날아가 버린 새> 전인철 연출, 장지혜 작가 개별 면담 • 월간 과제이행점검 시행
'2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리스트 백서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아가 버린 새> 경과 추가 • <구름> 연출가 개별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결과 프로덕션 참여자 전원 대상 모임 및 사과 요청 • 월간 과제이행점검 시행
'2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름> 참여자 전원 모임 준비 • 월간 과제이행점검 시행
'21.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방] 멘토 1인, 참여작가 2인 원고 요청서 전달 • 월간 과제이행점검 시행
'21.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름> 참여자 전원 모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사무국장, 연출가, 배우, 스태프 등 참석 - 참여자 전원 대상 전 사무국장 사과, 국립극단 공식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 월간 과제이행점검 시행

날 짜	내 용
'21.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름> 참여자 전원 모임 후속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참석자에게 녹취록 공유 및 공개 동의 요청 • <개구리> 연출가 유선 면담 • 월간 과제이행점검 시행
'21.1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리바이 연대기> 연출가 개별 면담 • <조치원 해문이> 연출가 유선 면담 • [작가의 방] 참여작가 2인 유선 면담 • <망루의 햄릿> 연출가 유선 면담 • 월간 과제이행점검 시행
'21.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방] 참여작가 1인 개별 면담 • 월간 과제이행점검 시행
'2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름> 당일 참석자 녹취록 공개 동의 요청(계속) • 월간 과제이행점검 시행
'22.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원 해문이> 제작자 개별 면담 • 월간 과제이행점검 시행
'22. 2 ~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집 제작 및 약속 제정 세부 계획안 수립 • 월간 과제이행점검 시행
'22.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방] 멘토 개별 면담 • 월간 과제이행점검 시행

2) 국립극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

법인운영 독립성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으로서의 국립극단의 자체 위상 정립을 위해 이사회 결정사항 최대한 존중, 연극계 출신의 비상임이사 교체에 따른 후보자 마련 시 연극계 현장의견 수렴 등 방안 검토하였다. 예술감독 선임 절차 개선 등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라. 미이행 과제

국립극단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 국립극단 사례집 제작은 계속하여 진행 중이어서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사례집이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극단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의 경우 예술감독 선임의 권한 등이 포함된 문제로 문체부, 국립극단, 연극계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8. 한국영상자료원

가. 기관 소개¹

1) 한국영상자료원의 미션 및 현황

①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1974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필름보관소를 전신으로 하고 있으며, 1991년 9월 1일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6년부터 영화필름 등의 의무제출제도가 시행되었고, 2002년 6월 10일 『영화진흥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한국영상자료원이 출범하였다. 2007년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를 건립하여 서초동 예술의전당에서 상암동으로 이전을 하였다. 2008년에는 한국영화박물관 및 시네마테크KOFA를 개관하였다. ② 한국영상자료원의 미션은 한국영화를 국가 자원화하는 국내 유일의 영화 아카이브로서, 한국영화와 그 부속자료들에 대한 수집과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영구보존 기반을 마련하고, 보존자료의 가치 재창출을 통해 동시대 및 후속세대 국민들의 문화 정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③ 한국영상자료원 임원 및 조직구성은 원장 1인, 이사 8인 이내, 감사 1인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정관 제5조). 원장, 감사 및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정관 제6조).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고,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정관 제7조). 자료원은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동의를 받아 원장이 임명하며,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무국장은 별정직으로서, 그동안 문체부 퇴직 공무원이 임명되어왔다.

2) 블랙리스트 실행 개요 (요약)²

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결과 사실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10월 '박정희 정권기, 산업 근대화 프로젝트와 미디어 정치' 학술 심포지엄이 문체부의 지시로 인하여 행사 직전 취소되었고, ② 자료원이 2010년 11월경 4대강 현장을 담은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5.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영화』, 문화체육관광부, 2019, 98~100쪽.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5.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영화』, 문화체육관광부, 2019, 101~165쪽.

독립 영화 상영을 계획한 서울독립영화제에 대한 후원을 철회한 배경에는 청와대·국정원의 압력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③ 자료원의 비상임 이사 8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 선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기조가 하달되었으며,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영화계 인사들의 배제가 실행되었다. ④ 정부 비판적 인사, 소위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영화인을 추천하였다는 이유로 문체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가 검토되었으며, ⑤ 소속 공공기관인 자료원의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 추천 과정에 개입하고자 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문체부와 자료원 직원, 그리고 비상임 이사 추천 후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자료원 이사 선임 과정에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자료원 정관 개정을 추진하여 이사 추천 부분을 삭제하였다. ⑥ 2015년~2016년에 열린 한불 상호교류의 해 포럼테지마주 프랑스 한국영화 특별전 ‘매혹의 서울’에서 총 4편의 영화가 배제되었으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감독과 영화제 관계자 등이 초청 대상에서 배제되는 한편, 프랑스 측 예산으로 우회 지원하여 배제 대상 감독을 초청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⑦ 2016년 1월 ‘시네마테크KOFA가 주목한 2015 한국영화’에 선정된 <위로공단>(임흥순, 2014)에 대한 문체부의 상영 배제 지시를 확인하였으며, ⑧ 문제영화 검열 및 특정 영화인 배제 지시를 거부한 자료원 프로그래머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

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영상자료원 후속조치 이행 계획

1) 사업 내용 개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한국영상자료원 후속조치는 ①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인 및 관계자에게 공식 사과, ② 아카이브 직무의 독립성, 자율성, 책임감을 강화한 조항 등을 보장하여 개정된 내부 행동강령과 윤리지침 발표 등 총 2개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다.

2) 사업 방향

- 2008~2017년 실행한 블랙리스트에 따른 차별 및 배제 사건을 밝히고 당시 피해를 입은 영화인과 관계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였다.
- 영상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의무를 강조하는 국제영상자료원연맹(FIAF) 윤리강령에 따라 최근 개정된 내부 행동강령과 윤리지침을 공유하고, 추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및 보완 조치 마련을 약속하였다.

3) 이행과제

가) 한국영상자료원 주진숙 원장, 공식 사과 발표

주진숙 원장은 2008~2017년 블랙리스트에 따른 차별과 배제 실행에 대해 피해 입은 영화인과 관계자에게 사과하였고, 지난 두 정권 동안 일어난 블랙리스트 실행사건에 대해 모두 밝혔다. 이를 요약 하면 ① ‘박정희 정권기의 산업근대화 프로젝트와 미디어정치’ 주제의 학술심포지엄 취소 ② 4대강 관련 영화 상영을 계획한 서울독립영화제에 대한 후원 철회 ③ 이사 추천 과정에서의 특정 인사를 배제하기 위한 정관 개정 ④ 2015~2016년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기획된 프랑스 한국영화특별전 ‘매혹의 서울’에서 4편의 영화를 배제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감독 및 영화인을 초청 대상에서 배제 ⑤ ‘시네마테크KOFA가 주목한 2015년 한국영화’에 선정된 <위로공단> 상영에 대한 외부 압력과 그에 대한 홍보 자제 ⑥ ‘문제 영화들’에 대한 배제를 거부한 내부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등이다.

※ 한국영상자료원 주진숙 원장 사과문 전문

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영화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청렴에 관한 전 직원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오늘 한국영상자료원은 임직원의 행동강령과 윤리지침을 보강하고 개선하여 직원들과 공유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을 따른 임직원의 행동강령과 윤리지침은 저희 임직원의 업무에 대한 윤리, 특히 공공 아카이브 기관으로서 한국영상자료원 임직원이 지켜야할 기본적인 윤리강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강한 지침은 국제영상자료원연맹(FIAF)이 회원기관 임직원 모두가 공유하고 지킬 윤리강령을 원내 윤리지침의 상위 범주로 포함시킨 것과 아카이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부당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압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지침을 보강하고 수정한 이유는 영상자료원이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그리고 책임 있는 아카이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크게는 이전 두 정권 하에서 영상자료원이 실행할 수밖에 없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이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건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정권기의 산업근대화 프로젝트와 미디어정치라는 주제의 학술심포지엄의 취소, 4대강 관련 영화 상영을 계획한 서울독립영화제에 대한 후원 철회, 이사 추천과정에서의 특정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던 점,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포럼테지마주 프랑스 한국영화특별전 <매혹의 서울>에서 4편의 영화를 배제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감독 및 영화인을 초청대상에서 배제한 점, <시네마테크KOFA가 주목한 2015년 한국영화>에 선정된 특정 영화 상영에 대한 외부

압력과 그에 대한 홍보 자제, 마지막으로 ‘문제 영화들’에 대한 배제를 거부한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등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저는 원장으로서 한국영상자료원과 관련된 모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학술심포지엄에 소중한 연구결과물을 준비했던 연구자들, 서울독립영화제와 영화제에 귀한 작품들을 출품해주셨던 창작자들, 이사선임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영화인들’로 거론된 영화인들, 자료원이 공동 기획한 한국영화특별전 <매혹의 서울>에서 상영이 배제되었던 작품 관계자들과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감독 및 영화인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외부 압력에 대해 상영 및 홍보를 자제한 특정 영화의 감독님께도 저희의 소극적 대처를 부끄럽지만 사과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인사 조치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퇴사한 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헌법에 보장된 학술연구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영상자료원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협의하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영화인들에게 사과와 함께 가능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임직원은 행동강령과 윤리지침을 기초로 하여 우리 영상 유산의 수집과 보존, 활용을 통해 예술적, 역사적, 교육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저의 기관의 책무를 모자람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희 기관과 관련된 블랙리스트 사건에 의해 명예를 손상당하고, 상처받은 영화인들, 연구자들, 창작인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1년 6월 23일

한국영상자료원

나) 내부 행동강령과 윤리지침 개정

국제영상자료원연맹(FIAF) 윤리강령을 강조하고, 정치적 압력 등 금지 조항을 보강한 윤리지침을 개정하였다.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책임감 있는 아카이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된 내부 행동강령과 윤리지침이다. 보강된 대표적인 조항은 ① “윤리지침 제2장 제3조 임직원은 자료원의 관리 하에 있는 자료들의 수집, 보존, 복원, 활용과 관련한 모든 결정에서 국제영상자료원연맹(FIAF)이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이다. 국제영상

자료원연맹의 윤리강령을 상위 범주로 포함하였는데, 이는 영상유산을 최대한 오리지널 형태로 보존하고 영속적으로 조사, 연구, 공개적 상영함으로써 후대에 전승해야 하는 영상 아카이브 기관의 의무를 강조한다.

다) 영상자료원 전 임직원 대상 갑질 근절, 청탁 금지 교육 실시

전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된 갑질 근절 및 청탁금지법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유지훈 강사를 초빙하여 갑질 근절 및 예방,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사례 등에 관해 설명하고 청렴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 한국영상자료원 윤리 지침 개정 일부

한국영상자료원 윤리 지침

한국영상자료원 지침 제61호 개정 2021. 6.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공기관이자 각국 영상 유산의 수호를 위한 국제영상자료원연맹(FIAF) 회원사의 소속원으로서 올바른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윤리경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영상자료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④ 임직원은 자료원의 관리 하에 있는 자료들의 수집, 보존, 복원, 활용과 관련한 모든 결정에서 국제영상자료원연맹(FIAF)이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이의 수수 및 행위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자료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자료의 수집·보존·복원·활용 등 사업집행에 정치적 이해 및 개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 국제영상자료원연맹(FIAF) 윤리강령에 반하는 지시를 하는 행위
3.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전가하는 행위
4.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는 행위

※ 한국영상자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일부

한국영상자료원 임직원 행동강령

한국영상자료원 지침 60호 개정 2021. 6.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전 세계 영상문화 유산의 수호를 위한 『국제 필름아카이브연맹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Archives du Film) 윤리 강령』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 영상물등급위원회

가. 기관 소개

1) 영상물등급위원회 운영 목적과 현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에 의거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이하 ‘영상물 등’)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 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를 두었다. 영등위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①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② 영상물 등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기피신청에 관한 사항 ⑤ 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 연구, 국제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되거나 위탁받은 사항이다. 영등위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대한 국민여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분류 등의 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영등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성과 연령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임기는 3년이다. ② 문화예술·영상물등·청소년·법률·교육·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영등위는 현재 8기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후관리위원회 전문위원, 5개의 소위원회(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 국내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국외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광고물소위원회, 공연추천소위원회)가 있다.

2) 상영등급 분류 및 제한

영등위는 『영화비디오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상영등급을 분류하며 ‘제한상영가’ 등급이 유지되고 있다.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에 대하여 상영 전까지 영등위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한다. 다만 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영화·단편영화, ②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③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영화는 예외다.

나. 블랙리스트 실행 개요 (요약)¹

1)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과 지원 배제

① 영등위는 <자가당착>에 대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을 결정함으로써 약 4년에 걸친 ‘실질적 상영 금지’ 조치를 행하였다. 그 외에 영등위는 동성애나 이주노동자를 다룬 영화들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일탈’ 하여 위 등급분류제도를 이용하여 상영에 제한을 가하였다. ② 청와대의 지시 및 국가정보원과 문체부의 관여 아래 <불안한 외출>이 국가보안법을 다루었다는 이유로 지원 배제를 당했다. 영등위는 ‘사후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영화 <불안한 외출>²의 공동제작상영에 대해 모니터링 및 사후 고발을 취함으로써 제재를 가하였다.

2) 사업 내용 개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영상물등급위원회 후속조치로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피해 입은 영화인 및 관계자에게 유감 표명을 하였고 「영상물 표현의 자유와 등급분류 쟁점에 관한 연구 : 영등위 블랙리스트 사건을 중심으로」를 시행하였다.

3) 사업 방향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피해자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등급분류 기준 제고와 제도개선 방안 모색

4) 이행과제

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피해 입은 영화인 및 관계자에게 유감 표명

2020년 2월 13일 영등위 이미연 위원장은 새로운 영등위의 비전 및 CI를 발표하며 블랙리스트 사태를 언급하였다. “특정 영화를 검열하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등급 제도를 이용, 스스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 지난 위원회를 반성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전한다”³했으나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은 보도자료로 확인했을 뿐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는 없었고 영등위 자체의 블랙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5.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 영화』, 문화체육관광부, 2019, 341쪽

2 영화진흥위 또한 2015년 상반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에서 지원 배제하였다.

3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식블로그 ‘영등위, 새 비전 CI 선포식’ 보도자료」, 2020. 2. 10. <<https://blog.naver.com/daliboni/221807377187>>(검색일 : 2022. 8. 4)

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후속조치를 이행한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나) 영상물 표현의 자유와 등급분류 쟁점에 관한 연구

「영상물 표현의 자유와 등급분류 쟁점에 관한 연구 : 영등위 블랙리스트 사건을 중심으로」는 ① 영등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층적으로 제고함으로써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② 영등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관계인 심층인터뷰, 구술 채록, ③ 피해자 중심의 사건 기록과 아카이빙을 통한 블랙리스트 피해 극복, ④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등급분류 기준 제고와 제도개선 방안 모색하고 ⑤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하여 심도있는 분석 및 관계인 심층인터뷰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등급분류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계획 수립, ⑥ 연구는 22년 3월부터 9개월간 진행한 다.

다) 피해자 중심의 후속 조치 협조⁴

2021년 5월 14일 영화계 현장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피해 회복을 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피해자 연대모임인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은 문체부 예술정책관과 이행협치추진단에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실행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 등의 블랙리스트 후속조치를 진행 여부와 추진 실적을 확인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이행협치추진단은 피해자 중심의 피해자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해당 기관이 이행하도록 협조하였다.

4 한국영상자료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대상 기관이 아니었으나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이 발신한 공문을 계기로 후속 조치 대상 기관으로 포함되었다(‘21. 5. 14).

※ (참고)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발신 공문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
- 수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참조 : 문화체육관광부 이행협치추진단
 - 발신 :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 날짜 : 2021년 5월 14일
 - 제목 :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내역 확인 요청
 - 문의 및 회신 : [redacted]@il.com)
-

1. 귀 부처의 발전을 빕니다.
2.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은 2019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실행한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 등 블랙리스트 실행한 영화계 공공기관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피해 회복을 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피해자 연대모임입니다.
3.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은 2019년 8월 영진위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 과정을 진단하고 피해자 중심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하여, 같은 해 10월 "영화진흥위원회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였고, 12월에는 영등위와 자료원의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중 영등위와 자료원 진상조사 백서 함께 읽기" 행사 등을 진행하는 등 블랙리스트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블랙리스트 청산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2021년 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차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위의 경우 오석근 위원장이 2018년 4월 블랙리스트 실행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피해자에게도 사과하고 기관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실행이 드러난 영등위와 자료원은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기관 차원의 공개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또한 블랙리스트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기관 차원의 조치가 공표되지 않아 향후 블랙리스트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5. 영등위의 경우 2020년 2월 13일,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를 공개하면서 이미연 전임 위 원장이 “스스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한 지난 위원회를 반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모 든 분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며 유감을 표명했 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으나,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는 없었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안도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없습니다.
6. 자료원의 경우 2018년 12월 5일 주진숙 중앙대 명예교수가 새 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블랙리스 트 실행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없었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 한 조직 내 제도 점검이나 개선안을 한 차례도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없습니다.
7. 이에 영등위와 자료원의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진행 여부와 추진 실적의 확인을 공식적으로 요청 합니다. 확인을 요청하는 기관별 후속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 가. 기관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인정 여부
 - 나. 기관 이사회 등에서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 관련 논의 경과 (이사회 등에서 안건으로 다룬 경과 및 회 의 결과.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을 경우 사유 확인 요청)
 - 나.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공개 사과 실행 여부와 실행 경과 (미실행했을 경우 사유 확인 요청)
 - 다.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기관 내 조치 조직 및 사업 개선 방안 실행 경과 (미실행했을 경우 사 유 확인 요청)
 - 라.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실행 현황 (미실행했을 경우 사유 확인 요청)
 - 바.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청산을 위한 기관별 활동 내역과 경과
8.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요청 내용에 대한 빠른 조치와 회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영화계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의 조속한 청산과 재발 방지,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기대합니다. 끝.

제3절. 법제도 관련 제도개선 결과와 남은 과제들

1.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권고¹⁾

가. 추진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문화·예술 영역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학문과 그 파생적 기본권으로서 예술의 자유 및 예술인 등의 권리(『헌법』 제22조)를 보장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 권력이 스스로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비판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국민(문화예술인)을 불법적으로 감시, 통제, 검열, 배제, 차별한 범죄 행위’이다.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법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헌법 개정과 함께 문화기본법 등 문화 분야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조항을 마련하며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상설화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나. 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헌법』을 비롯하여 총체적인 법제도 위반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조직의 최상층에서 관료조직, 산하기관 및 단체에 이르기까지 조직적, 전방위적으로 벌어진 국가조직범죄로서 직권남용 또는 업무방해와 같은 개인 차원의 일탈적 범죄행위를 넘어선다. 불법적인 국가조직범죄로 인해 총체적으로 헌정을 유린하였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미비

불법적·위법적 방식은 명시적인 법적 원칙이나 조항, 법정계획의 위반뿐 아니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률적 통제장치가 미비하여 행정적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틈새에서 작동한다. ‘국가조직범죄’로서 아래로는 문체부의 거의 모든 소속기관이 블랙리스트의 하위 실행기관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68~79쪽을 요약한 것이다.

으로서 동원되었다. 법제도적으로는 ‘문화예술’(『문화예술진흥법』)만이 아니라 ‘문화산업’ 영역까지도 포괄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 범죄 특성상 블랙리스트 사태의 경우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 개선방안

1) 『헌법』 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문화기본권 확대

현행 『헌법』은 문화예술에 관한 규정으로 제9조의 문화국가조항과 제22조제2항의 저작자·예술가 등에 대한 보호조항 등을 두고 있으나 이 두 조항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문화정책을 통제하고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향도하는 효력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문화예술인 권리에 대한 헌법적 보장이 필요하며 문화국가조항의 국가의무조항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강화하고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규범적 실효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가) 문화 관련 법제도 정비를 통해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표현의 자유는 문화정책의 핵심적인 가치로 명시되고 강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법제도 정비를 통해 문화예술 관련 표현의 자유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 및 보상 역시 법제도화가 필요하다. 『문화기본법』 개정 또는 (가칭)『예술가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한 법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상설적인 협치 기구로서 대통령직속 (가칭) ‘문화 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 설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예술가들의 일상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문화기본법』 개정 또는 (가칭) 『예술가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포함하여 대통령 직속 (가칭)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 보장 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가칭)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 보장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예술가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신고 및 제보 센터 운영,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 및 구제 활동, 제도개선 활동,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후속 조치 활동, 표현의 자유 관련 권고 및 평가 활동’ 등을 진행한다.

다) 『문화기본법』 개정 및 (가칭)『예술가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에 담겨야 할 주요 내용

- 목적 :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
- 예술가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문화다양성 등 문화기본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 예술을 사회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 예술 활동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 의무, 계획과 정책 그리고 평가 등의 수립과 집행, 차별과 배제 금지, 문화예술 지원 기관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외
- 문화예술 지원 기관의 책무 :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팔길이 원칙) 강화,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협치에 기초한 기관 운영 외
- (가칭)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 보장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
-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예술가권리보호책임자 제도 도입 : ‘(가칭) 예술가권리보호관’을 개방직으로 임명, 예술가권리보호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가칭)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 보장 위원회’ 지원업무 총괄 외
- 예술가 권리 침해행위 관련 내용 : 실태조사, 신고 및 직권 조사,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정 조치 외
-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 : 벌칙, 과태료 외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상 기관에서 문화예술 지원 기관 제외 추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07) 및 적용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 지원 기관 운영의 민주주의와 협치 기반이 약화되었다. 위원장 호선 제도 폐지, 위원장 직권 확대(사무국장 선임, 심사위원회 선정 외) 등으로 인해 본래 위원회 조직의 취지보다는 위원장 개인 중심의 독임제 기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문화예술분야 협치형 위원회들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고려하고, 블랙리스트 범죄의 작동 방식 등을 판단했을 때, 현행대로 운영될 경우 문화예술 관련 위원회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지속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예술 분야 합의제(협치형) 위원회에 대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예외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조치사항

과제구분	세부과제	관련부처	조치기한
『헌법』 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문화기본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각 조항 개정 및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 국회 	2018. 12.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 정비(『문화기본법』 개정 또는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대통령직속 (가칭)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및 권리보장 위원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 국회 	2018. 12.
법 개정·제정을 통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본법』 개정 또는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 법제도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 국회 	2018. 12.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상 기관에서 문화예술 지원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제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 국회 	2019. 12.

2. 법제도 과제 이행현황 및 경과

가. 『헌법』 개정을 통한 표현의 자유 및 문화기본권 확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발의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헌법 개정은 법률보다 어려운 절차를 밟아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곤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다만 헌법 개정 논의가 있을 시에 표현의 자유 및 문화기본권의 확대 등이 헌법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18년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제9조를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개정하여 문화국가의 원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국회 표결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기되고 말았다.

나.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의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경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제도개선 권고를 한 이후, 2018년 1월부터 (가칭)『예술가 권익보장에 관한 법률안』 관련 법률전문가, 현장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이 있었다. 2018년 10월부터 법안 쟁점 해소 및 의견수렴 기능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 TF가 구성·운영되었다. 이 시기에 2018년에 본격화된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으로 인한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과제로 합류하였다.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인권침해의 문제로 접근하여 예술인권리보장이라는 하나의 법안으로 구성하였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가 이루어졌고 2019년 4월 18일에 최종 의견수렴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019년 4월 19일에 20대 국회에서 김영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같은 해 6월 24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는 쉽지 않았고 특히 예술인의 권리보장 제도에 있어 사법적 특례에 대한 사법기관의 강한 반대가 있었다. 사법적 특례를 삭제함으로써 2020년 5월 7일에 20대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수정법안이 통과되었으나 2020년 5월 20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정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의 미비를 들어 보류하는 의결을 하여 회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2020년 6월 1일에 21대 국회에서 김영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안을 기준으로 재발의되었다. 같은 해 7월 27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2020년 9월 11일에 예술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21대 국회 재발의 법안에 대한 온라인공청회가 개최되었다. 2021년 3월 3일에는 지난 국회에서 절차적 미비로 지적되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개최하는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국회에는 주로 보호대상인 예술인의 범위와 예술인권리보장과 성희롱·성폭력의 이원적 보호체계가 문제되었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라는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2021년 8월 17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였다. 2021년 8월 24일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2021년 8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부로 이송된 제정 법률안은 2021년 9월 14일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4일에 공포되었다(법률 제18466호).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2년 9월 25일이다.

2) 대통령직속 (가칭)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 설치

제도개선 권고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상설적인 협치 기구로서 대통령직

속(가칭)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 설치였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설 협치 기구 구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안)』에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로 구현되었고 이와 별도로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이원체제로 규정되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권고되었으나 다른 위원회와의 위상과 현실성 문제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으로 하였다. 21대 국회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재발의되었을 때 쟁점이 된 것이 두 개의 위원회를 두는 문제였다. 원래 블랙리스트방지 제도개선 권고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두는 것이었으나 이후 예술계 미투 운동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운동에 합류함에 따라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으로 하였다. 두 위원회가 다루는 문제의 성격과 위원구성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국회논의에서는 이원체제가 채택되지 않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라는 하나의 위원회체제로 규정되었다. 표현의 자유 및 권리보호 문제와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문제는 분과위원회를 통해 그 특성을 반영한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3)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의의와 주요 내용

가) 헌법이 명령하는 예술가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갖는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가의 권리보호에 관한 본격적인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어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선언하였다(제22조제2항). 그러나 이 조항은 그동안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예술인들조차도 예술가의 권리가 『헌법』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거의 알지 못한다. 더구나 우리가 참조할 만한 선진국이라는 나라의 『헌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그런 이유로 법학자들도 이 조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저작권법 정도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가 법학자들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인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가의 권리라는 시각이 새로이 대두되었고 블랙리스트 사태의 원인 중의 하나가 예술가의 권리보장에 대한 법제도가 부족한 것에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이 ‘『헌법』이 명하는 법률의 제정’이라는 대의를 갖게 되었다. 1948년 7월에 공포된 『제헌헌법』에서 선언한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한 규정, 그리고 현행 『헌법』 제22조제2항에서 말하는 바로 그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1948년부터 7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우리 『헌법』이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첫 번째 의의를 말하고자 한다.

나) 보호대상으로서 예술인의 범위 확대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보호대상이 되는 예술인의 범주를 기존의 『예술인복지법』 체제보다 확대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1년에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복지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예술인의 권익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복지지원이라는 점에서 전업 예술인으로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였다. 이 점은 예술인 권리보장의 한계로 지적되어 왔는데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 증명을 요구하지 않으며 직업예술인이 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도 포함하여 타이틀에 걸맞게 보호대상인 예술인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 예술인 권리보장의 세 영역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권리보장의 세 영역을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이 세 영역은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라는 문화예술계의 가장 아팠던 과거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는 미래를 말한다. 따라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실질적인 의의는 예술인의 지위를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후퇴시키지 않고 오직 향상시키고자 하는 법제도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1)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장에서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특히 예술지원사업에서 공정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것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의 금지 규정은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따라서 금지 조항의 위반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구제조치의 대상이 된다. 구제조치의 하나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다.

(2)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장은 법 시행 이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인의 일은 대부분 프리랜서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예술인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에 가까워 법적으로 사업자로 취급된다. 그러기에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그 법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다. 이런 이유로 예술인은 예술을 영위한다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꾸려는 체계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정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는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되는데 첫째는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제도이다. 예술인은 사업자로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제도의 적용대상이나 개인사업자인 예술인이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예술법제에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것이다. 이 제도는 2013년에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금지행위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이를 『예술인권리보장법』으로 옮겨 규정한 것인데 제도 시행 후 제기된 개선안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조사체계를 갖추게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둘째는 예술인조합 제도의 도입이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예술인은 노동조합의 결성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으나 대다수가 프리랜서인 예술인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가 없다. 예술인조합은 비록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특정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2인 이상의 예술인이 단체를 결성하여 계약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법의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유네스코의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1980)와 이를 기반으로 제정된 캐나다의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강조한 예술가의 조합결성이 강조된 바 있다. 예술인이 자신의 직업적 권리보호를 위해 스스로 조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동적인 권리보호에서 적극적인 권리주장의 시대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예술인조합이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에게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를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조합 활동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장은 예술계에서 성희롱·성폭력 발생의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성희롱·성폭력의 범위는 다른 영역에도 통용되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방지조치는 예술분야에 특유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예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예술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예술인에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구제기구와 구제절차

『예술인권리보장법』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

와 ‘예술인보호관’을 둬으로써 예술인 권리보장의 세 영역에 대한 위한 실질적인 조사와 구제조치를 가능하게 하였다. 행정체계로서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의 권리보장과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위원회는 예술인보호관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신고사실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있었다고 불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수사의뢰, 행정처분, 징계 등의 구제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예술인보호관의 조사결과 보고를 검토한 결과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해당 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행위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되거나 고용된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에게 성희롱 피해의 구제와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지정한 기간 내에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예술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도록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기관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다. 법 개정·제정을 통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 보장

2021년 9월 24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예술인의 권리보장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였다.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대하여 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4조)

-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 예술인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술인은 국가기관등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제7조)
-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권리와 예술 활동의 성과를 널리 전파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 (제8조)
- 예술인은 국가기관등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 ④ 예술의 직업적 권리 (제10조)
- 예술인은 예술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예술인은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갖는다.
- ⑤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제16조)
-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를 침해한 행위를 예술인권리 침해행위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예술인조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보호관의 조사와 예술인권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제도개선 권고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를 공공기관의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이었다.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서는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공기관 지정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운영법』에 공공기관 지정대상이 아닌 기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를 규정하여 공공기관 평가에서 자유롭게 하여 기관의 운영

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협치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별도의 방송평가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지정 제외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평가에서 자유롭게 하고 문화예술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기타 공공기관 평가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달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는 국가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기타 공공기관에도 적용되는 경영 합리화,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경영공시, 정관 기재사항, 회계 등의 공공기관 운영법의 기본취지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2018년 5월부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해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기관 유형을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1월 30일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의 기타 공공기관으로의 유형 변경이 완료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관장이 위원장의 선임 방식을 『공공기관운영법』과 달리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기관의 자율성과 협치 기반의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운영법』 체제에 따라 폐지하였던 위원장 호선제로 복귀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호선제를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020년 6월 9일에 법률 제17408호로 공포되었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호선제를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020년 6월 9일에 법률 제17413호로 공포되었다.

마. 남은 과제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문화예술진흥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위원장 호선제로 복귀함으로써 법제도 개선 권고는 상당 부분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한 사항도 있고 이행한 사항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추진해야 할 법제도 개선과제가 있다.

첫째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예술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이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예술인권리보장법안』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규정하였으나 『형법』의 업무방해죄와 권리남용죄로 처벌이 충분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사법당국의 반대의견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21대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마찬가지로였다. 따라서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체제에서는 구제조치로서 징계요구나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제재만 가능하며 『형법』이나 다른 형사법규의 위반사항이 있을 때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남용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대법원판례

의 추세가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칫 형사처벌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법 시행 후에도 엄밀한 검토를 통해 형사처벌 규정이 추가되는 입법상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가 명확하게 선언되었고 예술인의 권리로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규정되었다. 하지만 예술 정책에 대한 참여와 협치가 예술인의 권리로만 규정되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참여와 협치가 예술정책과 예술인만의 문제로 한정될 수 없고 예술정책을 넘어서 문화 정책 전반에 걸쳐 문화중사자와의 관계에서도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문화행정의 많은 영역에서 참여와 협치가 구현되는 행정으로 전환한 바가 있으나 법제도 차원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여 보다 확고한 정책방향으로 자리 잡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예술인권리보장법』 체제에서는 예술인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밖에 없어 문화정책 전반에 걸쳐 참여와 협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화기본법』의 개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예술인의 권리보장에는 명시적인 법체계가 정비되었으나 이로 인해서 예술법제의 사실상의 기본법 역할을 해왔던 『문화예술진흥법』의 위상이 약화되었다는 문제가 생겼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예술 진흥이 주된 내용이나 문화예술의 정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예술법제의 근간이 규정되어 기본법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예술인권리보장법』과 비교할 때 법체계의 정비가 요구되며 『문화기본법』과의 관계 정비도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진흥법』을 『예술기본법』과 『예술진흥법』으로 분화시키고 『예술기본법』의 선두로 그 하위에 『예술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복지법』 체계를 자리 잡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법체계 정비가 『예술인권리보장법』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3.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와 예술인보호관에 의한 후속조치

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체제에서의 후속과제 관리

문화행정 관련 제도 개선 사항, 기관별 제도 개선 사항, 법제도 관련 개선 사항에서 이행이 완료되지 않거나 남은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협치단 이후에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관리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정하는 예술인권

리보장 및 성평등한 환경 조성 수립·시행 체계는 예술인권리침해와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방지, 예술인의 지위 향상의 사회적 기반이 될 것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예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나 완료되지 않은 제도 개선권고 사항을 해소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체제에서 완료되지 않은 개선권고 사항들에 대한 후속 과제가 관리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나.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평등한 환경 조성 수립·시행 체계

『예술인권리보장법』 체제에는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평등한 환경 조성 정책 수립·시행 체계와 예술인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평등한 환경 조성 정책 수립·시행 체계를 통하여 후속 과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평등한 환경 조성 정책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권리보장 정책과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예술인권리보장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피해 예술인 구제,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예술인의 신체적 안전 및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개선,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5조제2항). 예술지원사업 정책과 관련하여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사업시행 원칙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제11조제1항), 예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의 사업선정 원칙으로 심사의 공정성·투명성·타당성·신뢰성 확보 조치 마련과 선정 심사 기준 공개를 규정하였다(제11조제2항). 이와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해당 예술지원사업이 예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하였다(제11조제3항).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제도는 예술지원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의 장은 예술지원사업과 관련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의 불만처리와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예술인보호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제12조). 각 기관의 예술인보호책임자는 예술지원사업

과 관련한 예술인의 불만처리의 창구 역할을 하는데 사업부서의 재량 남용이나 일탈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던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제도가 이관되어 규정되었는데 불공정행위의 주체로 예술사업자 이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으로 확대하여 예술인의 권익을 보장하였으며(제13조제1항) 예술인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특정 예술 활동에 관하여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예술지원기관을 규정하여(제14조제1항), 예술지원기관으로부터 예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2) 성평등한 환경 조성 정책

성평등한 환경조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수립,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설치, 전문상담원의 배치 및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7조제1항).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제18조제1항), 2년마다 예술분야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

3) 추진체계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와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권리침해와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구제기구이기도 하지만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평등한 환경 조성 정책 수립·시행의 추진체계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예술인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제27조제1항). 예술인보호관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제27조제2항).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제20조제2항제1호).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는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제20조제1항).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예술 및 예술인의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제21조).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제24조제1항).

다. 예술인권리보장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한 후속과제의 추진

제도 개선권고 중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와 예술인보호관에 의한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평등한 환경 조성 정책 수립·시행 체계에서 예술인권리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후속 과제를 관리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을 수립할 때 제도 개선 사항에서 완료되지 않거나 남은 과제에 대하여 예술인권리보장 정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도 예술인권리보장 정책 심의에 있어서 후속과제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검토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의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의한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평등한 환경 조성 정책이 시행되고 예술인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절차가 작동하면 예술인의 권리 환경이 변화하여 제도 개선권고 사항이 이 체계에서 해소되거나 정책과제에 흡수될 수도 있으며 그 영향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와 예술인보호관에 의한 후속조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평등한 환경 조성 정책과 별개로 관리되고 추진되는 것보다는 법에 의한 예술인권리보장 및 성평등한 환경 조성 정책과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재평가·재구성되어 관리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4장

이행협치추진단 활동의 종합적 의의

제1절. 예술현장과 문체부의 소통 및 민관협치의 성공적 모델

1. 민관협치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력

가. 실효성 있는 민관협치 모델로서 '이행협치추진단'을 조명하는 이유

블랙리스트 사태는 청와대의 지시로 국정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 국가의 문화행정 체계가 총동원되어 예술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증명한 국가범죄이다. 이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의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와 관련 제도의 개선, 미진한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과 문화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구로서 '(가칭)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장 위원회'의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 권고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결과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정부의 약속 이행을 검증할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이행협치추진단(이하 '이행협치추진단')'이 문체부 산하에 설치되었다.¹

이행협치추진단 출범 초기에는 문체부 및 소관 기관의 제도개선과 후속 조치 과제 이행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블랙리스트 실행 기관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로부터 권고받은 제도개선 과제를 자체적으로 목록화하고 이행했다고 표시해오면 이행협치추진단 회의에서 검토하는 방식이었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토대가 되었던 국가주의의 위계적 결정과 집행구조, 하청식 전달 체계, 정보와 권한의 독점 등 관료행정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이행협치추진단 활동을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행협치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뿌리 깊은 관료제 관행을 동력으로 삼아 작동할 수 있기도 했다. 블랙리스트를 국가범죄로 인정하고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약속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가해의 주체였던 정부 부처와 소관 기관은 제도개선과 후속 조치 권고과제를 이행해야 하는 절대적 국면에 놓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관료행정의 수직적인 위계 구조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제도개선 권고안의 주요 기조인 소통과 분권, 협치의 민주적인 제반 원리를 단기간에 수용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주권자 참여권리 보장의 요구와 공공과 관련한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추진된 거버넌스는 형식적이거나 소극적인 수준에서

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1 위원회 활동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9 요약.

추진되어왔고 이러한 관행이 기관과 민간 현장 내부에 깊이 자리 잡아 민주적 가치를 지향하는 해결방법이 제시되어도 실행과정 속에서 정보와 과정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과 경험을 기록하여 정부와 예술현장과의 소통, 민관협치²의 중요한 사례로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문제해결의 목적이 있는 민관합동협치 기구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4년간 운영된 이행협치추진단의 경험과 시행착오의 기록이 성공적인 민관협치 구성과 요건을 구체화하는데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나. 민주주의 가치 회복을 위한 민관협치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1789년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The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an and the Citizen)」 이래 국가의 권력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었다. 전통적인 행정학에서는 정부가 위계적 권한을 행사하며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정부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으로 격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경직된 국가통치체제와 정부 조직 내부의 소통과 협력의 부재는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고도로 현대화(high modernity)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과 조직의 다양하고 다층적인 요구를 수렴하고 복합적인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수직적인 위계에 의해 집행되는 경직된 관료조직으로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국가는 고도로 복잡해지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행정의 역할과 책임, 작동 체계의 문제는 바로 국가 통치 역량의 문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국가 발전 초기 단계에서 관료제는 국정 관리에 효율적인 조직체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정부와 같은 대규모 조직에서 위계화된 조직 질서를 체계화하고 관료행정의 전문적 역량을 높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의 관료행정은 위계적 계층화 구조가 초래하는 정책 집행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전환점에 놓였다.

기존의 통치(government)구조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거버넌스(governance)가 등장하였다.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 고유의 권한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도 국가 권력의 주체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주권자들은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 국민 스스로 권력의 주체로서 정책 결정, 정책 집행 및 평가와 환류 과정에 참여를 요구하거나 문제시되는 정책 집행 중단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과정에서 시민

² 협력적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정책, 공공관리, 공공 프로그램, 공공자산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의 이해관계자들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며 공식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집합적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통치 운영 방식이다.

참여 권리는 개인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참여민주주의에 의하여 강화되어왔다. 고도의 정보기술사회에서 급속도로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는 개인적 삶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정책과정에서의 주권자 참여는 민주주의의 발전에서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는 청와대의 지시하에 위계적인 관료조직을 바탕으로 국가의 행정체계를 총동원하여 실행될 수 있었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위법적으로 짓밟았다. 헌법상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중립성을 지키며 문화를 육성해야 함에도 정치적 견해의 차이를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했다.³ 블랙리스트 사태는 위계적 관료행정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할 수 있는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사회에 알려주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뉴노멀⁴ 시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가의 당면 과제는 국민의 생존과 안전, 자유와 권리보장, 삶 전반에 걸쳐있다.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국가의 권력 구조가 분권화되고,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마치 당장 새로운 대안적 체제로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주권자-행위자에게 분산시키는 대대적인 권력 이동(grand power shift)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다. 강력한 국가에서 민간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상황과 기존의 통치구조의 위기를 선부르게 ‘국민 국가의 소멸’로 결론 낼 수는 없지만 관료행정 중심의 국가 주도 통치력이 소멸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미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은 국정과제로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권한 분배와 자원 공유는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가 국가의 존속을 위한 정당성을 얻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행위자들과 협력하여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16」 판결문(2020. 12. 23) 일부 인용

4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의미한다. 뉴노멀은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변했다는 상황 변화와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이기도 하다.

2. 이행협치추진단은 좋은 협치기구의 사례가 될 수 있을까?

가. 민관협치 기구로서 이행협치추진단의 구성과 활동의 의미

1) 현장예술인이 참여한 이행협치추진단

이행협치추진단은 담당부처, 관련법과 행정 전문가 외에 전 진상조사위 민간위원, 블랙리스트 피해자 연대조직 소속 예술인 등이 참여하여 민관합동 협치기구로 구성되었다. 이행협치추진단이 민관합동 협치 기구로서 유의미한 첫 번째 지점은 교수, 또는 협·단체 대표 등 관행적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고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문제해결을 제시한 현장예술인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것이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추동한 현장예술인들은 제도개선과 후속 조치 계획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자고 주장하였다.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들은 피해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문체부 및 소속 공공기관이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예술현장과 소통하고 공유하며 권고과제 이행을 추진토록 결정하였다.

2) 민관협의체 업무 추진 제도화

이행협치추진단은 기존의 민관협의체 혹은 TF 등 민관협의기구가 유명무실하다고 비판받는 지적, 정책 추진 주체인 정부의 정보 독점과 일방적인 행정 추진의 관행을 해소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현장예술인 민간위원들은 문체부에 이행협치추진단 전담 직원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처 인사이동에 따라 이행협치추진단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명예 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의 경우 담당자가 바뀌면서 문체부가 추진해야 할 업무가 중간에 사라진 경우도 발생하였고 회의안건과 결과 공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이행협치추진단은 회의를 정례화 시키고, 사전에 안건을 결정하고 회의 결과를 확인하는 고유의 업무를 안착시키고자 하였다.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당면 과제가 발생하거나 안건 제시, 진행 상황 확인을 위하여 문체부와 사전에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중 소통 담당을 정하였다. 산하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안 점검의 경우 기관 검토는 이행협치추진단 회의를 통하여 진행하고 회의 결정 사항의 추진도 확인하였다.

3) 정부와 예술현장 간 소통의 매개 역할

문체부가 직접 문제해결을 위하여 예술현장과 소통의 장을 연 점은 유의미했다. 최종 결정 권한이 문체부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이행협치추진단은 현장 예술인의 요구를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선임절차 개선을 위한 세 차례의 공청회를 들 수 있겠다. 또한 이행협치추진단은 산하공공기관의 권고과제 추진을 돕고자 매개 역할을 해왔다. 가령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경우 이행협치추진단 내에 영화계 현장과 함께 권고과제를 검토하는 분과를 만들어 이들이 블랙리스트 회복의 주체로서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협조하였다.

나. 현장예술생태계의 형성을 위한 민관협력

이행협치추진단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이행하고자 하였다.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들은 예술현장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중시에 두고 다섯 가지 방향에서 문제해결을 하고자 했다.

첫째, 이행협치추진단은 문체부와 산하기관 간에 형성된 위계적인 전달체계에서 현장의 주체에게 우선적 권한이 주어지도록 기관에 권고하였다. 또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권고안을 예술현장에 공유하여 예술현장의 요구를 반영,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협조하였다. 2019년 5월 19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예술현장 대토론회>⁵를 개최하여 문체부와 소관 기관별 제도개선 이행을 평가하고 피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모아 이행협치추진단에 전달하였다. 이에 이행협치추진단은 권고를 받은 기관들이 예술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권고안 점검의 준거와 방향을 세웠다. 그러나 분야별 현장의 이해와 해결 의지가 달라서 과제를 소극적으로 이행하는 기관도 있었다. 한편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의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에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기관 자체의 혁신과 피해자 회복 방안을 모색하였다.

진상조사위는 미진한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과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하여 ‘(가칭)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장 위원회’ 구성을 권고하였는데, 초기 『예술인권리보장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방지와 미진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이행협치추진단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과정에서 예술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술계에 만연한 위계 성폭력 문제, 열악한 직업적 지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하게 하였다. 아울러 권리 침해 당사자가 법안 구성에 참여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 TF’ 구성을 제안함으로써 예술현장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왔다.

5 2019년 5월 20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에서 개최한 <블랙리스트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과제 이행 현황 점검 예술현장 대토론회>에서는 국정과제 1호 블랙리스트 적폐청산의 맥락에서 문체부 및 권고 기관의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미비점과 후속 조치의 미이행 문제가 공론화 되었고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은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에 각 기관이 해당 예술현장과 함께 과제 이행과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둘째, 이행협치추진단은 민관협치 주체 사이의 협력을 도모하면서 권고 과제 이행을 추진토록 하였다. 즉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해야 하는 기관과 예술현장과의 갈등 관계를 조정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위원 최종 후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7기 비상임위원 최종 후보가 사전 공개되었는데 여성 후보가 0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예술현장은 이와 관련하여 문체부에 예술위원 선임을 취소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이행협치추진단은 예술위 위원선임제도 개선을 공론화하고 현장으로부터 제안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그 결과 7기 예술위원 후보는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추천되었고, 최종 후보 인터뷰를 통해 선임되었다. 문체부는 예술위 위원 선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자 추천위원회 명단과 추천 사유를 공개하였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7기 위원회 출범 이후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간 자율운영공동선언 체결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였다. 대표적으로 이행협치추진단은 영진위, 영화계 현장과 문체부 해당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이행협치추진단 영화 분과를 구성하였다. 영화 분과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계 현장(한국독립영화협회, 블랙리스트 피해자모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제도개선 권고과제 검토와 후속 조치 과제의 추진방식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영진위는 9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제별 추진사항을 조속히 진행하고 의견수렴 프로세스, 공청회 등을 통해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서 현장과의 접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궁극적으로 영화분과 구성원들은 영화 정책 환경의 환류 체계와 영화계 현장과의 협력 프로세스 형성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영진위는 코로나 위기 등 자체적인 사정으로 과제 이행을 8개월이나 지연했고 분과 회의에 참석하는 영화계 현장에 사정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은 이를 지적하고 후속 회의를 열어 당초 영화계 현장과 합의되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영진위와 현장예술인들은 영화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조와 논의 프로세스를 모색하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셋째, 이행협치추진단은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방지 제도개선 권고 기관인 주요 6개 기관의 제도개선 및 블랙리스트 피해와 후속 조치 이행점검은 물론 블랙리스트 피해자-단체의 요청에 따라 가해 기관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도록 협의해왔다. 당초 문체부는 제도개선 점검을 6개의 주요 기관에 한정하고자 하였으나 이행협치추진단은 현장의 날 선 비판과 요구를 수용하여 진상 조사된 피해의 경우 해당 기관의 사과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하도록 협조해왔다. 가령 국립극단은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관장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피해자 연대모임인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은 2021년 5월 14일자로 문체부 예술정책관과 이행협치추진단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한국영상자료원(이하 자료원) 등의 블랙리스트 후속조치의 진행 여부와 추진 실적을 요청하고자 하였다. 이행협치추진단은 문체부 해당 부서와

기관이 협력하여 기관장 사과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협조하였다.

넷째, 이행협치추진단은 경과와 과정이 존중되는 방향에서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거나 협조해왔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16일, 영진위와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에서 공동주최한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문제해결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영진위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피해 예술인들은 영진위가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하기를 촉구하였으나 영진위가 과거사 진상규명의 활동을 미진하게 추진하면서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인들의 강력한 비판에 수차례 직면했다. 2021년 12월부터는 영진위와 현장이 함께 블랙리스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은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이행협치추진단 회의를 통해 사안을 검토하고 현장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였다.

다섯째,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들은 이행협치추진단 이행점검 현황과 활동을 현장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2019년 5월 19일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후속조치 검토 현장대토론회>, 2019년 10월 16일 <영진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와 후속과제 위한 토론회>, 2020년 11월 4일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4주년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2021년 11월 3일에는 이행협치추진단 주최로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간담회>를 개최하여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표현의 자유 보장 사업을 논의하였다. 이행협치추진단은 같은 해 11월 9일 <문화예술인시국선언 5주년 토론회>에도 참여하여 제도개선권고 과제 현황을 공유하는 등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과 예술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호적 관계에서 협력하고자 노력해왔다.

3. 문화행정 혁신을 이루는 성찰적 민관협력을 위하여

한국 사회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정치면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완성,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로 발전하였지, 여전히 국가주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법치주의 하에 국민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무거워졌고 위계적 관료행정조직의 폐단은 국가 문화 행정 조직 스스로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를 실행하는데 이르렀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이행협치추진단의 노력으로 주요 문화예술기관의 제도개선과 예술인권리보장 법제화, 문화예술생태계 토양의 변화가 일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정부와 기관의 법제적, 구조적 권력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하여 문체부는 강제적으로 위계적 권위의 분산, 공공정책 결정에서의 시민 참여권리 확보, 정부와 시민사회의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주적 책임성 제고라는 과제를 부여받

있다. 지난 4년간 문체부는 이행협치추진단 운영으로 능동적인 민관협력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적 지식을 축적해왔다. 이를 배경지식으로 삼아 민주주의의 발전을 담보하는 행정력으로 제고할 수 있다면,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가폭력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이행협치추진단의 권한과 구성, 활동의 사례가 연구된다면 경직된 행정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녹아든 민관 협력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문화행정의 협치 기반 조성 과 제도화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문체부의 행정구조 개혁과 협치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과제는 문화행정에 관한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 책임’ 등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하고, 국가 중장기 재정 수립과 정부 기관 평가 등에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며, 참여와 협치에 기반한 문화 행정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2022년 2월 문체부 장관은 현장이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블랙리스트 제도개선을 공고화하고 피해자 회복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국가 범죄의 무게가 산화된 지점이 있다. 이행협치추진단 사례가 정권과 상관없이 민주적 거버넌스에 관한 유효한 사례로 남기를 바란다.

제2절.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억사업과 그 의미¹

1. 누구의 눈으로 기록할 것인가

2016년은 한불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다.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다채로운 행사가 기획되었다. 프랑스 파리의 ‘포럼 데 이마주’에서 한국과 서울의 다양한 풍광을 담은 대표적 인 한국영화 76편을 프랑스 관객에게 상영하는 행사를 기획했다. ‘포럼 데 이마주’는 파리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영상문화센터로, 파리의 중심부에 5개의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포럼 데 이마주’는 매년 ‘도시의 초상들’이라는 주제로 영화제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2015년 6월경이었다.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한-불 상호교류의 해’ 추진 현황 보고를 문체부에 지시했다. 이때부터 프랑스 ‘포럼 데 이마주’의 사업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포럼 데 이마주’가 추진한 한국영화 특별전은 부산국제영화제와 공동진행하려 했으나, 청와대의 지시로 해외문화홍보원과 한국영상자료원이 이 사업을 맡게 되었다. 그 내용은 ‘영화 제외, 감독 및 게스트 초청 항공료를 기타항목으로 지원’ 등이었다. 영화상영작과 감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봉준호·이송희일 감독이 초청리스트에 빠지도록 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영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프랑스가 주도하는 문화교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이다.

2016년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또 다른 사건도 있었다. 2016년 ‘시네마테크 KOFA가 주목한 2015년 한국영화’가 있었다. 이 행사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매해 베스트 한국영화를 뽑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영화 중 <위로공단>과 <화장>을 상영하지 말라는 외압이 있었다. 이 두 영화는 홍보 없이 작은 상영관으로 옮겨 진행되었다.

한국영상자료원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 실체를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과정이었다. 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행과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영화 2-5』²에 잘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떤 상황이었고, 사건을 어떻게 겪었으며, 그 후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기술은 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의 눈으로 본 실상은 어떤 모습일까? 모은영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9년간 프로그래머로

1 이 글은 오창은·정원옥·박현선·김한주의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에 기반해 작성하였다.

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5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영화』, 문화체육관광부, 2019, 92~167쪽.

근무했다. 2016년 3월 극장운영팀 팀장으로 인사 발령 후 2017년 1월 2일 퇴사했는데, 그가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다. 모은영은 퇴사한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언론보도를 통해 스스로 자신이 당했던 일을 재구성함으로써, 알게 된 것이다.

모은영은 프랑스 ‘포럼 데 이마주’의 한국영화 특별전에 ‘특정 영화 및 영화인 배제’ 지시를 해외 문화홍보원 소속 주무관이 했을 때, “우리가 이 영화를 상영하지 마란 말을 할 수 없다. 큰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³고 문제제기를 했었다. 2016년 ‘시네마테크 KOFA가 주목한 2015년 한국영화’ 상영 배제 지시가 있었을 때도, “상영프로그램이 배포된 상태에서 상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었다. 모은영은 블랙리스트 실행 거부 문제가 되어 부당 인사조치를 받았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 되었다.

모은영은 나중에야 한국영상자료원에서의 마지막 1년간 본인이 당한 사건과 변화들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거꾸로 유추”해서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모은영 프로그래머는 오히려 ‘시원하다’는 심리적 해소감을 느꼈다고 했다. 자신이 퇴사한 이유에 대해 “일을 잘못해서,” “새로 바뀐 일에 적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등등 “안 좋은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몇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했었는데,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심리적으로 위로가 되었다는 것이다. 모은영은 “막상 그 리스트를 보는 순간 와,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정리가 됐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더 문제였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가 진행되자,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이 연락을 해와, “승진을 시킨 거지 부당인사가 아니라고 얘기해달라”는 식의 요구를 했던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모은영은 한국영상자료원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사과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또 다른 실망과 상처를 받기도 했다. 한국영상자료원의 과거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발언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조직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모두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자신에게 책임이 전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로서 모은영의 상처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는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것에 대해 한국영상자료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로 거기서부터 본인의 명예회복의 첫걸음이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 블랙리스트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기억을 왜곡하거나 망각으로 회피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모은영은 기억이 기록되고 보존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그 기억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3 오창은·정원옥·박현선·김한주,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103쪽. (이하 직접 인용된 내용은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101~109쪽 참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기억’ 사업은 피해자가 주체가 된 사건의 재구성이며,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위한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축소시키지 않고 공적 채널과 집단적 작업을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블랙리스트 사건 폭력의 치유와 미래 사회의 희망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2.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실천 활동을 근거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검열·배제·통제·차별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평등권을 침해했으며, 예술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주주의 수호,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부당한 행위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사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검열의 의혹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달아 있었다. 그로 인한 분노와 저항, 갈등과 혼란의 시간들이 꽤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퍼즐이 맞춰졌다. 그 이후에야 충격과 분노, 슬픔과 배신감 등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한꺼번에 겪어내야만 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블랙리스트 피해는 사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후적 피해인 것은 아니다. 일례로, 박근혜 연출의 창작산실 배제 사건의 경우 2015년 JTBC의 폭로로 블랙리스트의 작동을 알게 된 상황에서 사건의 베일이 벗겨지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켜보아야 했기 때문에 피해는 사후적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이었다.

블랙리스트 피해의 또 다른 특징은 물리적 형태의 가시적 폭력이 아니라, 신뢰 관계의 붕괴라는 비가시적인 상흔을 남겼다는 점이다. 이진이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이 분노와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협의해온 정책 파트너가 그간 쌓아왔던 믿음과 신뢰를 이미 오래전부터 일방적으로 배신하고 있었으며 기만적인 태도로 이를 숨겨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진이는 피해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공무원들과 지원기관의 담당직원들에게 ‘체대로 된 사과’, ‘사과 받는 이를 고려한 사과’를 원하는 것은 과거를 던지고 일어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자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는 “즉 그것이 블랙리스트 사태를 극복하는 ‘유일한 시작’이기 때문이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관의 공식적 사과문 발표’가 아닌, 기관 공무원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술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행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직시하

고 성찰하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다.”⁴라고 했다. 피해예술인들은 자신을 배신하고 기만한 가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대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위해 공공기관의 여러 공모사업에 지원한다. 피해예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차별하고 배제하였을 뿐 아니라, 사과를 거부한 채 여전히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가해자들과 대면하는 일이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과를 통한 화해와 신뢰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예술인들은 언제든 또다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블랙리스트 피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의욕의 상실과 무력감, 좌절감 등으로 예술 활동 자체를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양구는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일부 직원들의 피로움과 양심의 가책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겪고 있는 고통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⁵

블랙리스트 피해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의 고통과 집단의 고통이 혼재되어 있다는 데 있다. 블랙리스트가 실행되면 특정 예술가들이 감시하고 사찰하고 배제하고 차별해도 되는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는 구조화된 차별이기에 사회적 ‘악’이다. 블랙리스트 피해가 개인의 피해를 넘어 집단적 고통의 양상을 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단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우는 개인의 피해와 집단의 피해가 얽혀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피해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블랙리스트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블랙리스트 피해는 사건 자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지속시킨다. 사건의 해결이 지연되고 망각되는 과정에서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의 고통은 재생산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도 문제다.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2차 피해가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3. 블랙리스트 크레딧 위원회와 ‘프리뮤즈’의 활동 사례

그렇다면, 외국에서도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을까? 문화예술계의 검열과 탄압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할리우드의 블랙리스트 크레딧 위원회의 활동과 ‘프리뮤즈’(Freemuse) 활동을 주목할 수 있다.

4 이진아,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예술계에 남긴 상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문화체육관광부, 2019, 150쪽, 152~153쪽.

5 이양구, 「피해자의 눈으로 본 블랙리스트 사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문화체육관광부, 2019, 289~290쪽.

1947년 미국에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미국 국회의 주류당이었던 공화당 극우파는 ‘반미 활동조사위원회’(House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Committee, HUAC)를 만들어 정부 비관 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HUAC는 할리우드에도 압력을 행사해 자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제출 하도록 했다. 할리우드의 많은 영화인들은 블랙리스트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영화계를 떠났다. 조사위원의 심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을 지킨 10인은 ‘할리우드 텐’으로 불린다. 침묵의 대가는 가혹했다. 이들은 모두 1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출옥 이후에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고, 작품 크레딧에서도 이름이 지워졌다.⁶

이 사건은 오랫동안 잊히는 듯했다. 40여년이 지난 1986년에야 미국 작가 협회(Writer’s Guild of America)가 ‘블랙리스트 크레딧 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졌다. 미국작가 협회는 아카이빙을 통해 작품 크레딧의 정보를 바로잡았다. 크레딧에서 이름이 사라지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올라간 블랙리스트 영화인의 정보를 바로잡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진행했다. 미국 작가 협회의 활동의 영향으로 1999년부터는 세계 각국에서 블랙리스트 영화인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이뤄졌다. 비엔나영화제와 비엔나 영화박물관 공동 개최로 블랙리스트 영화 50편이 상영되었고, 학자들을 중심으로 심포지엄이 열렸다. 취리히에서도 30편의 영화 시사회가 개최되었다.

예술표현의 자유 운동과 관련해 ‘프리뮤즈’(Freemuse)도 주목해야 하는 활동이다. 덴마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국제적 NGO인 ‘프리뮤즈’는 매년 전세계 각국에서 예술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한다.⁷ ‘프리뮤즈’가 간행한 보고서는 현재에도 많은 국가에서 예술표현을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예술가에 대한 살해, 납치, 공격, 투옥, 박해, 위협, 검열 등을 담고 있다. ‘프리뮤즈’ 2016년 보고서에는 한국의 사례도 게재되어 있다. 한국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스라엘 정부, 러시아 정부의 사례와 함께 기록되어 있다. ‘프리뮤즈’의 2018년 보고서에는 ‘예술적 자유의 현황’에서 “새로운 글로벌 문화가 부상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추동되고 다수의 사회 집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관점들을 침묵시키는 검열, 공격, 박해 등이 일반화되고 있는 문화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⁸

‘프리뮤즈’의 활동과 관련해 박소현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박소현은 ‘21세기 검열 문화는 과거의 검열 정치와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몇몇 권력가들이 검열의 칼을 휘두르던 방식과는 달리, “침해 주체는 억압적인 정치 체제 하의 정부에 한정되지 않고, 개방적, 민주주의적

6 임인자,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반세기의 상처」, 〈씨네21〉, 2002.

7 “예술 자유를 수호하며”(Defending Artistic Freedom)라는 구호 아래 프리뮤즈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참조. 〈<https://freemuse.org>〉(검색일 : 2022. 7. 5.)

8 “[A] new global culture is emerging, one where censorship, attacks, prosecutions and other practices of silencing views one disagrees with is becoming the norm, driven both by governments and supported by large groups of people in society.” - Freemuse Report “The State of Artistic Freedom,” Freemuse, 2018, p.26.

국가들의 정부까지” 아우르며, 때로는 종교단체들, 지자체, 기업, NGO 등도 함께 가세한다고 했다.⁹ 광범위한 형태의 검열 현상은 민족주의적 포퓰리즘 정치인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더불어 최근 예술정책 및 행정에서 확산되는 신자유주의화와 연관되기도 한다.

로버트 앳킨스와 스베틀라나 민체바에 따르면, 검열은 여론조사자나 세금징수원을 지칭하기 위해 라틴어 ‘censere’에서 파생된 말로 로마제국의 가장 악덕한 시민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되었다. 법적인 의미에서 검열은 정부가 표현을 억압할 때 적용되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개인이나 사적 기관이 표현을 억압하는 것도 포함한다.¹⁰ 두 경우 모두 검열은 창작하는 예술가의 적대자라고 이해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다 많은 경우에 검열이 매우 세밀하게 작동하며 자유시장의 부분적 원리로서 혹은 어쩔 수 없는 결과로서 표출되기도 한다. 어떤 방식으로 검열이 모습을 바꾸든 간에, 결과는 동일하다. 검열은 우리가 보고 말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것들의 범위를 좁힌다. 검열의 메커니즘은 문제시되는 행위의 표현을 억압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검열은 위험한 기억들을 은폐하고 박탈하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 주디스 버틀러가 말한 대로, “발언 가능한 담론, 즉 공적 담론 내에서 무엇이 승인될 수 있으며 무엇이 승인될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한도를 한정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다. 즉, “검열은 단지 제약적이거나 사적인 것, 즉 주체에게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 및 표현의 정당한 경계에 형성적”이라는 것이다.¹¹ 이는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에서 감옥의 권력은 단순한 금지나 억압을 의미하지 않고 판옵티콘적 감시의 문화를 창조하는 생산적 메커니즘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검열은 추상적이거나 이념적인 억압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문화(사무실, 제도, 관행 등)를 가져오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문화적 참여자는 그 안에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생성하고 통제를 내면화하는 생활을 수행하는 것이다.¹²

예술 검열 등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살펴볼 때, 희생자가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구술과 증언, 아카이빙을 통한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억화가 필요하다. 피해자 자신의 서사화와 적극적인 기억 행위는 고통의 치유와 신뢰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사회적 기억화 작업은 피해자와 희생자뿐만 아니라 참여자와 아키비스트들의 윤리성과 전문성,

9 박소현, 「예술행정과 검열의 정치 : 아이치트리엔날레, 평화의 소녀상, 블랙리스트」, 『위협받는 예술, 위기의 민주주의』, 문화연대 토론자료집, 2019, 19쪽.

10 Robert Atkins and Svetlana Mintcheva, “Censorship in Camouflage,” *Censoring Culture*, New York : The Vera List Center, 2002.

11 주디스 버틀러, 『혐오 발언』, 유민석 옮김, 알렙, 2016, 247쪽과 248쪽.

12 Ewa Majewska, “Censorship as the Formative Mechanism of Neoliberal Culture?” *Polish Theatre Journal*, Jan. 2015, p.7.

상호 연대를 필요로 한다. 구술 기록 및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조직, 위원회 구성, 트레이닝 프로그램 기획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피해자 중심의 구술과 기록을 통한 사회적 기억화는 충분한 기획과 자료 수집,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 활용 등을 통해서 계획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구술 및 심층인터뷰 자료에 대한 활용은 자료집, 해제집, 온-오프 아카이브 및 다양한 컬렉션, 박물관, 구술생애사기록집, 전시, 영상제작, 공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사회적 기억화 작업은 시민과 민주 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제도적, 정책적, 교육적 절차를 성문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문화적 실천방안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억화 사업은 문화적 재현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블랙리스트의 사회적 기억도 소설, 연극, 영상,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 창작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집합기억의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4. 사회적 기억 사업의 의의와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2017.7.31.~2018.6.30.)가 구성되어 본책 4권과 부록 6권으로 구성된 백서가 발간되었다. 백서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표 아래 블랙리스트 기획과 실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인 실행 관련자 중심의 조사가 이뤄졌다. 블랙리스트 실행자와 사건의 실체 파악 위주의 조사로 인해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던 사건 피해자에 주목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기록하려면 ‘사회적 기록’ 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록 사업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절실하다.

첫째, 사회적 기록 사업은 문화예술인의 광범위한 피해를 가시화하고, 실체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제1권)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 단체는 342곳, 개인은 8,931명으로 피해사례가 총 9,273건에 이른다. 광범위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뤄진 것은 145건으로, 전체 피해의 6.4%에 불과하다. 피해 조사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록 사업이 중요하다.

둘째,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책 범죄’로서 “개별적·구체적·물질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피해자의 인터뷰와 기술을 통해 실체화가 필요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조사의 기본 관점과 원칙으로 ‘피해자 관점의 실질적 공정성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피해자 또는 고발자의 관점에서 실질적 공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¹³

¹³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위원회 활동보고서 1, 문화체육관광부, 2019, 24쪽.

셋째,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록 사업은 ‘사건의 기록에서 피해자의 기억 기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록은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의 실상을 권력의 작동에서가 아닌 고통의 현장에서 포착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기구의 권력은 집단 주의적이면서 조직적인 형태로 작동하기에 억압적이고 기억의 왜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피해 증언 및 구술은 억압체계의 극복이기에 자유의 획득이며, 자유로운 예술 표현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사회적 기록 사업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피해 기억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에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치유력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피해자는 증언을 통해 고통을 객관화하고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으며, 무엇보다 피해 기억의 사회적 공유를 통해 위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섯째, 국가와 공공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이뤄지는 ‘사회적 기록’ 사업은 사회 전반에 걸쳐 무력화된 문화예술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는 검열, 배제, 차별이 이뤄졌던 때에는 사건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가기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책 범죄’ 이기에 사후적으로 피해의 기억이 재구성되었다. 가해 실체의 불명료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후적 공포는 가중되고, 트라우마도 극심하다. 피해자의 증언으로 통한 사회적 기록작업으로 사건을 명료화해 예술가들이 내적 무기력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기억 사업은 다음과 같은 공적 의미가 있다.

우선, 사회적 기억사업을 통한 피해자 개인 회복은 공공적 가치가 있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작업으로서 ‘사회적 기록’ 으로서 의미가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가 폭력의 문제이기에 ① 피해자의 구제 조치 ② 피해 회복 ③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피해자 관점에서 이뤄지는 심층 인터뷰와 구술채록은 피해 구제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인권침해 피해배상 권리장전-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2005)에서는 피해의 범주를 ① 정신적 피해 ② 감정적 고통 ③ 경제적 손실 ④ 근본적 권리의 실질적 침해로 나눴다. ‘경제적 손실’ 과 ‘근본적 권리’ 의 실질적 침해는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정신적 피해, 감정적 손실에 대한 피해 회복과 관련한 중요한 조치가 사회적 기록 사업이다. 피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구술채록은 내밀한 내면세계에 대한 토로 과정에서 고통의 자기 치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이뤄지는 회복 탄력성은 중요하다. 사회적 참사와 재난, 국가 폭력에 대한 사회적 기록은 가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의 기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블랙리스트 국가 폭력에 대한 조사도 실제적 진실의 규명 자체에 집중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이 기록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라는 사회적 실천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가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의 민주주의적 실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특정 정치권력의 우발적 ‘정책 범죄’로만 국한 시키지 않고, 한국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적 질서와 관련된 사안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가 공무원들이 부당한 정치권력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공공적 신뢰의 파괴가 이뤄져 한국 민주주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정책 범죄’의 심각성을 피해자 관점에서 기록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헌법의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의 침해,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했기에,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사회적 기록과 기억은 증거성을 보존하는 것이기에 시민민주주의의 실천 효과가 있다. 헌법에 보장된 중요한 기본권 침해를 사건화해 당대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을 증거적 형태로 보존하고 남기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주의적 실천이다. 기억은 그 공동체 내의 지배적 권력과 약소자들, 정치 체제, 사회·경제·문화적 권력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진다. 사회적 기억은 긴장관계의 산물이며, 시민적 권리를 위한 자위권, 인간존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된다. 사회적 기록과 기억은 피해자의 기억을 소중히 하고, 보존함으로써 민주주의 실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 기억의 창조적 활용 및 미래세대 전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피해자의 기억과 경험을 기록하고 기억함으로써, 블랙리스트 사건의 자료를 전문연구자와 일반 시민이 이용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검열·배제·통제·차별적 조치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기록과 기억의 활용이 중요하다. 기록물 이용자는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통해 자발적 의지에 따라 피해자와 소통하고, 소통의 경험이 새롭게 사회적 기억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록과 기억의 확장성을 높이고, 사건 이후의 영향이 동시대에게까지 긍정적으로 미치도록 한다. 사회적 기록과 기억의 창조적 활용을 통해 기록 이용자의 상호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기억이 전수되어 블랙리스트 사건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친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문화예술인에게 미친 영향 중 심각한 부분은 내면세계에 대한 충격이다.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은 많은 예술인들이 내밀한 세계에서의 자기 변화로 인한 예술 창작활동의 곤란함, 창작자로서의 삶 포기, 창작의 부진, 예술가로서의 작업 방향의 변화와 같은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 관점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심층 탐구는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외부 권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예술표현의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환기점을 제공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전과 이후가 근본적인 결절점을 형성하기에,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성이 존재한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기록과 기억은 피해자에게 ‘고통의 환기’와 ‘기억의 사회성과 정치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피해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증언하게 함으로

써, 국가 폭력은 사회적 정치적 역량을 획득할 수 있다.

사회적 기억 사업은 기억의 공유를 통해 기억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기억의 공유와 새로운 기억의 창출을 통해 현재적 의미가 지속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사회적 기억을 전수 받은 일반인이나 미래 세대는 스스로 자신의 기억을 획득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기억 생산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 기억은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이나 미래 세대에 의해 학술적 산물, 문화예술 콘텐츠, 소셜미디어 공간의 자발적 기술 등으로 시공간의 확장성을 획득하는 ‘운동하는 기억’으로 전환될 수 있다.

5.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사업의 중장기 과제는 무엇인가

2019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단체 342곳, 개인 8,931명으로 총 9,273건(중복 제외)으로 확인되었다. 분야별로는 영화가 2,468건으로 전체의 27.1%로 블랙리스트 피해가 가장 컸으며, 문학이 1,707건, 공연이 1,593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시각이 824건, 전통예술이 762건, 음악이 574건, 방송이 313건, 기타 859건에 이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피해는 ‘지원 배제’로 한정되지 않고, 문화예술인 불법 사찰과 감시, 문화예술 창작·표현 활동에 대한 검열, 문화예술활동을 위축시키는 통제 및 불이익과 차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졌다.

그 피해의 광범위함에 비춰볼 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미진하다. 무엇보다,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억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 심층 인터뷰와 구술 채록은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중요하다. 예술 현장 및 예술 지원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및 회복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열한가지의 중장기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1) 피해 예술인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을 위한 조직 및 자원 마련

블랙리스트 사건을 피해자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피해자 심층 인터뷰 및 구술 채록 작업은 피해자를 주체의 자리에 놓음으로써, 심리적 치유효과와 고통의 사회적 인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피해자를 대상화시키지 않고, 피해자의 참여 보장을 통한 주체화의 과정이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주체,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조직,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법 제정을 통해 재원 마련의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가칭)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구술프로젝트단’을 구성하고, 구술 인터뷰 수행자들의 필수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피해자 관점에서 이뤄진 ‘사회적 기억 및 기록’을 기반으로 출판물, 영상물, 온라인 콘텐츠 등이 만들어져, 블랙리스트 사건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재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2) 피해 예술인 심리 치료 상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피해 예술인이 주체가 되어 집담회, 좌담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 예술인 사이의 공감과 위로가 이뤄질 수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 예술인이 치료 대상자가 아니라 피해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의 곤란, 창작 경향의 급격한 변화, 무기력감, 창작 현장으로부터 이탈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최대 희망사항은 창작 활동을 통한 피해 극복이다. 피해 예술인들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창작 활동에 이르도록 하는 심리 치료 목표의 설정과 적용이 필요하다.

3) 피해 예술단체 및 예술인에 대한 국가 기구의 공식적 사과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 기구, 가해 공공기관, 가해 공무원들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가해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공연예술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국립극단, 국립국악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국립현대무용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의 기관에서 피해 예술인에 대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국가 기구의 사과는 국가 폭력의 공식적 인정이다. 국가 기구의 공식 사과가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기에, 피해자 구제 조치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4) 사회적 기록 확산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빙을 제안한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데이터의 손실과 훼손 없이 무제한적인 복제가 가능하고, 전송과 전파가 자유로우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전환 및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사건의 기억들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의 상황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의 특징은

‘현재 진행형의 피해’이다. 그렇기에 피해 상황의 실시간 업데이트와 공유, 상향식 기억의 수집, 사회적 기억의 의미 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디지털 아카이브 이용자들은 사건의 의미를 내면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을 확산하는 작업을 디지털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다. 피해자의 ‘사회적 기억 및 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브 이용자들이 학술논문, 문학, 음악, 회화, 공연, 영화 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소셜 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의미를 생산할 수 있다.

5)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의무 교육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공식적이고 프로그램화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 법정 의무교육인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 교육처럼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무원 및 직원들도 블랙리스트 사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매년 교육 이수율 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신입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서약서 서명 날인을 의무화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문화예술 분야의 업무처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와 피해자 중심의 사건 기록에 기반한 교육 교재도 만들어져야 한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온라인 동영상 강의 콘텐츠 개발도 이뤄져야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작업도 요청된다.

6)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 및 실천 프로젝트 지원 사업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들은 피해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예술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전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는 영화·공연예술·문학·미술·음악·무용·전통예술 등 모든 장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 극복이 전체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산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예술 실천 프로젝트 공모 및 연구조사 활동 지원 공모도 병행하여 진행 가능하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의 주체적인 예술 실천과 현재 진행형의 피해사례 조사 및 피해 극복 방안 연구가 지속성을 갖도록 한다.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 예술 실천 프로젝트, 연구조사 활동 지원은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과 연계해 대중적인 공유 및 향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7)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긍정적 예술 에너지로 승화시키기 위한 문화 예술 페스티벌이다.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를 통해 ‘표현의 자유’ 예술작품 공모 사업 선정작에

대한 상영, 공연, 전시 등을 진행한다. 문화예술인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평등적 관계 형성 및 일반 시민의 참여의 장 마련을 통해 예술적 긍정성 확산으로 블랙리스트 사건을 극복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통해서도 ‘표현의 자유’의 확산과 예술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

8) ‘표현의 자유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포럼 및 매체 발간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적 기억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정기 포럼 및 온·오프라인 매체를 간행할 수 있다. 피해자가 대상화되지 않고 주체가 될 수 있는 포럼, 매체,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해 피해자의 치유와 명예 회복,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예술지원 기관과 예술인의 신뢰회복 및 민주주의적 관계 설정을 위한 상시적인 상호 소통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정기 포럼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예술인과 예술지원 기관, 예술인과 공무원의 수평적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9) ‘예술인 권리 보장 위원회(표현의 자유 예술인 재단)’의 상설 기구화 및 사업 기금 조성

『예술인 권리 보장법』 등 법적 근거를 통해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혹은 ‘표현의 자유’ 예술인 재단)를 상설기구로 설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사업 기금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기관에서는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의 피해 회복,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활동 등을 진행한다. 기관에서 ‘표현의 자유’ 예술 공모 사업, ‘표현의 자유’ 주간 행사 운영, 매체 발간 및 정기 포럼 개최를 맡는다. 기관에서는 또한 예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예술 활동 지원과 연구조사를 담당할 수 있다.

10) ‘표현의 자유 예술 공원’ 조성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은 유형의 공간을 통해 피해 기억과 기록이 미래 세대에 실질적으로 전수되기를 희망한다. ‘표현의 자유 예술 공원’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혹은 ‘표현의 자유’ 예술인 재단)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이 곳은 ‘사회적 기록 확산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의 공간이 된다. ‘표현의 자유 예술 공원’은 ‘표현의 자유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반 예술 학술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 전시, 공연, 창작 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11)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생애 추적 조사 및 지원 연구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연구 조사를 5년 주기, 혹은 10년 주기로 진행하는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1937년 하버드대 연구진은 75년간 생애 추적 조사 사업을 진행했다. 그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생애 추적 조사 및 지원 연구’를 통해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정 ‘정책 범죄’가 문화예술인의 생애에 미친 영향을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중요한 토대가 되도록 한다. 생애 추적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이 한국문화예술계, 한국시민사회에 미친 영향 파악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제3절. 이행협치추진단의 성과와 한계

1. 이행협치추진단 운영의 사회적 배경

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협치

이행협치추진단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성과와 한계 속에서 제안되고 운영되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피해자와 시민의 관점에서, 문화예술 현장의 참여와 협치(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활동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이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활동이 국가 권력 중심의 비민주적이고 위계적이며 관료화된 문화행정을 문화민주주의에 기초한 사회적 협치 구조로 개혁하는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행협치추진단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성과에 머물지 않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이행협치추진단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권고했던 (가칭)『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가칭)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출범이 이루어질 때까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하는 사회적 협치 기구로 출범하였다. 이행협치추진단 운영의 중요한 사회적 배경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협치 활동의 지속적인 운영과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

이행협치추진단 운영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제안한 활동의 후속 조치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 문체부, 다수의 문화예술 지원기관 등이 장기적으로 공모하고 협력해서 자행한 국가범죄다. 심지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경유하며 일상적으로 구조화되었고 정책의 형태로 작동하였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라는 단기적인 활동을 통해 이러한 국가범죄와 조직문화가 본질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문체부를 비롯하여 가해 기관들의 자발적인 활동만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스스로 해결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행협치추진단은 이러한 측면에서 문체부를 비롯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가해 기관들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개혁을 통해, 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안들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사회적 안전장치 기구였다. 무엇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만으로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결코 종료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이행협치추진단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집행 점검

이행협치추진단 운영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가해 기관들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단기적인 개선 사항에서부터 본질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양한 기관에 걸쳐 권고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이명박·박근혜정부에 걸쳐 오랜 시간 동안 자행된 국가범죄인 만큼 그 구조와 뿌리가 견고하고 깊었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권고사항들은 법률 제정과 개정에서부터 주요 지원기관의 조직구조 개혁 그리고 지원사업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권고사항들의 이행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정책 과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이행협치추진단은 문체부를 비롯하여 주요 기관들에 대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협의·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행협치추진단 운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설립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 기한을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따른 ‘(가칭)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설립까지로 결정한 것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이행기 활동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이행협치추진단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비롯하여 위원회가 권고했던 각종 제도개선안의 집행과 제도화를 위해 일상적으로 협의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2. 이행협치추진단의 성과와 한계

가. 성과

1) 이행협치추진단의 지속적인 운영

이행협치추진단 운영의 제안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이행협치추진단이 구성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행협치추진단이 구성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행협치추진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사항들에 대한 집행과 점검,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다양한 이슈와 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치 활동 전개 등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이 종료되고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주체가 확보되기 전까지 이행을 책임 있게, 사회적 협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기구와 제도를 운영했다는 점 자체도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를 단기적으로 처리하고 일방적으로 종료하려는 한국 사회의 행정 관료주의 속에서, 이행협치추진단의 경우처럼 이를 극복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과 현장이 협치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실천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이에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행협치추진단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지점이며, 이를 위해 노력해 온 이행협치추진단 구성원과 문체부의 협치 행정 역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2)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백서 발간

이행협치추진단의 중요한 역할이자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백서를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했다는 사실이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종료 이후

호지부지 되거나 형식화되기 쉬웠던 백서 발행이 이행협치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국가범죄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향후 역사적 맥락에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백서의 발행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에 있어 백서는 지속적인 기억과 공유의 과정이자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행협치추진단은 이를 위해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점검뿐만이 아니라 백서 발행 활동을 구조화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위원회 백서가 발행되고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었다.

3)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사항에 대한 집행과 점검 진행

이행협치추진단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권고했던 다양한 권고사항들에 대한 문체부와 지원기관들의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하고 개선되어야 할 활동에 대한 협의와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다. 이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종료 이후 대다수의 권고사항들이 회식화되거나 형식화되는 관행과 비교했을 때 매우 의미 있고 실효성이 있는 활동이었다고 평가된다.

이행협치추진단은 문체부는 물론 지원기관들과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논의 테이블을 운영하였으며, 필요시 의제별로 추가 자문회의나 공론화 과정 등을 운영하였다. 개별 전문가들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현장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협치 형식의 이행 점검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행협치추진단은 권고안 과제들에 대한 형식적인 추진과 종료를 경계하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 취지를 고려한 지속적이고 본질적인 문제해결의 과정으로서 이행점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자 노력했다.

4) 피해자와 현장 문화예술인 관점의 접근과 소통 모색

이행협치추진단이 구성되고 운영되는 기간 동안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후속 문제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해자들의 반성과 과정 없는 활동 재개 문제, 피해자들을 둘러싼 다양한 2차 가해 문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각종 재판에 대한 가해 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 제도개선 추진 과정의 사회적 갈등과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등장했다.

이행협치추진단은 이처럼 블랙리스트 조사위 활동 종료와 새로운 제도 기반 마련 사이의 이행기 동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와 이슈들을 피해자와 문화예술 현장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협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대부분이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들이었지만 이행협치추진단의 지속적인 활동을 토대로 좀 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

은 채 사회적으로 협의되고 협치 프로세스를 통해 조율되어 좀 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행협치추진단은 무엇보다 정부와 문화예술 현장, 가해자와 피해자 등의 소통과 협의를 매개하는 중요한 소통 채널 혹은 협치 프로세스의 역할을 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둘러싼 별다른 협치 구조와 프로그램이 부족했던 상황이라는 점,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과 역할은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소중한 사회적 매개자였음이 분명하다.

나. 한계

1) 정부와 국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문제해결에 대한 수동성

이행협치추진단의 다양한 성과만큼이나 한계 또한 명백하게 존재한다. 이행협치추진단의 지속적인 운영이 소중한 성과라면, 그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보여준 수동성 역시 반복적으로 확인된 문제점이었다.

먼저 문체부의 경우 이행협치추진단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행협치추진단 민간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의존성이 높았고, 가해 기관이자 행정 조직으로서의 좀 더 적극적인 능동성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행협치추진단이 문체부 소속이라 할지라도 문체부 외의 정부 차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매우 부족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체부와 해당 지원기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국가정보원, 경찰 등 국가 권력과 정부 구조 전체의 심각한 문제였다. 무엇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했던 최종 책임 주체가 청와대였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정부 차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성찰과 노력이 필요한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은 문체부 차원의 활동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정부 차원의 노력은 점점 더 희석화된 경향이 심화되어 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매우 큰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당 그리고 정치인들의 경우도 특정 정당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무관심을 가중시켰다. 심지어 이행협치추진단, 현장 문화예술계, 문체부 등이 간절하게 추진했던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과정에서 국회와 정치인들이 보여준 무관심과 무책임한 행동들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과정에 있어 반드시 역사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정부와 국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부재함에 따라 이행협치추진단의 경우도 예산 확보와 제도개선 방안 이행에 있어 한계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으로 약속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예산 확보, 법제도 개선, 피해자들을 위한 사회적 기억사업 추진 등의 약속을 매우 미온적으로 접근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한계를 드러냈다.

2) 이행협치추진단의 장기화에 따른 불안정성

이행협치추진단은 초기 구성 때 예측했던 활동 기간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 활동했다. 이는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 기간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출범 시기까지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행협치추진단이 제안될 때의 기대와 달리 국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수년 동안 지연되면서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 기간 역시 무기한 연장되었다.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불안정하게 표류하면서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 역시 영향을 받아 장기화되고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무엇보다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이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지고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협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좀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임했다면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 역시 좀 더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3)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사항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접근 부족

이행협치추진단의 핵심적인 활동 중에 하나인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안 이행 점검의 경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사항의 문제의식과 문체부 및 지원기관들의 접근 방식 사이의 차이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사항의 대부분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발생하게 된 국가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면, 행정 기관들의 경우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이행 과제 완료가 실질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았다.

이행협치추진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여된 행정 기관들의 경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개혁에 대한 무관심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는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접근은 부재한 채, 문체부 소속 블랙리스트 관련 개별 기관들에게 책임과 과제를 떠넘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별 기관들

은 정부와 문체부에 대한 불만과 문제의식 속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 문제를 외면하려고 한다. 이런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은 권한과 시간의 제약 때문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사항에 대한 개별적, 단편적 이행과 점검에 머물게 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4)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부족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이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사항에 대한 개별적, 단편적 이행과 점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는,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공론화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한계와 연결된다. 물론 이행협치추진단은 활동 기간 동안 기자회견, 포럼, 토론회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공론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이행협치추진단 담당자와 민간위원들만의 노력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 의지가 미약함에 따라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의 적극적인 개혁과 혁신 과정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이는 이행협치추진단 활동에 대한 정부의 본질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

이행협치추진단의 경우 제도개선 방안만이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공감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역사적으로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요구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정부와 국회 등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둘러싼 사회적 공론화가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심화되는 과정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5) 이행협치추진단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지속적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부족

이행협치추진단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인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비롯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많은 시련과 한계 속에서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권고 취지를 고려한다면 향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형식적인 법률 제정에 머물러 않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협치 제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협치 구조는 이행협치추진단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행협치추진단이 노력해 온 개별 지원기관들의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노력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이행협치추진단 활동 과정에서도 각 기관별로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이 발생했으며, 대다수의 행정기관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 시기에서 보여주었던 성찰성과 책임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약화되고, 오히려 조직 보신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는 이행협치추진단의 개별 기관들에 대한 이행 점검과 개혁에 대한 권한의 한계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이행협치추진단 이후의 과제

가. 이행협치추진단 이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행협치추진단 운영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행협치추진단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기반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예정대로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에 있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속성, 전문성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와 이행협치추진단의 활동 경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협치 구조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협치, 이행협치추진단 해소 이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활동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집행 점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집행과 점검

이행협치추진단 이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사항의 지속적인 집행과 점검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연계하여 진행하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와 이행협치추진단의 경과, 성과와 한계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예술인권리보장법』

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가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권고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본질적인 맥락과 취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행협치추진단의 평가와 과제를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사항의 지속적인 집행과 점검을 추진해야 한다.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기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문제해결을 위한 협치 제도 속에서 이행협치추진단이 진행해 온 각 기관별 권고사항 이행 점검과 협의 역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앞서 이행협치추진단 활동의 한계에서도 확인했듯이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과제 이행 점검에서 벗어나 블랙리스트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본질적인 정책과 제도 그리고 조직 개혁의 과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문체부의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개별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문화행정의 위계화된 구조적 현실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화 과정에 있어 국가 문화정책 차원의 책임 있는 개혁과 제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 권력과 문화행정의 비민주적이고 위계화된 관료주의 조직문화, 문화정책 구조 자체에 대한 개혁 없이는 블랙리스트 문제해결 역시 요원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행협치추진단 이후 새롭게 진행될 예술권리보장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과정에서는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통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모색

이행협치추진단의 가장 중요한 철학과 원리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역사적, 사회적 관점에서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거대한 국가범죄로서 아직 충분한 진실 규명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원인과 대안을 위한 사회적 고민과 토론 그리고 합의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와 공감 그리고 치유 역시 아직 갈 길이 멀다. 다른 국가범죄의 사례와 역사적 경험 속에서 확인되었듯이, 국가범죄로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쉽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국가범죄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고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구조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불편하다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의 문화정책, 문화행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조사, 공론화, 의미화, 제도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행협치추진단의 고민과 과제들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

칭)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사회적 소통과 공감 확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문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과제들을 공론화하여 사회적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아직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조차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진행하지 못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권고 과정, 이행협치추진단의 지속적인 권고사항 집행 점검과 제도 개선 추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와 이행협치추진단의 백서 발행 등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현장과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해결과 치유 과정으로 이어가야 한다.

이행협치추진단이 요구해 왔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사회적 기억 사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 역시 중요하다. 이는 개별적인 사업의 차원을 넘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둘러싼 문제해결 과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이 정상화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부록 1. '팝업씨어터 공개사과 이후 -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을 시작하며' 공청회 자료집 (2019.12.2.)

부록 2.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2021.4.21)

부록 3.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추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21.11.3.)

부록 1.

**‘팝업씨어터 공개사과 이후 -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사업을 시작하며’ 공청회 자료집(2019.12.2.)**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및 검열 사건 요약

■ 진상조사 주요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진상조사및제도개선위원회가 조사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및 검열 의혹 사건』에 대한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팝업씨어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가 기획한 ‘대학로봄업프로젝트 <공원은공연중> 10월 프로그램’으로 대학로 축제 분위기 고취 및 관객 만족도 제고 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5. 10. 17(토) ~ 18(일), 24(토) ~ 25(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 (참여 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서인 「리스트 - `16. 2. 1. 현재」에서 2015. 9. 16. 전진모 연출가에 대한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만, 전진모 연출가는 팝업씨어터 공연 참가 제안을 받고 고민하다가 일정 문제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말을 먼저 하였다.
- 전진모 연출가를 비롯하여 <공원은공연중> 참여 후보자들의 명단이 예술위 문화사업부 →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로 송부되었고, 이 명단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신원 검증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는 참여 후보자들이 너무 신진 연출가들이어서 프로필 검색이 안 된다고 하면서 예술위에 생년월일 송부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 2015. 10. 17. 첫날 공연을 본 예술위 문화사업부장은 경영전략본부장에게 <이 아이>공연에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나온다고 보고하자, 경영전략본부장은 공연예술센터장과 협의하라고 하였다. 문화사업부장은 공연예술센터장에게 공연 대사 중 ‘수학여행’, ‘노스페이스’ 등의 단어들 나온다는 보고를 하였다.
- 10. 17. 공연예술센터장, 운영총괄본부장, 문화사업부장 등은 대책회의에서 공연 취소 등을 논의하다가 ‘팝업씨어터 기획 취지에 맞게 카페 영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음 날 공연 진행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 10. 17. 회의가 끝난 후 문화사업부장이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날 공연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였다.
- 10. 18. <이 아이> 이튿날 공연을 앞두고 예술위는 팝업씨어터 공연 취지에 맞게 카페 영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카페 테이블과 의자를 옮길 수 없도록 조치하고 카페의 음악 소리, 모니터와 스크린의 빛도 켜둔 채 공연을 하도록 하였다.

- 공연 시작 직후 등장한 배우가 연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옮기려고 하자 문화사업 부장이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등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공연 진행을 중단시켰다. 당시 객석에는 배우들의 지인들도 앉아 있었다.
- 연출가는 문화사업부장에게 ‘그러면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공연을 하겠다. 무대에서 나와 달라’고 말한 후 배우들에게 극중 죽은 아이가 올려져 있는 장치인 테이블이 없이 맨바닥에서 공연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배우들은 몇 분 동안 진정한 후 테이블 없이 공연을 재개하였다. 배우들은 연기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카페 음악,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외부 소음 등을 신경 쓰며 연기를 해야 했다.
- 10. 19. 예술위는 후속 작품인 <후시거나 포켓또>, <불신의 힘> 연출가에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지 살펴보려는 의도에서 대본 제출을 요구하였다.
- 10. 20. 담당 직원은 <불신의 힘> 연출가를 만나 대본 제출 요구가 <이 아이> 공연에서, 세월호 내용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는 추측을 전달하였다. 연출들은 우선 대본을 전달하였다.
- 10. 21. 두 공연팀은 서면을 통해 예술위에 항의하였고, 문화사업부장이 전화를 하여 공연을 방해한 점, <후시거나 포켓또> 팀의 공연 공간을 변경한 점에 대한 사과를 하였다.
- 10. 23. 두 공연팀은 공연방해 행위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고, 대본 제출 요구에 대한 명확한 해명 요구를 예술위에 이메일로 제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상황에서 공연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공연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 10. 24. ~ 25. 예술위는 공연 취소에 대한 사전 공지를 하지 않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만 취소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였다.
- 10. 27. ~ 30. 팝업씨어터 참가자 3인 연출가는 문화사업부장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지 말 것, 공연예술센터장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 11. 3. 담당 직원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하여 팝업씨어터 공연 방해 사건에 대하여 공익제보를 하였다.
- 11. 6. ~ 10. 예술위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공연 방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공연 방해는 없었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사건 발생 한 달 가량 후 예술위는 정기 인사에서 담당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전보 조치를 하였고, 담당 직원은 퇴사하였다.

■ 진상조사 이후

- 2018. 4. 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세월호 연대한 문화예술인에 ‘집요하고 끈질긴 탄압’ 제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개요를 발표하였다.
- 2018. 11.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계된, 재직 중인 주요 간부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하였다.
- 2019. 7. 19. 이 사건에 대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원의 공개 사과가 공연 방해 사건 현장인 씨어터 카페에서 있었다.

팝업씨어터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윤혜숙(연출가)

팝업씨어터 사건은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획한 ‘팝업씨어터’에서 일어난 국가검열사건입니다. 팝업씨어터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김정 연출의 <이 아이> 공연 중 대사로 언급된 ‘노스페이스’, ‘수학여행’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당시 공연장인 씨어터카페에 있었던 문화사업부장은 즉시 카페 영업을 재개시켰고, 같은 날 공연예술센터장, 문화사업부장, 운영총괄본부장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어 다음날 공연 취소를 논의했습니다. 공연 취소가 여의치 않자, 그들은 다음날 공연 현장인 씨어터카페에 나타나 동선 확보를 위해 옮겨두었던 테이블을 옮겨 배우의 동선을 방해하고, 카페 영업을 재개시키고, 카페 내 전광판을 켜고, 카페 BGM 볼륨을 높이는 등의 저열한 방법으로 공연을 방해하였습니다. 이후 공연 예정이었던 윤혜숙, 송정안 두 연출에게 별안간 대본 제출을 요구하였고, 두 연출가는 이 명백한 검열행위에 항의하며 공연 포기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러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연 취소 사실을 사전 공지하지 않고, 공연 당일 현장에서 관객을 조용히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연극인들인 대학로예술극장 앞에서 피켓팅레이시위, 파법(破法)씨어터 등을 진행하며 사실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 조사 결과를 조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팝업씨어터 사건은 위와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저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지 그 전부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공연 방해’와 ‘대본 검열’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과 해결과정을 통해, 이 사건이 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았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 팝업씨어터 사건은 ‘드러날 진상’이 없는 사건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 팝업씨어터 담당직원이었던 김진이의 공익 제보를 통해 이미 모든 사실은 세상에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고,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온 연극인들이 피켓을 들고 목이 터져라 사실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내부조사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내부 조사 결과는 조직의 허물

을 덮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고, 가해자들은 징계나 처벌 없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거나, 그저 임기가 다 되어 조직을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드러날 진상도 없고, 가릴 시시비비도 없는 팝업씨어터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실 인정’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여러 차례 사과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된 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앞 다투어 사과 자리를 마련했지만, 번번이 실망만 가득 안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를 알 수 없을 만큼, 사과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팝업씨어터 사건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가 ‘지난’ 정권의 과오이지 자신들의 과오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개 사과 자리를 정권이 교체된 뒤 거쳐야 할 의례적인 행사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허한 사과 자리가 반복되자 나중에는 피로감이 몰려왔고, 큰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제발, 딱 한 번만, 제대로, 딱 한 번만 하십시오!”

사실 인정 없는 공허한 사과가 반복되고, 드디어 지난 2019년 7월, 박종관 문예위원장의 공개 사과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일들이 사실이었음을 기관장의 입을 통해 확인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첫 기억을 떠올려보며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팝업씨어터 사건은 젊은 예술가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맺은 첫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어떨까요? 우리 기억 속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사회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축소판이었습니다. 팝업씨어터 사건은 이런 부패한 조직 문화가 자기 마음대로 예술가의 공연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술행정가의 오만함과 만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오만한 예술행정가는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직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상급직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의 진실을 공익 제보한 직원은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도,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도 없었습니다. 가해 예술행정가의 오만함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대책회의’ 까지 하면서 공연을 방해하고 대본을 검열했을까요? 부당한 일을 하더라도 윗사람들 눈치만 잘 보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직을 위해 저지른 부당한 일은 조직이 알아서 덮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오만함을 키운 것 아닐까요? 응당 처벌받아야 할 가해 직원들에게 커다란 우산이 되어주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공익 제보한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전보 조치를 실행, 결국 퇴사를 하게 만들며 자신의 권력을 가장 비겁한 방식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 직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을

스스로 가려내게 되지 않을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팝업씨어터 공개 사과 이후, 후속 조치로 진행될 모든 일들은 반드시 현실적·실천적이고, 피부에 와 닿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맺은 첫 기억은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 예술가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맺을 기억은 우리의 기억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체부와 문예위는 위계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까? 예술행정가들은 예술가들을 시혜 대상으로 보지 않고, 둘 사이를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새로 들어온 문체부, 문예위 직원들은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았습니까? 정당한 고발에 대해서 조직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공개 사과 자리에서 약속한 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들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을 원합니다.

팝업씨어터로 인한 상처와 생체기 난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춰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동력이 되어 계속해서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지금, 이제 더 이상 팝업씨어터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데” 진술하는 것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팝업씨어터 사건이 “우리에게”가 아닌 “모두에게”, “무엇이었는데”가 아닌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더 많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팝업씨어터 사건이 다른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예술행정가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깊이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팝업씨어터 사건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팝업씨어터 사건이 이후 수많은 블랙리스트 피해 사건들을 풀어나가는 ‘최소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팝업씨어터 사건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최소기준점이 되길 바랍니다. ‘최소한’ 팝업씨어터 사건 해결을 위해 만났던 만큼은 다른 블랙리스트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십시오. 그 이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보여 줄 수 있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이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팝업씨어터 사건은 제대로 된 사과의 선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선례, 제대로 된 가해자 처벌의 선례, 제대로 된 후속 조치 이행의 선례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후 수많은 블랙리스트 피해 사건들이 팝업씨어터 사건을 최소 기준점으로 삼아 제대로 된 사실 인정, 진심어린 사과, 책임자 처벌, 실천적인 후속 조치의 단계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없고, 그것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팝업씨어터’ 후속 조치는 왜 필요한가?

- 우리에게 남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위하여 -

김진이(공연 기획자)

지난 7월 어렵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한 공개 사과를 받았습니다. 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분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과했잖아”,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게 남아있는 몇 가지 질문을 되묻고 싶습니다.

1. ‘무엇’이 재발하면 안 되는 것일까

‘팝업씨어터’를 떠올릴 때면 몇몇 무거운 단어들만 연상됩니다. 블랙리스트 적용, 공연 방해, 대본 검열과 같은. 누군가의 ‘행동’에 집중한 이 단어들만 들여다보면 그 행동에 스며든 태도와 의미들이 자주 흐릿해지곤 합니다. 작년 4월 발표된 ‘팝업씨어터’ 진상조사 결과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다소 딱딱한 언어들로 나열된 문장들이지만 그 안에는 당혹스러운 진술들도 보입니다.

가령 ‘팝업씨어터’ 혐의 대상 예술가들이 정보기관의 블랙리스트 신원검증을 하기엔 “너무 신진 예술가들이어서 프로필 검색이 안 된다”거나 당시 <이 아이> 공연이 세월호 참사를 연상시키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간부진들의 대책회의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그만두게 하면 안 되나’, ‘다른 재미있는 거 올릴 수 없나’ 등)되었”다는 것. <이 아이> 공연이 “표현해내는 형식 자체가 팝업씨어터의 기획 의도와 맞지 않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거나 “카페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공연을 방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 예정되었던 ‘팝업씨어터’ 후속 작품의 “대본에서도 <이 아이>처럼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려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 각각의 행간에서 저는 자주 얼굴이 붉어지곤 했습니다.¹

¹ 본 내용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부록.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공연 1. 2-2. “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팝업씨어터 공연방해 및 검열 의혹 사건”의 참고인 등 대인조사(p. 865-888)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15분-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돌발적으로 펼쳐지는, 누군가는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작은 공연으로 여겨졌던 ‘팝업씨어터’를 둘러싼 일련의 행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진상조사 결과에는 모두 담길 수 없었던 그 시간의 기억들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적용’, ‘방해’, ‘검열’이라고 기술되었던 행동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도는 물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젊은 예술가들을 대하는 태도, 공연의 가치를 셈하는 기준, 이런 행동들이 가능했을 조직의 기만적인 문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이맘때, 씨어터카페 밖 길가에서 예술가들이 ‘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실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했던 것은 아마 벌어졌던 행동들 사이에 놓여 있던 그 무엇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팝업씨어터’ 사태의 재발 방지는 이러한 행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2. 어디에서 어떻게 또다시 겪게 될까

오늘 공청회가 열리는 이곳, 씨어터카페는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 방해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씨어터카페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팝업씨어터’ 기획 취지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한 ‘일상’적인 장소인 셈입니다. 공연 방해는 은밀한 장소에서 조심스럽게 실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4년 전 퇴사 이후, 저는 이 장소를 차마 오지 못했습니다. 이곳을 떠올리기만 해도 제가 살아가는 일상의 장소가 언제나 방해와 검열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상조사 결과에도 밝혀져 있듯, 제가 ‘팝업씨어터’를 담당하면서 섭외하고자 작성했던 예술가들의 이름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신원검증 리스트로 바뀌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읽고 또 읽으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왜 저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했을까요?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 검열이나 블랙리스트를 과거의 일로 바라보겠지만, 저는 여전히 제 삶과 일상에서 다시금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경험보다 더욱 교묘해진 방법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돌아오는 것은 아닐지, 혹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실행에 참여하거나 동료의 실행을 묵인하고, 후배에게 또다시 이 괴로움을 겪게 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다시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단지 제 개인의 일이라면 재발 방지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일은 조금씩 다른 사회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3. 후속 조치는 무엇일까: ‘공개’라는 관점에서

많은 예술가들의 사실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내부조사에서 밝혀진 사실 관계와 다른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은폐’ 행위로서 “공연 방해는 없었다”는 내부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예술인들은 사실인정도 진심 어린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담당 직원이었던 저는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후속 조치’였습니다.

진상조사가 발표된 이후, 진정한 의미의 후속 조치 첫 번째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식적인 사실인정과 공개 사과가 중요했다고 여겼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공개’ 사과로 이 사태의 시작이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2015년 당시 수립되었던 세월호 관련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배제 방침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후속 조치로서 공개 사과가 중요했던 점은 이렇듯 진상조사 이후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을 공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유 이후에야 적어도 저는 ‘팝업씨어터’를 비로소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년 전 ‘팝업씨어터’에서 공연 방해와 대본 검열이 실행되고 나서, 저는 공익제보, 이른바 내부 ‘고발’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체계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공연 전날, 부당한 이유로 <이 아이> 공연을 취소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자 제 행동은 명령불복종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공연 당일, 공연을 방해하기 위한 테이블 이동과 음량 조정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은 빌미가 되었고, 저는 ‘팝업씨어터’ 기획에 불순한 저의가 있다는 이유로 공연예술센터장에게 도리어 사과를

요구받았습니다. 공연 이후, 저는 참여 예술가들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직접 경과를 보고하며 감사도 요청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노조에 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연예술센터장을 만나서 사실인정과 사과 또한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변은 ‘기다려라’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제가 내부고발자가 되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 부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회에는 좋은 선배들이 많은데 왜 외부에 먼저 알렸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외부에 먼저 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끝까지 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팝업씨어터’ 를 함께 했던 동료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료들에게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사실들을 저 역시 ‘기다려라’ 라는 말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게 남은 것은 고발이라는 폭로였지만 그것은 저에게 남아있었던 유일한 ‘공개’ 의 방식이었고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후속 조치’ 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4. 후속 조치는 무엇일까: ‘변화’ 라는 관점에서

침묵에 응답을 요구하는 과정은 길었습니다. 그 사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도 바뀌었지만, 이 사태가 우리에게 가져온 피해와 고통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일을 거듭 반복해야 했습니다. 나 혼자 과거의 고통에 머물러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 혹여나 또 다른 피로감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의 무게는 개인 각자가 오롯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어떤 결과들은 미진했습니다. 벌어진 사태에 대한 처벌과 책임은 그 자체로 판단되기보다 다른 잘못들과의 비교 속에서 조율되어야 했습니다. 배상은 그 단어가 불러올 오해가 우려되어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후속 조치의 방향은 없었던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일이 아니라 있었던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하는 문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7월에 있었던 공개 사과의 자리에서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의견들은 그러한 미진함을 가리켰다고 여겨집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로부터 4년 전, 2015년 12월 2일에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위원장에게 보냈던 메일에 저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한 달 후 지금의 모습, 위원회의 현재 입장을 예측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일말의 기대를 놓을 수 없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제가 얼마나 무궁무진해질 수 있는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입니다. 삶이 제게 어떤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느낄 수 있어서, 센터와 위원회에서 보낸 시간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의 부제에서 ‘회복’ 과 ‘기억’ 이라는 단어는 저를 자주 망설이게 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상처의 기억들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복이 다시 그 시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팝업씨어터’의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새로운 변화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지금 이 순간이 그 변화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에 대한 노력은 현장의 요구로만 이루어질 수도 없으며 기관의 책무로만 남지도 않을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 회복 및 사회적 기억의 원칙과 방향

오동석(이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피해자의 권리와 민주시민의 책무

유엔총회가 채택한 ‘인권피해자 권리장전’은 대규모 인권침해를 겪은 사회가 구현해야 할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원칙을 제시한다. 그 내용은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 가해자의 처벌과 징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원상회복, 치유와 재할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과 공직자·미디어종사자·공공기관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 교육, 시민에 대한 일반적인 인권교육을 포함한 만족과 사죄 등을 담고 있다. 이것은 형사처벌이나 금전배상과 같은 법적 수단으로 환원할 수 없는 적극적인 정치적 열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인간의 정신적 정화와 사회제도의 근본적 변혁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과거 국가범죄에 대해 공동체가 지는 책무는 옅은 의무가 아니라 두터운 의무다(이재승, 2014a: 184).

진상 규명은 국가범죄의 양상과 내용을 밝히는 것이다. 피해자는 개인적 고통을 딛고 사회적으로 국가범죄를 고발한 기소자다. 가해자의 처벌과 징계는 최소한의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범죄의 속성상 형법과 행정법의 영역보다 넓어야 한다. 범망을 피했던 ‘가해자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 통상 ‘가해자의 사과’ 형태를 취하지만, ‘사과한다는 말’로 해소될 수 없다.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가 깊은 만큼 그 피해에 ‘맞설 수 있게 하는(치유하는)’ 과정은 피해자 회복에 조력하는 인권옹호자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인권옹부즈퍼슨이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자의 모습을 아직은 발견할 수 없다. 인권옹호자는 인권피해자의 ‘친구’이면서 대리인이다. 그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료 민주시민으로서 대등한 관계가 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조건을 조성한다. 공직자와 공공기관종사자에게 행하는 인권 교육은 그런 방법 중 하나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개인적 배·보상과 명예회복을 넘어 사회적 배·보상과 명예회복 그리고 사회적 기억을 요청한다. 피해자 개인이 개별적인 법적 배·보상 소송을 하게 하지 않고 입법에 의한 일괄적 배·보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범위가 법적 피해자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정치적 피해자로 확장해야 한다. 블랙리스트로 갈라졌던 문화예술계의 피해자성을 부각해야 하고, 국가범죄에 노출된 민주시민의 피해자성이 드러나야 한다. 그 결과 함께 기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의 문제해결자로 연대한다. 국가의 불법과 부정의에 맞섰던 기억들을 모두 소환해야 한다.

그렇다면 불법의 시대에 국가범죄에 가담하거나 방관했던 검찰과 법원은 이제 와서 피해자를 대리한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들은 오히려 공동피고다. 정의가 필요할 때 정의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태도는 2차 가해이자 국가범죄를 은폐하는 범죄다. 블랙리스트는 다양하다. 사건들의 무더기다. 무더기가 가능했던 건 국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무더기로 개입했기 때문이다. 조직적이었다. 그런데 전모를 밝히지 못했다. 역사가 지속하는 한 진상규명을 향한 노력을 계속될 것이다. 사회적 기억은 진상규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잡이다.

문체부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 문체부의 면책은 있을 수 없다. 문체부리는 행정부처로서 존재하는 한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죄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감죄(減罪)는 없다. 감벌(減罰)과 감책(減責)을 원한다면, 국가범죄의 몸통을 다 드러내는데 협력해야 한다.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피해와 상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억을 지울 수도 없다. 마치 피해자 명예 회복 정책 한 두 개나 금전적인 피해 배상이나 보상으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구는 것이야말로 3차 가해다. 사과하는 가해자의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겠지만, 사과는 말 한마디와 함께 고개 한번 숙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회복적 정의는 국가범죄의 상처를 회복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국가체제, 헌법체제의 원기를 회복하는 일이어야 한다.

피해자를 더 이상 피해자로만 남아 있지 않게 하는 일이 회복적 정의다. 피해자가 민주시민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동료 민주시민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피해자의 요구이자 권리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과 배상 그리고 회복을 넘어 사회구조의 혁신을 정면으로 추구하는 변혁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다.

2.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 배·보상 그리고 사회적 기억의 방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은 당사자성을 넘어 민주시민으로서 헌법체제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제 민주시민이 정치적 책임의식으로 회복적 정의의 길에 함께 해야 한다. 지배권력은 문화예술인을 지렛대 수단 삼아 민주시민의 의식을 통제하려 했다. 문화예술인의 인간 존엄 침해는 곧 민주시민의 인간 존엄 침해였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공론화는 이제 민주시민의 몫이다. 당사자들의 외로운 투쟁으로 고립되지 않게 그리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로 치부하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가야 할 민주시민의 주권 행사다. 국가폭력은 사사로운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물질적 배상으로 만족하는 열은 관점이 아니라, 국가폭력을 야기한 구조와 사고방식을 혁신하는 두터운 관점을 필요로 한다(이재승, 2014b: 229).

첫째, 가해자 처벌을 위해 공적 고발자로 나선 피해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제는 가해자를 향한 사적·공적 분노를 가라앉히며 피해자 자신의 언어로 그러나 담담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뚜렷하게 말할 수 있게 하고, 만족할 수 없는 가해자의 법적 책임 추궁을 넘어 어떤 정치적 책임 추궁을 해야만 가해·피해의 관계를 넘어 당당한 동등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지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회복의 과정을 혼자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함께 회복하는 과정으로서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 등을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게 해야 한다. 피해자의 범주는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 피해자는 물론 잠재적 피해자를 최대한 포함해야 한다. 이른바 문체부에서의 수사 미의뢰, 미징계, 검찰에서의 불기소, 법정에서의 각하, 기각 또는 축소 인용 등 법적·행정적 범주를 탈피해야 한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회복적 대화 센터’를 열어야 한다. 형식적인 인권옴부즈퍼슨이 아니라 트라우마 치유, 가해자의 ‘사과’와 관계 회복, 공무원 인권교육 등을 전담하여 고민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동시에 ‘문화예술인 인권옴부즈퍼슨’ 제도가 동행해야 한다.

둘째,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음을 고려해서 행정부 차원에서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피해 배보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때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는 것과 같이 심사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개별 피해자에 대한 접근방법과 함께 공적 명예 회복 또는 피해의 공적 배·보상을 고민해야 한다. 국가 재정은 기재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시민은 누구라도 공정한 예산집행자가 될 수 있다. 문화예술인참여예산을 넘어 문화예술인지예산을 확보하고 민주시민결정예산으로 문화예술재정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회복적 정의의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기억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기념관 설립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문화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예술표현방식으로 상시적으로 민주시민들과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로서 기억하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에 저항했던 광장의 공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간섭으로부터 해방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물론 그 제도의 바깥 또한 열려 있어야 한다. 공간과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그리고 모니터링과 피드백까지 공문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없는 문화예술광장’을 마련해야 한다.¹

사회적 기억의 대상은 박근혜·이명박 정권 시절의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한정할 까닭이 없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국가범죄에 저항했던 문화예술인들을 모두 소환하여 해원과 회복의 장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한국헌정사에서 문화예술계 ‘검열’ 또는 표현자유 제한의 문제를 드러내야 한다.

1 예를 들면, 광장극장 블랙리스트 <<https://www.facebook.com/theaterblack>>; 권리장진 2016 검열각하, 2017 국가본색, 2018 분단국가, 2019 원조적폐.

또한 국가보안법 사건들과 양심적 병역거부권 사건들 같은 사상양심의 자유 문제, 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그리고 저항의 역사를 포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과거 사건에 머물지 않고 현재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국가의 ‘검열’에 저항하는 현재적인 인권적·민주적 실천이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백서는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막고, 공직자 및 문화예술행정 종사자들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블랙리스트 사태의 인권적·헌법적 의미와 재발방지책 등 일련의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내용의 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권고했다(백서 3, 2019: 163). 피해자들은 교육 내용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 교육대상자들이 어떤 얘기를 듣고 향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요구하는 내용이 강의자의 입을 통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민주시민의 이름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것은 법적 책임을 면한 공직자 및 문화예술행정 종사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적 책임과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자기 자신이 민주시민임을 자각하고 가해자에서 동료 민주시민으로 회귀할 수 있는 기회다. ‘블랙리스트 피로감’의 호소는 여전히 가해자 또는 권력자로서 또는 명령복종자로 남고자 하는 ‘평범성의 악’이다.

백서는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억기록보존전송하는 사업 및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했다(백서 3, 2019: 164).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적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 전체주의적인 국가범죄에 가담한 것은 민주시민교육에서 핵심적인 반면교사 사례다.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피해자의 관점 및 민주시민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구성해서 민주시민교육에 포함해야 한다.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블랙리스트 없는 사회를 만드는 민주시민을 위한 문화예술매체별 교육 교재·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피해 보상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사태의 성격상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자에 대한 일괄적 배·보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별 배·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 배·보상을 통하여 문화예술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집단적 배·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을 필요로 하는 과거청산 사건이 허다한 한국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 그렇지만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 내거나 미래로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행기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일반원칙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국가범죄 사건의 피해자들과 민주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설령 당장은 국회의 문턱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대규모 인권 침해의 회복적 정의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를 패싱하는 민주시민의 직접 입법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참고문헌〉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20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3: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9. 2.
- 이재승(2014a). 국가범죄와 야스퍼스의 책임론. 사회와역사 101. 2014. 3. 183-217.
- 이재승(2014b). 국가범죄와 야스퍼스의 책임론. Jaspers, Karl(야스퍼스, 칼)(2014). 죄의 문제: 시민의 정치적 책임. 엘피. 2014. 11. 219-270.

팝업씨어터 후속 조치를 위한 제언

- “관계회복을 위한 만남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

정진세(극작가, 연출가)

지난 7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대표적 사건인 ‘팝업씨어터’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는 자리에서 피해당사자와 연대하여 함께 싸운 동료들의 이름으로 그에 대한 입장문을 밝힌 바 있다. 입장문에서는 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해서 우리(편의상 함께 싸운 동료들을 우리라고 함)는 “예술가를 국가가 검열한 일련의 사건들과 비슷하면서도, 보다 다층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 취해진 조치에 있어서도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은 서로 다른 상처와 고통을 경험했”음을 고하였다.

팝업씨어터 사건은 2015년 10월 18일 대학로 씨어터 카페에서 벌어진 공연 방해 사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이후에 있었던 한국공연예술센터(문예위 산하)의 대본 검열 행위와 이에 항의하는 팝업씨어터 예술가에 대한 공연취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공개와 이에 대한 동료 예술가들의 릴레이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내부자의 진실고백과 거짓사과, 이를 받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표시를 비롯하여 그 다음해에 이어진 화학작용 페스티벌과 권리장전 페스티벌, 블랙텐트를 비롯하여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예위의 공개사과 이후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건임을 실감하고 있다.

팝업씨어터의 ‘피해자’로 규정된 이후,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가꿈, 그때의 고통을(재)증언하기 위해, 다시 ‘그때, 거기’의 피해자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기도 한다. 블랙리스트의 끔찍함을 체감하지 못하는 관료들과 시민들, 그리고 후배들과 선배들을 위해 다시 한번 팝업씨어터의 무대에서 역사적 퍼포먼스를 펼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영웅담이나 노스텔지어가 될 수 없다. 반복해서 재수행하면 할수록, 외려 그것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뿐이다. 팝업씨어터 이후 연극하는 동료들이 더더욱 창작에 몰두하게 된 것은, 보란 듯이 만회하겠다는 예술가의 포부나 혹은 오기 같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피해자’로 머물러 있는 그 규정된 정체성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팝업씨어터 사건은 그때 거기의 우리들이 함께 뛰어 들어간 ‘입구’ 였다. 씨어터 카페의 문을 나서자, 거리의 문이 열렸고, 축제의 문이 열렸고, 극장의 문이 열렸다. 팝업씨어터의 연대성을 가지고 동료 의식을 발휘하여 그 시간들을 버텼다. 그 시간들은 외롭지 않았고 창작하는 즐거움을 알게해 준 귀중한 시간들이다. 그 시간들을 보내며 우리는 성장했고, 자기의 자리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권이 바뀌고 문체부와 문예위가 혁신을 부르짖는 그 시간 속에서도, 블랙리스트 사건들이 일말의 진실규명을 통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사건이었던 팝업씨어터 사태는 ‘출구’ 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고민이 더해졌다. 과연, 사건 혹은 사태라고 규정된 역사적 시간은 어떻게 종료되는 것일까. 그러한 경험과 사례가 우리에게 있는가.

피켓을 쓰고 피켓을 드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피켓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일은 우리에게 낯설다. 그리고 그 기억을 보존하고 유의미하게 남겨두는 일은 우리에게 어렵다. 돌이켜보면, 낯설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때 거기의 ‘나’ 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창작에 매진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팝업씨어터 사태는, 고민하고 자책하는 소수에게만 그 짐을 지워두었던 것은 아닐까. 진상규명과 사과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행과정 혹은 그 이후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점에서 우리의 연대와 저항은 다소 맹목적이고 다소 순진했음을 고백한다. 우리에게엔 보다 성숙한 결말이 필요하다.

헌법학자 오동석 선생이 블랙리스트 백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헌법적 처방의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다. 진상규명과 회복적 정의, 국가책임과 재발방지, 사과와 화해, 그리고 용서이다. 헌법적 처방과는 다르게 우리에게엔 예술적 처방이 필요할 것이다. 예술작품이 그러하듯 성찰과 사유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단계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셈이다. 여기서 ‘이해’란, 그 죄를 감싸안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이, “우리의 세기가 우리에게 지운 짐을 검토하고 의식적으로 짊어진다” 는 뜻이다.

먼저, 팝업씨어터의 후속조치는 무엇보다 먼저 사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사건을 온전히 기억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예술가, 예술행정가, 검열행정가, 관객, 시민, 연대 예술가, 언론기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체들이 본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의 목소리를 모두 살피야 한다. 가능하다면 가해자의 증언도 담아야 한다. 공연방해에서 공개사과에 이르기까지, 팝업씨어터의 시간들을 단계적으로 살필 필요도 있다. 본 사안은 피해자의 타임라인과 가해자의 타임라인이 복합적으로 섞여있다. 예술에 대한 검열행위가 ‘집단지성’ 과 ‘집단야만’ 의 경계를 오고갔음을,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끊임없이 바뀌었음을 기록해야 한다.

팝업씨어터 사태의 특이점은 예술가와 예술행정가의 사이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이다. 갑-을 관계로 맺어진 2010년대 현장의 파트너십은, 고용자인 상대를 언제든지 지원 권력

의 위계로 억누를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게 했고, 그것이 무명의 젊은 예술가일 경우에는 더 손쉽게 더 교묘하게 나타났다.

본 사건을 통해 예술가를 지원하는 문예위의 산하 공연예술센터의 공연부장 혹은 센터장의 지위에 있는 기성세대의 역할주체가 젊은 예술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는 체감할 수 있었다. 이들은 현장의 예술가를 무시위하는 대신, 이들은 문체부와 청와대의 눈치를 보았다. 예술가를 존중하기는 커녕 무시하고 조롱하였다. 이들에게 ‘예술’이란 입신을 위한 수단이거나, 자기보전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검열을 받은 예술가와 동년배였던 예술행정가들이 사건의 진실을 고백하고 퇴사함으로써 저항한 것과는 다르게, 관리자들은 끝끝내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의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러한 검열행위는 개인의 (일탈)문제이나 특정한 사건으로만 볼 수 없을 것이다. 10년이 넘어 시대와 세대가 바뀌었으나, 여전히 지난 시절에 매몰되어 있는 - 혁신되지 못한 - 상태로 머물러 있는 아르고 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봐야 한다. 다시말해, 팝업씨어터 사태는 2005년의 문예위와 2015년의 문예위의 예술가를 향한 인식의 차이, 혹은 10년이 지난 현장에서 변화한 위상과 역할에 따른 역할 주체들의 소통불가 상황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팝업씨어터 사태는 그런 점에서 젊은 예술가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벌어질수 있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문예위의 관료주의가 심화된 만큼, 예술가들의 자기방어 논리도 강해졌다. 예술행정가와 예술가가 동반자가 아닌 적대자로 입장이 변화한 것은, 비단 정권만을 탓할 일도 아니리라.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상대를 책임져야 하는 관계임에도, 그 역할을 방기한 대가가, 그 후세에게 짐으로 지워진 것은 아닐까. 선배들과는 다르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문예위의 출범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지도 못했고, 호혜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경험해 본 적도 없다. 그러나 검열사태로 굳어진 그 인상을 갖고 영원히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싶지도 않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주체들과 새롭게 동료의식을 나눌 수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작된 문예위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따라서 팝업씨어터의 후속조치는 문예위가 어떻게/얼마나 (젊은)예술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현장의 예술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하는 소통의 방법론을 다시 살피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예술가들도 문예위가 어떤 조직이었는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했는지 역사적 맥락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예술행정가가 소통을 포기하거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조직의 문제를 들여다 볼 필요도 있다. 이제 막 그 체제/시대/세대를 지나 객관적인 거리를 취하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예술계의 민간-공공의 상호 파트너십 공동연구”를 후속조치로 제안한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 유효한 소통의 경험사례는 무엇인가, 사적인 친분이 아닌, 당사자성을 지닌 주체들 간의 연결은 어떻게 가능한가, 상호-감수성을 지니기 위한 방식은 무엇인가, 하는 연구를 통해, 2020년대에 유효한 새로운 파트너십을 상상해 볼 수 있겠다. 문예위의 구성원들이 현장의 예술가와 직접 소통하면서 그 차이를 발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파생되는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피해자’나 함께 싸운 동료 정도가 아닌, ‘동반자’와 ‘책임자’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팝업씨어터’ 사태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는 지난 2015년 10월 있었던 ‘팝업씨어터’ <이 아이> 공연 방해 및 이후 공연 예정이었던 <후시거나 포켓또>, <불신의 힘> 공연 대본 검열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과드립니다.

예술위원회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참담한 과오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팝업씨어터’ 피해자들은 진상 조사 결과 발표에 근거한 정확한 사실 인정과 책임 인정이 담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예술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예술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두 달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과 사과문의 내용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작성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예술기관으로 동법 제1조(목적),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등에 의거하여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여 한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입니다.

하지만 예술위원회는 지난 정부 하 소위 블랙리스트 사태 당시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전달된 예술인 배제 및 사전검열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해당 예술인 및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조직의 본분과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이는 다시는 자행되어서는 안 될 국가 폭력이었습니다.

‘팝업씨어터’ 사태는 당시 청와대와 문체부가 예술위원회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이행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부당 지시하여 예술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여야만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자체 검열 사례입니다.

당초 ‘팝업씨어터’는 예술위원회 주최, 주관의 기획 사업 <공원은공연중>의 프로그램으로 극장 로비, 카페, 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돌발적으로 펼쳐지는 팝업 형태의 연극, 무용, 음악 등의 공연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17일(토)~18일(일), 24일(토)~25일(일) 아르코예술극장 로비, 앞마당, 대학로예술

극장 씨어터카페, 북스테이지 등에서 예정되었습니다. 연극 작품으로는 <이 아이>(김정 연출, 2015.10.17.~10.18., 씨어터카페), <후시거나 포켓또>(윤혜숙 연출, 2015.10.24.~10.25., 씨어터카페), <불신의 힘>(송정안 연출, 2015.10.24.~10.25., 아르코예술극장 앞마당)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팝업씨어터’는 2015년 9월 참여 예술가 섭외 과정부터 블랙리스트가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섭외 예정이었던 예술가들의 출생년도와 명단을 문화부 공연전통예술과에 제출하여 청와대 등에서 블랙리스트 여부에 대한 신원검증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섭외 대상이었던 전진모 연출가에 대해 문화부로부터 배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10월 17일, ‘팝업씨어터’ 참가자인 김정 연출의 <이 아이>가 씨어터카페에서 공연되었습니다. 동 공연을 관람한 문화사업부장은 ‘세월호를 연상시킨다’고 예술위원회 경영전략본부장, 공연예술센터장 등에게 보고했고, 이에 당일 밤 공연예술센터장, 운영총괄본부장, 문화사업부장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익일 공연의 취소 여부를 논의하였고, 결국 공연을 위해 준비한 카페 테이블 및 의자 배치, 음악 소리 크기 조정 등이 ‘팝업씨어터’ 공연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문제 삼아, 카페 영업 정상화를 명분으로 10월 18일 <이 아이> 둘째 날 공연 진행을 방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문화사업부장은 ‘팝업씨어터’ 담당자 김진이에게 <이 아이> ‘공연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담당자가 공연 취소 지시를 거부하자, 문화사업부장은 카페 테이블 및 의자 이동 불가, 음악 중지 불가, 카페 영업 중단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상기 언급의 실패로 2015년 10월 18일 <이 아이> 공연 시작 전, 문화사업부장은 <이 아이> 공연팀에게 직접 카페 테이블 및 의자 이동 불가, 음악 중지 불가, 카페 영업 중단 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예술센터장과 문화사업부장 등의 지시로 예술위원회 직원들은 배우 동선을 따라 배치된 씨어터카페 내 테이블을 모두 카페 영업을 위한 상태로 재정리하였습니다. 한편 공연 시작 직후 임영준 배우가 동선 확보를 위해 관객에게 테이블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문화사업부장이 이를 저지하며 공연을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공연 재개 이후에도 카페 영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을 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상기 사태 이후, 차기 공연 예정이었던 <불신의 힘>과 <후시거나 포켓또>의 공연대본에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살피는 의도를 포함하여 대본 제출과 함께, <후시거나 포켓또>의 공연장소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윤혜숙, 송정안 연출을 비롯한 공연팀의 항의와 공연 보이콧 선언 등 공연을 취소하도록 만드는 동인을 제공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두 공연이 취소되고 <이 아이> 공연 방해 및 <후시거나 포켓또>와 <불신의 힘>의 대본 검열 논쟁이 공론화되자, 문체부의 지시에 따라 사건의 사실 관계와 다른 사과문을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내부조사(2015.11.11.~11.13.)를 시행하였으나, 예술위원회 조직을 방어하고자 “공연방해 없었다”는 “조사결과 보고(2015.12.31.)”를 작성했습니다. 공익제보를 통해 이 사태를 세상에 알린 김진이 사업 담당자에게는 정기인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자 부당한 전보 조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예술위원회는 ‘팝업씨어터’와 관련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검히 받아들입니다. 2015년 당시 문체부는 세월호와 관련된 공연 등 문화예술에 대한 배제를 블랙리스트 실행의 주요 방침으로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팝업씨어터’ 사태는 예술위원회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배제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실행하던 중,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며 적극적으로 실행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또한 예술위원회 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에서 공연 방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도리어 ‘공연 방해는 없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팝업씨어터’ 사태 공론화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술가들의 수차례 항의와 시위가 진행되었고 진상조사 결과(2018.05.08.)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위원회는 그동안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할 예술위원회가 본분을 다하지 않고 사명마저 저버린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늦게나마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이>, <불신의 힘>, <후시거나 포켓또> 공연팀을 비롯하여, ‘팝업씨어터’ 참여 공연팀들에게 사과드립니다. 특히 당시 공연을 방해받은 상황에서도 관객들 앞에서 연기를 해야했던 <이 아이> 출연 배우 김원정, 임영준, 황순미 배우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팝업씨어터’를 기획했던 예술위원회 직원 염한별, 김준수, 김진이 씨에게도 사과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예술가들께 사과드립니다. 사건 당시 동 공연을 보신 관객 분들은 물론, 이후 예술위원회가 본분과 사명을 지키는 기관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을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예술위원회는 다시는 이렇게 중대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작년 말 조치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정직 등 징계처분과 관련 현업과의 격리 등 인사 조치 외에도, 제도 개선, 내부 고발자 보호, 직원 교육 등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거나 하고자 합니다.

블랙리스트를 계기로, 예술현장과 소통하여 이슈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고자 현장소통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심의업무 공정처리규정」을 제정하여(2018.10.5.) 심의업무 수행과정에서 내·

외부로부터 부당한 강요 및 청탁이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등 조치하였고, ‘부당한 업무 지시 발생에 대한 대처’를 주제로 하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2019.04.30. 나주, 2019.05.01. 서울), 예술지원의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하에서 문체부와 상호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자 조만간 자율운영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팝업씨어터’를 포함한 일련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하여, 피해 예술인을 포함한 예술현장과 함께하여,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팝업씨어터’ 사태의 해결 과정은 예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가들과 예술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위원회가 본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며, 피해 예술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계 회복의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19년 7월 8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록 2.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

연구과제명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연구진	오창은, 정원옥, 박현선, 김한주

본 연구는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비로 수행되었으며, 보고서에 제시된 연구 결과 및 의견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연구원들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4월 21일

연구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책임연구원	오창은(중앙대학교)
	공동연구원	박현선(연세대학교), 정원옥(대한출판문화협회)
	연구보조원	김한주(중앙대학교)
자문위원	이양구(연극연출가, 이행협치추진단), 김미도(서울과기대, 이행협치추진단) 정윤희(미술작가, 이행협치추진단) 김중휘(변호사)	

연구 요약문

과제명: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1. 연구의 목적

- 1)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억화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 방지에 기여
- 2)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기록하는 방안 탐구
- 3) 피해자 심층 인터뷰와 구술 채록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
- 4) 예술 현장 및 예술 지원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 방안 마련
- 5) 공공부문의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시민사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민주적으로 강화

2. 연구의 필요성

- 1)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를 가시화하고, 실체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
- 2)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록으로 고통의 현장 포착 필요
- 3) 블랙리스트 사건의 명료화와 예술가들의 내적 무기력감 극복 방안 마련

3. 사회적 기록작업 방식을 다룬 국내외 문헌 연구

- 1) 기억사회학
 - ‘사회적 기억’은 ‘사회적 틀’을 통해 획득·인지·배치되는 집합적-사회적 현상으로서 집합 기억(collective memory)에 접근
 - ‘기억의 장소(Les Lieux de mémoire)’는 “사람들이 회상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기억이 작동하는 곳”
 - ‘문화적 기억(das kulturelle Gedächtnis)’은 집단 구성원의 공통성을 상징적으로 전달해주는 ‘문화구성체(die kulturelle Formation)’가 집단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의미(Gemeinsinn)’ 전달
 - 한국에서 기억사회학의 관점은 기억 투쟁, 대항 기억 형성을 위한 담론적 실천 이뤄짐.
- 2) 구술사 연구
 - 구술사 연구는 기억으로 쓰는 역사라는 점에서 역사적 기억에 대항하여 사회적 기억 구성
 - 구술사는 1) 역사적 기록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에 접근, 2) 쌍방향적 과정의 특징, 3)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행동에 대한 내면의 동기 파악, 4) 문화사, 일상사, 지방사, 부문사 등 유효, 5) 침묵의 기억에서 구술자를 해방하거나 치유 역할 수행에 장점을 지님
 - 한국의 구술사 연구에서 또 하나의 두드러진 경향은 여성주의 인식론과 접목되면서 여성주의 역사 쓰기의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3) 기록관리

- ‘사회적 기록’, ‘사회적 기억을 내포한 기록’은 공공기록과 달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재발방지와 피해자 회복이라는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블랙리스트의 사회적 기억 사업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기록은 시공의 다양성, 주체의 다양성 인정, 이들이 생산한 기록의 고유성 그대로 반영
- 사회적 기록은 다양한 기억을 가진 기억 주체들의 인식론적 차이, 기억 주체의 변화에 따른 기록 생산 메커니즘의 차이 이해
- 기록관리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기억’을 정의하고, 사회적 기억을 기록하는 아키비스트의 책무 강조

4. 기록 작업의 의미

- 1) 사회적 기억사업을 통한 피해자 개인 회복 효과
- 2) 문화예술의 민주주의적 실천 효과
- 3) 사회적 기억의 창조적 활용 및 미래세대 전수

5.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국내 사례조사

- 1) 일제 강점기 군위안부 및 강제 동원 관련 사회적 기억
- 2) 정부 기관의 일제 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 동원 피해자 관련 구술사업
- 3) 한국전쟁 경험·제노사이드 피해자 구술
- 4)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구술
- 5) 사회적 참사 및 재난 피해자 기억 기록
- 6) 사회갈등·사회시설폭력 관련
- 7) 노동운동
-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6.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국외 사례조사

- 1)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
- 2) 일본 3.11 재난 참사
- 3) 아르헨티나 과거 청산과 진실화해위원회
- 4)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등 사회적 기억화 사업
- 5) ‘프리뮤즈’(Freemuse) 운동 및 아이치트렌엔날레 ‘표현의 부자유전’ 등 예술표현의 자유

7.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 1) 희생자가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 사업이 활발히 전개됨

- 2) 국내외 피해 사례들에서 구술과 증언, 아카이빙을 통한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억화는 피해자 자신의 서사화와 적극적인 기억행위를 촉발함으로써 고통의 치유와 신뢰 회복 가능
- 3) 사회적 기억화 작업은 피해자와 희생자뿐만 아니라 참여자와 아키비스트들의 개인적, 집단적 윤리성과 전문성, 상호 연대를 전제 조건으로 함
- 4) 구술 기록 및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조직, 관련 위원회 구성, 트레이닝 프로그램 기획도 함께 필요
- 5) 피해자 중심의 구술과 기록을 통한 사회적 기억화는 충분한 기획과 자료 수집,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 활용 등을 통해서 계획되고 보완되어야 함
- 6) 구술 및 심층인터뷰 자료에 대한 활용은 자료집, 해제집, 온-오프 아카이브 및 다양한 콜렉션, 박물관, 구술생애사기록집, 전시, 영상제작, 공연 등 포함
- 7) 국내외 피해사례들의 사회적 기억화 작업은 넓은 의미에서 시민과 민주 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교육적 절차를 성문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 문화적 실천방안으로 확대
- 8) 블랙리스트의 사회적 기억은 소설, 연극, 영상,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집합기억을 형성할 수 있음

8.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록작업을 위한 세부 방안

- 1) 사회적 기록작업의 대상 선정 및 범위
 - 신청사건 우선 선정
 - 희망자 우선 선정
 - 이름 없는 피해예술인들의 목소리 듣기
- 2) 사회적 기록작업의 윤리적, 법적 문제 및 수행자의 필요역량 분석
- 3) 사회적 기록작업의 윤리적 문제
- 4) 사회적 기록작업의 법적 문제
 - 프라이버시 침해
 - 명예훼손
- 5) 사회적 기록작업 수행자의 필요역량

9. 사회적 기록작업의 절차와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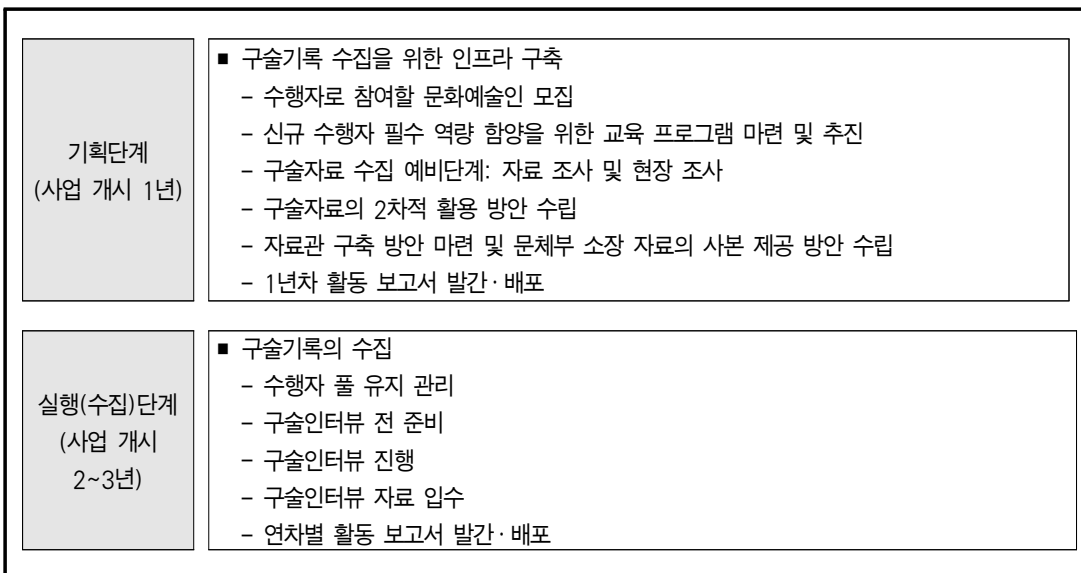
- 1) 기획 단계 : 입장 및 범위 설정 → 분석 → 설계 → 평가
- 2) 실행(수집)단계 : 심층면담(인터뷰) 전 준비 → 면담 진행 → 면담 직후
- 3) 정리 및 분류 단계 : 등록, 평가, 분류, 기술 → 보존 및 매체변환 조치
- 4) 활용단계 : 웹서비스 제공/도구서 작성 · 제공/간행물 발간/연구사업/교육 및 문화콘텐츠

<그림> (가칭) 블랙리스트사회적기억을위한구술프로젝트단 구성



5) 블랙리스트 사건 사회적 기록 작업 단계별 추진

<그림> 블랙리스트 사건 사회적 기록작업 단계별 추진



<p>정리 및 분류단계 (사업 개시 4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기록의 정리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인터뷰 자료 등록 - 구술인터뷰 자료 평가 - 구술인터뷰 자료 분류 - 구술인터뷰 자료의 2차적 활용 방안에 따른 자료의 가공 및 공개 - 구술자료 보존·활용 - 사회적 기록작업의 성과 발표를 포함한 공청회 개최 - 연차별 활동 보고서 발간·배포
<p>활용단계 (사업 개시 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프로젝트단 활동 평가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프로젝트단 활동 평가 및 보고서 발간·배포 - 웹서비스 제공, 도구서 작성·제공 - 간행물 발간, 교육 및 문화콘텐츠로 가공·활용 - 학술대회 등을 통한 향후 과제 제시

10. 피해자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구성(적용)

- 가. 피해자의 사회적 기억 회복을 위한 심층 인터뷰 질문 문항 구성
 - 블랙리스트 사건 전반에 대한 인식
 - 특정 분야 블랙리스트 피해에 대한 기억 및 경험
 - 블랙리스트 사건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 대한 경험
 - 피해자 본인이 말하는 피해 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위한 실천 방안
- 나.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모은영의 심층 인터뷰
- 다.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원승환의 심층 인터뷰
- 라. 공연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손혜정의 심층 인터뷰
- 마. 문학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김성규의 심층 인터뷰
- 바. 출판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강수걸의 심층 인터뷰
- 사. 미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윤동희·한상훈의 심층 인터뷰 분석

11.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및 회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

- 가. 피해 예술인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을 위한 조직 및 채용 마련
- 나. 피해 예술인 심리 치료 상담
- 다. 피해 예술단체 및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국가 기구의 공식적 사과
- 라. 사회적 기록 확산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 마.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의무 교육

- 바.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 및 실천 프로젝트 지원 사업
- 사.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
- 아. '표현의 자유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포럼 및 매체 간행
- 자. '예술인 권리 보장 위원회'(표현의 자유 예술인 재단)의 상설 기구화 및 사업 기금 조성
- 차. '표현의 자유 예술 공원' 조성
- 카.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생애 추적 조사, 지원 연구

목차

1. 연구목적 및 배경	11
가. 연구목적	11
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록 사업의 필요성	12
다. 사회적 기록작업 방식에 대한 기존 국내외 문헌 연구	13
2. 기록작업의 의미	21
가. 사회적 기억사업을 통한 피해자 개인 회복 효과	21
나. 문화예술의 민주주의적 실천 효과	22
다. 사회적 기억의 창조적 활용 및 미래세대 전수	22
라. 사회적 기억사업의 의의 분석	23
3.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24
가. 국내	24
나. 국외	44
다. 시사점	51
4.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록작업을 위한 세부 방안	52
가. 대상 선정 및 범위	52
나. 사회적 기록작업의 윤리적, 법적 문제 및 수행자의 필요역량 분석	62
다. 사회적 기록작업의 절차와 추진과정	72
5. 피해자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구성(적용)	81
가. 피해자의 사회적 기억 회복을 위한 방안	81
나.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모은영의 심층인터뷰 분석	83
다.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원승환의 심층인터뷰 분석	91
라. 공연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손혜정의 심층인터뷰 분석	100
마. 문학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김성규의 심층인터뷰 분석	107
바. 출판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강수걸의 심층인터뷰 분석	114

사. 미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윤동희·한상훈의 심층인터뷰 분석	124
6.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및 회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	134
가. 피해 예술인 ‘사회적 기록’을 위한 조직 및 자원 마련	134
나. 피해 예술인 심리 치료 상담	134
다. 피해 예술단체 및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국가 기구의 공식적 사과	134
라. 사회적 기록 확산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135
마.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의무 교육 ...	135
바.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 및 실천 프로젝트 지원 사업	136
사.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	136
아. ‘표현의 자유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포럼 및 매체 간행	137
자. ‘예술인 권리 보장 위원회’(표현의 자유 예술인 재단)의 상설 기구화 및 사업 기금 조성	137
차. ‘표현의 자유 예술 공원’ 조성	137
카.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생애 추적 조사, 지원 연구	138
7. 참고문헌	139

1. 연구목적 및 배경

가. 연구목적

-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실천 활동을 근거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검열·배제·통제·차별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평등권을 침해했으며, 예술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주주의의 수호,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부당한 행위이다. 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데 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2017. 7.31.~2018.6.30.)가 구성되어 본책 4권과 부록 6권으로 구성된 백서가 발간되었다. 백서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표 아래 블랙리스트 기획과 실행에 대한 조사, 가해자인 실행 관련자 중심의 조사가 이뤄졌다. 이 연구는 블랙리스트 실행자와 사건의 실제 조사로 인해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던 사건 피해자에 주목하여,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구성될 때, 피해의 심각성과 문화예술계에 영향을 구체화할 수 있다. 피해의 실체화는 고통의 사회적 인정을 통해 재발 방지 노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연구는 피해자 중심의 기록을 통해 피해를 가시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피해자의 사회적 기억 회복을 위해 심층 인터뷰와 구술 채록을 진행함으로써 ‘블랙리스트 사건을 사회적 기록’을 할 필요가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 자체와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기록에 머문다면, 피해자인 문화예술인들은 그 기록을 접하면서 당시의 고통과 대면할 뿐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기록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 효과와 피해자의 개방적 미래 설계가 가능해진다. 이 연구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록’ 작업을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록을 통해 공공기관과 예술가 사이의 신뢰 회복과 문화예술의 민주주의적 지원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문화예술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예술가들 사이의 상호 신뢰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는 블랙리스트 피해자 중심의 기록작업을 통해 예술 현장 및 예술 지원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사회의 문화 역량을 민주적으로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블랙리스트의 사회적 기억 사업은 국가와 시, 공공기관 등 공적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피해 기록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부분에서 체계적인 규모를 갖추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화 작업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재발 방지와, 신뢰와 피해 회복, 문화예술의 가치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표가 있다.

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록 사업의 필요성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제1권)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 단체는 342곳, 개인은 8,931명으로 피해사례가 총 9,273건에 이른다. 광범위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뤄진 것은 145건으로, 전체 피해의 6.4%만이 조사가 이뤄졌다. 사회적 기록 사업은 문화예술인의 광범위한 피해를 가시화하고, 실체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조사의 기본 관점과 원칙으로 ‘피해자 관점의 실질적 공정성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피해자 또는 고발자의 관점에서 실질적 공정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책을 가장한 국가 범죄’이기에 “개별적·구체적·물질적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에 피해자의 인터뷰와 기술을 통해 실체화가 필요하다.
-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록 사업은 ‘사건의 기록에서 피해자의 기억 기록으로’ 전환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록은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의 실상을 권력의 작동에서가 아닌 고통의 현장에서 포착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기구의 권력 작동체계는 집단주의적이면서 조직적인 형태로 작동하기에 억압적이고 기억의 왜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문화예술인의 블랙리스트 피해 증언 및 구술은 억압체계의 극복이기에 자유의 획득이며, 자유로운 예술 표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사회적 기록’ 사업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피해 기억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에 피해 회복의 일환으로 꼭 필요하다. 스스로 말한다는 것은 치유력과 회복 탄력성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피해자가 피해를 증언함으로써, 고통을 객관화하고 치유의 길로 들어서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피해 기억의 사회적 공유를 통해 위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블랙리스트 피해자는 검열, 배제, 차별이 이뤄졌던 시기에는 사건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국가기구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책을 가장한 국가범죄’이기에 사후적으로 피해의 기억이 재구성되었다. 피해 당시의 가해 실체의 불명료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후적 공포는 가중되고, 트라우마도 극심하다. 사후적으로 재구성된 피해이기에, 피해자의 증언으로 통한 사회적 기록 작업을 통해 사건의 명료화하여 예술가들이 내적 무기력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가와 공공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무력화된 문화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 사회적 기록작업 방식을 다룬 국내외 문헌 연구

- 사회적 기록작업 방식을 다룬 연구는 기억사회학, 구술사 연구, 기록관리 등 여러 학문적 경로로 접근할 수 있다. 기억사회학, 구술사 연구, 기록관리 분야에서 사회적 기억을 각기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록작업의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지 이론적 토대 및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기억사회학

- ‘사회적 기억’이라는 용어는 기억사회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가 제시한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 개념으로부터 등장했다. 알박스가 쓴 『기억의 사회적 틀』(1925)이 최초의 기억사회학 관련 저술이라면, 『집합기억』(1950)은 기억사회학의 입론을 완성한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 알박스는 기억은 ‘사회적 틀’을 통해 획득·인지·배치되는 집합적-사회적 현상이라고 보았다. 개인들이 기억을 획득하고 배치하고 되살릴 수 있는 것은 사회집단 내 타인들과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통해서다. 또한 과거는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토대로 재구성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억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집합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라고 봐야 한다.¹
- 알박스의 기억론은 1980년대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피에르 노라(Pierre Nora)와 독일의 이집트학자 얀 아스만(Jan Assmann)에 의해 재발견되어 기억사회학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다. 노라는 ‘기억의 터(Les Lieux de mémoire)’ 개념을, 아스만은 ‘문화적 기억(das kulturelle Gedächtnis)’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억은 만들어지는 것이며,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회적-문화적 실천임을 강조했다.
-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Les Lieux de mémoire)’는 역사가 가속화되면서 기억의 주체 또는 기억 집단이 소멸하게 되자 기억의 환경이 사라지는 지점을 되살리는 개념이다. 프랑스의 민족 기억을 장소와 연결시킨 <기억의 터> 시리즈²가 출간되면서 시작된 이 연구는 이탈리아와 독일 등의 유럽 각국으로 퍼져나갔고,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와 아시아에도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며 1970년대 역사와 기억의 새로운 방법론이 되었다. 진정한 기억의 장소들이란 “사람들이 회상하

1 김영범. 1999.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 6-3. 591쪽.

2 피에르 노라(Pierre Nora)가 기획한 『기억의 장소(Les Lieux de mémoire)』는 『공화국』 1권(1984년), 『민족』 3권(1986년), 『프랑스들』 3권(1992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0여 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기억이 작동하는 곳”이자 “전통 자체가 아니라 전통의 실험실”이어야 한다고 노라는 주장했다.³ 민족의 집단 기억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그 기억이 구체화되고 뚜렷한 표상 및 상징으로 남게 된 물질적, 비물질적 장소로서 기억의 터는 박물관, 전투장, 궁정, 성벽 묘지뿐만 아니라 국기, 애국가, 기념식, 교과서, 법전 등을 폭넓게 아우른다.⁴

■ 전통적인 역사서술과는 뚜렷이 구별된 노라의 ‘기억의 장소’ 연구는 역사에서 기억으로의 전환을 이끌었다. 그러나 그 한계를 지적하는 평가에 직면하기도 했는데, 역사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기억을 순수한 형태의 보존물로 봄으로서 역사와 기억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간과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기억의 터’ 연구가 프랑스 역사에 대한 위기위식에서 출발해서 프랑스 민족의 기억을 되살리는 장소들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하나로 이루어진’ 민족 집단의 기억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피에르 노라 이후의 기억 연구는 보다 다층적이고 이질적인 집단들의 살아있는 기억과 사회적, 문화적 실천들과 연계해서 펼쳐진다.

■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은 알박스의 ‘사회적 틀’에 ‘의미(Sinn)’를 부여해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집단기억’을 전승한다. 즉, 집단 구성원의 공통성을 상징적으로 전달해주는 단어, 문장, 텍스트, 제의, 춤, 의복, 기념물, 음식 등의 ‘문화구성체(die kulturelle Formation)’가 집단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의미(Gemeinsinn)’를 전달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기억 공동체’가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아스만은 ‘문화적 기억(das kulturelle Gedächtnis)’으로 개념화했다.⁵

■ 아스만은 기억과 역사를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 그는 기억을 기능 기억(활성적 기억)과 저장기억(비활성적 기억)으로 구분하는데, 기억의 이런 두 가지 양태는 서로 배타적이기도 하지만, 상보적 치유책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저장기억에서 풀려 나온 기능기억이 상상으로 전락할 수 있고, 기능기억에서 해방된 저장기억은 대규모의 무의미한 정보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장기억이 기능기억을 입증하고 교정하는 만큼, 기능기억은 저장기억의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는 하나이면서 서로의 내적 차이와 다양성을 추구하며 외부로 발현하는 다양한 문화현상이 된다.⁶

○ 에드워드 카시(Edward Casey)는 사회적 기억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정의한다. 그는 인간의 기억을 개인적, 사회적, 집합적, 공공적 기억으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기억은 친족이나

3 Pierre Nora, “Mémoire collective”, p.401, 이용재, 「프랑스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에 대한 고찰」, 프랑스연구 제23호, 188쪽에서 재인용.

4 김응중. 2011.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에 나타난 기억의 개념」, 『프랑스사 연구』 24, 113-128쪽.

5 남미숙·유승호, 2019. 「사회적 기억과 플라뇌르적 시선: ‘밀양 송전탑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3-1, 53쪽.

6 알라이다 아스만. 2003. 변학수 외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출판부. 180쪽.

이웃, 도시, 지역 등 이미 존재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억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집합적 기억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대사건에 대해 갖는 기억으로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기억은 공유된 경험이나 역사, 장소, 프로젝트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반면, 집합적 기억은 그런 공통의 기반이 없이 주어진 인구 모두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공공적 기억은 개방적 토론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정의하고, 공적 장소나 공적 현존(presence), 공적 토론, 공통의 화제(topic), 장소적 기념 등의 요소를 가진다고 보았다.⁷

- 한편, 한국에서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다. 정근식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초반의 사회 민주화 및 탈식민 여성운동에 기반 하여 출발하였다. 일제하 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재현하는 기념비 건설과정이 사회적 기억연구를 자극하였고, 광주항쟁 참여자들과 일본군 성노예의 경험을 가진 할머니들에 대한 구술 프로젝트는 기억 연구의 방법론적 통찰을 제공하였다. 한국의 이행기 정의가 탈권위주의, 탈식민, 탈냉전이라는 세 가지 중첩된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듯이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도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다.⁸
- 국내 사회과학에서는 집합 기억과 사회적 기억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해왔다. 권기숙은 Paez, Basabe, Gonzalez가 정의한 바에 따라⁹ 집합 기억과 사회적 기억을 구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집합 기억’이 “한 사회의 기억”(memory of society)라고 본다면, 사회적 기억은 “사회 내의 기억”(memory in society)이다. 즉, 사회적 기억이란 기억이 형성되는 사회적 과정으로 기억이 실천되는 장으로 볼 수 있다. 기억들이 형성되고 여러 기억들이 갈등하고 혼재하는 기억들의 장인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억은 다중적이고 일시적이고 컨텍스트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¹⁰
 - 권기숙은 『기억의 정치: 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에서 사회적 기억에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억이란 물론 한 개인의 두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기억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사회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국가에 의해 왜곡된 기억을 강요받기도 받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회고 시점의 상황에 민감하다는

7 Casey, E.S., 2004. Public Memory in Place and Time, in K.R.Phillips ed., *Framing Public Memory*, Tuscaloos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정근식, 2013.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13-2, 349쪽 재인용.

8 정근식, 2013.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13-2, 347쪽.

9 Paez, Dario; Nekane Basabe and Jose L. Gonzalez, 1997. “Social Process and Collective Memory.” in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ed., by Pennebaker, James, Dario Paez, and Bernard Rime. New Jersey: Lawrence Erlbbbaa Associates Publishers.

10 권기숙, 2001.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35-5, 205쪽.

점에서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된다.”

- 기억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에서 사회적 기억은 역사적 기억 또는 관제 기억에 대항하는 진실을 찾고자 하는 기억 투쟁, 대항 기억 형성을 위한 담론적 실천으로 이어졌다. 5·18항쟁과 4·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은 관제 기억에 맞서 진실을 회복하고자 하는 기억 투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문화적 재현 운동의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 5·18의 기억 투쟁과 문화운동은 항쟁 직후에는 시, 노래, 판화 등의 짧고 단순하지만 직관적인 매체들로 ‘광주’에 대해 표현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소설, 연극, 영상 다큐멘터리로 확장되면서 문자 매체를 통한 재현을 넘어 시각적 영상매체를 통한 재현으로 나아갔다. 정근식은 5·18 영상이 “광주항쟁의 기억을 상기시킴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5월 운동이 거둔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평가한 바 있다.¹¹
 - 4·3의 경우에도 기억 투쟁은 문화적 재현 운동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김영범에 따르면, “4·3운동의 문화적 재현 운동은 결과적으로 청산 대상 과거사에 대한 새로운 집합기억의 형성, 새로운 역사의 구성·창출로 나아가는 길목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한 집단/공동체/사회가 역사적 진실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낡은 이데올로기적 기억으로부터 ‘신생의 기억=대항기억’으로서의 이전, 단순한 수평이동이 아니라 극적인 비상과 초월로서의 이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그려볼 수도 있다.”¹²

2) 구술사 연구

- 구술사 연구 또한 기억으로 쓰는 역사라는 점에서 역사적 기억에 대항하여 사회적 기억을 구성하는 한 방법이다.
- 구술사란 무엇인가? 윤택림에 따르면¹³, 구술사에 대한 정의는 구술사가의 연구 스타일이나 자신이 속한 나라의 구술사 연구 전통과 깊은 관계가 있다. 미국의 구술사에서는 구술자료의 수집과 관리가 연구의 초점이 된다. 이탈리아 구술사의 전통은 구술의 서술적 측면과 해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영국의 구술사에서는 경험주의적 내지는 실증주의적 입장에서 구술자료를 다루며, 한국의 경우 또한 경험주의적 접근을 하는 구술사 연구가 더 많다. “이는 실증주의적 역사학과 경험주의적 사회과학의 영향으로 구술자료를 경험적인 사료로서, 다름의

11 정근식. 2003. 「항쟁의 기억과 영상적 재현」, 『민주주의와 인권』 3-2. 105~106쪽.

12 김영범. 2003.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기억투쟁으로서의 43문화운동 서설」, 『민주주의와 인권』 3-2. 100쪽.

13 윤택림 편역. 2010.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10쪽~15쪽.

증거로서, 새로운 역사 쓰기를 위한 근거로서 다루기 때문이다.”

- 대표적인 영국의 구술사가인 폴 톰슨(Paul Thompson)의 저서인 『과거의 목소리』(1978)는 구술사 연구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폴 톰슨에게 구술사는 사회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연구 방법이다. 하층민, 비특권 집단, 그리고 패배자도 목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술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과거에 대해 좀 더 사실적이고 풍부한 재구성을 할 수 있다.
 - 벨기에 역사가이며 구술사가인 얀 반시나(Jan Vansina)는 기억은 도서관과 같으며, 코드가 전체 기억의 작동을 쥐고 있다고 말한다. 코드가 다르면 사람들의 기억도 다를 수밖에 없으며, 전승된 기억인 구전의 기억 코드는 집합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구전을 집합 기억으로 본다.
 - 한편, 이탈리아의 구술사가인 알렉산드로 포르텔리(Alessandro Portelli)에게 구술사는 ‘편들기’ 없이는 결코 이야기될 수 없는 것이다. 윤택림은 포르텔리가 말하는 구술사는 실증주의 역사학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오히려 포르텔리처럼 구술사의 부분성, 미완성, 당파성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구술사의 특징을 살려 기존의 역사 연구에서 줄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본다.
- 김귀옥은 구술사에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설명한다.¹⁴
- 구술사의 장점은 첫째, 역사적 기록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둘째, 구술사 연구는 쌍방향적 과정을 특징으로 한다. 셋째, 구술사 연구는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행동에 대한 내면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에 탁월하다. 넷째, 구술사 연구는 문화사, 일상사, 지방사, 부문사 등에 탁월하다. 다섯째, 구술사는 침묵의 기억에서 구술자를 해방하거나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구술사는 단점과 한계도 있다. 첫째, 기억의 정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기억의 신뢰도에도 늘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말과 사물의 일치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넷째, 말과 기억의 주관성(subjectivity) 때문에 말과 기억을 학술자료로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를 받는다. 다섯째, 연구자가 지닌 해석권의 자의성도 문제가 된다. 여섯째, 구술사 자료가 빙산의 일각, 즉 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 김귀옥은 구술사 방법론이 자기 완결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헌자료에 기반을 둔 일정한 이론 틀이나 분석 틀, 개념 틀이 먼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한국 구술사 연구에서 두드러진 경향 가운데 하나는 구술사가 역사의 상흔을 치유하는 방법론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 도미니크 라카프라는 『치유의 역사학』이라는 저서를 통해 비극적 사건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4 김귀옥. 2014. 『구술사 연구: 방법과 실천』, 106~118쪽.

역사 쓰기를 시도하는 역사가가 갖추어야 할 소양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즉, “문제는 역사 기술이 자기 방법으로 과거의 상처와 흉터를 그럴 듯하게 치유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상처, 흉터와 직접 대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한 대면을 위해서는 일차적인 객관화만 하거나 인식적이기만 한 진리 주장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정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대면에 의해 자이는 불안에 공감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데, 이 불안 — 이차 트라우마는 아니지만 — 은 미화되거나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불안은 유평파적 열망으로 열린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책임감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¹⁵

- 피해자가 트라우마적 기억에 대응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행동화(acting out)와 돌과(working-through)이다. 행동화가 트라우마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당시의 사건을 충동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연하게 되는 과정을 말한다면, 돌과는 트라우마적 기억에 대응해서 이를 자신의 서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카프라는 두 번째 대응을 성찰적 극복과 연결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찰적 극복하기는 희생자가 윤리적 정치적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는 극한 사건의 희생자일 경우에 그 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초월하지는 못할지라도 희생자에서 생존자로, 다시 행위자로 이동해가는 힘든 과정을 포함한다. 게다가 특히 윤리적 의미에서 성찰적 극복하기는 단순히 과거를 잊고 이전 상태로 회귀하거나 현재로 침잠해 버리는 회피나 화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¹⁶
- 한국에서 구술사는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치유의 역사학’ 이자 ‘새로운 민중사’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¹⁷ 구술사는 “거대서사와 엘리트 중심의 역사에서 배제되었던 하위주체의 경험을 역사화 시키며, 민중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지배 이데올로기의 단순화·획일화에 도전하고, 저항적 지식생산을 넘어 공감과 치유의 역사학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적 역사 쓰기 방법론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¹⁸

○ 한국의 구술사 연구에서 또 하나의 두드러진 경향은 구술사가 여성주의 인식론과 접목되면서

15 도미니크 라카프라. 2008. 육영수 외 역. 『치유의 역사학』, 179~180쪽.

16 라카프라, 「역사학, 정신분석학, 비판이론」, 같은 책, 159쪽.

17 치유의 역사학이라는 관점에서 과거사와 구술사를 접목한 연구로는 김호연. 2012. 「역사리텔링과 상흔의 치유: 구술사 활용을 중심으로」, 『人文學研究』 21. 31~54쪽.; 양현아. 2006. 「증언을 통해 본 한국인 ‘군위안부’들의 포스트식민의 상흔(Trauma)」, 『한국여성학』 22. 133~167쪽.; 엄찬호. 2012. 「과거사 청산과 역사의 치유」, 『인문과학연구』 33. 263~290쪽.; 엄찬호. 201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분노와 치유」, 『인문과학연구』 36. 585~607쪽.; 유재춘. 2010. 「인문치료학에서 역사학의 역할: 역사의 효능과 인식 갈등의 치유 문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6. 491~524쪽.; 육영수. 2011. 「상흔의 역사에서 치유의 역사학으로: 3가지 유형」, 『4·3과 역사』 11. 29~50쪽.; 윤택림. 2011. 「구술사 인터뷰와 역사의 상흔: 진실 찾기와 치유의 가능성」, 『인문과학연구』 30. 381~405쪽 등이 있다.

18 이용기. 2010. 「'새로운 민중사'의 모색과 구술사 방법론의 활용」, 『역사문화연구』 37. 426쪽.

여성주의 역사 쓰기의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 여성주의 인식론은 실증주의적 객관성을 지양하고, 지식이 상황적이며 부분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지식에서 여성의 경험을 중시하며, 지식의 주체와 객체의 이분법을 비판하고 간주관성을 강조하는데, 여성주의 인식론의 이러한 관점이 연구 방법으로서 구술사와 친화성을 갖기 때문이다.¹⁹
- 여성주의 역사 쓰기는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 한국 전쟁 경험,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등의 여성 경험, 여성 노동자, 여성 활동가, 기지촌 여성 및 성매매 십 대 여성, 성 소수자 등 한국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다양한 영역의 여성 경험을 역사화 하는 한편, 젠더 경험의 공감을 통한 정치적 연대를 시도한다.²⁰
- 김영희는 국가폭력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5·18의 서사에서 “여성’ 들은 훼손된 신체 이미지를 통해 ‘국가폭력’ 을 고발하고 증명하는 장소로 동원되거나 ‘대동(大同) 의 정신을 구현하는 저항공동체의 표상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특정 젠더 역할 규범에 고착되거나 과편적인 이미지를 재현하는 대상으로 가시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항쟁에 참여했던 ‘여성’ 들의 구술은 이와는 다른 결의 서사를 제시함으로써 ‘5.18 광주’ 의 서사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입체화하고 있다”라며 여성주의와 구술사의 만남을 높이 평가한다.²¹

3) 기록관리

- 윤은하·김유승에 따르면, 기록관리에서 사회적 기억이 화두로 떠오르고 이에 대한 다각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기록관리에서 기록은 주로 행정적 가치를 보장하

19 이재경·윤택림·이나영 외. 2012. 『여성주의 역사쓰기: 구술사 연구방법』, 14쪽.

20 김성례. 2001. 「국가폭력의 성정치학: 제주 4·3 학살을 중심으로」, 『흔적』 2, 263~292쪽.; 김은실. 2016. 「4·3 홀어명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 『한국문화인류학』 49-3, 313~359쪽.; 김영. 2015. 「밀양 765kv 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대한 젠더 분석: 젠더 점핑의 과정과 원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1-2, 1~53쪽.; 김영희. 2017. 「구술기억과 서사적 표상: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반대운동 참여자들의 구술서사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42, 1~34쪽.; 김영·설문원. 2015. 「구술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사회운동 참여의 맥락: 밀양 765kv 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참여한 여성 주민들의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101~151쪽.; 박상란. 2019. 「제주 4·3에 대한 여성의 기억서사와 순경각시」, 『Journal of Korean Culture』 45, 301~333쪽.; 박현숙. 2014. 「여성 전쟁 체험담의 역사적 트라우마 양상과 대응방식」, 『통일인문학』 57, 91~124쪽.; 신경아. 2013. 「여성노동자의 생애이야기에 나타난 ‘개인’ 의 의식」, 『젠더와 문화』 6-2, 215~252쪽.; 염미경. 2005. 「여성의 전쟁 경험과 기억: 좌익 관련 여성유족의 구술생애사」, 『정신문화연구』 28-4, 137~164쪽.; 유철인. 2004. 「구술된 경험 읽기: 제주 4·3 관련 수행인 여성의 생애사」, 『한국문화인류학』 37-1.3~39쪽.; 윤택림. 2011. 「치유를 위한 자기 서사: 한 실향민 여성 구술 생애사와 자서전 비교」, 『구술사연구』 2-2, 97~131쪽.; 이나영. 2016. 「페미니즘 인식론과 구술사의 정치학: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0-5, 1~40쪽.; 차경희·김경신. 2017. 「구술 생애사를 통해 본 여성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 과정」, 『젠더와 문화』 10-1, 191~225쪽.; 한정훈. 2011. 「한 여성 빨치산의 구술생애담을 통해 본 정체성의 서사」,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50, 359~388쪽.; 함한희. 2010. 「한국여성과 전쟁」, 『역사비평』 5월호, 22~52쪽.

21 김영희. 2018. 「5·18 기억서사와 여성의 목소리」, 『페미니즘 연구』 18-2, 155쪽.

기 위한 증거적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기억에 관련된 기록 연구는 상대적으로 대단히 적은 편이다.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록’ 혹은 ‘사회적 기억을 내포한 기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우선, 사회적 기록은 공공기록과 달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생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사회적 기록은 사회적 사건을 증거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사건의 진행 중에, 혹은 그 경험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때문에 기존의 공공기록과는 또 다른 목적으로 생산되고, 전달 유통된다.
 - 둘째, 사회적 사건의 주체들은 하나의 사건일지라도 다양한 경험과 이해를 거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기억도 집단과 시대에 따라 변한다. 사회적 기록은 이러한 시공의 다양성, 주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이들이 생산한 기록의 고유성 또한 그대로 반영한다. 사회적 기록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 기억이 시간에 따라 가변한다는 사실과 기록은 이러한 기억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억을 증거 하는 다양한 기록들은 하나의 사건을 증거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기억은 구술과 동시에 문자로 생산될 수 있으며 다양한 매체들이 ‘따로 또 같이’ 생산되고 이용될 수 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생산된 복합적 기록들은 시간의 변화와 의사소통 수단의 변화에 따라, 혹은 사건의 변화에 따라 다른 종류의 기억을 생산하기도 한다. 사회적 기억을 다루는 기록은 단순히 민간 기록의 다양성 차원에서 언급되기보다는 다양한 기억을 가진 기억 주체들의 인식론적 차이, 기억 주체의 변화에 따른 기록 생산 메커니즘의 차이로 이해되어야 한다.²²
- 기록관리 분야에서 사회적 기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은 4·16 세월호 참사 이후라고 할 것이다. 4·16 세월호참사의 충격이 한국사회를 뒤흔든 이후 기록관리 분야에서도 재난 참사를 비롯하여 사회적 갈등 현장을 기록하려는 담론적 실천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²³
- 기록학에서는 구술을 동시대의 주요 사건을 기록하는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본다. 즉,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은 전 세계적으로도 국민들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를 기록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구술 아카이브 구축이다. 갑작스레 발생하는 재난의 특성상 기록이 많이 남겨지지 않고, 추모기록을 비롯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구술은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²⁴

22 윤은하·김유승. 2016.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58쪽, 62~64쪽.

23 김명훈. 2014. 「기억과 기록: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연구」. 『기록학 연구』 42.; 김익한. 2014. 「‘세월호 기억저장소’를 만들자」. 『역사비평』. 12~24쪽.; 송주형. 2015. 「구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156~197쪽.; 홍영의. 2014. 「4·16 참사 기억·기록운동의 전개과정과 의의」. 『제6회 기록인대회 발표문』.

24 송주형. 2015. 「구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188쪽.

-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억’을 정의하고, 사회적 기억을 기록하는 아키비스트의 책무를 강조하는 연구들도 눈에 띈다. 남미숙·유승호에 따르면, ‘사회적 기억’은 기억이 형성되는 사회적 과정이자 기억이 실천되는 장으로 일상생활의 실천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억’은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이해하고 은폐된 소외 현상을 밝히는 것으로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적 기억’은 제도적인 기록관리 영역에서 소외되고 망각된 기억들 즉, 사회 내의 소수자의 기억을 기록을 통해 남기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남미숙·유승호는 “자본의 리듬에 역행하며 파리 뒷골목의 기억을 수집하는 플라뇌르적 시선으로 밀양 할머니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은 이 시대를 기록해야 할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책임이며, 이는 일상에 스며들었던 폭력을 기억하고 시대를 해독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며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책무로 소수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작업을 부여한다.²⁵
- 신동희·김유승 역시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책무와 사명을 강조한다. 즉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는 과거의 일이 사건이 되고 이야기가 되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가 사회적인 이야기가 되는 과정을 구조화하고, 사회적 기억이 어떻게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어떻게 사회의 통합적인 지성을 구성하는지를 관망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는 사회적 기억을 조정하고 장악하려는 권력에 저항하고, 주류 기억만을 보존하는 전통과 체계를 거부하여야 한다. 사회에서 비주류의, 소외된, 기록에서 배제된 집단의 기억에도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며, 아키비스트 스스로의 편견과 배경 역시 기록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기억을 향한 권력을 공유를 위해 힘써야 한다.”²⁶

2. 기록작업의 의미

가. 사회적 기억사업을 통한 피해자 개인 회복 효과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정책을 가장한 국가 범죄’ 이기에, 국가 기구가 주도하여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기록 사업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작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국가 기구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1) 피해자의 구제 조치 2) 피해 회복 3) 재발 방지가 이뤄져야 한다.
- 피해자 관점에서 이뤄지는 심층 인터뷰와 구술채록은 피해 구제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기본 요건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기록은 블랙리스트 기획과 실행, 가해자인 실행 관련

25 남미숙·유승호. 2019. 「사회적 기억과 플라뇌르적 시선: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3-1. 59쪽, 87쪽.

26 신동희·김유승. 2016.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기록과 기억의 이론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56쪽.

자의 조사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국가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이 재구성되고 기록될 필요가 있다.

-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유엔 인권피해자 권리장전 -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2005)에서는 피해의 범주를 1) 정신적 피해 2) 감정적 고통 3) 경제적 손실 4) 근본적 권리의 실질적 침해로 나눴다. ‘경제적 손실’과 ‘근본적 권리’의 실질적 침해는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1) 정신적 피해 2) 감정적 손실에 대한 피해 회복과 관련한 중요한 조치가 사회적 기록 사업이다.
- 피해자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구술채록은 내밀한 내면세계에 대한 토로 과정에서 이뤄지는 고통의 자기 치유 효과, 증언을 통해 이뤄지는 회복 탄력성의 효과 등을 발휘한다.
- 사회적 참사와 재난, 국가 폭력에 대한 사회적 기록은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결과의 기록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도 국가 폭력에 대한 조사가 실체적 진실의 규명 자체에 집중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이 기록되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라는 사회적 실천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국가 폭력의 위중성을 드러낼 수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나. 문화예술의 민주주의적 실천 효과

- 블랙리스트 사건을 특정 정치권력의 우발적 ‘정책 범죄’로만 국한 시키지 않고, 한국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적 질서와 관련된 사안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가 기구가 부당한 정치권력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공공적 신뢰의 파괴가 이뤄져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정책을 가장한 국가 범죄’의 심각성을 피해자 관점에서 기록하고 기억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 헌법의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의 침해, 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했기에, 시민민주주의의 기본 침해이다. 사회적 기록과 기억은 기록의 증거성을 보존하는 것이기에 시민민주주의의 실천 효과가 있다. 헌법에 보장된 중요한 기본권 침해를 사건화해 당대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을 증거적 형태로 보존하고 남기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민주주의적 실천이다.
- 기억은 그 공동체 내의 지배적 권력과 약소자들, 정치 체제, 사회·경제·문화적 권력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진다. 사회적 기억은 긴장관계의 산물이며, 시민적 권리를 위한 자위권, 인간존엄과 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된다. 사회적 기록과 기억이 피해자의 기억을 소중히 하고, 보존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천의 현재성을 보여준다.

다. 사회적 기억의 창조적 활용 및 미래세대 전수

- 피해자의 기억과 경험을 기록하고 기억함으로써,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험과 기억의 자료를 전문연구자와 일반 시민이 이용하도록 활용하도록 한다. 문화예술인에 대한 검열·배제·통제·차별적 조치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전문 연구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피해자의 기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문연구자들은 그 영향에 대해 연구할 수 있고, 일반 시민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야기한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다.
- 기록물 이용자는 디지털 아카이브 등을 통해 자발적 의지에 따라 피해자와 소통하고, 소통의 경험이 새롭게 사회적 기억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록과 기억의 확장성을 높이고, 사건 이후의 영향이 동시대에게까지 긍정적으로 미치도록 한다.
- 사회적 기록과 기억의 창조적 활용을 통해 기록 이용자의 상호 협력이 이뤄지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기억이 전수되어 블랙리스트 사건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미친 영향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사회적 기억사업의 의의 분석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문화예술인에게 미친 영향 중 심각한 부분은 내면세계에 대한 충격이다. 블랙리스트 피해를 입은 많은 예술인들이 내밀한 세계에서의 자기 변화로 인한 예술 창작활동의 곤란함, 창작자로서의 삶 포기, 창작의 부진, 예술가로서의 작업 방향의 변화와 같은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 관점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인의 내면세계에 대한 심층 탐구는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외부적 권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예술표현의 자유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환기점을 제공할 수 있다.
-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전과 이후가 근본적인 결절점을 형성하기에, 시공간의 차원에서도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성이 존재한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기록과 기억은 피해자에게 ‘고통의 환기’와 ‘기억의 사회성과 정치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피해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증언하게 함으로써, 고통의 기억과 국가 폭력은 사회적 정치적 맥락이 증언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에게 가해진 국가 폭력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공동체적 영향관계를 도출해낼 수 있다.
- 사회적 기록 사업은 기억의 공유를 통해 기억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기억의 공유와 새로운 기억의 창출을 통해 의미가 지속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사회적 기억을 전수받은 일반인이나 미래 세대는 스스로 자신의 기억의 일부를 내면화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기억 생산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 기록은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이나 미래 세대에 의해 학술적 작업의 산물,

문화예술 콘텐츠, 소셜미디어 공간의 자발적 기술 등으로 시공간의 확장성을 획득하는 ‘운동하는 기억’으로 전환될 수 있다.

3.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가. 국내

1) 일제 강점기 군위안부 및 강제 동원 관련 사회적 기억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990년대 초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와 강제 연행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구술채록을 시작하였다. 그 성과로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라는 제목의 구술증언집이 1993~1999년 1~3권이 발간되었고, 2001년에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가 발간되었다.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1~2권) 등 모두 7권의 증언집에 93명의 할머니²⁷가 증언자로 참여하였다.
-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1~3권에 수록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1999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위원회 증언팀²⁸이 구성되어 2001년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가 발간되었다.
 - 이 증언집은 이전의 증언집과 몇 가지 새로운 접근을 취한다. 우선 ‘군위안부로서의 체험’을 위안소에서의 경험에 국한하지 않고, 생존자의 전 생애에 걸친 것으로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위안부로서의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충실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생존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온 삶의 전 궤적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책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체험에 대하여 증언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주목했다.
 - 이러한 접근은 증언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이며, 증언자의 복합적인 주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증언집은 면접, 증언 녹취, 녹취의 문자화, 녹취의 편집에 이르는 전 과정을 팀으로서 함께 작업했다고 한다.

27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1~3권의 증언자는 김학순, 김덕진, 이영숙, 하영숙, 하순녀, 오오목, 황금주, 문필기, 이용수, 이옥분, 문옥주, 이순옥, 이상옥, 이득남, 이용녀, 김태선, 박순애, 최명순, 강덕경, 윤두리, 진경평, 박두리, 강무자(가명), 손관임, 김복동, 김분선, 박연이(가명), 김춘자, 배족간, 최일례, 박순이(가명), 김은진(가명), 훈 할머니, 김소란, 김군자, 김옥주, 김은례, 심달연, 조순덕, 최화선, 황순이, 김끝순, 조남례, 하영이, 신현순, 김유감 등이며,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의 증언자는 김화선, 김창연(가명), 한옥선, 김영자, 최갑순, 정윤홍, 윤순만, 김복동, 안법순 등이며,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의 증언자는 홍강림, 홍예진, 하군자, 이봉화, 임금아, 장춘월, 박필연, 역영란, 박말달, 장학수 등이며,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의 증언자는 김순옥, 지돌이, 이광자, 조윤옥, 이옥선, 하옥자, 강일출, 문명금, 박옥선, 박서운, 이수단, 이귀녀, 배삼열, 현병숙, 박우득, 김의경, 박대임 등이다.

2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위원회 증언팀은 양현아를 증언팀장으로, 김수아, 김수진, 김연희, 나진너, 부가칭, 이선형, 최기자, 한서설아가 참여하였다.

9명의 증언 편집팀이 녹취를 편집하는 데만 1년이 걸렸을 정도로 녹취를 증언집의 편집본으로 만드는 집단작업을 실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양수조는 일본 군위안부의 구술증언집 7권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일제는 1932년 상해에 군위안소를 개설한 이래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군위안소를 설치하여 수많은 조선인 처녀들을 연행해갔다. 연행된 군위안부들의 연행 이전의 생활을 보면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빈곤하고 교육수준이 낮았지만 당시의 조선 상황에서 보면 평균적 생활수준의 사람이었으므로 연행은 어느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전 계층이 연행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상도 지방에서 많은 연행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나이는 11세에서 28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미혼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기혼자들도 있었던 사실에서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연행해갔음을 알 수 있다. 연행형태는 취업 사기가 전체 53.8%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은 군위안부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끌려갔으며, 대부분 성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끌려가 일본 군인들의 성행위 대상이 되었던 것이며, 현지에서 죽었거나 이들이 용케 살아서 돌아온 생존자라 할지라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군 위안부들은 귀환했을 당시 무일푼으로 돌아왔으며, 취업을 하여 돈을 벌어 고국으로 돌아 오겠다던 그 꿈 대신에 당시 조선사회는 유교사회로서 정조가 무엇보다도 중시되던 사회로 이들이 귀국한 후의 생활은 수치심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은 물론 자녀의 출산에도 많은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군 위안소의 경영형태에 대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군이 직영한 경우와 민간이 직영한 경우가 있었다. 민간이 경영한 경우라 할지라도 요금수령, 정기검진 등 이들 군위안부들의 생활 전반이 군 주도하에 진행되었으며, 수송, 배치 또한 군이 주도하거나 군인들의 도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한 조선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는 일본군이나 정부의 주도하에 군위안소가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묵인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²⁹
- 양현아는 구술증언집의 분석을 통해 군위안부들의 상흔이 식민지 피해이면서 식민지 이후의 피해인 포스트 상흔임을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군위안부들의 상흔은 육체, 정신, 사회적인 측면에 걸쳐 있으며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또한 구술증언집은 군위안부들의 상흔이 식민지 이후에도 계속 누적되고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은

29 양수조, 2009. 「증언을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 실태」, 『충청문화연구』 2, 160~161쪽.

엄청난 부정의에도 불구하고 소망, 염원, 심지어 유머와 여유를 가진 적극적 주체의 면모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³⁰

- 한편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가 쓴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2017)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전쟁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당한 피해자의 유족 23인³¹의 삶과 이야기를 다룬 증언집이다.
 -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증언집이 증언자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쓰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들은 오랜 시간 유족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기록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증언자가 언어로 담아내지 못하는 사연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 마음이 잘못 기록되어선 안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작업했고, 증언자는 황망했던 가족들의 삶과 고비마다 무너져 내리던 심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원고를 검토했다. 빼대만 있던 이야기에 피와 살을 불이고 증언자들의 마음을 담아 재구성하는 작업을 반복해 책이 완성되었다고 한다.³²
- 일제 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 동원 관련 피해자 구술증언을 다룬 대표적 저서들은 다음과 같다.

〈표〉 일제 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단행본

발행년도	저 자	자료명	발행처
1993-1999	한국정신대연구소 외 편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2,3,	한울
1995	정신대연구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2001	한국정신대연구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풀빛
20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위원회 증언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3	한국정신대연구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2	한울
200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연구팀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여성과 인권
2005	정근식 편저, 진주 채록	고통의 역사: 원폭의 기억과 증언	선인
2016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일본군‘위안부’ 기록물관리사업팀 편저	문서와 사진, 증언으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2017	김금숙	풀: 살아있는 역사,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증언	보리

30 양현아. 2006. 「증언을 통해 본 한국인 ‘군위안부’들의 포스트트라우마의 상흔(Trauma)」, 『한국여성학』 22, 161쪽
 31 강종호, 권수청, 김기호, 김동관, 김문식, 남양강, 남영주, 노재원, 동정남 등이 증언자로 참여하였다.
 32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증언집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출간”. 2017. 6.29. <https://www.minjok.or.kr/archives/89339>

2017	민족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빼앗긴 어버이를 그리며: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증언집	민연 주식회사
201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최초의 증언자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 정부 기관의 일제 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 동원 피해자 관련 구술사업

- 중앙 부처가 발간한 구술증언집으로는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위안부 증언 자료집과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엮은 강제동원 피해자 구술기록집이 있다.
- 『그 말을 어디다 할꼬: 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집』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여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으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6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16명의³³ 일본군 ‘위안부’ 목소리가 담겨 있다.
 - 책임연구원인 김명혜는 7개월 동안 16명의 할머니들을 이야기를 담는 구술작업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할머니들은 ‘위안부’ 라고 공통적으로 불려지기는 하나 그들의 삶의 경험은 각기 다르고 특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증언집’의 성격을 갖추기 위해서 할머니들에게 기본적인 이야기의 틀을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기본 구성 요소들로 할머니들의 생년월일, 고향, 학벌, 형제 및 가족관계, 연행상황, 이동 경로 및 이동 수단, 위안소 생활, 위안소를 나오게 된 정황, 귀국 시기 및 경로, 결혼 및 가족 형성, 생계 활동, 질병의 종류, 현재 생활 등이 포함된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 각자의 개인적인 특징이나 구술 방법에 있어서의 특색 등은 거세되고 할머니들의 삶의 경험들이 ‘위안 생활’을 중심으로 유형화되고 말았다. 동시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어렵게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가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편집하고 글로 옮기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의 ‘충격적인’ 경험에 감정이입을 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르는 자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만 했다.”³⁴
- 2016년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에 정리·공개되어 있는 ‘위안부’ 피해자 37명의 증언을 검토해 재정리하는 해제 사업을 추진했다. 해제의 구성은 연보, 이동과정, 해제, 증언 원문의 순으로 작성했다. 각 사항의 서술 특징은 다음과 같다.³⁵

33 강순자(가명), 석순희(가명), 정서운, 김말순(가명), 김화자(가명), 공점엽, 노청자, 이옥선, 김봉이(가명), 박송자(가명), 박화자(가명), 김정덕(가명), 김순익, 김원욱, 최용순(가명), 장점돌이 구술자로 증언하였으며, 책임연구원으로 김명혜, 공동연구원으로 권희순, 신혜수, 정현백, 한국염, 연구참여자로 강현주, 김동희, 김미현, 김은경, 나주현, 박정애, 양나운, 오연주, 오지연, 윤미향, 이순영, 진주, 차혜영, 최기자가 참여하였다.

34 김명혜 외·여성부. 2002. 『그 말을 어디다 할꼬: 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집』. 9쪽.

35 여성가족부. 201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술자료 재정리 자료집』. 2쪽.

〈표〉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증언 해제 사업 서술 특징

구분	서술 특징
연보	- 피해자의 출생, 동원, 피해, 귀환, 활동, 사망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나열 - 연도의 경우 구술을 바탕으로 역산
이동과정	- 피해자의 동원 과정, 귀환 과정을 지역별로 서술 - 향후 지도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
해제	- 증언의 수록과정 등 출전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 구술자, 출전 회의 등 소개, 사료와 대조해가며 소개 - 피해자 생애의 간략한 서술 - 귀환 및 활동의 서술
해제자 의견	- 기타 주요사항 서술
해제자	- 해제자 표기

- 한편,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위위원회에서도 『들리나요?: 열두 소녀의 이야기: 일본군위안부 피해 구술기록집』(2013)을 펴냈다.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12명과 피해 할머니를 위해 활동한 인권운동가 1명의 구술자료를 수록하였다.
 - 피해 할머니 12명 중 11명은 2005년에 위원회에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피해를 신고한 경우다. 나머지 1명은 2012년에야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하였는데 위원회의 강제동원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이 마감된 후였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피해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위원회의 조사를 거친 후 여성가족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었다.
 - 이 책에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동원 당시부터 귀국까지의 상황, 귀국 후 생활고와 신체·정신적 후유증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 구술자의 연령(출생연도) 이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편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 이 책에서 피해 중심으로 구술을 기록한 것은 여성가족부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면 생활안정지원금, 정서적 안정 및 간병 등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당꼬라고요?: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I』(2005)은 정부 차원의 최초의 강제동원 생존자의 구술기록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구술기록집의 발간 목적은 생존자들의 구술을 통해 노무동원 피해의 다양한 역사상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 책에는 위원회의 조사과가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국 5개 지역을 다니며 수집한 노

무 피해신고자의 생존자 조사 결과 226건 가운데 19명의³⁶ 구술기록이 담겨 있다.

- 조사1과의 정혜경은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이 심층인터뷰라는 구술 사료 수집 방법을 통해 채록되었지만, ‘구술사’ 자체보다는 ‘피해 사실 확인’로서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본다. “비록 대면조사나 심층인터뷰 등 구술사의 조사 방법은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구술사료에 근거한 글쓰기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조사 방법론이 동일하다고 하여 구술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생존자 조사는 구술사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만을 갖지는 않는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매우 큰 비중으로 자리한다.”³⁷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노무 동원 피해자 구술기록집 외에 군인 분야에서 『갑자·을축생은 군인에 가야 한다』(2006), 『시베리아 억류 조선인 포로의 기억』(2007), 『굴따러 군대 갔어!』(2008)라는 3권의 강제동원 구술집을 발간했다.
- 정부 기관들에서 수행하는 피해자 조사 및 구술증언집 발간은 구술사료 수집이 목적이 아니라기보다는 피해 사실의 확인과 그에 따른 보상 또는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피해자의 구술을 누가 어떻게 채록하는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증언자료집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생산되었다면,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위위원회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 내 조사과에서 직접 구술채록을 진행하고 구술기록집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구술채록 목적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정부 기관에서 발간한 일제 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동원 관련 구술기록집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정부 기관이 발간한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구술기록집

발행처	자료명	저자	발행년도
여성(가족)부	그 말을 어디다 할꼬: 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저	2002
	오키나와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봉기 증언	한국정신대연구소 편저	200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술자료 재정리 자료집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2016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위위원회	들리나요?: 열두 소녀의 이야기: 일본군위안부 피해 구술기록집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위위원회 조사2과	2013

36 박용식, 조용섭, 김한중, 장덕환, 장순배, 김광모(이상 큐슈 지역), 이수철, 정대성(이상 판서 지역), 이사형, 경기철, 엄정섭, 박진형, 진현수(이상 관동 지역), 김득중, 박태준, 이무순(이상 중부 지역), 정상균, 최차기, 고복남(이상 일본 외 지역)이 구술하였다.

37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당꼬라고요?: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I』, 22쪽.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 원피해진상규명위 원회	당꼬라고요?: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5
	검은 대륙으로 끌려간 조선인들: 강제동원 구술기록 집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6
	똑딱선 타고 오다가 바다 귀신될 뻔 했네: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3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6
	가긴 어딜 가? 헌병이 총 들고 지키는데: 강제동원 구술기록집4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6
	“갑자·을축생은 군인을 가야 한다”: 강제동원 구술집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6
	수족만 멀쩡하면 막 가는 거야: 강제동원 구술기록집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7
	시베리아 억류 조선인 포로의 기억 1: 강제동원 구술 집7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7
	지독한 이별: 사할린 이중징용 진상조사 구술기록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7
	굴 파러 군대 갔어: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8
	아홉 머리 넘어 북해도로: 홋카이도 강제동원 피해 구술자료집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편저	2009

3) 한국전쟁 경험·제노사이드 피해자 구술

- 한국전쟁 경험 및 제노사이드 피해 역시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어온 이야기였다. 한국전쟁 경험 및 제노사이드 피해자들의 구술증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여 사건 발생 70년이 넘는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기록되고 있다.
- 4·3사건 진상규명운동은 학문적 접근과 함께 사건 체험자, 희생자 유족, 군·경·관 관계자, 일본으로 도피했던 남로당 도당 간부와 무장대 가담자 등의 회고 기록 발굴과 증언 채록 작업에 박차가 가해지면서 본격화되었다. 진상규명운동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수집되고 있던 회고담·증언들의 정리와 편집에 의해 증언집이 출간되었는데, 오성찬의 『한라의 통곡소리』와 제주 4·3연구소의 『이제야 말함수다』 1·2권이 그것이었다. 1989년 초부터 제주신문 4·3특별취재반이 구성되어 「4·3의 증언」 연재를 시작하였고, 이 기획연재는 1990년 6월부터 제민일보로 지면이 옮겨져 「4·3은 말한다」³⁸라는 제목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도민들의 4·3 재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³⁹

38 「4·3은 말한다」는 총5권의 책으로 발간되었다. 제민일보(濟民日報) 4·3 취재반: 1~3권(양조훈·서재철·고홍철·고대경·김종민·강홍균), 4권(김종민·김애자), 5권(김종민), 전예원, 1994~1998.

39 김영범. 2003.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기억투쟁으로서의 43문화운동 서설」, 『민주주의와 인권』 3-2, 77쪽.

- 최근 발간된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2019)은 허호준이 기록하였고, 8명의⁴⁰ 구술이 담겨 있다. 이 책은 4·3사건과 그날 이후를 살아내야 했던 제주 여성들의 삶에 관한 기록이다.
 - 허호준은 책에서 ‘4·3과 여성’에 주목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도 여성에게 가해진 참혹한 사례들은 주로 남성들에 의해 언급됐다. 그러나 여성의 활동이나 노동, 희생 등의 목소리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 이후 4·3을 거치면서 여성들은 한편으로는 가장 취약한 존재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존재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일제 강점기와 4·3을 겪은 여성들의 일상은 노동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 어릴 때부터 일상이 돼버린 노동과 생계를 위한 삶, 그리고 성인이 된 뒤에도 결혼과 출산은 일제 강점기와 4·3 시기를 관통한다. ‘4·3과 여성’을 연구해온 권귀숙은 제주여성의 경험에 대해 “전후의 역사적 시점과 대량학살이라는 사건과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서로 맞물려 발생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가족사이며 마을의 역사이며 제주도의 현대사”라고 강조했다.” 달리 말해, 제주여성들의 삶에는 제주의 근현대사가 오롯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험을 기록하지 않고서는 근현대사가 제대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구술에 참여한 이들은 1922~1938년생으로 4·3무장봉기가 발발한 1948년을 기준으로 11~27살이었다. 인터뷰에 응한 이들은 모두 4·3희생자 유족들이며, 가족의 죽음 앞에 선 생존자로서 겪어야 했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됐다. 이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삶을 살았고, 가족과 마을을 일궈는데 구술채록집에 나온 이들의 기록은 왜 여성의 경험과 기억을 채록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⁴¹
- 『학살된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2020)은 진주 민간인 학살 유족 증언집이다. 진주유족회 증언록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김주완, 김한규, 한양하, 백은숙, 박성경이 증언채록팀으로 기록하였으며, 유족 17명의⁴² 증언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이미 70대가 된 민간인학살 희생자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이승만 정권의 보도연맹원 학살의 실상과 유족들의 아픈 삶을 기록했다.
- 제주 4·3사건의 기억, 한국전쟁과 제노사이드 경험을 담은 증언집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0 강숙자, 김연심, 박승자, 안봉순, 이문자, 이승례, 최계추가 증언자로 참여하였다.

41 허호준. 2019. 「제주 4·3과 여성의 기억」. 제주4·3연구소 편.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12~14쪽, 25쪽.

42 강병현, 강성현, 김상길, 김순달, 김승일, 김형자, 문병근, 박남숙, 백자야, 이주택, 이증식, 장호수, 장호조, 정병표, 정연조, 정영자, 황양이 등이 증언자로 참여하였다.

〈표〉 제주 4·3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다룬 단행본

발행년도	저자	자료명	발행처
1988	오성찬	한라의 통곡소리: 4·3 제주 대학살의 증언	소나무
1989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했수다 1,2	한 울
1994~1998	제민일보 4·3특별취재반	4·3은 말한다 전5권	전예원
2002	제주 4·3연구소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역사비평가
2004	김동만 외	몸에 새긴 역사의 기억	각
2006	권귀숙	기억의 정치: 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역사비평가
2009	제주 4·3연구소	그들 속에 4.3	선 인
2010	제주 4·3연구소	4.3구술자료총서1: 갈치가 갈치 풀랭이 끊어 먹었다 할 수밖에	한그루
2010	제주 4·3연구소	4.3구술자료총서2: 아무리 어려워도 살자고 하면 사는 법	한그루
2011	제주 4·3연구소	4.3구술자료총서3: 산에서도 무섭고 아래서도 무섭고 그냥 살려고만	한그루
2011	제주 4·3연구소	4.3구술자료총서4: 지금까지 살아진 것이 오히려 거라	한그루
2013	제주 4·3연구소	4.3구술자료총서5: 다시 하귀중학교를 기억하며	한 울
2013	제주 4·3연구소	4.3구술자료총서6: 빌레못굴,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	한 울
2013	제주 4·3연구소	그들 속의 4·3: 死, 삶의 기억	선 인
2015	제주 4·3연구소	4.3구술자료총서7: 만병디의 눈물	한 울
2015	제주 4·3연구소	4.3구술자료총서8: 가리방으로 기억하는 열두살 소녀의 4.3	한 울
2019	제주 4·3연구소	4.3생활사총서1: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각 Ltd.

〈표〉 한국전쟁 및 제노사이드 경험 관련 단행본

발행년도	저자	제목	발행처
2002	김현아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책갈피
2003	표인주 외	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	한울
2004	김현아	전쟁과 여성	여름언덕
2004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가
2005	문제안 외 39명	8·15의 기억: 해방공간의 풍경, 40인의 역사 체험	한길사
2008	김귀옥 외	전쟁의 기억 냉전의 구술	선인
2010	이임하	전쟁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구술로 풀어 쓴 한국전쟁과 전후 사회	책과함께
2011	한국구술사학회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 서울토박이와 민통선 사람들, 전쟁미망인과 월북가족, 그들이 말하는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휴머니스트
2013	이재경 외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	아르케
2016	윤택림	구술로 쓰는 역사: 미수복경기도민의 분단과 이산의 삶	아르케
2020	한국전쟁전후 진주민간인 피해자유족회	학살된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 진주 민간인학살 유족 증언록	피플파워

4)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구술

- 5·18과 최초의 증언기록집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1985) 발간 이후 5·18민주화 운동은 가장 많은 기억들이 수집되고 기록된 한국 현대사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는 1988년 5·18 연구를 표방하며 설립되었다. 최정기에 따르면,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가 발간한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1990)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의한 최초의 집단적 말하기라는 의미가 있다. 그것은 5·18에 대한 재평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과거사 문제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제기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학문적인 수준에서만 보더라도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이하 ‘5월사료전집’)은 우리나라에서 구술사라는 조사 및 연구 방법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최정기는 ‘5월사료전집’이 구술자의 기억과 말을 그대로 녹음하고 기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음을 지적한다. (1) 불충분한 기획과 자료 이용의 난점들이다. 조사를 위한 사전설계가 부족했던 점, 조사를 직접 담당하는 조사자가 갖는 한계 등을 꼽을 수 있다. 조사기획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5월사료전집’을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약점이다. (2) 체험의 증언화, 증언의 문자화가 갖는 난점들이 있다. 구술채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의 발견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당시의 경험과 현재의 국면 속에서 구술자의 해석을 거친 사실이다. ‘5월사료전집’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난점은 언어와 문자가 갖는 근본적인 한계와 관계된다. 말로 표현된 것을 문자로 바꾼 녹취록만으로 만들어진 ‘5월사료전집’은 당시의 상황을 전달하는 데 약점을 갖고 있다. (3) 마지막으로 ‘5월사료전집’은 생애사 및 일상사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대규모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5월사료전집’에서는 생애사에 대한 고민을 발견할 수 없고, 당시 광주 및 전남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일상사를 통한 접근도 발견되지 않는다.⁴³

〈표〉 『광주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 관련 사항 및 증언자 분류

관련 사항	증언채록자 수	관련사항	증언채록자 수
수습대책위	47	무장조직 활동	41
시민항쟁	124	선전활동	21
중요 사건 관련자	43	광주 외 전남 지방	56
사건 피해자	165	군경	2

※ 출처: 최정기, 2018. 「5·18 국가폭력 및 항쟁과 구술조사: 증언 불가능성에 대한 도전: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에 대한 비판적 성찰」, 『민주주의와 인권』 18-2, 94쪽.

43 최정기, 2018. 「5·18 국가폭력 및 항쟁과 구술조사: 증언 불가능성에 대한 도전: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에 대한 비판적 성찰」, 『민주주의와 인권』 18-2, 91쪽, 96~101쪽.

- 한편,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 기획하고 이정우가 편집한 『광주, 여성: 그녀들의 가슴에 묻어둔 5·18이야기』(2012)는 5·18을 직접 체험한 여성 19명이⁴⁴ 자신들의 목소리로 생애사를 담은 구술집이다. 이 구술집은 ‘80년 5월’의 기억뿐만 아니라 5·18을 전후로 한 그녀들의 전 생애를 담고 있다.
 - 간호사, 시장 상인, 여공 등 당시 5·18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했던 여러 계층의 여성들의 구술로 구성된 이 책은, 무엇보다 그간 5·18담론에서 주변화 되어 왔던 주체들, 즉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건네주고, 부상자를 치료하고, 시신을 수습하는 등의 역할을 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전면화하면서, ‘저항’의 의미와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은 국가가 자행한 거대한 폭력 앞에서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던 그녀들이 어머니로서, 간호사로서, 노동운동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자신과 주변인들의 삶을 지켜내고자 했는지를 생생히 드러내 준다. 또한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노조를 조직화하며 5·18 투쟁을 예비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80년 5월 광주가 단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불행이 아니며, 그날 그곳에서 보여주었던 많은 이들의 실천 역시 YWCA, JOC 등을 중심으로 한 노동운동에도 빛지고 있는 바가 크다는 것을 말해 준다.
- 전남대학교병원이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의료활동집인 『5·18 10일간의 야전병원』(2017)은 5·18 의료 활동에 대해 병원 자체적으로는 처음 발간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당시 의료 활동에 참여했던 고 조영국 전 전남대병원장, 노성만 전 전남대총장 등 의료진 28명의⁴⁵ 증언을 담았다. 책에는 병원에 실려 온 참혹한 사상자들의 모습과 계엄군의 병원에 대한 무차별 사격, 밤낮없이 진행되는 초 응급수술, 시민들의 헌혈대열 등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다.

⁴⁴ 김막님, 박수복, 김동심, 광근례, 하문순, 윤청자, 이정희, 전옥주, 박정자, 정순자, 방귀례, 송희성, 오경자, 정숙경, 노영숙, 이현옥, 정순덕, 이귀님, 정미례가 증언자로 참여하였다.

⁴⁵ 김신곤, 박영걸, 김현중, 유경연, 정종길, 송은규, 서순팔, 오봉석, 김영진, 박중욱, 조석필, 김승호, 정성수, 조백현, 문응주, 류재광, 유용상, 김안자, 손민자, 김영옥, 이윤민, 이진숙, 윤혜옥, 노은옥, 심재연, 조기학 외 2인이 참여하였다.

○ 다음은 5.18과 관련 사회적 기억을 다룬 단행본 및 구술기록집 목록이다.

〈표〉 5·18 관련 사회적 기억을 다룬 단행본 및 구술기록집

발행년도	저자	자료명	발행처
1985	황석영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창작과비평사
1987	5·18광주의거청년동지회	5·18 광주민중항쟁증언록1	광주
1990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풀빛
1992	5·18광주민중항쟁유족회	5·18광주민중항쟁 비망록	남풍
1996	광주광역시시의사회	5·18 의료활동 자료기록 및 증언	광주광역시시의사회
2001	이상식	역사교수가 겪은 80년 광주 5·18 역사의 증언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2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5·18증언자료 채록사업 결과보고서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5·18항쟁 증언자료집 I, II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박병기	5·18항쟁 증언자료집 III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4	나간채·정근식·강창일 편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역사비평사
2005	김양현·강현정	5·18항쟁 증언자료집 IV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6	정근식·나간채·박찬식 편	항쟁의 기억과 문화적 재현	선인
2006	5·18기념재단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5·18 기념재단
2006	5·18기념재단	그 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1, 2	한얼미디어
2007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 증언록 행방불명자 편: 꽃만 봐도 서럽고 그리운 날들 1,2	한얼미디어
2008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제1차 1980년 5월 전북지역 운동사 구술자료집:뜨거운 날들의 투쟁	5·18구속부상자회 전북지부
2009	5·18기념재단	2009년 5·18 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5·18기념재단
2011	5·18기념재단	2011년 5·18 민주화운동 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 결과보고서(1)	5·18기념재단
2010	5·18해남민중항쟁	5·18해남민중항쟁증언록: 땅끝 해남에서 타오른 오월항쟁	5·18해남민중항쟁 해남동지회
2010	광주여성희망포럼	구술로 엮은 광주 여성의 삶과 5·18	심미안
2010	정시채 외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4: 공직자 편	5·18기념재단
2012	광주전남여성연합 기획 이정우 편	광주, 여성: 그녀들의 가슴에 묻어둔 5·18이야기	후마니타스
2017	노성만 외 29명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전남대학교병원 5·18민주화운동 의료활동집	전남대학교 병원

5) 사회적 참사 및 재난 피해자 기억 기록

- 4·16 세월호 참사 기억의 기록은 크게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의 작업과 안산 시민기록위원회⁴⁶ 산하 구술증언팀이 수집한 구술기록 수집으로 나뉠 수 있다.
-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겪어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인권활동가, 작가, 대학원생 등이 모여 있다. 글로서 참사의 증거를 남기고 흩어지는 고통을 사회적 기억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안산·국회·청운동·광화문·팽목항 등지에서 유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기록해왔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한다.
 -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은 그 동안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2015),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2016),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세월호의 시간을 건너는 가족들의 육성기록』(2019) 등 유가족의 육성을 담은 기록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⁴⁷
 -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세월호의 시간을 건너는 가족들의 육성기록』은 홍은전, 유해정, 미류, 박희정, 이호연 다섯 명의 저자가 사건 발생 후 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유가족들이 피해자라는 정형화된 프레임을 벗어나 다양화되어가는 모습을 세밀하게 그린다. 이 책은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이 처한 지형을 섬세하게 식별함으로써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응답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요청한다.
 - 엄기호는 이 책에서 비단 세월호 유가족뿐 아니라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등을 호명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유가족이 “이 사회의 깊은 심연, 봉합 불가능한 균열”을 폭로한 존재였음을 밝힌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우리가 유가족의 말을 통해 들어야 하는 진상은 “그 순간에 대한 유가족의 고통이나 견해, 입장이 아니라, 참사 이후 이들이 ‘동시대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역설한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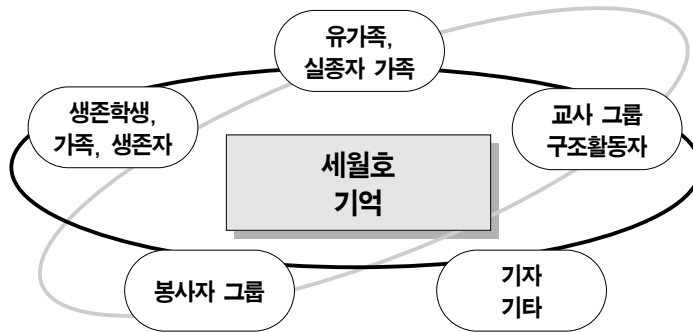
⁴⁶ 시민기록위원회는 영상기록단, 르포기록단, 학자기록단, 사진기록단 등 4개의 기록단으로 이뤄졌고, 학자기록단은 기록관리팀, 구술증언팀, 기록문화팀으로 나뉘었다.

⁴⁷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에는 강곤, 김순천, 명숙, 미류, 박현진, 박희정, 배경내, 유해정, 이호연, 정미현, 정주연, 홍은전, 고은채 등이 있으며,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에는 노선자, 유해중, 전민주, 김진철, 정부자, 최순화, 문종택, 박종대, 허영무, 장순복, 임중호, 김현동, 이지연 등이 구술자로 참여하였다.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에는 정수범, 반세윤, 김진철, 조태준, 이정민, 고마음, 허민영, 박준혁, 유하은, 박보나, 이시우, 김채영, 김희은, 김이연, 이보라, 유지은, 박예나, 최윤아, 장애진, 한성연, 김수연, 유성은, 김태우, 김예원, 이혜지, 남서현 등이 구술자로 참여하였다.

⁴⁸ 엄기호. 2019. 『우린, 아직 동시대인이 아니다』,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세월호의 시간을 건너는 가족들의 육성기록』, 381쪽, 387쪽.

- 한편, 시민기록위원회 산하 구술증언팀은 사건 직후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술자료를 수집해왔다. 이들은 세월호 구술의 목표를 첫째, 세월호 참사 관련자 기억의 구술을 통한 기록화, 둘째, 구술을 통한 세월호 참사 관련 사실의 확보, 셋째, 생존자 및 유가족, 실종자 가족, 생존자 가족 분들의 아픔 공유 및 치유, 넷째, 채록된 구술의 항구적 보존 및 대한민국 역사자료로서의 후대 전승, 다섯째, 구술자료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기억으로 확산, 여섯째, 구술을 통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꼽았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술대상자를 다섯 그룹으로 나누었다.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생존자와 그 가족’, ‘교사 및 구조 활동자’, ‘봉사자 그룹’, ‘기자 등 기타’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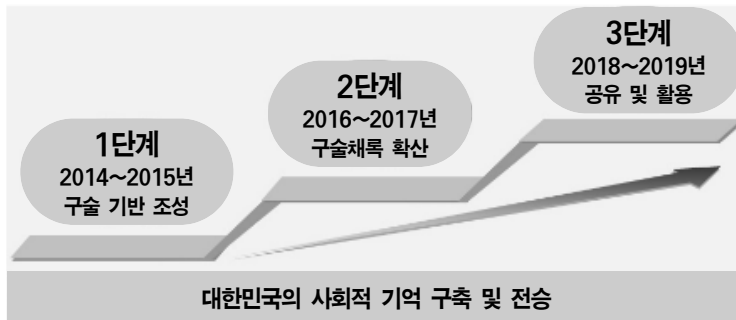
〈그림〉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자 그룹



※ 출처: 송주형, 2015. 「구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44, 176쪽.

- 구술채록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기획하였다. 1단계(2014~2015)에는 구술채록의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로 설정하고 1년 차에는 구술채록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팀을 구성하고 구술채록을 위한 표준 절차 및 면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2년 차에는 구술채록 자원봉사자 범위를 확대, 생존 학생 등으로까지 대상자를 확대한다. 2단계(2016~2017년)에는 구술채록의 확산 단계로 구술대상자를 늘리고 안정적인 구술채록이 이뤄지는 단계로 잡았다. 마지막 3단계(2018~2019년)는 구술자료를 시민사회에 공유하고 이를 통해 세월호 사건을 사회적 기억화하는 단계로 발전시키려 했다.

〈그림〉 세월호 구술의 단계별 계획



※ 출처: 송주형. 2015. 「구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179쪽.

- 채록방식은 구술자 섭외 → 구술 일자 확정 → 구술팀 배정 → 구술수행 → 구술결과물 정리 및 보존 순으로 이루어진다. 팀 구성은 면담자, 촬영자, 면담 보조자 등 3인 1팀으로 이뤄지며, 캠코더, 보이스레코더 등 장비를 구입해 안정적으로 구술을 채록한다. 구술시간은 1인 대상으로 2시간 이내로 진행한다.
 - 구술 장소는 안산 화랑공원에 위치한 시민기록위원회 부스, 경기도미술관의 공간, 구술자 자택 등으로 탄력적으로 선정한다. 구술을 마친 후 사본을 제작해 구술자에게 증정하고, 녹취문과 각종 구술서식을 완성해 인물별 컬렉션으로 관리한다.⁴⁹
- 4·16 구술증언록 『그날을 말하다』는 4·16기억저장소 구술증언팀이 2015년 6월부터 4년간에 걸쳐 진행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구술증언 사업의 결과물이다. 피해자 가족 88권, 잠수사 4권, 동거차도 어민 2권, 유가족 공동체 단체 6권 등 100권으로 구성될 이 책에는 그동안 왜곡되고 알려지지 않았던 참사 발생 직후 팽목항과 진도, 바다에서의 초기 상황에 관한 중요한 증언이 포함되어 있다.

〈표〉 4·16 관련 사회적 기억을 다룬 단행본

발행년도	저 자	제 목	발행처
2015	4·16작가기록단	금요일엔 돌아오렴: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육성 기록	창비
2016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세월호 생존학생과 형제자매 이야기	창비
2017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재난참사기억 프로젝트팀	재난을 묻다: 반복된 참사 꺼내온 기억 대한민국 재난연대기	서해문집

⁴⁹ 송주형. 2015. 「구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175~179쪽.

2019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세월호의 시간을 건너는 가족들의 육성기록	창비
2019~ 2020	4·16기억저장소	그날을 말하다 시리즈: 4·16구술증언록 100권	한울

6) 사회갈등·사회시설폭력 관련

- 『밀양을 살다』(2014)는 “밀양에 대한 편파적 기록”이라고 밝히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17명의⁵⁰ 구술을 기록했다. ‘밀양구술프로젝트’⁵¹라는 이름으로 기록노동자, 작가, 인권활동가 등이 모여 밀양 주민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 이 기록은 그동안 정부, 한전 관계자, 언론이 제대로 물어보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어 편파적이며 가장 온전한 밀양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17명의 구술가들은 밀양에서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아온 세월을 담담히 이야기한다. 그들은 ‘불순한 외부 세력에게 휘둘러 국책사업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비난에 대해 강력히 반론한다. 각종 통계수치와 그래프를 수록하여 한전과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폭로한다.
- 『숫자가 된 사람들』(2015)은 대한민국판 ‘아우슈비츠’라고 할 수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생존자 11명⁵²의 이야기를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⁵³라는 이름으로 모인 6명의 인권기록 활동 저자들이 재구성해낸 구술기록집이다.
 - 이 책은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어났으며, 이 사업을 가능케 한 것이 국가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단순히 ‘복지시설’에 돈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정부는 1975년 12월 15일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발령해 소위 ‘부랑인’ 단속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이다. 국가는 아직까지 정당한 법과 순리에 따라 원장인 박인근 개인을 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제대로 된 진실 규명과 공식적인 사과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자들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만들어진’ 부랑인이며, 시설수용과 관련된 폭력은 노숙인, 고아, 장애인 등으로 표적을 바꾸었을 뿐 내무부 훈령 410호와 형제복지원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

⁵⁰ 김말해, 김사래, 조계순, 이사라, 회경, 광정섭, 이종숙, 권영길·박순연 부부, 구미현, 김영자, 안영수·친춘정 부부, 박은숙, 강귀영, 성은희, 김옥희가 구술자로 참여하였다.

⁵¹ ‘밀양구술프로젝트’에는 미류, 배경내, 김영옥, 유혜정, 명숙, 박이은희, 변정필, 안미선, 육성철, 박희정, 회경, 변정윤, 류현영, 진주, 이묘랑, 서분숙, 이계삼이 저자로 참여하였고, 사진작가 정택용, 영상활동가들이 함께 했으며, 소설편지 후원 등으로 제정을 마련하였다.

⁵² 박경보, 김희곤, 하안녕, 황송환, 이상명, 김영덕, 김철웅, 이향직, 최승우, 홍두표, 이혜율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증언자로 구술하였다.

⁵³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에는 명숙, 박희정, 서중원, 유혜정, 이묘랑, 홍은진이 저자로 참여하였다.

-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는 2014년 6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태 조사에 참여했던 이들 중 6명이 모여서 피해생존자들의 삶에 깊이 각인된 그 날들의 흔적을 그들 자신의 목소리로 사회에 전달하고자 결성됐다. 약 반년에 걸쳐 구술자 탐색과 설문조사, 두세 번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간의 언론 보도가 미처 다루지 못한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 『아무도 내게 꿈을 묻지 않았다』(2019)는 진보장애언론을 표방하며 빈곤, 소수자 문제를 당사자 목소리에 기초해 보도하는 언론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마이너가 기획하고, 하금철, 홍은진, 강혜미, 김유미가 글을 쓴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9명의⁵⁴ 구술기록집이다.
- 피해생존자들은 하나같이 선감학원에서 보낸 지난날을 ‘자기 자신을 상실한 시간’으로 기억한다. 기본적으로 인적사항이 완전히 조작돼 호적이 말소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수의 생존자들은 이런 사실조차 퇴소 혹은 탈출 이후 성인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고 한다.
- 오광석의 구술을 정리한 강혜미는 선감학원 피해생존자들의 겪고 있는 고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기억은 기록을 의심하고 기록은 기억을 부정한다. 존재의 시원을 찾기 위해 추적한 기록이 오히려 기억을 헝클어뜨려 혼란스럽다. (...) 과거의 나를 증언해줄 가족도, 선생도, 친구도 없다. 여기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⁵⁵

〈표〉 사회시설 폭력 관련 사회적 기억을 다룬 단행본

발행년도	저 자	제 목	발행처
2014	밀양구술프로젝트팀	밀양을 살다: 밀양이 전하는 열다섯 편의 아리랑	오월의 봄
2015	형제복지원구술프로젝트팀	숫자가 된 사람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집	오월의 봄
2019	하금철 외	아무도 내게 꿈을 묻지 않았다: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구술기록집	오월의 봄

7) 노동운동

- 1970~80년대 여성 노동운동가 8명의⁵⁶ 이야기를 담은 『가시철망 위의 넝쿨장미』(2004)는 군부 독재의 혹독한 반노동자적 통치하에서도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고,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곳곳이 싸워나간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에 관한 기록이다.
- 구술에 참여한 8명은 시대별, 작업장별, 투쟁 사안별로 특성을 고려해 선정하였으며, 기존에 나온 운동사 기록 중심의 서술방식과는 달리 1970~80년대에 주도적으로 활동한 여성 노동운

⁵⁴ 김성민(가명), 김춘근, 한일영, 이대준, 김성환, 김성곤, 오광석, 현정선, 김장호가 증언자로 구술하였다.

⁵⁵ 하금철 외. 2019. 『아무도 내게 꿈을 묻지 않았다』. 194쪽.

⁵⁶ 이총각, 윤혜련, 박신미, 박태연, 원미정, 정선순, 박성희, 이철순이 구술자로 참여하였다.

동가의 삶 그 자체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노동 현장에서 직접 활동했던 경력을 갖고 있는 저자가 여성 노동자들의 구술을 정리하였다.

- 원풍모방노조는 2007년 9·27사건 25주년 모임에서 원풍모방노조의 역사를 정리해 보존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곧바로 조합원들의 모금으로 기금을 만들었고, 26명의 발간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설가 김남일이 『원풍모방 노동운동사』를 정리했고, 노조 활동 영역별로 43명을 인터뷰하여 구술사 자료집을 묶었다. 또 4명의 작가들이 조합원 7명의⁵⁷ 삶을 재구성하여 『못다 이룬 꿈도 아름답다』(2010)을 펴냈다.

- 기록자를 대표하여 김남일은 “이 책은 1970년대 ‘민주노조의 전설’로 기억되는 원풍모방노동조합 조합원 일곱 명의 생애사다. 이들 일곱 명은 노동조합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역사에는 특별히 이름이 기록된 바 없다. 독재정권은 이들을 포함한 당대의 노동자들을 산업 전사요 수출 역군으로 추켜세우다가도 하루아침에 불순한 노동자로 낙인을 찍어버리곤 했다. 많은 경우 이들의 이름은 ‘공순이’였고, 우호적인 기록에서도 이들은 다만 ‘조합원’일 뿐이었다. 이 책은 이들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라고 쓰고 있다.

- 『나, 여성노동자』 1, 2권(2011)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 노동자 스스로 말하고 써 내려간 자기역사쓰기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 1권 『나, 여성노동자: 1970~80년대 민주노조와 함께한 삶을 말한다』에는 70, 80년대 여성 노동자 9명의⁵⁸ 자기 역사가 담겨 있다. 이 시기 한국노동운동을 대표했던 청계피복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던 이들과 1970년대 어렵게 건설한 민주노조가 신군부의 탄압으로 강제 해산되어 버리는 경험을 했던 이들, 80년대 구로동맹파업에 참여했던 이와 구로공단의 나우정밀 노조 활동에 앞장섰던 이들의 글이 실려 있다.

- 2권 『나, 여성노동자: 2000년대 오늘 비정규직 삶을 말한다』에는 8명이⁵⁹ 자기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랜드 510일 투쟁과 기륭전자 1,895일 투쟁처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 왔던 비정규직 투쟁에 앞장섰던 이들과 50대·60대에 처음 ‘노동조합’을 알게 된 청소용역, 간병인, 병원 조리원, 학교비정규직 등의 기혼여성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노동조건과

57 황선금, 차연년, 이영자, 박순애, 양승화, 김오순, 양태숙이 생애사를 구술하였다.

58 유정숙(청계피복 노동조합 아카시아회 회장), 신순애(청계피복 노동조합 부지부장, 부녀부장), 김한영(청계피복 노동조합 직무대행), 이승숙(청계피복 노동조합 사무국장, 부위원장), 유옥순(콘트롤데이터 노동조합 부위원장), 박육남(한일도루코 노동조합 부위원장), 조분순(남화전자 노동조합 부위원장), 성훈화(가리봉전자 노동조합 대의원), 김덕중(나우정밀 노동조합 사무국장, 위원장)이 자기역사쓰기에 참여하였다.

59 이경옥(이랜드일반노조 전 부위원장), 윤옥주(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시청분회 전 부지부장), 이매순(공공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시청분회 현 지부대의원), 김소연(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분회장), 석명옥(경북대 간병인분회 분회장), 원문숙(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해고자), 이화자(공공노조 보건의료연대 소속 대구지역 영양실분회 분회장), 심선혜(공공노조 보육소분과장), 최보희(공공노조 서울경기분회 분회장)가 저자로 참여하였다.

갈등 등을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로 담았다.

- 『여성노동자, 살아있는 역사 언니들에게 듣는다』(2015)는 마산수출자유지역 외자기업의 폐업과 집단해고에 맞서 싸웠던 여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투쟁과 삶을 담은 구술집이다.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창립 20주년 사업으로 기획하여 8개 사업장, 12명을⁶⁰ 인터뷰하여 3년 만에 완성하였다.
 - 인터뷰는 1:1 방식이 아닌, ‘언니’와 후배 여성노동운동가, 여성노동운동단체 활동가들과 집담회를 통해 세대와 시대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공장이 내게 말한 것들』(2019)는 『못다 이룬 꿈도 아름답다』에 이어 조합원들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호명한 또 하나의 구술기록이다. 『못다 이룬 꿈도 아름답다』에 구술생애사가 수록되어 있는 황선금이 조합원 7명의⁶¹ 구술생애사를 기록했다.

〈표〉 노동운동 관련 사회적 기억을 다룬 단행본

발행년도	저 자	제 목	발행처
2004	박민나	가시철망 위의 넝쿨장미: 여성 노동운동가 8명의 이야기	지식의 날개
2010	김영주·김이정·이재웅·장남수	못다 이룬 꿈도 아름답다	삶이 보이는 창
2011	유정숙 외	나, 여성 노동자 1, 2	그린비
2015	마산창원노동자회	여성노동자, 살아 있는 역사 언니들에게 듣는다	한내
2019	김정숙 구술정리 황선금 글·원풍동지회	공장이 내게 말한 것들: 민주노조의 건설 원풍노조 노동자들의 구술생애사	실천문학사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아르코예술기록원은 국내 최초의 예술기록 보존기관이다. 1979년 개관하였으며, 한국 근현대 예술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고가치의 예술기록물을 수집·보존하며, 예술사 구술채록사업, 공연 영상화 사업 등 기초연구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굴곡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자료들과 단절된 연구공백을 메우고자 2003년도부터 시작되었다. 원로예술인들의 삶과 예술관을 담아낸 구술기록은 당대 예술계의 풍경, 예술사조, 인적 교류, 작품세계 등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⁶⁰ 이연실, 권옥선, 김순자, 김혜영, 이한금, 김경영, 송미옥, 이종엽, 한경숙, 이옥선, 손성란, 하영란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⁶¹ 이필남, 임충호, 김두숙, 김향자, 최금숙, 김정숙, 김영희가 생애사를 구술했다.

- 구술채록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객관적 사실정보라기보다는 구술자의 시대적 경험, 가치관의 변화, 일정한 사안에 대한 해석을 다룬다.
- 구술채록 작업은 크게 생애사 구술채록과 주제사 구술채록으로 나뉜다. 생애사는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등), 시각예술(조형, 건축, 사진 등), 대중예술, 문학 등의 분야로 나누어 원로 예술인들의 구술을 수집하고 있고, 주제사로는 ‘해방 이후 한국 근현대 무용교육과 무용창작 I, II’(2008), ‘조선창극단과 김연수창극단, 동일창극단 그리고 국립창극단 초창기의 역사’(2009), ‘20세기 한국 서화전통의 변모화 현대화 I, II’(2008~2009), ‘1960~1980년대 드라마센터 공연활동 연구 I, II’(2014~2015), ‘20세기 후반 참여지향의 춤 흐름 재발견’(2015), ‘1960~1970년대 한국미술의 해외전시’(2016) 등이 있다.
- 아르코예술기록원은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을 통해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등), 시각예술(조형, 건축, 사진 등), 대중예술, 문학 등 총 263명의 구술채록을 수집·관리·활용하고 있다(2021.3.23.기준).

〈표〉 아르코예술기록원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구술채록 현황(2021.3.23.기준)

구분	공연예술				시각예술				대중 예술	문학	기타	합계
	연극	무용	음악	기타	조형	건축	사진	기타				
생애사	37	19	33	2	48	5	2	5	13	30	1	195
주제사	13	21	-	1	30	-	-	2	-	-	1	68
소개	50	40	33	3	78	5	2	7	13	30	2	263
합계	126				92				12	30	2	263

※ 출처: <https://www.daarts.or.kr/gusool/intro>

나. 국외

1)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

- ‘희생’을 뜻하는 홀로코스트는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인류역사상 가장 처참한 사건을 일컫는 데 사용되고 있다. 홀로코스트 사건은 그 피해의 규모나 트라우마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희생자와 그 가족들, 후대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던 바, 홀로코스트 사건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방대한 규모로 진행되어 왔다. 역사적 단계에 따라 달라졌던 홀로코스트 사건에 대한 해석과 시각에는 초기의 실증주의적 연구(수용소와

절멸계획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와 80년대의 수정주의적 접근(반유대주의와 독일 사회의 특수성 연구), 그리고 심지어는 홀로코스트 부정론(아서 버츠나 로베르 포리송과 같이 아예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극단적 수정주의)까지 포괄할 수 있는데, 이후에 자리잡은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적 기억에 대한 도미니크 라카프라의 연구와 마리안느 허쉬의 포스트메모리(postmemory)를 들 수 있을 것이다.

- <Representing the Holocaust: History, Theory, Trauma>(1994), <History and Memory after Auschwitz>(1998), <Writing History, Writing Trauma>(2001) 등의 역작을 남긴 라카프라는 정신분석학적 개념들을 도입해서 개인 단위의 치료가 아닌 역사적, 사회적 사건의 연구를 시도하고,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상처가 어떻게 개인적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극복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였다. 그가 주목한 방법으로는 행동화(acting out)과 성찰적 극복(working through)가 있는데, 트라우마적 사건과 기억에 있어 개인 및 사회가 보이는 복잡하고 상호주관적인 방식을 섬세하게 연구하였다. 즉, 행동화와 성찰적 극복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피해자는 상실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애도를 할 뿐만 아니라 애도를 넘어서 ‘윤리-정치적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
- 마리엔느 허쉬는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Writing and Visual Culture After the Holocaust>(2012)에서 포스트메모리로서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적 기억을 새롭게 제안했다. 포스트메모리는 “앞선 세대들이 기억하는 경험과 개인적, 집단적, 문화적 트라우마를 자신들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 이미지, 그리고 행위들을 통해 견지하게 되는 ‘이후 세대’와의 관계”⁶²로서 피해 당사자의 일차적인 경험을 넘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차적인 기억이자 문화나 재현을 통해 확산된 사회적 기억을 의미한다. 포스트메모리의 의미는 직접적인 기억을 넘어서 기억의 확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새로운 의미를 획득해가는 기억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국가·공공기관 사례] 미국의 국가적 기념관인 홀로코스트기념관(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은 홀로코스트 희생자를 위한 기념관으로 나치와 그들의 협력자들에 의해 살해된 6백만 유대인과 수백만의 비유대인을 기억하기 위한 전용공간이다. 1979년 미국에서 홀로코스트대통령위원회가 위촉되면서 기념관과 기념물 준비, 교육과정을 전담하기 위한 중등 및 고등교육과정 준비, 기념의 날 행사를 위한 준비,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답사 준비, 인권 향상을 전담하기 위한 준비, 기금마련을 위한 준비 등이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토대가 되었다.⁶³ 기념관은 고통 받았던 이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홀로코스트 사건의

⁶² Marianne Hirsch, 2012.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Writing and Visual Culture After the Holocau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5.

비극과 교훈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록보존과 시민교육을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문자 혹은 매체기록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물적 정보 혹은 물질문화 정보로 표현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며 다각적인 컬렉션을 유지하고 있다.

- [국가·공공기관 사례] 이스라엘의 국립 기념관인 야드바셈(יָד בִּשְׁמֵרָה)은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관이다.⁶⁴ 1953년 설립되어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 어린이 기념과, 추모의 방, 예술 및 조각을 갖춘 야외 추모 공간 등이 위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공간은 ‘기억의 전당’인데, 두 개의 원뿔 모양으로 이루어진 벽면 공간에는 600여점의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사진과 이름이 걸려 있고, 이름 없이 희생된 이들을 위한 빈 공간들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야드바셈은 유대 민족의 비극이라는 큰 역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희생자의 얼굴과 이름, 개인적인 이야기를 보존하고 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재난 참사

- [국가·공공기관 사례] 일본의 ‘3.11’ 과 재난 아카이브
 -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 재해에 대한 수집과 기록이 잘 되어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문부과학성, 경시청, 수상관청 등 공공 기관이 생산한 지진과 관련 기록은 일본 국회도서관이 온라인으로 전시한 동일본 대지진 아카이브에서 찾아볼 수 있고, 동일본 대지진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수집된 기록과 증언도 많은 기록 아카이브들을 형성한다.⁶⁵
 - ‘3.11을 잊지 않기 위한 센터’는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기 위해 센터다시에 세워진 재난 아카이브로서, 센터가 주도하여 재난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기록 활동을 하도록 일종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안에서 방문자는 생산자로, 그리고 사적 아카이빙은 공적 아카이빙으로 전환됨으로써, 재난 아카이브가 지닌 다층적 운동성을 지지한다. 일례로, ‘3월 11일을 잊지 않기 위한 센터’에 최초로 등록된 1호 기록활동가는 토목건설회사의 경영인으로 타카노 히로유키였다. 그는 지진 직후부터 복구를 위해 쓰나미 피해지역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곧 그는 자신의 행위가 지진 피해의 흔적을 지우는 일인 동시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는 일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피해 지역을 ‘백지화’ 하는 대신 타카노는 말없이 피해지역의 거리와 풍경,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⁶⁶

63 정영란. 2003.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통해본 주제기록관(special subject repository)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24-27.

64 야드바셈의 홈페이지: <https://www.yadvashem.org/>

65 박찬희. 2019. 「재난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일본 ‘3월 11일을 잊지 않기 위한 센터’를 사례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6 박현선. 2020. 「재난, 아카이브, 이미지: 재난 기억의 문화적 실천」, 한국극예술연구, 68, 238쪽.

3) [국가·공공기관 사례] 과거 청산과 진실화해위원회

- 아르헨티나의 실종자진상규명국가위원회(CONADEP)와 페루의 진실화해위원회(CVR)
 -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1970년대 군부 독재의 압제를 청산하고 과거 여러 인권침해 사건을 둘러싸고 진실, 정의, 그리고 화해를 모색하려는 과거사청산을 민주화 이행기의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이런 시도는 공적기관으로 진실화해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으로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사법 처리하는 실행으로 옮겨졌다. 아르헨티나의 실종자진상규명국가위원회(CONADEP)는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후 설치된 최초의 공식적 조사위원회로서 향후 유사한 위원회의 모델이 되었다. 또한, 1988년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는 과거의 국가폭력을 시정해야 할 국가의 의미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사법적 혁명’으로 평가받는다.⁶⁷
 - 박구병에 따르면, 과거사청산 또는 정리는 흔히 진실규명, 피해자의 명예회복, 가해자의 법적 책임 규명과 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화해와 통합, 그리고 과거사의 비극을 후속세대에 교육하는 일 등을 포함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와 페루에서 공식적인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은 과거사정리를 통한 역사적 기억을 구축하는 것과 향후 민주주의의 강화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두 작업이었다. 또한 두 국가의 진실화해위원회는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주로 국가폭력의 수준과 가해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 아르헨티나 CONADEP의 비교적 명확한 과업과 달리, 페루의 CVR은 페루는 정부군, 게릴라 세력, 산악지대의 원주민 등 여러 세력 간의 충돌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임소재와 배보상, 추모 정책이 복잡하고 어렵게 전개되었다.⁶⁸

〈표〉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과거사 관련 재단

재단명	내용	형태	업무영역	독립성 보장 방안	재원 마련 방안
아르헨티나 ‘열린 기억’		민간주도형: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 연합	사진, 구술과 문서자료 보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방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 연합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기금 + 외국 정부 또는 재단의 후원
아르헨티나 ‘기억의 공간’ 협회		민관협력형 공공재단	‘기억의 날’ 캠페인 주관, 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구성원의 이사회 참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예산 + 민간 기부금

67 Arturo J. Carrillo. 2006. "Justice in Context: The Relevance of Inter-American Human Rights Law and Practice to Repairing the Past." Pablo de Greiff(ed.), *The Handbook of Reparation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506.

68 박구병, 2010. 「진실화해위원회 이후: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배·보상과 추모 정책」, 『Revista Iberoamericana』, 21.1.

아르헨티나 법무·안보·인권부 국립기억 자료보관소	정부기구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증언과 기록 보존, 분석, 교육	정부기구	국가 예산 + 국제 협력 기관과 외국 정부나 기관의 보조금
페루 가톨릭 사회행동	가톨릭 재단	피해자 지원, 인권침해 사례 기록 보관, 기념물 설치 주도	민간주도형	가톨릭 기관 예산 + 국제 가톨릭 단체의 지원
페루 집단기억과 인권정보센터	국가인권 옴부즈맨 산하기관	피해자 관련 통계조사, 기록 보존,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국가인권 옴부즈맨 위원장의 의회 선출, 5년 임기 독립성 보장	국가 예산

※ 출처: 박구병, 「진실화해위원회 이후: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배·보상과 추모 정책」, 185쪽.

4) 미국의 사회적 기억화 사업

○ [국가·공공기관 사례] 미국의 '9.11'

-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9.11 테러 사건 후 국립 9/11 추모공원 및 기념관(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이 세워졌다. 추모공원은 테러 공격을 당한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자리의 시장에 위치하며 오랜 복구작업을 거쳐 다시 제자리에 심어진 '생존자 나무'를 포함한 수목공원이 조성되었고, 건물의 잔해가 남은 지하에 박물관을 건설하여 테러 이후 남겨진 물품과 생존자들의 증언을 포함해 각종 음성 및 영상기록이 전시되었다. 박물관의 "Inside the Collection" 메뉴는 온라인으로 전시 물품의 사진 등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의 서비스 목록

서비스 이름	설 명	
Find a Name	희생자들의 이름을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고 실제 추모공원에 해당 이름이 위치하고 있는 패널주소를 표시하였다.	
9/11 Timeline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으로 배열한 당시 이미지와 오디오, 비디오 자료를 이용하여 쌍방향으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Inside the Collection	박물관에서 영구 보존 중인 물품들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된 데이터 베이스로, 예술품이나 구술 역사자료, 도서 등을 포함하는 11,000개의 물품과 300여 건의 영상자료, 40,000여 건의 필름사진과 디지털사진 등이 포함된다.	
Explorethe Registries	Memorial Registry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9/11 사건에 대한 기억을 누구나 등록하고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
	Rescue & Recovery Registry	구조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억을 등록하고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
	Witness & Survivors Registry	목격자와 생존자들의 기억을 등록하고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

※ 출처: 김현정. 2017. 「재난기록의 웹 아카이빙에 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 35쪽.

○ 마이너리티 인권

-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영구보존 기록이 사회의 지도층—정부, 기억, 군대—와 같은 부유하고 권력을 지닌 이들 쪽으로 치우쳐 있는 반면 빈곤하고 무력한 이들의 기록이 부재 한다는 각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보통사람들의 삶, 바깥, 요구 등에 관하여 전체 세계에 대한 새로운 기록정보원들을 수집할 것을 제안하면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에 ‘여성, 흑인, 그리고 다른 소수 인종과 노동자에 관한 기록을 수집’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⁶⁹

○ 할리우드의 ‘블랙리스트 크레딧 위원회’

- 할리우드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당시의 극단적인 공산주의에서 비롯된 진보적인 영화인에 대한 가공할 인권탄압을 뜻하다.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자 당시 미국 국회의 주류였던 공화당 극우파는 ‘반미활동조사위원회’(House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HUAC)을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즉시 해고시키고 조사하였다. HUAC은 할리우드에도 압력을 넣어 자체적인 블랙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영화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영화계를 떠났다. 마지막까지 조사위원의 심문을 거부하고 침묵을 지킨 10인인 ‘할리우드 텐’은 모두 1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이들의 이름이 작품 크레딧에서 사라지는 피해를 입었다.⁷⁰
- 오랜 시간 묻혀졌던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피해는 1986년 미국 작가 협회(Writers Guild of America West)가 ‘블랙리스트 크레딧 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다시 제기되었다. 작가 협회는 온라인 아카이빙을 통해서 작품 크레딧에서 사라지거나 다른 이름으로 올라간 블랙리스트 영화인들의 정보를 바로 잡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 1999년부터 블랙리스트 영화작가들에 대한 재조명이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졌다. 비엔나영화제와 비엔나 영화박물관이 공동 개최하여 블랙리스트 영화 50편을 상영하고 영화학자들의 심포지엄을 열었으며 취리히에서도 30편이 시사회를 상영하여 관객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재조명했다.

5) 예술표현의 자유

○ ‘프리뮤즈’(Freemuse) 운동

- ‘프리뮤즈’(Freemuse)는 예술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덴마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국제적 NGO로서 매년 전 세계 각국에서 예술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를 조사 분석

⁶⁹ Patrick M. Quinn, 1977. “The Archivist as Activist,” *Georgia Archive* 5.

⁷⁰ 임인자. 2002.4.6.,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반세기의 상처〉, 『씨네21』.

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⁷¹ 이 보고서는 21세기 현재에도 무수한 국가에서 예술가에 대한 살해, 납치, 공격, 투옥, 박해, 위협, 검열 등이 벌어지고 있음을 전달한다. 한국의 경우, ‘프리뮤즈’의 2016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예술지원을 억압과 검열의 도구로 사용한 사례로서 이스라엘 정부, 러시아 정부 사례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례로 등재되어 있다.

- 프리뮤즈의 2018년 보고서 <예술적 자유의 현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들은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새로운 글로벌 문화가 부상하고 있다. 정부에 의해 추동되고 다수의 사회 집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관점들을 침묵시키는 검열, 공격, 박해 등이 일반화되고 있는 문화이다.”⁷² 10) 새로운 글로벌 문화, 즉 타자를 침묵시키는 문화의 특징은 21세기 검열 문화의 중심축을 이룬다. ‘프리뮤즈’의 활동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박소현이 지적한 대로, 21세기 검열 문화는 과거의 검열 정치와 차이점이 있다. 주로 독재정권 하의 저개발 국가들에서 자행되던 검열 정치는 이제 미국, 유럽, 아시아 선진국을 포함하는 G20 국가들까지 포괄한다. 또한 몇몇 권력가들이 검열의 칼을 휘두르던 방식과는 달리, “침해 주체는 억압적인 정치 체제 하의 정부에 한정되지 않고, 개방적, 민주주의적 국가들의 정부까지” 아우르며, 때로는 종교단체들, 지자체, 기업, NGO 등도 함께 가세한다.⁷³ 광범위한 형태의 검열 현상은 민족주의적 포퓰리즘 정치인에 대한 대중적 지지와 더불어 최근 예술정책 및 행정에서 확산되는 신자유주의화와 연관된다.
- 로버트 앳킨스와 스베틀라나 민체바에 따르면, 검열은 언제나 욕된 말이었는데 여론조사자나 세금징수원을 위해 라틴어 *censere*에서 파생된 말로 로마제국의 가장 악덕한 시민을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되었다. 법적인 의미에서 검열은 표현된 관점으로 인해 정부가 그 표현을 억압할 때 적용되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개인이나 사적 기관이 표현을 억압하는 것이다.⁷⁴ 두 경우 모두 검열을 창작하는 예술가의 적대자라고 이해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다 많은 경우에 검열이 매우 세밀하게 작동하며 자유시장의 부분적 원리로서 혹은 어쩔 수 없는 결과로서 체화되기도 한다. 어떤 방식으로 검열이 모습을 바꾸든 간에, 그러나, 결과

71 “예술 자유를 수호하며”(Defending Artistic Freedom)이라는 구호 아래 프리뮤즈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참조. <https://freemuse.org>

72 “[A] new global culture is emerging, one where censorship, attacks, prosecutions and other practices of silencing views one disagrees with is becoming the norm, driven both by governments and supported by large groups of people in society. Freemuse Report “The State of Artistic Freedom,” Freemuse, 2018, p.26.

73 박소현, 2019. 『예술행정과 검열의 정치 : 아이치트리엔날레, 평화의 소녀상, 블랙리스트』, 『위협받는 예술, 위기의 민주주의』, 문화연대 토론회자료집, 2019, 19쪽.

74 Robert Atkins and Svetlana Mintcheva, “Censorship in Camouflage,” *Censoring Culture*, New York : The Verra List Center, Summer 2002.

는 동일하다. 우리가 보고 말하고 기억하고 상상하는 것들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열의 메커니즘은 문제시되는 행위의 표현을 억압하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 그보다 더 나아가서 검열은 위험한 기억들을 은폐하고 박탈하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 그것은 주디스 버틀러가 말한 대로, “발언 가능한 담론, 즉 공적 담론 내에서 무엇이 승인될 수 있으며 무엇이 승인될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한도를 한정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다. 즉, “검열은 단지 제약적이거나 사적인 것, 즉 주체에게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 및 표현의 정당한 경계에 형성적인 것이다.”⁷⁵ 이는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 에서 감옥의 권력은 단순한 금지나 억압을 의미하지 않고 판옵티콘적 감시의 문화를 창조하는 생산적 메커니즘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검열은 추상적이거나 이념적인 소거 기계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문화(사무실, 제도, 관행 등)를 가져오는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문화적 참여자는 그 안에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생성하고 통제를 내면화하는 생활을 수행하는 것이다.⁷⁶

○ [국가·공공기관 사례] 아이치트리엔날레와 ‘표현의 부자유’ 전

- 2019년 ‘평화의 소녀상’ 전시 철회 등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아이치트리엔날레’는 사회문제와 정치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특별히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특별전을 개최했다. 특별전의 주요 소재는 일본군 ‘위안부’, ‘천황제’, 일본 헌법 9조, 후쿠시마, 아베정권 비판 등으로, 전시 작품 중에는 오우라 노부유키와 고이즈미 메이로와 같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특별전에 대한 소개가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예술제 사무국에는 770여 통의 협박메일이 쇄도하고 전시장을 가솔린으로 불태우겠다는 테러 예고와 각종 협박이 가해져 업무가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 공무원, 정부의 압력이 거세게 작동하였다. 결국, 개막 3일 만에 특별전의 전시가 중단되는 가운데 ‘전후 일본 최대의 검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전시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군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과 히로히토 천황으로 보이는 형상이 불에 탄 이미지로 표현된 작품이었다. 외압에 의한 전시 중단 사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양국의 예술진영에 큰 정치적·문화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본헌법 2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일본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과 풍자의 성격을 지녔던 특별전이 그 자체로 ‘표현의 부자유’의 실상을 표현한 셈이 된 것이다.⁷⁷
- 예술을 통한 공공 기억의 축적적 자리가 되어야 할 행사가 결국 정부와 우익단체들의 압력과

⁷⁵ 주디스 버틀러. 2016. 『혐오 발언』, 유민석 옮김, 알렘, 247쪽과 248쪽.

⁷⁶ Ewa Majewska, “Censorship as the Formative Mechanism of Neoliberal Culture?” *Polish Theatre Journal*, Jan, 2015, p.7.

⁷⁷ 박현선, 2020. 「위험한 기억과 글로벌 검열 문화 - <아이치트리엔날레 2019>와 한국의 블랙리스트 사태」, 『사이間SAI』 28, 429-430쪽.

협박에 증지된 이 사건은 21세기 우익 포퓰리즘 시대 예술 검열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당시 일본의 미술평론가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을 용인하게 된다면, <아いち 트리엔날레 2019>만이 아니라 향후의 모든 표현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표현의 건전한 발전은 일본 국내에서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서는 시민의 다양한 활동을 수호한다는 행정 기관에의 신뢰 그 자체를 해치게 할 것입니다.”⁷⁸

다. 시사점

- 국가폭력, 자연재해, 제노사이드, 예술 검열 등 다양한 국내외 피해 사례들을 살펴볼 때, 희생자가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국내외 피해 사례들에서 구술과 증언, 아카이빙을 통한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억화는 피해자 자신의 서사화와 적극적인 기억행위를 촉발함으로써 고통의 치유와 신뢰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 사회적 기억화 작업은 피해자와 희생자뿐만 아니라 참여자와 아키비스트들의 개인적, 집단적 윤리성과 전문성, 상호 연대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구술 기록 및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조직, 관련 위원회 구성, 트레이닝 프로그램 기획도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 피해자 중심의 구술과 기록을 통한 사회적 기억화는 충분한 기획과 자료 수집,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 활용 등을 통해서 계획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 구술 및 심층인터뷰 자료에 대한 활용은 자료집, 해제집, 온-오프 아카이브 및 다양한 컬렉션, 박물관, 구술생애사기록집, 전시, 영상제작, 공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국내외 피해사례들의 사회적 기억화 작업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시작으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시민과 민주 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교육적 절차를 성문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문화적 실천방안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 국내외에서 진행된 기억화 사업은 문화적 재현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블랙리스트의 사회적 기억도 소설, 연극, 영상,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창작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집합기억의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78 일본의 미술평론가연맹의 성명서(あいちトリエンナレ2019 における 表現の不自由展 その後の中止に対する意見表明, 2019. 8. 7), 이명원. 2019. 「평화의 소녀상과 아베의 극우 강권통치」, 『위협받는 예술, 위기의 민주주의』, 문화연대 토론회 자료집, 14쪽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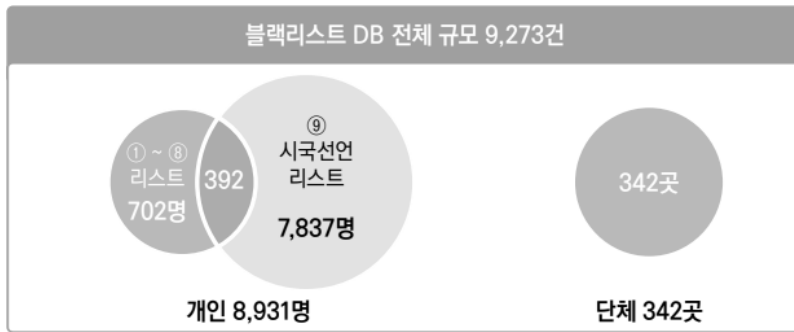
4.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록작업을 위한 세부 방안

가. 대상 선정 및 범위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규모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실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단체 342곳, 개인 8,931명으로 총 9,273건(중복 제외)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DB 규모



※ 출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위원회 활동보고서1』, 33쪽.

- 분야별로는 영화가 2,468건으로 전체의 27.1%를 차지하여 블랙리스트 규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며, 문학이 1,707건, 공연이 1,593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시각이 824건, 전통이 762건, 음악이 574건, 방송이 313건, 기타 859건에 이른다.

〈표〉 분야(장르)별 블랙리스트 규모 비교

분야	영화	문학	공연	시각	전통	음악	방송	기타	합계
규모(건)	2,468	1,707	1,593	824	762	574	313	859	9,100건
비율(%)	27.1	18.8	17.5	9.1	8.4	6.3	3.4	9.4	100%

※ 출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위원회 활동보고서1』, 34쪽

2)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 유형

- 백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피해가 ‘지원 배제’로 한정되지 않으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과 감시, 문화예술 창작·표현 활동에 대한 검열, 문화예술활동을 위축시키는 통제 및 불이익과 차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 유형

피해	유형 정의	사 례
사찰	정부의 행정기관, 정보기관 등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상·표현의 동태를 살피 조사하는 행위	- 시국선언 명단 수집, 정치적 성향 파악 등
감시	정부 또는 기업이 시민을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해 행동을 지켜보는 행위(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적 정보 수집 포함)	- 전화 도청, 스마트폰 사용 내역·문자·컴퓨터 해킹 등의 정보 수집부터 도청기,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을 통한 감시 포함
검열	정부가 책, 영화, 연극 등의 내용이 사회적 또는 윤리적 규범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예술 매체에서 제시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공권력에 의해 예술작품의 표현이나 공개를 통제·위축하는 행위)	- 사전 검열: 작품 불허·취소·교체, 작품 내용 개입, 상영 거부, 작품 손상, 작품 철거, 작품 운송 거부 등 - 사후 검열: 상영 중단, 문화예술인에 대한 고발, 예술가에 대한 과도한 법적 제재 등 - 위축 효과 ‘자기 검열’: 작품 내용 수정, 지원 신청 철회 등
배제	정부가 다양한 권리, 기회, 자원(예: 고용·참여·예산 지원)으로부터 개인 또는 특정 단체를 조직적으로 제외시키는 행위	- 지원(금) 배제 또는 삭감·중단 등 - 심사위원 선임 배제, 인사 선임 시 특정 인물 배제 등 - 공연자·연출가·작가 배제, 행사 초청 배제, 수상 배제 등 - 대관 배제(공연장 폐쇄), 전시 취소, 강연 취소 등
통제	-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 -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또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거나 지휘하거나 결정하는 권력의 행사로서 결과를 평가하고 시정하며 조정하는 활동	-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정책, 제도, 사업 등(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변경·사업폐지 등) - 사업예산 축소·전용·폐지 등 - 심사과정에서 심사 반복 요구 등 부당한 압력 행사 - 불공정한 사후 평가를 통한 제재 조치 등 - 공직자 및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등 - 민간의 활동에 부당 개입(선거 개입, 인사 개입, 포기 각서 요구, 표적감사, 공연 방해 등)
차별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전과, 성별, 외모, 성적 지향, 인종, 신체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견정 등의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	- 특혜(특정 단체 및 개인 특혜 지원 등) - 사업 위상 격하(작품 및 행사 위상 격하, 시상 결과 격하 등) - 고용, 모집,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특혜 또는 배제 등

※ 출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위원회 활동보고서1』, 23쪽.

- 블랙리스트 사태는 블랙리스트에 따라 직접적으로 배제당한 피해를 입은 개인·문화예술 단체는 물론, 직접 피해는 없었지만 사찰의 결과로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문화예술인, 배제를 예견하여 지원사업 신청을 거부하거나 불이익과 위협을 피하기 위해 자기 검열을 한 문화예술인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피해자를 양산하였다.⁷⁹

3) 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 위원회는 신청사건 112건과 직권사건 33건을 합한 총 145건의 사건을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공연예술, 문학, 시각예술, 영화, 전통예술, 출판, 기타가 그것이다. 분류 결과, 공연예술 분야가 44건(30%), 문학 분야가 18건(12.4%), 시각예술 분야가 9건(6.2%), 영화 분야가 23건(15.8%), 전통예술 분야가 4건(2.7%), 출판 분야가 7건(4.8%), 기타 분야가 40건(27.5%)이었다.

〈표〉 분야(장르)별 블랙리스트 규모 비교

구분	공연	문학	시각	영화	전통	출판	기타	합계
신청사건	36	15	7	18	4	4	28	112
직권사건	8	3	2	5	-	3	12	33
총계	44	18	9	23	4	7	40	145

※ 출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위원회 활동보고서1』, 101쪽.

- 위원회가 145건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 완료된 사건은 139건이다. 조사개시 이후 신청인이 취하 의사를 밝혀 종결한 사건이 4건, 조사개시 이후 조사의 한계로 인해 조사 종결한 사건이 2건이다. 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 완료한 139건은 사건 내용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사건 병합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총 115건의 진상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다. 115건 중 85건은 신청사건이고, 30건은 직권사건이다.⁸⁰
- 피해자들이 사건을 신청하여 조사가 완료된 사건 85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연 분야가 31건, 문학 분야가 8건, 시각 분야가 7건, 영화 분야가 10건, 전통예술 분야가 4건, 출판 분야가 4건, 기타(예외, 특별 포함)가 21건이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7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위원회 활동보고서1』, 22쪽.

80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위원회 활동보고서1』, 103쪽.

〈표〉 조사 완료된 85건의 신청조사 사건 분야별 분류

분야	사건명	건수
공연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등 '극단 진실보' 선정 배제사건	31
	'전국연극제'의 '대한민국연극제'로의 변경과 관련한 '서울연극제' 위상 약화 의혹 사건	
	'201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 정기 대관 공모' '극단 놀땅' 선정 배제 사건	
	제25대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선거 개입 사건	
	극단 하땅세(윤시중) 배제 사건	
	2016 공연예술비평 활성화 지원 사업 '공연과이론을위한연구모임' 선정 배제 사건	
	2015~201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등 '극단 허리' 선정 배제사건	
	2016 국립극단 '작가의 방' 검열 사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 '극단 수수파보리' 선정 배제 사건	
	극단 마실(손혜정) 배제 사건	
	국립현대무용단 부당 개입 사건	
	2016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및 '공연예술창작산실' 사업 개편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작동 의혹 사건	
	2016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지원-2차 공모사업 등 '극단 드림플레이' 선정 배제 사건	
	예술전용공간 임차지원 사업 폐지로 인한 퇴거 등 사건	
	(사)충북민예총 배제 사건	
	2015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공모 사업 등 '서울연극협회' 선정 배제 사건	
	2015 '공연티켓 1+1 지원 사업' 부당 탈락 사건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 공모사업 등 '극단 완자무늬' 선정 배제 사건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 공모사업 등 '극단 두비춤' 선정 배제 사건	
	예술활동증명 심의위원 선정 배제 사건	
	한국공연예술센터 2015년도 정기대관 공모사업 등 '극단 백수광부' 선정 배제 사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도 공연예술(연극) 창작산실 대본공모지원' 사업 등 '극단 미인' 선정 배제 사업	
	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15 찾아가는 연극' 검열 배제 사건	
	'수요자 맞춤형 교육 사업' 심사위원 명단 제출 거부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권고사직 강요 사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극단 연우무대' 선정 배제 사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선정 배제 사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팝업시어터 공연 방해 및 검열 의혹 사건	
	2012년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 '일어서는 사람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찰 의혹 사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등 '서울변방연극제(임인자)' 선정 배제 사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104 서울변방연극제' 검열 의혹 사건		
2015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블랙리스트 배제 의혹 사건		
문학	한국문학번역원 이시영 등 지원 배제 사건	8
	김성규 등에 대한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부당 배제 사건	
	공지회 2016 국제교류공모사업 배제 사건	
	윤혜숙 아르크 문학창작기금,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배제 사건	

분야	사건명	건수
	김형중 예술위 심의위원 풀 부당 배제 사건	
	인디고서원의 한국국학진흥원 용역 사업 배제 의혹 사건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예술인파견사업 등 이창숙 배제 사건	
	2014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및 '예술인학습공동체지원사업' 축소 사건	
시각	기획전시 '또 다른 한국전쟁' 취소 사건	7
	2015 작가미술장터개설지원사업 무미아트(민병동) 선정 배제 사건	
	임옥상 국립현대미술관 '시대정신 전' 검열 사건	
	베를린 한국문화원 '코리안 방주' 지원 취소 사건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	
	홍성담의 전시회 무산, 보수단체 시위 등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영화	'(사)우리만화연대'의 2015년 연재만화제작지원 사업 배제 의혹 사건	10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상영 검열 및 지원 배제 사건	
	맹수진의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사전제작지원 심사위원 배제 사건 등	
	2009~2010 영화진흥위원회의 미디어엑트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배제 사건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 제도를 통한 문제영화 상영 방해 사건	
	유인택의 영화진흥위원회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사업 지원 배제 사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방해 사건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사건	
	'(주)시네마달' 블랙리스트 실행 사건	
	영화사 '청어림'의 블랙리스트 관리 및 외압 등 사건	
2010~2011 인디애니페스트 및 순회상영 사업 지원 축소 의혹 사건		
전통	2015~201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등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선정배제 사건	4
	국립국악원 '소월산천' 공연 취소 사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국제예술교류지원 1차' 등 '화성 열린문화터' 선정 배제 의혹 사건	
	'(사)한국전통문화예술원(고정균 이사장)' 선정 배제 사건	
출판	창비 등 '세종도서' 부당 배제 사건	4
	시인 이상국 블랙리스트 등재 및 인문독서아카데미 강연, 세종도서 등 배제 의혹 사건	
	시인 손세실리아에 대한 세종도서,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등 배제 의혹 사건	
기타	'책읽는 사회문화재단' 주관사업 이관 과정에 대한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 사건	21
	뉴미디어 홍보 공공입찰 제한 사건	
	윤한솔 연출가 관련 전면 배제 사건	
	이하 작가의 정치풍자 예술행위에 대한 정부기관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극작가 고연옥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시인 정세훈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작가 유영소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소설가 김성균에 대한 국기기관의 사찰 등 인권침해 의혹의 건	
미술가 양희성의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분야	사건명	건수
	미술가 김수정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배우 유정숙(가극단 미래 대표)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대전문화재단 운영팀장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퍼포먼스 활동가 박성수의 정치풍자전단 배포 및 살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	
	충북문화재단 대표 내정자 강태재에 대한 사찰 및 탄압 사건	
	문화재위원 임명자 김규호의 임명 취소 사건	
	작가 김중미에 대한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임정희 및 문화연대에 대한 블랙리스트 등재 사건	
	한국예술종합학교 블랙리스트 적용 사건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집회시위 불참 조건부 지원 요구 사건	
	박근혜 정부의 마을라디오 활동 외압 의혹 사건	
	한국예술종합학교 최현수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의혹 사건	
	(재)국악방송 사장 선임 블랙리스트 적용 의혹 사건	

※ 출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위원회 활동보고서1』, 103~106쪽 재구성

4) 블랙리스트 피해 현황 및 특징

가) 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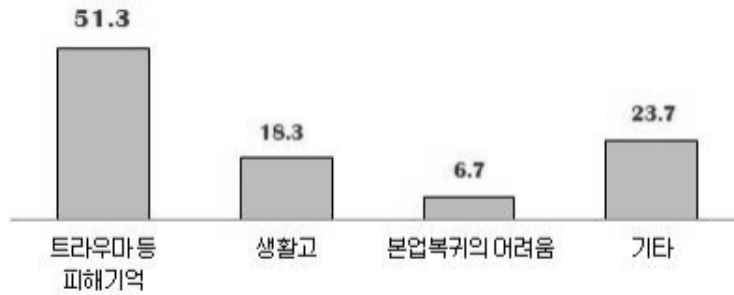
- 2019년 9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블랙리스트 피해자 500명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피해자 현황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0명이 응답하였는데 응답자의 절반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가장 힘든 점으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51.3%)이 ‘트라우마 등 피해 기억’이라고 답했다. 생활고(18.3%), 본업 복귀의 어려움(6.7%)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또 정부에 피해 배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명예 회복과 피해 배상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이 97.3%를 차지했으며, 블랙리스트 피해 배상을 정부에 요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87%를 차지했다. 이미 응답자의 57%는 블랙리스트 피해 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피해자 대다수(75.3%)는 문체부의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⁸¹

81 한겨레, “블랙리스트 피해자 절반 “트라우마 시달려””. 2019. 10.17.

〈그림〉 블랙리스트 피해자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질문 Q2.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선생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n=300, 단위:%)



※ 출처: 정윤희, 「문화민주주의실천여대 블랙리스트 운동 현안 보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시국선언 4주년 예술현장 집담회: #그런데 문화예술행정시스템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코로나19까지』, 2020.11.4, 2쪽.

- (사)한국심리학회 2014년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의 심리상담을 하고 있다. 조현섭 한국심리학회 회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은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사건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내 상담 사례에서는 없었고, 전국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상담사들이 매년 2차례 모이는 점검 자리에서도 꼭 짚어 블랙리스트가 언급되는 경우는 없었다. 혹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불안함에 대해 말을 하지, 사건 자체는 잘 말하지 않는 것 같다. 문제는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데, 한 번 트라우마가 되면 치료도 어렵고 평생을 지배하는 악영향이 된다. 비극적인 일이다.”⁸²
- 피해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책임자인 김기춘·조윤선 등의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판결⁸³이나,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 10월부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 단장을 맡아 블랙리스트를 관리·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수근 전문체부 1차관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원예대 총장으로 부임 하는 일 등에 대해 피해예술인들은 2차 가해로 보고 있다.⁸⁴

⁸² 설동준, 「상담을 통해 들여다본 예술인의 삶: 조현섭 (사)한국심리학회 회장」, 『예술경영』 432호, 2019.9.26.

⁸³ 한겨레, “직권남용, 꼼꼼히 따져 판단…검찰 수사에 즉각 영향”, 2020.1.31.

-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 회복을 위한 ‘사회적 기억사업’ 예산 20억 원도 정쟁을 유발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전액 철회된 바 있다.⁸⁵ 블랙리스트 사건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가 진척된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서, 피해예술인들이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 블랙리스트 피해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공익제보자가 입은 피해다. ‘팝업시어터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공익제보를 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원은 부당전보 조치를 당했고, 끝내 퇴사했다. 이 직원은 부당전보로 직업을 잃게 된 데다 “이 사건 이후 ‘블랙리스트’가 돼 공공기관이나 문화예술 관련 단체에서 사실상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⁸⁶
- 2020년 12월 8일부터 문화예술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이 다시 거리로 나온 것은 정부와 국회가 법·제도 마련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사법구제는 수년째 멈춰 있으며,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지워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⁸⁷
- 문화예술인은 여전히 국가가 블랙리스트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는 상태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2021년 1월 14일 ‘블랙리스트 주모자 처벌 촉구 긴급 기자회견’ 열고 “박근혜와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정부는 블랙리스트 국가폭력을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블랙리스트 주범들과의 화해, 통합을 말하기 전에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에 공감하고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⁸⁸

나)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의 특징

-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의 가장 큰 특징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사후적 피해라는 점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검열의 의혹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잇달아 있었고, 그로 인한 분노와 저항, 갈등과 혼란의 시간들이 꽤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퍼즐이 맞추어진 이후에야 충격과 분노, 슬픔과 배신감 등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한꺼번에 겪어내야만 했다는 점에서 블랙리스트 피해는 사후적이라고 할 수 있다.

84 경향신문,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송수근 계원예대 총장 사퇴하라”, 2020.1.29.

85 뉴스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사업’ 예산...야 “정쟁 유발”. 2020.11.13.

86 머니투데이, “朴정부 ‘블랙리스트’ 내부고발자, 국가 상대 2억 손해”, 2020.10.19.

87 미디어오늘, “文대통령 “죄책감 든다”고 했던 블랙리스트 사건 ‘실종’”. 2020.12.18.

88 뉴스1, “문화예술인들 “박근혜는 블랙리스트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2021.1.14.

- 블랙리스트 피해가 사후적이라는 점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검열 의혹을 제기하며 저항했던 연극인들의 ‘예술행동’이 어떻게 블랙리스트라는 과녁을 향해 나아갔는지를 기록한 김소연의 글에서 잘 드러난다. 즉 “블랙리스트 사태가 드러난 지금, 당시 연극계를 분노하게 했던 사건들은 검열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다. 방대한 규모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고 있었고, 연극인들의 거센 저항의 외중에도 계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극인들의 저항을 그저 지원금에 목매고 있는 예술계의 투정으로 호도했다. 돌아보면 연극계 내에도 그리고 연극계를 향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 때로는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 깊은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다. 그래도 길을 잃지 않고 블랙리스트 사태가 드러나는 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충돌과 갈등의 과정에서, 검열을 ‘예술지원’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 민주주의의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⁸⁹
- 하지만 모든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후적 피해인 것은 아니다. 일례로, 박근혜 창작산실의 경우 2015년 JTBC의 폭로로 블랙리스트의 작동을 알게 된 상황에서 사건의 베일이 벗겨지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켜봐야 했기 때문에 피해는 사후적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블랙리스트 피해의 또 다른 특징은 물리적 형태의 가시적 폭력이 아니라, 신뢰 관계의 붕괴라는 비가시적인 상흔을 남겼다는 점이다.
 - 이진아가 썼듯,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이 분노와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협의해온 정책 파트너가 그간 쌓아왔던 믿음과 신뢰를 이미 오래전부터 일방적으로 배신하고 있었으며 기만적인 태도로 이를 숨겨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데에서” 오는 것이다.
 - 또한 이진아는 피해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공무원들과 지원기관의 담당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사과 받는 이를 고려한 사과’를 원하는 것은 과거를 덮고 일어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자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그것이 블랙리스트 사태를 극복하는 ‘유일한 시작’이기 때문이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관의 공식적 사과문 발표’가 아닌, 기관 공무원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술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성찰하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다.”⁹⁰
 - 피해예술인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기만한 가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대면할 수밖에

89 김소연. 2019. 「예술행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354쪽.

90 이진아. 2019.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예술계에 남긴 상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150쪽, 152~153쪽.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생존과 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여러 공모사업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예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차별하고 배제하였을 뿐 아니라, 사과를 거부한 채 여전히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가해자들과 대면하는 일은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과를 통한 화해와 신뢰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예술인들은 언제든 또다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 블랙리스트 피해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의욕의 상실과 무력감, 상실감 등으로 인해 예술 활동 자체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양구가 썼듯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일부 직원들의 괴로움과 양심의 가책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겪고 있는 고통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이다. 이양구가 인용한 극단 마실 손혜정의 피해 진술은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가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해 준다.⁹¹

(이 사건에서 제가 받은 피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중략) 매년 떨어지고 불기를 반복하면서 수십 통 아니 수백 통의 지원서를 쓰는 것은 공공기금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하늘에 기도하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떨어지면 슬퍼하였지만 다시 또 기회를 기다리고 기회가 오면 최선을 다해 사람들과 만나며 기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과정이 이토록 투명하지 못함에 좌절하였고 그 과정에서 함께 힘을 모아 줘야 할 예술 행정가들의 솔직하지 못하고 예술가를 동료가 아닌 하대하는 태도에 실망했으며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여 진실을 말했던 사람이 퇴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앞으로 무엇을 믿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두드려 가며 지원서를 쓸 것인가? 아니 최소한의 임금을 받으면서도 공공의 기금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흘렸던 땀과 노력이 무색해져버렸고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 혼자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싸우면서 현장 예술가의 힘없는 위치를 절절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다는 것이 막막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하고 싶었고 지금까지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손혜정의 1회 진술조서」)

- 블랙리스트 피해의 또 다른 특징은 개인의 고통과 집단의 고통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정 개인이 블랙리스트의 대상이 된 경우든, 단체나 업체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우든 감시하고 사찰하고 배제하고 차별해도 되는 집단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블랙리스트 피해가 개인의 피해를 넘어 집단적 고통의 양상을 띠 수밖에 이유가 된다. 집단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경우는 개인의 피해와 집단의 피해가 얽혀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피해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91 이양구. 2019. 「피해자의 눈으로 본 블랙리스트 사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289~290쪽.

-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블랙리스트 피해는 사건 자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과 사건의 해결이 지연되고 망각 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의 고통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찰, 감시, 검열, 배제, 통제,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겪게 되는 트라우마 못지않게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2차 피해가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예술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피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사회적 기록작업의 대상 선정 및 범위

- 사회적 기록작업의 대상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 규모와 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해의 현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신청사건 우선 선정

- 피해자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사회적 기록 작업의 수행범위는 우선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85건의 신청사건을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신청사건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 규명을 요청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진상조사 과정에서는 말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 진상조사위가 발간한 백서에는 사건의 신청인을 비롯하여 130여 명에 이르는 피해예술인들의 이름과 진술이 수록되어 있다.

나) 희망자 우선 선정

- 신청사건이든 직권조사 사건이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적극적 의향이 있는 피해예술인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듣는 것이 필요하다. 바꾸어 말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아직 말하고 싶지 않은 상태인 피해예술인들에게 사회적 기록 작업이라는 명분으로 말하기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다) 집단 피해·현재진행형의 피해 경험 듣기

- 개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장르와 사건의 규모에 따라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3차 가해 등으로 파생된 피해를 겪은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피해는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양상을 띠 수밖에 없다. 집단 피해의 경우 블랙리스트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개별적으로 듣는 것이 필요하고, 그룹인터뷰를 통해 집단의 피해 경험을 재구성하고 기록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도모하여야 한

다. 2차 가해, 3차 가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예술인들의 경우 현재진행형의 문제를 듣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와 같은 기준으로 사회적 기록 사업의 범위를 추정할 때, 100개 내외의 사건에 대상자는 3~5백 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 사회적 기록작업의 윤리적, 법적 문제 및 수행자의 필요역량 분석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수집, 관리, 활용하는 사회적 기록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록작업에 수반되는 윤리적, 법적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록작업에 참여하는 수행자(연구원, 채록자, 아키비스트, 연구기관, 저자, 출판사 등을 포함)가 갖추어야 할 필요역량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사회적 기록작업의 윤리적 문제

- 이호신에 따르면, “구술자료는 살아 있는 사람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수집되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구술면담의 과정에서는 구술자 개인의 내밀한 삶의 체험이 다루어지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기 부담스러운 매우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으며,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판이나 비방이 섞인 이야기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사건이나 주제를 바라보는 구술자의 생각과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구술자료는 기록을 염두에 두거나 학술 논문의 작성 등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수집되기 때문에, 구술자의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장에 항상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선의로 이루어진 구술면담이 구술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안겨줄 수도 있으며, 커다란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⁹²
- 사회적 기록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수행자의 윤리 문제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행자는 블랙리스트 피해예술인들이 사회적 기록작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윤리 문제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한국구술사학회는 『구술사연구』에 기고하는 논문의 저자가 준수해야 하는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연구윤리규정」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구술채록 작업과 구술자료의 활용 및 보급에 관련해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92 이호신. 2017. 「구술자료 수집과 활용의 윤리적, 법적 문제」.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Ⅱ: 관리와 활용』. 선인. 158쪽.

- 먼저, 제4조에서는 구술채록 작업과 관련해 연구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구술채록의 목적과 해당 구술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의무, 둘째 구술채록 전에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들을 알릴 의무, 셋째 구술된 내용의 활용과 처분에 관련된 관리 정보를 고지할 의무, 넷째, 구술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의 권리, 다섯째 구술자의 자유로운 진술 권한에 대한 설명의 의무, 여섯째 사전 동의에 의한 구술채록과 동의 내용에 대한 기록의 의무, 일곱째 구술채록 작업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의 의무 등이다.
- 제5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술자료의 활용 및 보급과 관련해 연구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술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의 의무, 둘째 녹취문 검토에 구술자 참여 보장, 셋째 연구자의 구술 원본 보존의 의무, 넷째 구술자료 이용처의 출처 표시의 의무, 다섯째 구술자료 이용자의 출처 표시의 의무 등이다.

한국구술사학회 「연구윤리규정」

제4조 (구술채록 작업에 관한 윤리원칙)

1. 연구자는 구술채록의 목적과 해당 구술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구자는 구술채록 전에 개인정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3) 개인정보 항목 (구술자료 서식에 포함된 성명·주소·연락처·생년월일, 구술영상·음성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3. 연구자는 구술자에게 편집, 접근 제한, 저작권을 비롯한 구술된 내용의 모든 형태의 활용과 처분에 관련된 관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한다.
4. 연구자는 구술자가 법적 효력을 갖는 공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청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구술된 내용을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거나, 조건부 혹은 익명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5. 연구자는 구술자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하며, 구술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을 구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 구술채록은 구술자와 사전에 동의한 내용에 따라서 수행해야 하며, 그러한 동의는 기록되어야 한다.

7. 연구자는 구술된 내용을 기록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구술채록의 상황을 포함해서 구술채록의 준비과정과 방법을 기록해야 한다.

제5조(구술자료의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윤리원칙)

1. 모든 형태의 구술된 내용은 구술자가 사용을 허락할 때까지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구술된 내용의 녹취문은 가능한 한 구술자와 함께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
3. 연구자는 구술된 내용을 원본대로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전시회 및 출판물 비롯한 각종 미디어에 구술 자료를 재현할 때에는 구술사 프로젝트의 지원기관을 밝혀야 한다.
5. 구술 자료의 이용자는 구술 자료의 생산자(구술자와 연구자)를 밝혀야 한다.

※ 출처: 한국구술사학회 홈페이지, http://www.koha2009.or.kr/html/sub3_05.html

- 이호신은 구술사 연구 수행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첫째, 구술작업에 대한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와 동의 내용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다. 본격적인 구술채록 작업에 앞서서 채록연구자는 구술자에게 구술 프로젝트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자료의 보관과 공개 여부 그리고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구술면담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하며 구술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둘째, 구술자의 신상 보호에 관한 안전장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구술면담의 과정에서는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 이야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구술자의 신상 보호에 관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구술면담을 진행하는 연구자나 연구단체는 모두 구술자 보호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서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먼저 구술자가 비공개를 요청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구술사 연구 현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약속을 완벽하게 준수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국회의 국정감사 요구 사항이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자료 요청을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가능한 구술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구술면담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구술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만 하고, 이러한 내용도 기록

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자료의 보관과 활용의 단계에서 구술자가 익명으로 공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서 구술자가 원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 채록연구자나 연구기관은 왜곡 없이 자료를 생산하고 활용할 책임이 있다. 녹취문을 작성하면서 지나친 윤문 작업을 통해서 구술자의 의도나 구술의 상황을 왜곡하거나 변형시키는 행위를 삼가는 것은 물론이고, 학술논문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목적하는 바에 맞추어서 구술의 상황과 맥락을 인위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⁹³
- 여성주의 구술사에서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위치 및 상호관계에서 파생되는 권력과 윤리 문제에 주목한다. 김연주는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권력관계’, ‘연구자와 참여자의 라포 형성 과정’,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재현’ 등은 남성중심적 연구의 문제였던 참여자에 대한 소외와 왜곡에 있어서 페미니스트 연구도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그녀는 구술사 연구에 있어서 “윤리와 자기성찰이라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개념을 연구 과정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이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오클리의 제안을 제시한다. 오클리에 따르면, 질적 연구자들은 관습적으로 소개하는 참여자와 인터뷰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인터뷰 진행 과정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는다. 오클리는 연구자의 사회적·개인적 특징, 참여자에 대한 연구자의 느낌, 연구에 참여하게 된 것과 인터뷰에 대한 참여자의 느낌, 참여자가 연구자에게 보여준 환대, 연구자를 정보제공자로 사용하려는 참여자의 태도,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 연구자와 참여자의 관계 확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⁹⁴
- 김연주는 구술사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맞닥뜨리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를 ‘상담과 인터뷰의 경계’, ‘권력관계의 중층성’, ‘재현의 정치학’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고찰한 후 결론으로 “페미니스트 연구자로서 경험한 윤리적 문제들을 공유하는 것이 윤리성에 대한 판단과 공격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에 따른 윤리적인 해결책들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⁹⁵
- 요약하자면, 사회적 기록작업 수행자는 구술채록 과정에서 수행자와 구술자의 위치 및 상호관계로 인한 권력 문제와 윤리적 딜레마를 이해하는 한편, 구술자의 사전 동의, 구술자의 신상

93 이호신. 2017. 「구술자료 수집과 활용의 윤리적, 법적 문제」.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Ⅱ: 관리와 활용』. 선인. 165~167쪽.

94 Oakley, Ann. 1981. "Interviewing women: A contradiction in terms," In H. Roberts(Ed.), *Doing Feminist Research*,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31.; 김연주. 2012. 「페미니스트 참여관찰: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여성주의 역사쓰기: 구술사 연구방법』. 아르케. 83~84쪽 재인용.

95 김연주. 위의 논문. 106쪽.

보호, 구술자와의 상호소통 및 협력을 통해 왜곡 없이 자료가 생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자기 성찰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요청된다.

2) 사회적 기록작업의 법적 문제

- 구술채록의 과정에서 수행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가 연구윤리라면, 법률적 문제는 구술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구술자료의 활용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할 법률적 문제는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저작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프라이버시 침해

-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우리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보호를 받는다.
- 법률에서는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37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격권’에 의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진다. 이 법률 제5조에 따라 언론 등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6930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과 관련한 규정을 두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나) 명예훼손

-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한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민·형사상 제재 대상이 된다. 민사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법적 제재를 받게 되고, 형법상으로는 형벌로 처벌받게 된다.
- 우리나라 형법은 각칙 제33장에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312조) 항목을 별도로 구성하여 일반적인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제308)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09조),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제310조)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모욕죄(제311조)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를 요건으로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를 반드시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에 대한 경멸의 표시만으로도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는 구별이 된다.

-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요건에 따르면 우리 법은 진실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즉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한편, 민법에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은 불법행위의 하나로 명예훼손을 위자료 청구권 발생 요건(민법 제751조)과, 그 법적 효과로서 일반적 불법행위와 다른 명예훼손에 관한 특칙(제764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상의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민사상의 명예훼손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행위로서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민법」의 명예훼손 관련 조항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89헌마160 1991.4.1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호신은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문제와 관련해 다음의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의 조언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⁹⁶

- 구술자료의 인격권에 관한 문제는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곧바로 적용이 된다. 구술자가 원하지 않는 또는 사전에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록의 작성과 수집은 그 자체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성한다. 구술자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지는 녹음이나 녹화는 단순한 윤리적인 책임을 넘어서 모두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법률적인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런 행동을 절대로 삼가야만 한다.
- 수집된 자료를 구술아카이브에 보관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람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원칙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구술아카이브에 자료를 공개하기에 앞서 작성된 구술자료의 공개에 동의하는지를 구술자에게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 구술자에게는 자신이 한 이야기 가운데 기록으로 남겨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서는 곤란한 부분을 점검하고 확인할 권리가 있다. 자신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불리울 수 있는 파장에 대한 검토를 할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구술아카이브의 자료 공개는 구술자의 동의 내용과 조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책임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구술자의 검독과는 별도로 채록자에 의한 검토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구술사 연구 수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구술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술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까닭에 구술자와는 달리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는 채록연구자에 의해서 구술이 공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편 구술의 내용 가운데에 포함된 제3자에 관한 언급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3자에 관한 사항은 프라이버시 문제와 명예훼손 관련 사항도 모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구술자료에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한 발언을 한 구술자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의 소지를 안고 있는 녹취록이나 녹음자료, 녹화자료를 여과 없이 공중에게 제공하여 공개하는 채록자, 연구자, 구술사 연구기관이나 아카이브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프라이버시 침해나 명예훼손적인 진술을 포함한 출판물의 배포자나 작가의 경우에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구술사 연구기관이나 구술사아카이브는 자료의 공개에 앞서 해당 부분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관계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96 이호신, 앞의 논문. 180~186쪽.

- 다음은 구술자료의 생산과 수집의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인격권 보호와 관련되는 점검 사항의 리스트를 정리한 것이다.

〈표〉 구술자의 인격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검토 사항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자는 구술사프로그램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술에 참여하였는가? - 구술사 프로그램은 구술사의 가치관과 상반되는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는 구술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루어졌는가? - 사진·영상의 촬영은 구술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가? - 구술자는 구술작업이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인지하고 구술에 참여하였는가? - 구술자는 아무런 강요나 강제 없이 심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구술에 참여하였는가? - 구술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인터뷰가 이루어졌는가? - 구술자는 인터뷰의 결과물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구술작업에 참여하였는가?
구술의 표현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연애 경험, 성적 취향 등)의 명예에 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가? - 타인의 개인적인 사항(가족, 친지, 신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가? -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가? -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사실에 대한 진술이 공익적인 취지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 - 언급된 사실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가? - 이야기의 대상이 된 인물이 생존하고 있는가? - 이야기의 대상이 된 인물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가? -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공개에 앞서서 구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자료의 공개에 앞서서 구술자의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구술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구술자에게 보장하였는가? - 구술자가 익명으로 남아 있을 권리를 보장하였는가? - 구술자료 가운데 타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구술자의 권리를 보장하였는가? - 구술자의 요청사항(익명, 비공개, 조건부 공개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 구술사아카이브(연구기관)는 적절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가? - 구술자료를 다루는 사람(채록자, 아키비스트 등)들에게 구술자료의 인격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자의 이름이나 초상을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하였는가? - 구술자료의 활용은 구술자와 채록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루어졌는가? - 구술자료의 활용은 당초 구술이 가진 목적과 취지에 합당한 것인가?

※ 출처: 이호신, 2017. 「구술자료 수집과 활용의 윤리적, 법적 문제」.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Ⅱ: 관리와 활용』. 선인, 185~185쪽.

3) 사회적 기록작업 수행자의 필요역량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록작업에 참여하는 수행자(연구원, 채록자, 아키비스트, 연구기관, 저자, 출판사 등)는 피해예술인들의 구술을 수집, 관리,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유념할 점에 대한 별도교육이 필요하다.
 -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구술자료가 구술자가 동의한 내용대로 왜곡이나 변형 없이 생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구술자료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과 같은 인격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는 것은 사회적 기록작업의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필요역량 가운데 책임감과 관련된 사항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록작업의 목적과 취지, 중요성에 대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윤리적, 법적 문제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책임감 외에는 사회적 기록작업에 참여하는 수행자, 특히 기록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채록자에게 요구되는 필요역량으로는 신뢰성, 전문성, 상호협력성 등을 꼽을 수 있다.
- 사회적 기록작업에 참여하는 수행자는 구술자가 수행자의 믿고 자신의 내밀한 생각과 감정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까지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포 형성의 과정에서부터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 구술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상상력을 통해 구술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자 필요역량이다.
- 사회적 기록작업에 참여하는 수행자는 구술사 연구 방법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유사한 작업의 참여 경력 등 일정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구술자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적절한 질문하기를 통해 구술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발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구술면담 과정에서는 구술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되, 구술자의 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반응은 되도록 피하고 관찰자의 시선을 유지하는 태도 또한 요구된다. 구술자의 ‘말’을 듣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구술자의 말을 통해 드러나는 감정을 발견하고 이 역시 기록하여야 한다.
- 사회적 기록작업에 참여하는 수행자는 구술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를 대상화하지 않는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하며, 녹취, 검독, 편집과정에서 구술자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구술자의 말이 왜곡이나 변형 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구술사는 구술자와의 지속적 소통을 위한 협의의 글쓰기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구술자와 상호협력하는 태도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표〉 사회적 기록사업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필요역량

항 목	내 용
책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작업에 대한 사전 동의 및 동의 내용의 준수 - 구술자의 신변 보호 및 비밀 유지의 약속 준수 - 왜곡이나 변형 없이 구술자료를 생산하고 활용하기 -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등 인격권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해 이해와 검토
신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이해 - 피해예술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상상력 -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 - 구술자와의 라포 형성으로 신뢰성 구축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자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절하게 질문하기 - 구술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되, 관찰자의 시선 유지하기 - 구술자의 '말'을 듣고 기록하기 - 구술자의 말을 통해 드러나는 감정을 발견하고 기록하기
상호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예술인을 대상화하지 않는 언어에 대한 감수성 - 녹취, 검독, 편집 과정에서 구술자와의 지속적 소통 - 구술자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한 협의의 글쓰기

다. 사회적 기록작업의 절차와 추진과정

1) 사회적 기록작업의 절차

- 구술기록관리는 기획 단계, 실행(수집)단계, 정리 및 분류체계, 활용단계로 나눌 수 있다. 기획 단계에서는 입장 및 범위의 설정 등 구술기록관리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실행(수집)단계는 심층 면담 인터뷰를 진행한다. 정리 및 분류단계는 수집된 자료를 등록, 평가, 분류, 기술한다. 활용단계에서는 수집, 분류된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표〉 구술기록관리 단계별 프로세스

기획단계	입장 및 범위 설정 → 분석 → 설계 → 평가
실행(수집)단계	심층면담(인터뷰) 전 준비 → 면담 진행 → 면담 직후
정리 및 분류단계	등록, 평가, 분류, 기술 → 보존 및 매체변환 조치
활용단계	웹서비스 제공/도구서 작성·제공/간행물 발간/연구사업/교육 및 문화콘텐츠

※ 출처: 정혜경. 2014. 「구술기록 수집 방안: 달걀 바꾸니 만들기」.

『구술사 아카이브 길라잡이 I: 기획과 수집』, 선인, 99쪽.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록작업 역시 구술기록관리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각 단계별과 필요한 구성요소와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획 단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록작업은 국가가 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작업을 수행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하는지에 대한 목표와 입장을 명문화하고 기록작업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획으로부터 시작된다.
- 수집정책이란 “보존 기록관에서의 기록 평가·선별 절차의 토대로서, 수집을 통한 기록화의 목표 및 그에 따른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천명된 사실”이며, “기록관의 사명 및 목적, 수집의 범위 및 우선순위에 관한 분야별 설계, 수집 지침 및 제한 사항, 제적에 관한 설명 등이 포함될” 것이다.⁹⁷ 수집정책의 수립은 아카이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어떠한 유형의 기록을 수집할 것인지 등을 성문화하여 아카이브의 방향을 체계화하는 일이다. 수집정책을 체계적으로 성문화하는 작업은 일관성 있는 수집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곧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초 활동이다.⁹⁸
- 수집정책에 포함될 요소로는 ‘사명 기술’, ‘대상 이용자 정의’, ‘수집 범위와 대상’, ‘수집 절차’, ‘저작권 및 기타 결정사항’ 등이 있다.⁹⁹
 - ‘사명’은 수집정책의 목적을 기술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건 사회적 기록작업의 경우, 피해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구술자료를 수집하여 디지털화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카이브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명문화함으로써 수집정책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사명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 ‘대상 이용자 정의’는 아카이브의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사건 구술아카이브의 이용자들은 피해예술인, 학술연구자, 초·중·고 학생과 교사,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을 이용자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집 범위와 대상’은 기록물의 주제 및 형태에 관해 정의하고, 기록물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구술아카이브의 경우, 주제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피해예술인들의 목소리가 되고, 형태는 음성녹음 파일, 녹취문, (영상 녹화 파일) 등이다. 기록물이 생산된 일자, 장소, 채록자 등을 밝히는 것도 수집 범위에 포함된다.

⁹⁷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⁹⁸ 신동희·김유승. 2016.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4쪽.

⁹⁹ 신동희·김유승. 위의 논문. 16~20쪽 참조.

- ‘수집 절차’는 어떠한 자료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 수집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구술채록의 경우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는 내용의 구술채록 동의서를 반드시 제시하고 서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저작권’은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구술자료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채록자는 “구술자에게 구술채록을 통해 채집된 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를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난 연후에 저작물 활용에 관한 동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술채록이 완료되고 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연후에 구술자와 채록자가 함께 저작권의 양도 또는 저작물의 사용허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자료공개허가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구술자가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공개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술사 연구기관은 해당 자료를 밀봉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로 보존하거나, 비공개가 요청된 부분은 삭제한 후에 공개하여야 한다.”¹⁰⁰ 한편, ‘기타 결정사항’은 수집정책 및 선별의 의사 결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 ‘사명 기술’, ‘대상 이용자 정의’, ‘수집 범위와 대상’, ‘수집 절차’, ‘저작권 및 기타 결정사항’ 등을 정한 수집정책이 마련되면, 수집정책에 따라 블랙리스트 피해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수집한 구술자료의 보존·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 실행(수집) 단계

- 구술채록은 통상 현지조사·예비단계, 문제의식의 구체화, 현지조사, 녹취작업, 구술자료 독서 및 분석, 협의의 학술적 글쓰기, 추가조사와 보완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표〉 구술사 연구 단계별 흐름도

단계	항 목	내 용	비고
1	현지 조사 예비단계	학술적 글쓰기 내용과 형식의 구상, 문헌자료나 관련 정보 수집·분석, 조사(지역이나 인문)대상에 대한 사전답사 및 상건례	피드백 과정
2	문제의식의 구체화	연구계획서 설계, 조사내용, 구술조사 항목 구체화, 조사 규모와 범위, 예상조사 기간 설정, 조사비용과 조사비품 준비, 사전점검	
3	현지 조사	참여관찰, 구술진행, 현지 자료 수집, 문서 수집 및 정리, 연구일지 작성	
4	녹취작업	녹취, 검독, 편집, 구술자의 지속적 소통	
5	구술자료 독서 및 분석	구술자료 및 주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독서와 분석, 주제의 점검 및 명확화, 구술자와의 소통	

100 이호신, 앞의 논문, 206쪽.

6	협회의 학술적 글쓰기	글쓰기, 구술자와 지속적 소통	
7	추가조사와 보완	발표 및 구술자에게 결과물 보고	

※ 출처: 김귀옥, 2014. 『구술사연구: 방법과 실천』. 한울아카데미, 150쪽.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구술채록·수집 작업도 기본적으로는 구술사 연구의 단계별 흐름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다만,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구술대상자의 규모가 방대하고 기록작업의 목적이 학술적 자료 수집보다는 피해자 관점의 사회적 기억을 형성함으로써 피해예술인들의 회복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의 구체화’ 단계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업계획서에는 사회적 기록작업의 목적과 취지가 명문화되어야 한다.
 - 또한 사회적 기록작업의 구술자 규모가 추정되어야 하고, 조사범위를 정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완료된 신청사건을 우선순위로 하되, 장르, 사건의 규모, 지역, 블랙리스트 실행기관 등을 고려하여 구술자를 공개 모집·선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구술자 규모는 대략 300~500명 내외로 추산된다. 조사범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험을 현재 시점에서 재구성하고, 피해예술인으로서의 생각과 감정을 듣는 것이다.
 - 구술채록 기간도 산정되어야 한다. 구술채록 기간은 구술자 규모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원이 투입되어 구술채록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블랙리스트 피해예술인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작업은 기록작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3~5년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술채록 작업을 특정 연구기관에서 수행할지, 별도의 구술프로젝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지 판단해야 한다. 피해예술인의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특정 연구기관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구술채록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별도의 구술프로젝트단을 구성하되, 채록자로는 연구자 외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해가 높고, 구술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작가 등의 예술인들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작가가 아니어도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피해예술인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예술인의 이야기를 듣는 동료 면담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글쓰기의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춘 피해예술인이라면, 자문화기술지(自文化記述誌), 자기역사쓰기의 방법으로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 본 연구에서는 ‘(가칭)블랙리스트사회적기억을위한구술프로젝트단’의 구성을 제안한다. 구술자의 규모와 구술채록 기간을 고려할 때 구술프로젝트단은 책임연구자를 포함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하여 매년 1백 명 내외의 구술채록을 수집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방안으로 보인다.

- 사업비용은 구술자 규모와 수행자(연구자, 채록자 등) 규모, 구술채록 기간 등을 반영하여 추산해야 한다.
- 디지털 기술 및 장비의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디지털 영상 구술기록을 함께 수집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다. 피해예술인이 수락할 경우 자료의 “생산과 관리에 있어서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고, 무단 삭제 및 도용을 방지하며, 호환성 있는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 영상기록 작업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구술 촬영 과정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면담자와 촬영자는 나름의 역할이 있지만, 촬영은 촬영자와 면담자와의 다양한 소통과 조율 속에서 진행된다.¹⁰¹

〈표〉 구술 영상 생산 시 면담자와 촬영자의 역할

	면담자	촬영자
기획	- 구술면담 전반의 검토	
	- 사전 준비 및 구술자 예비 접촉	- 구술자 예비 접촉 및 촬영 환경 점검
면담 진행	- 구술자와 사전 대화 - 구술 취지 및 목적 재확인	- 배경 촬영 - 촬영 위치 선정 및 촬영 준비 - 장비 설치 및 점검, 조명 확인, 촬영 각도 확인
	- 본 면담 수행	- 촬영 수행 - 촬영 일지 메모 - 사진 촬영
	- 구술 산출물 정리·활용을 구술자에게 공지 - 추후 면담 일정 논의	- 보충 촬영 - 추후 면담이 있을 경우 촬영 위치, 장소 등 개선사항을 구술자에게 건의 - 기초 라벨링 - 장비 정리
정리 및 자료화	- 구술 산출물 정리	

※ 출처: 조용성. 2014. 「구술영상 기록만들기」, 『구술사 아카이브 길라잡이 I: 기획과 수집』, 선인, 177쪽.

101 조용성. 2014. 「구술영상 기록 만들기」,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 기획과 수집』, 선인, 177, 187쪽.

다) 자료의 정리 및 분류단계

- 권미현에 따르면, 구술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구술기록의 정리는 물리적·논리적 분류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물리적 정리의 첫 작업은 입수 당시 구술기록의 상태평가를 통해 선별된 매체변환과 디지털위터마킹 대상 구술기록을 다음 작업 프로세스로 넘기는 일이다. 매체 변환은 두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구술 아카이브의 관리 포맷과 다른 구술기록을 수집했을 때 관리 포맷에 맞는 매체로 변환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구술기록이라 할지라도 장기보존용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물리적 분류 단계에서 매체 변환 여부를 판단한 후 구술 아카이브 정보로 관리하고, 이 정보는 보존단계에서 매체 수록 작업하도록 지시하게 된다.¹⁰²

- 구술기록은 주제별 분류, 인물별 분류, 사건별 분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한편, 구술기록은 현재 및 미래의 이용자가 기록물을 찾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기술(description)되어야 한다. 구술기록 기술계획에는 구술기록의 규모와 유형, 현재 보존 상태, 기술의 수준(depth), 작업추진체계, 추진일정, 열람정책을 고려한 활용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상 구술기록 선정 시 기록물의 규모, 기록물의 정리상태, 활용도, 열람정책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각 구술기록을 기술계층 중 어느 단계까지 기술할지 결정해야 한다.

- 구술기록의 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는 기술규칙은 공통적인 요소는 표준을 따르되, 구술기록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요소를 추가하여 만들 수 있다. 국제기술표준(ISAD(G)), 국가기록원의 공공표준인 「영구기록물 관리 규칙(v2.0)」은 영구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기록물 관리기관의 기록물 기술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¹⁰³

라) 활용단계

- 구술자료의 활용은 크게 도구서와 자료집으로 나눌 수 있다. 도구서(출판물 및 웹 서비스 포함)는 초록집이나 목록집, 해제집, 소식지(또는 자료 통보, 뉴스레터) 등 연구자가 자료에 접근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하는 필수자료다. 한편, 자료집은 일반인을 위한 간행물과 전문연구자를 위한 출판물로 나눌 수 있는데 자료집 발간은 선택사항이다.

- 연구자가 접근하는 단계에 따라 살펴보면, 첫 단계는 기록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통한 자료 통보다. 두 번째 접근단계는 목록집(초록집)이다. 목록집에 담은 내용은 기술물에 대한 형태적 정보가 담긴 기술서식(메타데이터), 내용정보(상세목록)이므로 나뉘

¹⁰² 권미현. 2017. 「구술 아카이브(oral history archive) 구축방안: 경험과 기억의 블록 쌓기」.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Ⅱ: 관리와 활용』. 선인. 63쪽.

¹⁰³ 권미현. 앞의 논문. 72~74쪽.

는데 목록집에 들어갈 필수 내용은 <표>와 같다. 세 번째 단계는 해제집이다. 목록집이 기술 기록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해제집은 구술기록을 분석한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기록관리 전문기관은 반드시 해제집을 발간할 의무가 있다.

<표> 목록집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

시리즈	시리즈 제목	해당 시리즈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여 나타내어 식별과 검색이 용이하게 기재			
	개요	해당 시리즈에 대한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정보를 기재			
	유형 및 분류	해당 시리즈의 물리적인 규모와 기술 단위의 구체적인 매체를 기재(예: 6mmDV 20개, CD1개, 녹취문 50쪽)			
	생산자	해당 시리즈 생산의 주무부서를 기재			
	생산일자	해당 시리즈의 포괄 생산일자를 기재(예: 000년~000년)			
	대표사진	해당 시리즈의 대표 사진을 업로드			
파일	공동 영역	파일제목	해당 파일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여 나타내어 식별과 검색이 용이하게 기술함		
		기록물 유형	시청각/중분류(음성, 구술)		
		매체 유형	비디오 TAPE, 카세트 TAPE, CD, DVD		
		언어 유형	해당 구술자료에 주로 사용된 언어		
		입수 방법	생산		
		분량	정확한 매체의 수량을 기재		
	식별영역	생산 일자	지정(예: 0000년 00월 00일)		
	배경 영역	생산자 명	해당 파일의 구술자명 기재(예: 한글(한자))		
		행정/개인 연혁	해당 파일의 구술자 연혁 기재, 이름, 출생일, 출생지, 거주지 변천, 활동 등에 대한 간단한 정보 기재		
			면담 정보	면담자	면담자의 이름 기재
				소속	면담자의 소속 기재(과 단위)
				면담일자	면담일자 기재(예: 0000년 00월 00일)
				면담차수	면담 차수 기재(예: 1차)
	면담장소	면담장소 기재(예: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구술자의 자택)			
	열람과 이용조건	대출 정보	구술자에 의한 열람 제한에 따라 선택		
		공개 여부	구술자에 의한 공개 제한에 따라 선택		
		키워드	검색에 용이한 핵심 정보를 기재		
관련 자료	복본 유무 및 위치	복본의 유무를 선택하고, 있을 경우에 위치를 기재			
	관계 자료	관계자료 유무(선택), 관련 정보 기재			
상세목록		3~4쪽 정도			

* 출처: 정혜경, 2017, 「구술사 연구를 위한 활용방안: 도구서와 자료집 발간」,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Ⅱ: 관리와 활용』, 선인, 219~220쪽.

〈표〉 해제집 내용 예시

기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처 - 컬렉션 및 시리즈 - 구술기록 주제(또는 파일 명) - 등록번호 - 구술자 이름 - 면담자 이름 - 수집 일자 - 수집 장소 - 매체 및 분량 - 제한 정보(공개 여부)
물리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자 사진 - 주요 키워드: 5개 이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내용 ■ 자료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가치 - 연구활용 분야 - 연계 자료 - 참고 자료
상세목록	3~4쪽

※ 출처: 정혜경. 2017. 「구술사 연구를 위한 활용방안: 도구서와 자료집 발간」.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Ⅱ: 관리와 활용』. 선인. 221쪽.

- 한편, 구술기록집(자료집)의 발간은 선택사항이다. 발간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구술기록의 특성을 덜 훼손하면서 발간할 수 있는가가 고민이다. 구술기록의 녹취록을 ‘자료집’으로 발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구술자와 면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야 한다. 둘째, 구술기록의 훼손을 최소화한 텍스트 생산을 지향해야 한다. 셋째, 어떻게 기획되고 어떤 과정에서 생산되었는가 등 자료생산과정은 물론 텍스트화와 편집 과정 등 배경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¹⁰⁴
- 구술사의 활용 방안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록작업의 결과로 수집된 구술자료의 활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출판물이나 웹서비스의 형태로 기술서식, 목록집, 해제집은 필수적으로 발간되어야 하며, 자료집(일반 단행본 또는 구술 자료집)의 발간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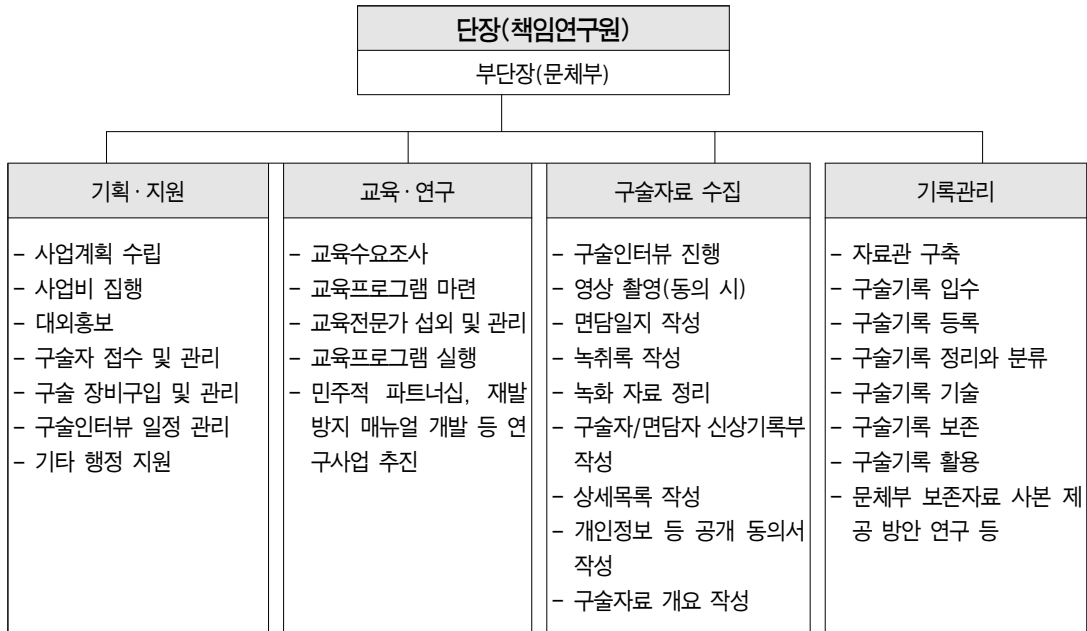
¹⁰⁴ 정혜경. 2017. 「구술사 연구를 위한 활용방안: 도구서와 자료집 발간」.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Ⅱ: 관리와 활용』. 선인. 216~226쪽 요약, 정리.

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 형성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발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적 기록작업의 추진과정

-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 이미 수년이 흘렀고 사건이 충분히 해결되지 못함에 따라 피해예술인들의 고통이 누적되고 가중되어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작업을 최대한 서둘러 시작할 필요가 있다.
- 하지만 피해예술인들의 규모가 방대하여 사회적 기록작업에 참여할 수행자를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 구술 전문가만이 아니라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높은 이해와 공감 능력을 갖춘 문화예술인들에 의한 ‘동료 구술인터뷰’는 수행자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 ‘(가칭) 블랙리스트사회적기억을위한구술프로젝트단’(이하 구술프로젝트단)을 구성할 때는 구술 전문가가 아닌 수행자들의 필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담팀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
- 구술프로젝트단은 책임연구원을 단장으로, 문체부 공무원을 부단장으로 배치하여 민관협력 구조로 구성한다. 기능별 부서로서는 기획·지원팀, 교육·연구팀, 구술자료수집팀, 기록관리팀으로 세분화하고 각기 다음과 같은 역할을 분담한다.

〈그림〉 (가칭) 블랙리스트사회적기억을위한구술프로젝트단 구성



- 기획·지원팀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대외홍보, 사업비의 집행 등 사업 전반을 집행하며, 타 부서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연구팀은 사회적 기록사업 수행자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
 - 구술자료 수집팀은 구술인터뷰를 준비, 실행,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기록관리팀은 수집된 구술기록의 정리, 분류, 보존하고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문체부 보존자료의 사본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 구술프로젝트단의 구성에 따른 블랙리스트 피해자 사회적 기록작업의 단계별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이 개시되는 1단계(사업 개시 1년)는 기획 단계로서, 사업의 입장 및 범위를 설정하는 수집정책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술사 연구자를 비롯하여 사업에 참여할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는 한편, 수행자로 참여할 문화예술인을 모집한다. 신규 수행자에 대해서는 필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한편, 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구술자 명단을 확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장하고 있는 진상조사 자료의 사본을 제공 받는 방안을 포함하여 자료관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구술자료의 2차적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등 사업 전반의 기획, 분석, 설계, 평가를 통해 사업이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2단계(사업 개시 2~3년)는 구술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실행하는 단계다. 수집정책에 따라 구술인터뷰를 실행·수집하고 그 성과를 매년 연차별 활동 보고서로 발간·배포한다.
 - 3단계(사업 개시 4년)는 구술기록의 정리 및 분류 단계로서, 수집된 자료를 등록·평가·분류·기술하고 관리 포맷에 맞는 매체로 전환한다. 3단계에서는 사회적 기록 작업의 성과 발표를 포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차별 활동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 4단계(사업 개시 5년)는 활용 단계로서, 웹서비스 및 도구서를 작성·제공하고, 2차적 활용방안에 따라 간행물로 발간하거나 교육 및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 구술프로젝트단의 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배포하는 한편,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그림〉 블랙리스트 사건 사회적 기록작업 단계별 추진

<p>기획단계 (사업 개시 1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기록 수집을 위한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자로 참여할 문화예술인 모집 - 신규 수행자 필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 구술자료 수집 예비단계: 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 - 구술자료의 2차적 활용 방안 수립 - 자료관 구축 방안 마련 및 문체부 소장 자료의 사본 제공 방안 수립 - 1년차 활동 보고서 발간·배포
<p>실행(수집)단계 (사업 개시 2~3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기록의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자 풀 유지 관리 - 구술인터뷰 전 준비 - 구술인터뷰 진행 - 구술인터뷰 자료 입수 - 연차별 활동 보고서 발간·배포
<p>정리 및 분류단계 (사업 개시 4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기록의 정리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인터뷰 자료 등록 - 구술인터뷰 자료 평가 - 구술인터뷰 자료 분류 - 구술인터뷰 자료의 2차적 활용 방안에 따른 자료의 가공 및 공개 - 구술자료 보존·활용 - 사회적 기록작업의 성과 발표를 포함한 공청회 개최 - 연차별 활동 보고서 발간·배포
<p>활용단계 (사업 개시 5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프로젝트단 활동 평가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프로젝트단 활동 평가 및 보고서 발간·배포 - 웹서비스 제공, 도구서 작성·제공 - 간행물 발간, 교육 및 문화콘텐츠로 가공·활용 - 학술대회 등을 통한 향후 과제 제시

5. 피해자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구성(적용)

가. 피해자의 사회적 기억 회복을 위한 방안

1) 피해자 심층 인터뷰 절차 및 방법론

구술자 기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자 기초 연구 - 사전 자료 조사 수집 및 분석 - 구술자 작품 및 관련 자료 수집 - 사전 질문지 작성 및 사전 제공
심층 인터뷰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 일정 조율 및 확정 ■ 음성녹음 혹은 영상채록 ■ 보완 자료 파악 및 수집
구술채록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의 초벌 채록 ■ 초벌채록을 토대로 운문 및 각주 작업 ■ 채록문을 구술자와 공유
구술채록문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술자 최종 서면 동의 획득 ■ 최종 교정된 아카이빙 원고 작성
심층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피해자가 말하는 블랙리스트 사건 ■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한 사회적 기억화 방안

2) 심층 인터뷰 질문지 내용

가) 공통내용

- 블랙리스트 사건 전반에 대한 인식
- 특정 분야 블랙리스트 피해에 대한 기억 및 경험
- 블랙리스트 사건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 대한 경험
- 피해자 본인이 말하는 피해 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위한 실천 방안

나) 심층 인터뷰 질문지 사례

○○○ 심층 인터뷰 질문지	
일정	○○○○년 ○월 ○시
장소	○○○
질문자	○○○
공동참여	○○○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인식

- 1) 한국영상자료원의 조직 운영 및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이 있었고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요?
- 2) 처음 피해 사실을 접했을 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 3) 스스로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임을 인식하고 타인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으신가요?

피해자의 관점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스스로 이야기하기

- 4) 당시의 사건에 대해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건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5)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로서 해당 사건을 되돌아보았을 때, 사후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가요?
- 6)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는 무엇인가요?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행과 피해 범위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별적으로 일어난 피해와 조직 내에서 다수에게 일어난 공통적인 피해로 나누어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 7) 물질적 피해와 심리적 내적 피해 상황(평판, 이후 활동 등)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블랙리스트 사건 이전과 이후

- 8) 블랙리스트 사건 이전과 이후 바뀐 것은 무엇인가요?
- 9) 예술가로서, 문화예술 활동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10)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혹은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발생한 피해는 무엇인가요?
- 11)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기구의 사과에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까?

피해 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위한 실천을 위하여

- 12)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3)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이 실행한다고 했을 때, 기본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4) 국가와 문화예술 기관, 그리고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어떻게 작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주세요.
- 15) 블랙리스트 사건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동료예술가, 시민, 가해자, 후세대?) 블랙리스트 사건이 어떤 형태로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6) 블랙리스트 사건을 사회적 기억으로 확장해서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3) 피해자 심층 인터뷰 대상자

분야	구술자	관련 사건	인터뷰 일정
영화계	모은영	사건번호 2018직영1[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실행사건]	2021년 2월 17일
영화계	원승환	①사건번호 2017영13[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사건] ②사건번호 2017영1명(영11, 영19병합)[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공관 상영 검열 및 지원 배제 사건]	2021년 2월 22일
공연예술계	손혜정	사건번호 2017공12[극단 마실(손혜정) 배제 사건]	2021년 3월 21일
문학계	김성규	사건번호 2017문32[김성규 등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부당 배제 사건]	①제1차 인터뷰: 2021년 2월 19일 ②제2차 인터뷰: 2021년 3월 15일
출판계	강수걸	사건번호 2017직출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의 블랙리스트 사건]	2021년 3월 3일
미술계	윤동희 한상훈	사건번호 2017시5[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	2021년 3월 2일

나.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모은영의 심층 인터뷰 분석

1) 개요

- 구술자: 모은영 프로그래머
 - 모은영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9년간 프로그래머로 근무하였고, 2016년 3월 극장운영팀 팀장

으로 인사 발령 후 2017년 1월 2일 퇴사하였다. 이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하고 있다.

○ 구술자가 관여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

- 사건번호 2018직영[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실행사건]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실행사건[사건번호 2018직영]은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으로서 한국영상자료원의 조직 운영 및 사업에서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다. 이와 관련해 1)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년 <박정희 정권기, 산업 근대화 프로젝트와 미디어 정치> 학술 심포지엄 취소, 2) 2014년 한국영상자료원의 이사추천과정에서 정관 개정을 통한 이사 추천 배제, 3) 2015-16년 포럼테지마주 프랑스 한국영화 특별전에서의 영화 및 영화인 배제, 4) 2016년 <시네마테크KOFA>가 주목한 2015 한국영화>에서 문제영화 검열 및 배제 등이 확인되었다.
- 모은영 프로그래머는 위의 사건들 중 3항과 4항에 직접 연관된 피해자로, 문제영화 검열 및 특정영화인 배제 지시를 거부한 이후로 부당한 인사 조치를 경험하고 한국영상자료원을 사퇴하였다.

○ 심층인터뷰 진행과 특기사항

- 2021년 2월 17일 두 시간에 걸쳐 구술자와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 인터뷰 전, 피해자는 사건을 상기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었으며 피해 이후 한국영상자료원의 공식적인 조치와 이후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며 이에 냉소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2) 피해자가 말하는 블랙리스트 사건

○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 모은영 프로그래머는 퇴사 1년 후 신문 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다고 구술했다. 자료원에서의 마지막 1년간 본인이 당한 사건과 변화들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거꾸로 유추”해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모은영 프로그래머는 오히려 ‘시원하다’는 심리적 해소감을 느꼈는데, 그 당시 “일을 잘못해서,” “새로 바뀐 일에 적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등등 “안 좋은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몇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정말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한다. 이렇게 때문에 “막상 그 리스트를 보는 순간 와,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중략) 그 당시는 정리가 됐었어요.”라고 구술했다.

모은영: 정확하게 인지한 것은 거의 1년 정도 뒤에 제가 그만두고 다른 영화제에서 일을 하고 나서입니다. 출장을 다녀와서인데요, 기사에 마지막 블랙리스트가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자료 원에서의 마지막 1년이, 내가 당했었던 혹은 겪었던 변화와 같은 것들의 1년의 일들이 이 일 때문이었구나라는 게 거꾸로 유추가 됐던 거지요. 좀 늦게.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일이 저 자신한테 작동됐다고 생각은 거의 못했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걸 리가” 같은 생각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냥 영화 상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거였다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했었던 일들이 기사를 보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제가 프로그램해 상영하던 영화들에서 어떤 특정 감독, 혹은 특정 영화들을 배제하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영화들에 대해 배제하는 것을 제가 거부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한 1년 정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거부했던 일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인지는 하고 있었지어요. 그렇지만 이게 블랙리스트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리스트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 거는 1년 뒤였습니다.

- 그러나 이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가 진행되던 당시 ○○○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이 다시 연락 하며 “승진을 시킨 거지 부당인사가 아니라고 얘기해달라 이런 식으로 문자가 계속” 왔다고 한다. 거기에 아예 답을 안 하자 ○○○ 원장은 언론 기자에게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말을 기자로부터 전해 듣고 다시금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모은영: 그러니까 체념과 혹은 분노와 이런 감정들이 왔다갔다하다가 그 당시에는 되게 체념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약간 마음을 넓게 가져야지라고 스스로 이렇게 최면을 걸면서 수양을 하는 단계여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약간 제가 말할 때 이렇게 약간 비꼬아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되게 냉소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냉소적인 단계에 오게 된 건 거 같은데... 그런데 그 뒤에 상처받기 싫어서 피했던 이 사람들이 또다시... 그러니까... 저에 대한 오해나 나쁜 평가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상하게 들려오고 있고 이 일이 그때로 끝나지 않았더라는 거를 겪게 됩니다.

○ 피해자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구성

- 2015-16년 ‘포럼 데 이마주’ 프랑스 한국영화 특별전에서의 영화 및 영화인 배제와 관련해, 모은영 프로그래머는 이 부분이 “크게 작동을 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당시 이 사업은 포럼데지마우 프랑스와 부산국제영화제가 공동진행하려던 사업이었으나 해외문화홍보원 소속의 주무관이 와서 “국가의 일을 그런 곳(부산국제영화제)에다 줄 수 없다”고 직접 표현했

던 것을 회상했다. 결국 자료원이 대신 이 사업을 공동진행하게 되면서 특정 영화(〈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와 영화인(봉준호 감독, 이송희일 감독)을 초청리스트에서 빼도록 한 것에 대해 모은영 프로그래머는 “우리가 이 영화를 상영하지 마란 말을 할 수 없다. 큰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후 한불사업을 주관하던 아르코로부터 상영료 등에 대한 예산승인이 계속 미뤄지면서 프랑스 쪽에서 항의메일을 왔고, 이 메일에 답하면서 문체부는 구술자가 일을 하지 않아 지체되고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한 후 일을 처리했고 이러한 사실 역시 차후 블랙리스트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앞서의 영화는 빠지고 이송희일 감독은 프랑스 쪽 예산으로 초청되었다.

모은영: [문화홍보원 측 관계자들이] 리스트를 쭉 보면서 “이 영화, 이 영화, 이 영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 감독들은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단 [저는] “이 리스트는 프랑스에서 뽑아온 건데 우리가 이 영화를 상영하지 마란 말을 할 수 없다, 이거는 큰 문제가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감독이 오라 그래서 오고 가라 그래서 가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초청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 못 하는 사람이다”라고 당시에는 순진하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선 “알았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몇개월동안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줬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저작권이나 상영료에 관한 예산을 받아서 통째로 프랑스 쪽에서 주면 거기서 다 해결을 하기로 한 거였는데 우리가 받아서 줘야 되는데 계속 승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걸 수정해라 저걸 수정해라”라면서 미루다가 몇 달 뒤에 저한테 메일이 와서 “다 해결됐습니다 선생님 다 해결됐어요. 저희가 다 했고” 그러면서 메일이 왔어요. 그런데, 메일 내용 중에 밑에 달린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내용은 다 지우고 딱 그냥 다 와서 해결됐다고 하는 거죠... “이건 공유 안 해드리는 게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서 공유하지 않아요”라는 그런 식의 메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 2016년 <시네마테크KOFA>가 주목한 2015 한국영화의 경우,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매해마다 그 해의 베스트 한국영화를 뽑아 상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정된 영화들 중에 <위로공단>과 <화장>을 상영하지 말라는 외압을 발생했다. 당시 구술자는 이미 상영프로그램이 배포된 상태에서 상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대했고 이 프로그램은 홍보 없이 작은 상영관으로 옮겨져 진행되었다.
- 그밖에도, 블랙리스트 사건이 밝혀지기 이전부터 구술자는 한국영상자료원과 독립영화제 프로그래머 활동을 하면서 특정 영화를 상영 금지하도록 하는 외압이나 리스트에 대한 감사를 자주 겪었다고 한다. 서울독립영화제 대상작인 <그림자들의 섬>이 서울독립영화제 앵콜상영

을 하는 프로그램에 오르자, 그 후 문체부는 매주 상영프로그램과 상세한 시놉스를 넣어 보고하도록 했다.

모은영: 네, <화장> 그리고 <위로공단>은 거기에 등장인물들이 박근혜에 대해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랬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 당연히 상영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우리가 <다이빙벨> 같은 일처럼 이미 공고가 난 영화의 경우랑 같기 때문에, 상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상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당시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이 문체부랑 어쨌든 통화를 하고 나서 “큰 관이 아니고 작은 관에서 상영을 하고 대신에 그 프로그램 자체는 홍보를 하지 말고, 전혀 하지 말고, 그냥 상영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영이 끝났고 그 뒤에 한 달도 안 되어서 자료원 내에 팀을 새로 만들어갖고 제가 인사이동을 당하게 된 거였어요. [저는 프로그래밍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인사이동이 되어 가서 가자마자 극장에 리모텔링을 해라, 커피를 사라, 왜 원두를 안 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 블랙리스트 사건의 이전과 이후의 기억과 경험

- 구술자는 자신이 겪은 피해인 부당한 인사이동과 그로 인해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대해 당시로서는 상영 외압 및 간섭한 사건들과 직접 연결시키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후 블랙리스트 사건이 공개되면서 상이한 일들 간에 연관성이 있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구술자는 처음에는 새로 취임한 ○○○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에게서 사적인 방식으로 유감과 사과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 후 시간이 지나자 이러한 태도가 바뀌었고 이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식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 구술자는 블랙리스트로 인한 본인의 피해를 주변에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은영: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때문에 약간 잊혀지는 부분이 있으면서 약간 왜곡되는 부분이 생길까 봐, 그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인터뷰하기 전에 주저되던 게] 다른 부분이 힘들 거나 두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이런 부분들은 특히 더 굉장히 정확한 기억에 있어야 공격을 덜 받거나 그 정당성을 얻게 되는 분위기잖아요, 분위기가 아니라... 피해자일수록 혹은 뭔가 자기의 피해를 증명할수록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저도 지나면서 사람인지라 이게 뭔가 왜곡이 되거나 헛갈리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같은 것도 있기

도 하고요. 그리고 피로감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으로의 피로감보다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해질까, 당연히 그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 피해자가 경험한 2차가해와 부수적 피해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과정에서 구술자는 큰 실망과 상처를 받았는데, 이는 함께 회의에 참석한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자신 혼자 일을 결정하거나 처리할 수 없는 조직의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책임을 한 개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한다.

모은영: 서독제와 사대강의 거나 이런 데 항상 제가 있긴 있었던 거잖아요, 담당자로.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확인을 했든, 아니면 담당 부장이었던 이분이, 담당 부장이던 아니면 관계된 누군가가 저한테 다 넘겼든 간에 말이죠. 왜냐면 같이 그때 거길 같이 분명히 갔는데, 해외문화홍보원에, 그 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거부하고 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나 혼자 내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막 해서 자긴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게 했고 저랑 같이 일을 했던, 같은 팀에 있었던 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자기는 어떤 외입”도 못 느꼈다고 말했다고 해요. 예전에 일본 영화 틀지 못하게 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그분한테 틀지 못하게 한 거였는데도 말이죠.

- 구술자가 퇴직을 한 상황에서 한국영상자료원 내에서 구술자에 대한 소문과 나쁜 평가를 전해듣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 한국영상자료원의 경우 직접적인 책임자들이 사퇴한 상태에서 남아 있는 몇몇 연루자들에 의해서 구술자의 인사이동과 퇴직이 개인의 무책임한 성향으로 설명하는 프레임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한국영상자료원 내부에서 구술자의 부당한 인사이동을 보며 “갑자기 배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걸 보고 좀 충격받았다”는 입장도 있었다고 모은영 프로그래머는 덧붙였다.

○ 피해자가 말하는 피해 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위한 실천 방안

-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구술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한 피해에 대해 한국영상자료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인정이 중요하다.** 구술자 역시 한국영상자료원 내부에서 이 사건을 바로 알아서 본인의 명예회복도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 필요하다고 더욱 느끼고 있었다.

모은영: ‘영자원에 좀 구체적으로는 사과는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 퇴직 당시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를 안 끝냈더니 그 뒤에

계속해서 저에 대한 평가, 이상한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뭘 잘못했다더라, 다른 직원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더라, 날 안 좋아하는 직원이 많았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한테, 조직이,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의 조직이 나한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 인사는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거를 사과받아야 됐었었구나”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 있어요.

- 또한, 구술자가 생각하는 큰 문제 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모은영: “[블랙리스트 자체] 자료원에 작동했다는 것을 잊고 싶은 것...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모은영: “그 아카이브 내에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카이브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물론 아카이빙 자체가 사실 완전한 객관성이라는 거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떤 다른 정치적인 색으로 해서 뒤틀리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없고 이거를 그냥 덮으려고만 한다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든 다른 조직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똑같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돌아보는 계기들이 있고 거기 정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자료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일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혹은 저 개인적인 일탈이나 제가 혼자 상상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 내부에서 조직원들이, 내부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제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다음에 정책, 정부나 정치적인 부분들이 압력이 오게 된다면 훨씬 더 쉽게 굴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한 사회적 기억화 방안

-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한 피해의 범위와 유형
 - 인터뷰 초반에 모은영 프로그래머는 자신이 다른 창작자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지원에서 배제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부수적이다, 사이드적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적으로 혹은 보다 더 큰 규모로 피해를 입은 감독들을 생각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피해를 공공연히 밝히지 않은 점도 있음을 말했다.
- 이중의 어려움을 인식할 필요

- 구술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에 책임이 있거나 연루되어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해자 본인의 기억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에 대해 우려와 두려움을 표현했다. 이는 2018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한 구술자의 참고인진술조서와 2021년 심층인터뷰 사이의 차이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이다. 진술조서의 내용은 간략하고 명확한 사실들을 전달하고 있다면, 3년이 지난 후 구술자는 디테일들을 기억하는데 있어서 다소 주저하는 인상이 있었다. 여기에는, 당시의 사건에 맥락과 이후의 경험들이 더해져서 생기는 차이도 크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구술자는 주변인들이 느낄지 모르는 ‘피로감’에 대해서도 표현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축소하고 지우게 되는 이유 중에는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와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협소해진다는 데 있다.

모은영: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때문에 약간 잊혀지는 부분이 있으면서 약간 왜곡되는 부분이 생길까 봐... 이게 다른 부분이 힘든, 두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이런 부분들은 특히 더 굉장히 정확한 기억에 있어야 공격을 덜 받거나 이게 정당성을 얻게 되는 분위기잖아요. **피해자일수록 혹은 뭔가 자기의 피해를 증명할수록 이게 정확해야 되는데 저도 지나면서 사람인지라 이게 뭔가 왜곡이 되거나 헛갈리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같은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로감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으로의 피로감보다는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해할까, 당연히 그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 심층 인터뷰 분석을 피해 사례의 특징과 해결 방안
 - ① 유사한 블랙리스트 사태나 내부적 검열 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공공 기관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과가 필요하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모은영 프로그래머는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한 애정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를 표현했다. 이는 구술자에게 자신의 피해를 이중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한데, 구술자는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해를 크게 문제삼기가 힘들었다는 말을 하면서도,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한국영상자료원의 본질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유사한 블랙리스트 사태이나 내부적인 검열 문화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 ② 블랙리스트의 실행 과정에서 아직 조사되지 않은 문제와 2차 가해, 부수적 피해에 대한 추가 조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2015-16년 포럼테지마주 프랑스 한국영화 특별전에서의 영화 및 영화인 배제 사건 당시, 프랑스와 문체부 사이에 오간 이메일에서 구술자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해 책임을 전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 ③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 구술과 기록작업은 공공 부문에서의 공식화된 개선노력과 함께 진행되어야만 한다.
- 이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피해자 자신의 사건 재구성과 구술 실천이 피해자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관문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잊혀졌거나 포기했던 문제들을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공적인 채널과 집단적인 작업을 통해 이야기하고 과정에서 구술자는 과거 사건을 진술하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문제들과 미래의 해결방안에 대해 뚜렷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회고를 통한 정리에 머물고 공공부문과 시민사회 모두의 실천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치유와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박현선: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구술면담을 하고 구술을 받고 녹취를 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이런 것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한 방법일 텐데요,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이 사건을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보고서로 만들어진 거 말고 당사자들이 직접 얘기하고 하는 가운데 새로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모은영: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니까, 구술이라고 하는 것의 힘이 있는 거니까. 저는 계속 어떤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다... 그걸 뭐라 그럴까, 이 두려움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지 않는 거죠. 그냥 이렇게 됐을 때 ‘어, 또야?’ 혹은 그냥 몽똥그려서 ‘그래, 블랙리스트? 나도, 뭐 나도 블랙리스트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가벼워지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개인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죠. 저도 얘기하면서 좀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저도 이 얘기를 함으로써, 오늘 이 자리가 있었으니까, 되게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더 크게, “다음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은영: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법률로도 알아볼까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은 다 개인적으로 다 하곤 있었어요. 그런데 실행을 옮기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런 게 좀 공식화된 게 있으면 역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다.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원승환의 심층 인터뷰 분석

1) 개요

○ 구술자: 원승환(영화인)

■ 영화계 블랙리스트는 특정한 영화인뿐만 아니라 특정 소재와 관련된 영화가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영화인 및 단체의 제작 지원을 막는 경우 이후 진상조사위 과정에서 선명하게 내용이 드러난다면, 특정 영화의 상영과 관련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 구술자인 원승환(현 인디스페이스 관장)은 인디스페이스, 한국독립영화협회,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 부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영화 상영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블랙리스트 작동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사례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였다.

○ 구술자가 관여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

① 사건번호 2017영13[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배제 사건]

② 사건번호 2017영1영(영11, 영19병합)[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전용관 상영 검열 및 지원 배제 사건]

■ 구술자가 소속되었던 인디스페이스는 문제시된 독립영화들(<자가당착>, <불안한 외출> 등)의 상영과 관련하여 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를 이용한 상영 방해, 전용관 지원 배제 등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이다.

○ 심층인터뷰 진행

■ 2021년 2월 22일 두 시간에 걸쳐 구술자와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 특기 사항

■ 블랙리스트 사건이 밝혀진 후 구술자는 현장경험과 각각의 사건마다의 대응노력, 그리고, 이후 밝혀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인식 등을 통해서 구술자는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등과 같이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피해자이자 목격자로서 구술자의 활동은 현장에서 직접 느낀 정치적 압력과 배제 실행을 기록하고 이를 사회적 기억으로 계속해서 공론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블랙리스트 사례와 관련한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 과 영화진흥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영화진흥위원회의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 현황과 과제> 토론회(2021년 10월 16일)에서 발표

②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주관하고 다양한 단체가 참여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시국선언 4주년 예술 현장 집담회 <#그런데 문화예술행정시스템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코로나19까

지)(2020년 11월 4일)에서 발표

- ③ 영화전문잡지 및 언론매체에 블랙리스트 관련 글을 실어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 『프레스시안』, 2020년 12월 11일

2) 피해자가 말하는 블랙리스트 사건

○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 영화계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균형화 전략>의 일환으로 실행된 영화계 특정 집단 및 인사의 배제. 지정위탁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전환했던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작성된 <문화균형화 전략> 문건은 “대중이 쉽게 접하고 무의식중에 좌파 메시지에 동조하게 만드는 좋은 수단인 영화를 통해 국민의식 좌경화 추진”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비판적인 영화를 통제할 것을 계획했다. 이 때부터 영화단체의 경우 조직적으로 성향을 관리하고 성향에 맞지 않는 단체를 정책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공모제도와 보조금 심사, 지원금 제도 등을 동원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2014년에, 국정원은 배제 키워드를 설정한 후 이와 연관된 영화들이 영화진흥위원회 지원대상에 올라오면 사전에 국정원이 검증하고 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술자는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블랙리스트의 피해 사실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원승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조사는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 백서에도 나오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블랙리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2008년 국정감사 이후부터 영화계에서...** 예를 들면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가 위탁받던 사업들의 위탁 사업자를 바꾸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실제로 강○○ 위원장이 취임하고 2009년 2월 쯤에 미디어트랑 인디스페이스 같은 사업들이 지정위탁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영화관을 공모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 미팅 같은 게 있었습니다. 흔히 이렇게 사업자 공모를 하는 건 형식적인 절차이고 다른 곳에 위탁을 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강○○ 위원장하고 독립영화진흥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논의를 한 사람이 절 찾아오기도 했는데, 자기가 내년에 독립영화진흥관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한독협은 독립영화진흥관 사업을 못 할테니 자기랑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 인디스페이스나 이런 사업들은 2009년 말까지밖에 못 하는 거고,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겼구나' 라고...** 그리고 이미 그때가 유인촌 장관이 들어서면서 각종 기관장들이 임기가 남았던 때인데,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거나 사퇴를 종용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던 때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 정권에서 영화인들이랑 친하게

지냈던 공무원들이 주요보직에서 밀려난다거나, 그때 좀 중요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새로운 정권에서는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는 소문으로 많이 들었죠. 그런 걸 그때부터 알았던 거고, 실제적으로 이 단체나 사람들을 쳐내려고 한다고 정확하게 느끼게 된 거는 [2009년] 4월인가 5월쯤에 감사원이 시민단체 특별감사를 집행하면서입니다. 문화예술 쪽이랑 환경 쪽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시민단체들 특별감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람들을 밀어내기 위해서 뭔가 꼬투리라도 하나 찾으면 그걸로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하기 위한 작업들을 이렇게 시행을 하는구나’ 라는 걸 실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 독립영화계 내에서의 자각과는 별도로, 당시에 미처 인식하지 못한 피해 사례나 아직까지 조사되지 못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구술자는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동성아트홀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원 배제된 피해상황¹⁰⁵에 대해 원승환과 피해관련인들(배사흠 전대표 포함)는 당시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동성아트홀의 경우, 한국독립영화협회나 독립영화전용관과 같이 항상 타겟이 되어왔던 극장이나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있는 예술영화전용관이 타겟이 되어 피해를 입으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동성아트홀이 문을 닫았을 때 독립영화계 관계자들과 당사자들은 블랙리스트와 싸운다기보다는 지역영화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한다. 이후 블랙리스트 사태와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과 관련된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동성아트홀의 지원배제가 블랙리스트 피해였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한다.

○ 피해자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구성

105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매년 150~200편의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상영하며 지역 영화문화의 거점 역할을 했던 동성아트홀은 2014년 8월,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다. 2017년 1월 동성아트홀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것은 단순히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인 지원 배제임이 밝혀졌다. 1월 31일 박영수 특별감사팀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을 통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영화나 이런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2017년 7월부터 시작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동성아트홀에 대한 지원 배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냈다. 2014년 3월 동성아트홀은 ‘독립다큐멘터리특별전’을 개최했는데 <천안함 프로젝트> 등 14편의 영화가 상영되었다. 이 사실이 대구지역의 한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 사실을 접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은 ‘좌파 성향의 영화를 상영하는 곳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데 대하여 질책하고 ‘페널티’를 주라고 지시했다. 2014년 4월 영화진흥위원회는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절차를 이미 진행하였는데, 동성아트홀과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했던 다수의 극장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청와대 문체비서관이 문체부 차관에게 동성아트홀 등에 대해 확실한 조치할 것을 재차 하달했고, 이는 다시 영화진흥위원회에 하달됐다. 결국 영화진흥위원회는 6월, 이미 진행된 예비심사 결과를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지원 사업의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하고 재공모를 결정했고, ‘시설 부문’의 배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심사체적을 개정했다. 시설 부문의 배점을 높인 것은 동성아트홀 등이 오래된 극장이라 시설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진행된 재공모에서 결국 동성아트홀은 탈락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1110215777318>)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었다. 원승환 관장의 경험으로는 기관 감사를 이전에 받은 적이 없고, 감사원이 민간단체를 직접 특별 감사한 전례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명박 정권 때부터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니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특별 감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의 특별 감사에서 당시 사업비에 인건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 인건비 처리를 위해 후원을 받거나 회계 과정에서 다르게 처리된 부분이 문제의 대상이 되었다. 구술자는 갑작스런 감사기준의 적용과 그 결과로 인한 책임을 떠안고 한국독립영화협회의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당시 받은 감사와 그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 구술자는 아래와 같이 기억한다.

원승환: 자기들의 블랙리스트가 정당한 것으로 포장하기 위한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서웠죠. 그리고 내가 독립영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이런 공포를 느꼈고, 또 그게 저한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국독립영화협회에 제가 사무국장을 그만두고 1~2년 있던 때였는데, 한국독립영화협회가 보조금 사업에 3년간 참여할 수 없다는 식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개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이 그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실제로 저는 2010년 이후에 독립영화 활동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 사건 당시 구술자는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국, 서울독립영화제 사무국, 독립영화 배급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감사원 감사 문제에 대처하고 논의했다고 한다. 주변의 협력이나 자문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 이유로 두 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주류 영화와는 달리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독립영화 진영에서 영화계 전반의 공감과 이해를 요청하기 힘들었다. 둘째, 이명박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의 원형적 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배제지원 피해에 대해 자문할 단위가 당시 전혀 없었다. 결국, 원승환은 변호사 지인의 자문을 받아 감사원 감사에 대응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대응과정에서 원승환은 자신이 겪은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구술했다.

원승환: 사실은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배제를 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그런 거지만 사실 독립영화를 하거나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도덕성이라던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결국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거는 혐의가 부도덕하다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우리가 이렇게 부당하게 이런 거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뭔가를 하거나 폭넓게 상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 블랙리스트 사건의 이전과 이후의 기억과 경험

- 피해의 범위에 관해 구술자는 경제적, 물질적 피해에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피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를 지적한다.

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이나 인디스페이스가 해왔던 사업 관련된 피해는 크게 본다면... 인디스페이스라고 알고 있지만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가 해왔던 수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공공상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공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지역의 상영인력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런 독립영화당 배급사들과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배급사들을 지원하고 해왔던 수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다 단절이 됐어요, 2010년부터. 그러니까 지금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유통배급지원센터를 만든 게 작년이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영화진흥정책 내에 독립영화 유통 관련된 사업들은 오히려 퇴보한 거고 독립영화인들에게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사업들이 없으면서...피해를 고스란히 다 받은 거지요. (중략) 독립영화를 진흥한다고 각 정권들이 다 말은 했지만 그 말이 실제로 사업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경험들이 꾸준히 이어져서 영향을 발휘하게끔 못했던 것도 중요한 피해인 거고, 사람들이 독립영화배급지원센터에 고용이 돼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건데 사업을 못하니까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들을 찾아야 되는 것도 피해인 것입니다. (중략) 미디어액트나 인디스페이스에서 일을 했던 선배나 친구들 중에는 이후에 병이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암 같은 게. 그런데 그게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게 블랙리스트 피해다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100프로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인 거고 그 일을 하면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게 피해인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독립영화 일을 하거나 협회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사람 간의 신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사람을 신뢰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가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문제가 다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다 내맡겨져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 피해자가 경험한 2차 가해와 부수적 피해

-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망각과 왜곡

원승환: “이미 다 끝난 일 같은데 왜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게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러면 피해자들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 잘 해결이 돼서 조용한가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화인들도 대부분 지금 인터뷰를 아마 해보면 “어, 블랙리스트 그거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위원장이 사과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 문제는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에 국한된 건,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고

사과했으면 뭔가 이렇게 끝난 걸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자신들이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가해를 한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실들을 지워요.** [...] 예를 들어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이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이 부침이 있었고 누군가를 지원배제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이 바뀌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2014년도에서 15년도로 사업이 바뀔 때는 블랙리스트 지원배제를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이 개편된 건데 지역영화전용관 설립을 위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사업개편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하고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3)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한 사회적 기억화 방안 제시

①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유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 구술자는 진상규명만으로는 피해가 모두 밝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다. 진상 규명에 입각한 블랙리스트의 경우, 가해사실의 규명, 가해자의 법적 책임, 윤리적, 공적 직무 위반에 대한 합당한 징계 등이 이루어지면서 책임자의 처벌 범위가 정해지겠지만, 피해 중심의 블랙리스트 사건 해결은 보다 복잡하고 폭넓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원 배제를 당한 경우, 피해자가 당한 피해를 단순히 지원사업에서 배제된 금액으로 환산해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로 인해서 영화관이 문을 닫거나 아예 삶의 터전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했다.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부수적이고 파생적인 피해까지 이해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접근과 재발을 막기 위한 사회적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원승환: 우리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는 중요한 순간이 내가 받았던 피해가 **사회 모두에게 공인되는 순간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단순히 내가 말하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고 실제적 진실이라는 걸 공인을 받고 내가 이렇게 피해자라는 거를 사회적으로 약속을, 확인을 받을 때, 그때가 명예회복의 시작인데 그런 명예를 회복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의 접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대한민국에? 나만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저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거제아트시네마¹⁰⁶도 블랙리스트 피해를 통해서 문을 닫았고 그 영화관을 운영하던 정 모 사장님도 피해자다. 그리고 이런 인식들을 사람들이 좀 함께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우리가 블랙리스트 사건을 다루면서 지금까지 계속 뭔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이 일어난 방식을 추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서 배제가 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그 피해의 빈자리들은 어떻게 채워졌고 그게 어떻게 문제없이 유지가 됐**

는지.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고 바라봐야 그래야 피해도 회복할 수 있고 정상적인 제도로 개혁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는 문화도 구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상규명에만 너무 몰두하고 그게 블랙리스트 문제를 청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접근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② 아직 밝혀지지 않은 블랙리스트 피해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 구술지는 대구의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의 경우 2015년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자격 기준이 갑자기 바뀌면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을 이야기했다. 오오극장의 경우, 민간인이 운영하는 독립영화전용관으로서 개관 전에 <다이빙벨>을 상영하기도 했는데, 영화진흥위원회의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이 민간이 운영하는 극장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극장만을 선정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원 배제되었다. 따라서, 정치적 배제의 목적으로 결정된 정책변화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에 대한 충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피해조사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설계와 조사 진행, 결과 분석이 절실하다.

③ 블랙리스트 조사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구술지는 오오극장의 경우가 심사규정의 갑작스런 변화로 배제된 만큼, 이와 같은 책략으로 수혜를 입은 사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지원배제의 이면에는 지원특혜의 경우들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원승환: 예를 들어서 미디어액트나 인디스페이스가 지원을 안 받건 못 받거나 무슨 영화제가 지원이 배제되거나 하면 그 돈을 누군가에게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돈을 받으면서 정책은 문제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 돈을 대신 받아가는 단체나 기관들이 있는 거죠. 일종의 화이트리스트가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조사는 오히려 없는 거고, 그 당시에 그런 활동들에 보조를 맞추면서 성장한 단체나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별반 문제의식을 아무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좌파영화를 타겟으로 삼고 지원배제를 했을 때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어갔던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요?

④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 회복과 사회적 기억화를 위한 별도의 단위가 필요하다.

- 영화계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등 다양한

106 거제아트시네마는 동성아트홀과 함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고 2014년에 문을 닫았다. 거제아트시네마의 경우, <다이빙벨>을 상영한 바 있으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진상조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기관에서 실행되었던 바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밝혀진 이후에 영화진흥위원회는 새로 부임한 오석근 위원장이 공식 사과를 표명했으며, 문체부의 징계권고에 따라서 이전 책임자를 징계하고 제도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영등위나 자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건조사가 되고 백서에 기관개선안 요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요구가 문체부에서 지시사항처럼 내려가진 않았다. 이 기관들에서는 새로 기관장들이 바뀌고 이사회가 바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도 없었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외적으로 보여준 바는 없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단위가 필요하다.

원승환: 블랙리스트 피해조사를 하는 별도의 기관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예술인 복지나 이런 데 넘겨가지고 “예술인들이 겪는 피해, 다른 피해사례와 함께 그냥 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효율성을 따지고 뭔가 기존의 방법에 그냥 응용을 해서 하는 거지만 이거는 생활고를 겪거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건인 거 같아요. 다른 사건이고 다른 결에 있는 거라면 그것에 맞게 피해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선뜻 피해를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면 페스티벌은 안 되겠지만 뭔가 이렇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행사라던가 뭐 계기를 만드는 작업들은 필요할 수 있는 거고, 그 작업들은 서울에서만 해선 안 되겠죠. 그런 피해는 전국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⑤ 피해자들의 연대모임이 필요하다.

원승환: 피해자들이 자기가 피해자라는 걸 자유롭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나부터도 좀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과 하고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단위[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위한 모임]를 만든 거고, 기관들을 좀 압박할 수 있으면 그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하나라도 진전될 수 있는 활동들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 사업 중의 하나로 영화진흥위원회의 블랙리스트 문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 그거를 토론회를 제안을 해가지고 2년 전에 한 차례 토론회를 했던 적이 있고 그 이후에, 그게 영화진흥위원회 문제를 다룬 거라면, 영등위나 자료원 같은 경우에는 백서를 같이 좀 읽고 어떤 사건이 조사가 됐는지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 기관에 좀 개선을 위해서 요구할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하고 실제로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자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면서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지고 이러면서 지금은 텔레그램 방 이런 데서 상황들이 생기면 상황들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랜 기

간이 흘렀지만 자기의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회복하고 싶은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들이 좀 이렇게 자기 피해를 말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기 피해를 말하고 이 사람들이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피해사례들이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피해유형이나 피해사례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피해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거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관의 사옥이나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블랙리스트 사건들을 전시하고 부끄러운 기억들을 잊지 않도록 하는 좀... 필요하고, 웹사이트나 이런 것도, 온라인 전시관 같은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온라인 웹사이트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숨어있던 피해자가 자기 피해를 얘기하고 싶은 날이 왔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⑥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프로그램과 법제 마련이 중요하다.

- 구술자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논리가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도 바뀌고 지원하는 풍토도 바뀐다고 하는 데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블랙리스트를 정상적인 정책 활동이라고 포장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정권의 교체나 보직의 순환과는 달리 지속가능한 방식의 재발방지 프로그램과 법제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원승환: 블랙리스트가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이 해야 될 복무규정하고도 맞지 않는 일이라서 이런 게 부당한 일이라는 걸 공무원 사회에서 좀 교육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이 될 필요가 있고, 저는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공무원 시험에도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공무원, 지방공무원급이나 교육... 국가공무원 법에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왜서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돼야 그게 징계로 이어지거나 하는 거잖아요. 현재의 복무규정 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그 문제... 그 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복무규정을 신설을 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법에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결국엔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를 수 있잖아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 재현될 수 있는 일이라면 애초에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에서 이런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부당한 업무지시가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저항한다는 사람은 별로 없대요. 윗사람과 상의하겠죠. 그런 건데 윗사람이 시키는. 결국에는 현재의 공무원 사회의 룰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라서 공무원 사회 내

에서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거고, 저는 또 중요한 사회적인 활동 중의 하나가, 우리가 보통 국가기관들, 공공기관들 보면 청렴서약을 하거나 무슨 인권경영서약 이런 걸 해요. 저는 그래서 **부당한 지원배제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기관들이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없는 일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그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고, 청렴서약 이런 거는 그저 하기 전까지는 안 청렴하게 산 건 아닌 거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외부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서약을 하는 것처럼 블랙리스트 문제를 실행했던 기관들이라면 자발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그런 선언들을 하고 계속 어떤 식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년 보고도 하고 이런 것도 좀... 그런 게 강제가 돼야 사실 재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관련 예산도 확보가 돼서 온라인 가이딩을 계속 잘 유지를 하고 전시나 이런 걸 잘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전시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1년 있다가 조용해지면 또 없애고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 거니까요. **영구히 하거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예를 들면 영화진흥위원회가 지금 사옥을 짓는데 사옥 1층에 블랙리스트 전시관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기억을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공간에 누구나 보게 하는 게 다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블랙리스트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되는 거고 웹사이트에도 그런 걸 아카이브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영화진흥위원회에 새로 취업하는 사람들도 그 부끄러운 과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학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사회적 기억이라는 사업은 저는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에서만 그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피해사실을 공유하고 그 감정을 나누고, 잘못됐던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공유하고 인식할 때 비로소 문화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 공연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손해정의 심층 인터뷰 분석

1) 개요

○ 극단 마실의 지원 배제

- 극단 마실(이경수, 손혜정 공동대표)은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젝트 지원 사업’에서 2차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되었으나, 문체부의 지시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극단 마실을 지원 배제했다. 이 사건은 표적 지원 배제이기에 특징적이다. 극단 마실은 2차 심

사 결과 최종 선정되었으나, 배제를 위해 새롭게 ‘중복 지원 대상 문화원 제외’라는 원칙을 만들어 극단 마실을 표적 지원 배제했다.

○ 구술자가 관여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

① 사건번호 2017공12극단 마실(손혜정) 배제 사건

■ 극단 마실은 공연계 블랙리스트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이는 ‘블랙리스트 백서’(제2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종합보고서 부록)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극단 마실 공동대표인 이경수의 이름이 2015년 6월 29일자로 문체부 예술정책과 오○○ 사무관이 작성한 ‘리스트-’16.2.1 현재’(23)쪽에 등재되어 있다. 또한 ‘리스트-’16.9.27 현재’에도 극단 마실 손혜정이 2016 커넥스-스페인/중국-참가자 선정 사업에서 국정원(K)의 검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 다른 블랙리스트인 국정원이 문체부에 선별 통보한 181명의 명단에도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가 포함되어 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2015년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해외문화원 현지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중 ‘해외문화원 순회 프로그램 공모’에서 극단 마실이 지원 배제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2016년 커넥션-스페인/중국-참가자 선정 사업에서 배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손혜정 대표가 배제된 것이 블랙리스트로 인한 결과인지는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지 못했다. 2015년 예술위가 주관한 국제교류 지원사업, 2017년 강남문화재단 상주단체 지원 사업에도 극단 마실이 배제되었으나, 블랙리스트로 인한 결과인지를 사실을 확인해 적시하지 못했다.

■ 구술자가 대표로 있는 극단 마실은 블랙리스트가 작동하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지원 사업에서 배제가 되었다. 특히, 2015년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해외문화원 순회 프로그램 공모’에서 마실의 손혜정 대표는 ‘최종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유선으로 받기까지 했으나, 심사 결과 발표가 한 달 이상 지연되었고, 그 이후 예산 배정 실수로 최종 선정 결과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체부의 배제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중복 지원 대상 문화원 제외’라는 이제까지 없는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 ‘뉴욕문화원’에 지원 취소를 알리는 조치를 취했다.

○ 구술자: 손혜정(극단 마실 대표)

■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극단 마실 손혜정 대표는 예술가로서의 자존감의 훼손이라는 심리적 피해, 신작 창작에 곤란을 겪은 예술적 고통, 그리고 해외 문화 교류 공연에서 커뮤니티 아트로 방향 전환하는 예술적 방향의 변화를 겪었다. 2015년 당시에는 뉴욕 문화원 순회공연을 위해 공연 영문 번역료, 공연 후속 프로그램 구성료, 공연후속프로그램 영문 번역료를 투자하였으나 최종 선정 취소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극단 마실은 가혹한

세무조사 등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

○ 심층인터뷰 진행

- 2021년 3월 21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1시간 30분에 걸쳐 줌(ZOOM)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술자와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손혜정 대표는 인터뷰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었다.

2) 피해자가 말하는 블랙리스트 사건

○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의 대응과 사후 진상조사 신청의 계기

- 극단 마실의 손혜정 대표는 ‘2015년 문화원-예술단체 매칭 신규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의 심사결과를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직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연락받았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직원이 직접 전화 연락을 해서 ‘무언가 느낌으로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2017년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그 때 가졌던 의구심이 ‘확실히 그렇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손혜정: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직원이 비밀리에 알려 주셔가지고, 개인전화로, 비밀리에 예경지원센터가 아니라, 집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알려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도,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다 포기하고, 사실 상관하기 싫었어요. 이 말이 귀찮다 이게 아니라, 가능성. 뭔가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제 나름대로 할 만큼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생겨서, 그 접수를 받을 때도,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그 직원 때문에 해야겠다는 용기를 냈었거든요.** 이거는 뭐 너무 답변이 길어질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직원이 어떻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했고, 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종결. 그러니까 뭐죠?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통보를 받고 나서도, 다시 한국 가서 예경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다고 예경에 요청을 해서, 나중에 그걸 공문으로 다시 또 두 번을 갔나? 하여튼 그러고도 안되어 가지고 공문까지 받았어요. 근데 받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 자진 그냥 그만둔 것으로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사람의 알 길이 없다. 연락처도 모른다. 근데 그건 사실 거짓말일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일을 했기 때문에, 신분이나 이런 게 기록이 남아져 있을 것이고, 연락처나 이런 걸 어떻게든.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한테 결국은 그 사람의 이름도, 연락처도 아무 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게 가장 저한테는. 그 분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 구술자가 경험한 정신적 피해

- 구술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3개월여 동안이나 (재)예술경영지원센터를 찾아다니며 문제제기를 하고, 잘못된 결과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다. 혼자 고민하기도 하고, 계속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만나고,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좌절감을 느꼈다고 한다. 구술자에게 무엇보다 큰 것은 ‘사람에 대해 불신’하게 된 것을 꼽았다. ‘세상에 대한 불한 불신’이 생기면서 예술활동에 변화가 생긴 것 같다는 고통을 토로했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피해로 인해 삶의 위기를 경험한 것의 여파가 컸다고 했다.

손혜정: 2019년을 지나면서 저를 보니까, 칼라사진과 흑백사진 느낌이에요. 되게 뭔가를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특히나 그때는 해외문화원 교류, 이걸 만났을 때. 저는 아 이제 정말 뭘 정말 해야겠다. 굉장히 좋아했던 거라서 더 그런가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장 큰 피해는, 꿈을 접게 되는, 굉장히 회색빛으로 바뀌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거의 시골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무대나, 이렇게 뭐랄까. **제일 문제는 신작을 못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신작을 못 만들었고, 그냥 일반 사람들. 큰 계기기도 하죠. 커뮤니티 아트로 더 돌아서긴 했어요. 돌아섰다고보다는 거기가, 그나마 제가 견딜 수 있겠다라고요. 그래서 시골로 가서, 곡성이라는 지역에, 제 고향에 가서.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그 갈 수 있는 데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가지가 같이 오긴 했어요. 꼭 이것만이 아니라, 같이 오긴 했고. 제가 또 신을 믿으니까. 왜 이 일이 나한테 있을까 이런 질문도 계속 하게 됐고, **제일 큰 피해는 그런 정신적인 피해예요.** (중략) **예술가는 특히나, 정신적인 게 엄청 중요한 영역인데 새로운 작품을 쓸 수 없게,** 물론 누구 때문, 다 이것 때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으므로

- 구술자는 교사로 재직할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결단으로 공연 예술가의 길을 선택했다. 주변에서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좋은 직업을 버리고 예술가의 길을 걸겠다고 했을 때, ‘아까운 직업’이라며 만류했다고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이라는 측면에서 구술자는 당당했었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예술가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하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사건 발생 초기에 (재)예술경영지원센터를 찾아다니면서 합리적 문제 해결을 기대했었다. 공공기관과 예술가의 수평적이지 않은 관계로 인해 큰 좌절감을 맛보았다고 토로했다. 구술자는 예술가로서 자존감의 훼손, 예술을 대하는 시선 등에서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사람에 대해 불신’하게 된 것을 꼽았다. ‘세상에 대한 불한 불신’이 생겼고, 예술활동에도 변화가 생긴 것 같다는 고통을 토로했다.

손혜정: 예경지원센터에서 저한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각자 거짓말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머리를 쓴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저한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을 취소합니다라고 조금 정성들여서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속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나 그냥 대충, 시간도 안 들이고 그냥 처음에는 숫자를 계산했는데, 뭐 숫자, 돈 계산이 틀렸다는 거예요. 처음에. 뭐 이런 식의 이유를 하다가, 또 계속 말하니까, 중복수혜 안 된다는 것은 나중에 자기들이 말을 만들어 낸 거예요. 처음부터 저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저한테 그냥 산수 계산, 수학도 아니죠. 산수 계산을 잘못했다. 그게 저한테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그런 말에 예 알겠습니다. 그랬군요. 라고 말할 사람처럼 아무 준비도 안하고 거짓말을 하구나. 예술가한테 적어도, 이 사업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제출하고, 기다리고 많은 사람들이 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모라는 방식에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거짓말을 치는데도, 사실 5분도 안 쓴 머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무 제 용어로 말해서? 그러니까 조금 뭔가 그럴듯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사건을, 이 선정을 못하게 됐다는지, 납득이 가게 하려면, 자기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나리오를. 그런데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그냥 숫자 계산을 잘못했어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건이, 이렇게 예술가들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뭔가 공모를 하는데, 이들(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은 거짓말 하나도 시간을 들이지 않구나. 우리를 이렇게 대하구나. 이게 되게 분노가 됐었고 처음에는,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엄청 백서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는 그 피해를 본 사람이지만, 또 그 피해 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면서 했잖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사실. 이런 과정이 저한테는 정말 회색 같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신뢰도 안 되고, 어 누군가한테 어떤 예술을 한다는, 내 목소리를 내는 것도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흠을 밟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 사람들의 연극 만들고 싶고 그래서 계속 시골로 내려가는 삶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 그 계기가 저한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 사건이, 사람에게 대한 불신 이게 가장 큰 피해인 것 같고요.

○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피해자가 경험한 2차 피해

- 구술자는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가해 기관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불편한 관계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고 호소했다. 사건이 발생하던 2015년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는 ‘다시 지원 안 받고 싶은가’ ‘앞으로 지원 사업 안 할거냐’ 등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예술가는 지원 신청자이고, 공공기관은 선정을 하는 조직이기에 개인은 위축되는 관계

가 형성된다.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가 이뤄진 이후에도 이 관계에는 변화가 없었다. 일종의 화이트리스트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지원을 해봐라’ 라든가, ‘지원서를 내보라’ 등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구술자는 이러한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혜정: 저한테. “다시 지원 안 받고 싶니? 너 앞으로 지원 사업 안 할 거야?” 라고 질문을 그때 했던 말이죠. 그때 제가 문제제기를 하러 갔을 때, 블랙리스트 사건이 밝혀지기 전예요. 그게 결국 현실화되고 있고, 이게 진상규명을 이런 식으로, 뭐 백서도 나오고, 뭐 진상위원회도 있었고 했지만, 중간단계에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문제가 이렇게 속 넘어갔잖아요. 결국은 피해가 저희들(예술가)한테 또 오는 거예요. 제 느낌은. 그리고. 그렇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2차 가해일 수 있죠. 그리고 저한테 제안했을 때 블랙리스트였으니까, 이제 화이트리스트처럼 다른 좋은 제안을 주셨거든요? 그건 사실은,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지원을 해봐라.” 우리가. 회복. 제가 공연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나는 피해를 받았으니,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못했던 공연을 다시 하게 한다던가, 그렇게 해봐라. 뭐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을 제가 막 적극적으로 제시를 했더니, 그러면 우선적으로 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어느 사업을 제안해보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원서를 내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못 내겠더라고요. 결국은 그럼 나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제가 손을 들어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제안을 하는지. 너한테 피해를 줬으니, 다시 혜택을 줄 테니까(지원서를) 내봐. 그러면 공모에서 너를 선정시켜줄게. 이거는 더 나쁜 짓인 것 같아요. 갈수록 이 피해자들을, 그러니까 이 말을 상황하게 하는 이유는, 기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조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니, 결국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싸우고, 또 싸우고, 피해보고, 또 피해 보는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게 되는 거죠.

- 구술자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기획자 공모와 관련해 사인을 하러 방문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 때 본부장이 ‘자기 방’에 들르라고 해서 방문했는데, 비공식적인 형태로 ‘그 때는 어쩔 수 없었다’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구술자는 비공식적으로 가볍게 이뤄진 사과가 오히려 피해 예술가에게는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술자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오히려 선례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예술가 지원 사업은 계속될 것이고, 블랙리스트 사건이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것이 되면, 결국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길이라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고 우려했다.

손혜정: 잠깐 자기 방에 들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 본부장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갔더니 이분이 아파, 제가 백서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하여튼 관여했던 본인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사건에 싸인을 하러 갔다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사과할 때도 그분(○○○)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기들 나름의 공식적인 사과는 ○○○ 대표가 하셨고, 저는 사과 못 받았다고 했고 1차.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도 없었고, 세 번째는 제가 싸인을 하러 갔는데, ○○○ 본부장님이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 하시더니, 그때는 뭐 힘들었고, 뭐 어쩔 수가 없었고, 미안, 미안하다는 것도 지나가는 투로 살짝? 그리고 제가 뭐지 이게?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 방을. 그리고는 싸인을 하고 나오는데, 아! 이거 지금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나한테 사과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라는 말,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도 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쓰고, 정말 옆집 아줌마가, 옆집 아줌마에게 두루뭉술하게, 명확한 용어도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때는 제가 뭐 어쩔 수 없었고, 그때는 뭐 이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했더니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이제 더 가관인 거예요. 이거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본인이 사과를 하는 건가? 이게?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건이 터졌을 때, 예술가를 대하는 그들의 변명과 이야기들도 전혀 에너지와 시간을 쓰지 않았고, 머릿도 쓰지 않았고 심지어, 사과하는 방식에서도, 어떻게 정중하게든, 뭐 이게 미안합니다를 무릎 꿇고 해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적어도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공식적으로 문건을 보낸다든가, 어느 시간에 같이 만나서 사과를 하고 싶다는지 그것도 아니고, 너무 불쾌합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뭐지?**

○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회복에 관한 방안

- 구술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식적인 사과가 재발 방지 노력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예술가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예술 창작 활동에서 위축되었던 경험은 큰 상처로 남아 있다. 그렇기에 예술가와 공공기관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하고, 예술가들이라는 존재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도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금과 같은 비공식적인 방식의 사과는 ‘변화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손혜정: 예술가들한테, 행해진 일이니까. 이거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어떤 식으로든, 다음에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예술가를 이들이, 기관에서 대변해주고, 보호해 줄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었다. 위에서 시켰으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블랙리스트)도 이렇게 하고 다 사건, 잘 넘어갔잖아. 더 용기를 실어 준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해결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공공연히 하게 이런 사건이 있으면, 위에서 시킨 거니까 하고 모든 기관들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무서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식화 한다는 것은, 그것을 적어도, 독일에서 범죄, 자기네들이 전쟁범죄 했던 기념관도 만들고 자료화 하고, 애들이 체험학습도 가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게 정신적인, 큰 문제를 예술가들한테, 크고 작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략) 이거는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술가들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혹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들이 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 구술자는 ‘칼로 찢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현대에서 정신적인 피해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지금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피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피해를 구체화할 목소리를 담아낼 자리나 창구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없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통해 사건이 기억되고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한 사회적 기록 및 피해회복 방안 제시

- ① 피해자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리도록 사회적 기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 구술자는 피해자들이 이야기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공식적으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일반인들도 피해자의 고통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예술가들이 정신적으로 난도질 당한 사건이기에, 피해자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 ②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
 - 블랙리스트 사건이 예술가를 대상으로 행해진 국가 범죄 행위이다. 블랙리스트 실행자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함으로써,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록이 명확한 정의의 실현과 연결된다. 구술자는 ‘위에서 시켰으니 어쩔 수 없었다’라는 태도로 공식적 사과를 회피하면, 예술인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 ③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
- 구술자는 블랙리스트 실행자들이 공공 지원 기관에서 처벌받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피해 예술인은 가해자와 계속 대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피해의 기억이 큰 고통을 다가온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블랙리스트 실행자들이 예술인 지원 기관에 계속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특정 사업에 지원해봐라’, ‘이렇게 지원해라’ 등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더 큰 상처를 안기고 있다고 했다. 선의를 가장한 2차 가해 이뤄지고 있기에,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처벌이 명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④ 예술가와 공공 지원 기관의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 구술자는 예술가 지원 심의 시스템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예술가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예술가들이 공공기관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있는 절차가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술가와 지원 기관이 동등할 수 있는 구조 형성을 강조했다. 예술 지원 기관과 예술가의 관계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동등한 구조로 바뀌기를 희망했다.

마. 문학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김성규의 심층 인터뷰 분석

1) 개요

- 구술자: 김성규 (시인)
 - 김성규 시인은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한 ‘2015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 창작 지원 사업’(이하 ‘주목할만한 작가상’)에서 블랙리스트로 인해 부당하게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지원 배제 사유는 2014년 6월 2일 발표한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754명)이다.
 - 김성규 시인은 문체부가 작성한 ‘리스트-2014/2015년도분(654명) 확정’ 중 ‘2015년 연중 사업 관리 리스트-262명’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르코 주목할만한 작가상’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김성규 등 2015 주목할 만한 작가상 부당배제 사건’에서 김성규 시인이 “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신청자 부당 지원배제 명세를 종합하면, 신청인 김성규의 경우 위 기준에서 ‘① 최근 2년간(2014-2015)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작가와 주요 문학상 수상자’에 해당하여 부당하게 지원배제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 김성규 시인이 부당배제된 ‘2015 주목할만한 작가상’은 ‘2015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후속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이 사업은 아르코문학창작기금 등에서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서 받

생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배제지시를 수월하게 이행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구체적으로 ‘추천 위원 및 예비심사 제도’를 만들어 이 사업의 후보 작가군을 아르코문학창작기금 탈락자, 주요 문학상 수상자 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

- 김성규 시인이 참여한 2014년 6월 2일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754명)은 문학계의 주요 작가들이 참여한 성명서로, 문학계에서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 구술자가 관여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

- 사건번호 2017문32|김성규 등 ‘2015 주목할만한작가상’ 부당배제 사건]
- 구술자가 부당 배제된 ‘2015 주목할만한 작가상’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작가 중 현재 까지의 성과가 뛰어나고 앞으로의 문학적 성취에 지원이 필요한 우수 작가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시, 소설, 아동·청소년문학에서 선정하여, 총 예산 300백만 원을 들여 20인에게 15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 2차에 걸친 심층인터뷰 진행

- ① 제1차 인터뷰는 2021년 2월 19일(금)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카페 ‘더빈마켓’(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21-1 제일빌딩 1층)에서 진행했다.
- ② 제2차 인터뷰는 2021년 3월 15일(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카페 ‘더빈마켓’(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21-1 제일빌딩 1층)에서 진행했다.

○ 특기 사항

- 김성규 시인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학에 대한 허무감과 주변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자책하며 괴로워했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동료들에게 사과 전화를 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선배작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부당 배제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도 그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 김성규 시인은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754명)에 서명자 참여를 후배 문인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 후배 문인들도 본인으로 인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김성규 시인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시인으로서의 활동에 타격을 받아 주변인들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 서명을 해달라거나 시국선언 등에 참여하자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과 다양한 이유 등으로 출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출판사 ‘걷는 사람’을 설립하였다.

2) 피해자가 말하는 블랙리스트 사건

- 블랙리스트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계기

- 김성규 시인은 2015년 즈음에 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문인 사이에 퍼져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2015 주목할만한 작가상’에 신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작품으로 인정받고 싶어서’였다고 했다. 선정 결과발표가 있고 나서, 특정 문학적 경향의 문인들 위주로 심사위원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때, 블랙리스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의구심을 가졌다고 했다. 처음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인한 것은 <한국일보> (2016.10.12.) 보도를 통해서였다고 했다.

김성규: 심사결과 발표 같은 것들을 보면서, 심사위원 명단이나 선정자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데, 누군가가, 문인들이 연락을 해 와서 블랙리스트 명단에 너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보니까 언론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한국일보 보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에 서명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짝 올라와 있다고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제 이름도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월호 집회 등에 여러 번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제 이름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왔을 때 그렇게 놀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 구술자의 피해와 이후 경험한 두려움, 피해에 대한 우려
 - 구술자가 부당 배제된 ‘2015 주목할만한 작가상’은 우수 작가 20인에게 1천5백만 원을 지원 하는 사업이었다. 창작 지원도 지원이지만, 선정 자체가 문학적 성취가 뛰어난 ‘우수작가’로 인정받는 것이기에 영광이기에 지원했다고 했다. 구술자는 선정 배제에 따른 금전적 피해보다는 사찰, 감시가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심리적 위축이 더 문제라고 했다. 또한, 문인들에게 사회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발휘한다고도 했다.

김성규: 사실, 1,500만원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1,500만원은 노동을 해서 벌면 되지만, 뭐냐면 내가 이런 발언을 하면 내가 피해를 입는구나, 감시당하는구나 이런 두려움. 이것이 개인의 이야기고, 동시에 제가 느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에게 “야 그거 하면 안 돼. 위험해 그런 발언 하지 마.”라는 말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 자체에 대해서 국가건 뭐건 우리를 이렇게 옥죄고 있으니, 꼼짝하지 말라고. 아무래도 조카들, 후배들한테도 자꾸 권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피해자인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유하게 되는 것 같고, 이것이 과거의 독재정권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7~80년대 독재정권에서나 하던 일을 2010년대에 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군부쿠테타로 사람들 가두고, 인터넷 끊고 이런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 상황과 과연 다른가? 조금만 잘못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유사시에 이것이, 혼란의 상황이 오면 이것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이용되고, 그러면 그 때 지금의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더 큰 피해, 더 큰 공포와 화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게 피해인 것 같아요.

- 문학인 블랙리스트 명단은 2014년 6월 2일에 발표한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서명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이 시국선언에는 젊은 문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구술자는 세월호로 숨진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동료 젊은 작가들에게 서명 권유를 많이 했다고 한다. 평소에는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기를 꺼려하거나, 내성적인 동료 문인들도 다수 서명에 참여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금 신청 등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구술자는 동료 작가들에게 너무 미안했다고 밝혔다. 마치 자신이 피해를 끼친 것 같아 활동에서도 움츠러들게 되었다고도 했다. 동료 작가들 중 일부는 공무원이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죄책감이 생긴다고도 했다.

김성규: 제가 블랙리스트,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서명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동료들한테. 근데 저보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내성적이고 더, 그런 분들이라 서명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근데 이게 무슨, 세월호, 아이들도 바다에서 몇 백 명이 죽었는데 그걸 서명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자고 했는데, 그 하자고 한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자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됐으니 너무 미안한 거죠. 제가. 그 분들이 뭐 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 배제되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다시 그런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또 그렇게 피해를 끼쳐서 그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올라가면, 내가 그 사람들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닌데. 움츠러들게 되는 것 같아요. (중략) 서명한 분들 중에 일반 문인으로 살아가고 이러면 괜찮은데, 직장생활 같은 거 할 때, 그것이 직장생활에서,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이라든지, 대기업, 기관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신문에 이름이 나오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잖아요. 동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고, 다른 걸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아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죄책감 같은 것들이 생기고.

○ 2차 피해와 ‘피해의 현재성’에 대하여

- 구술자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했었고, 그 명단이 공개될 때 충격을 받았다. 구술자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는 ‘피해의 현재성’이다. 블랙리스트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되었고, 검색만하면 언

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다. 블랙리스트 명단은 한국사회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든 이 명단이 다시 사용될 수 있고, 작가들의 성향 판단의 근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김성규: 너무 광범위하게 블랙리스트 명단이 나와서, 평소에 그렇게 진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분들은 자기들도 블랙리스트라고 하니가 황당해 했고, 그리고 좀, **저도 그렇지만 많은 작가들이 자기가 이런 것 때문에 뭐가 계속 배제되거나 일상이 감시되지 않았는지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러다가, 어떤, 예를 들어, 문인들은 가난하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나 강연회 등 이런 것이 다 들어오다가 취소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 그런 걱정도 있었고요. 그 때는, 뭐 세월호 이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명도 하긴 했지만, 다음에는 이런 걸 조금, 앞으로는 모른 척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은, 그리고 이 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은 당연하고, 언론에 밝혀진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이 명단이 언론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니까 누구든 검색만하면 이 사람 블랙리스트였다, 아니다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리스트가 뭐 완전 보수주의 이런 분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생활을 할 때 검색해보지 않을까.** 이런 것. 하다못해 강연회를 가도 그 안에는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작가 선정할 때 이 사람 뽑자, 저 사람 뽑자 할 때, 반대쪽 생각을 가진 분이 배제할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 구술자는 문인들의 경우 블랙리스트 명단이 광범위하기에 일상 속에서 낙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한 문인의 경우, 동료들이 “너도 블랙리스트였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이 하는 문학이 ‘공개적으로 노출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는 ‘낙인 효과’ 등으로 현재 진행형의 피해가 될 수 있다. 구술자는 블랙리스트 피해가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기에 미래에도 5년 주기로 피해조사를 하는 것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40대니까, 40대 중반인데, 20대에 등단한 작가들이 그 때, 갓 등단하고 활동한 작가들이 블랙리스트에, 서명을 했고, 많은 작가들이 서명을 했지만, 그것이 20대 작가들이, 뭐 연세 드신 분들이야 계속 그 성향대로 살아가는 건데, 앞으로 이 후배들의 활동에 지장이 있고, **사회적으로 낙인 효과가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있어요. 늘.** 저는 또, 어떤 심리적인 문제는 겉으로 확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뭐 돈이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것은 확 드러나지만 심리적인 것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냐는, 시간을**

두고 점점 사회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했다면 5년 후에 다시 해본다든지, 이런 방식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문학적 경향의 변화

- 구술자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으면서 문학에 대한 생각, 시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시를 쓸 수가 없어, 책 만드는 출판 일에 몰두하기도 했고, 미학적 관점의 변화도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써 왔던 시는 ‘어떤 재료를 변형해서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시의 언어를 통해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고 했다. 이러한 미학적 태도의 변화는 예술가에게는 ‘미학적 생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김성규: 블랙리스트 이후에 예술가들이 어떻게 시를 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문학 자체에 대한 어떤, 문학 자체에 대한 허무주의도 있죠. 문학 자체에 대한 허무주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책을 만드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글을 안 쓰니까. 다른 어떤 문학 욕망이 책을 만드는 걸로 갔다는 생각도 들고. (중략) 이걸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한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풀어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게 많이 들고, 시 자체로는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줄.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재료를 변형해서 보여주는 것이 예술인데. 지금은 재료를 변형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 너무 언어를 수사학적으로 만들지 않고, 언어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감정을 다양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일단 그런 생각이, 그게 제 시에 대한 생각이고, 그게 더 진정성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 구술자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세월호 사건, 그리고 나이 들면서 겪게 되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시의 언어가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구술자는 이제까지는 미학적 관점에서 시적 완성도가 자신이 만족해야만 발표했다면, 이제는 독자들, 일반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대변해주는 작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고 했다. 일반 사람들, 책을 읽는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김성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게 또 생기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이 때문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뭐 블랙리스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세월호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의 충격이기도 한데. 네. 블랙리스트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것도 한 두 명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그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지원이나 배제의 대상이 됐다는 것.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큰. 이 사람들이 국가에 대항해서 뭐 충을 든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서명했다는 이유 하나로, 국가가 관리대상으로 인간을 삼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중략) 생각해보니까 이 블랙리스트와 세월호 이런 것을 거치면서 제 언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가 예전에 제가 시를 쓸 때는, 제 작품의 관점을 저 자신에 뒀던 것 같아요. 제가 만족할 만한 시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이걸(블랙리스트, 세월호) 거치다 보니까 저도 만족해야 되지만, 사람들도, 문학작품을 읽는 사람들도, 독자들도, 같이 이제 함께 호흡해야 된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시를 이해하고, 그들의, 저 뿐만 아니라, 제 책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대변해줄 수 있는, 대변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문학작품 안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허무주의적으로 작품을, 뭐 시, 소설 문학작품 써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시를 쓰면 이제 나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반 사람들 진짜 잘 세상에 대해서 모르고 피해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써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3)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한 사회적 기록 및 피해회복 방안 제시

- ① 블랙리스트 가해자의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 구술자는 블랙리스트 피해 회복 방안과 관련해 가해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이 가장 실질적인 재발방지 노력이라는 것이다. 이후 지속적인 재발 방지노력으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교육, 예술 관련 공공기관 근무자의 서약을 문서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성규: **그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 당사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그 다음에 자기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에 문체부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예를 들어 공무원에 처음 임용이 됐든지, 아니면 발령을 받았든지 그러면, 교육을 이수한 후에야 업무에 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예술가들, 예술가들 같은 경우는 보면 지원금 받으면, 뭐 저작권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청**

하게 한다든가, 그래야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성폭력 교육을 받고 문서로써 싸인을 해야 뭐 이렇게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싸인을 한 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개인이나 국가에서 부당하게 예술가들을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문서로써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동의한다는 싸인을 한 후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문서화 된 작업이, 거기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②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실체화된 기억 조형물 등이 필요하다.

- 구술자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기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안이나 외곽에 블랙리스트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창작공간 운영은 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5년 주기로 블랙리스트를 기억하는 행사를 공간안에서 진행하는 것도 제안했다. 창작공간과 블랙리스트 조형물은 50년, 100년이 지나도 ‘한 시기에 예술가들이 탄압을 받았던 야만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갖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소녀상’이 갖는 의미처럼 그런 유형적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학창작 공간을 조성하여 조형을 세우고, 연극 공연을 하고, 창작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김성규: 문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 안이나 건물 외곽에 블랙리스트 조형물을 설치하고 창작공간 운영은 문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블랙리스트의 피해를 받은 문인들이 다수 포함된 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창작 공간을 운영하고 해마다, 혹은 5년 주기로 블랙리스트를 기억하는 행사를 공간 안에서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유형의 형상을, 무형이 아니라. 그냥 문서로 된 것만이 아니라. 조그마한 조형물을(이라도) 만들다든지. 조형물을 만들다든지 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면, 어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었구나 과거에. 수십년이 지나도, 뭐 한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어 우리 역사의 어느 한 시기에 예술가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관리하려고 했던 시기가, 야만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없이 이후 세대에게 이것을 상기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거에, 위안부 문제에 비할 바에는 아니지만, 위안부 문제는 엄청난 일이지만, 그것을 소녀상이라는 조형물을 만들으로써 우리는 어떻게보면 그것을 만들기 이전과 이후는,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녀상 만든 이후부터,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떤 조형물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문체부 앞에다 만들든지, 아니면 블랙리스트에 대한 것을, 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너무 크지 않더라도 예술가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안이나, 그 앞에다가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문학 같은 경우는, 연극이나 뭐 이런 분들은 공연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극장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술, 문학 같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문인들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모든 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공부하고 글 쓸 수 있는 공간 만드는 것도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도서관, 창작, 도서관 겸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마당 같은데다가 조형물 같은 걸 하나를 세워두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거기도 한 번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 ③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주기적인 추적 조사를 통해 예술가가 겪은 피해의 심각성을 기억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
- 구술자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5년, 10년 주기를 블랙리스트 피해자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5년, 10주기로 진행되는 피해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이 예술세계에 미친 영향을 광범위하게 조사해야 그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조금 계속 있어야 되지 않나. 5년 후에 1번 하고, 10년 후에 1번 하고, 5년 단위로 한다든지. 정례화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5년마다 뭐 정례화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이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예를 들어 대상자들이 있다면, 5년 후, 10년 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추적조사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이후에 뭐 블랙리스트 한, 요즘에 뭐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구글폼 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블랙리스트 이후에 뭐 생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런 거를 설문조사 리스트를 만들어서 5년에 1번씩이라든지, 3년에 1번씩이라든지 그래서 추적조사 하는 게(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바. 출판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강수걸의 심층 인터뷰 분석

1) 개요

- 구술자: 강수걸 (출판사 대표)
 - 강수걸은 산지니출판사 대표로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 주관한 2015년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이하 세종도서 사업)에서 도서 1종(최영철, 『금정산을 보냈다』, 2014)이 부당 배제되는 피해를 겪었다.
- 구술자가 관여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
 - 사건번호 2017직출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의 블랙리스트 사건]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의 블랙리스트 사건(사건번호 2017직출3)은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사했다. 직권조사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2017고합102” 사건으로 김기춘 외 3인 1심 형사판결을 통해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이 확인되었으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국정원 등의 지시로 특정 출판사, 작가, 독서단체를 임의로 배제한 추가 정황을 확인하였고, 문체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가 2017.10.24. ‘출판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요청’ 공문을 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다.
 -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출판진흥원은 세종도서 사업, 찾아가는 중국도서진, 초록샘플 지원 사업, 우수출판콘텐츠 사업 등에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¹⁰⁷
- 심층 인터뷰 진행
 - 강수걸의 인터뷰는 2021년 3월 3일, 부산에 위치한 산지니출판사에서 진행되었다.
 - 구술자는 자신이 겪은 출판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그로 인한 피해, 사건 이후의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2) 피해자가 말하는 블랙리스트 사건

-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 구술자는 먼저, 출판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한 배경으로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꼽았다. 그는 “보수신문의 기자들조차도 이미 정권은 끝났다고 느끼는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무리한 일들을 출판 쪽에 혹은 다른 영역에 한 것이 아닌가”라고

¹⁰⁷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4 문학출판』. 374~375쪽.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 구술자는 박근혜 정부가 왜 블랙리스트라는 ‘무리한 일’을 벌였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체부와 산하기관들에 의한 블랙리스트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실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이 “박근혜 정부 때 한 것”으로 선긋기가 되고, 이대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진상조사도 하고, 장관이 사과도 했지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사람들 누구도 사과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점 때문이다.
- 구술자는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블랙리스트는 다른 형태로 재발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대한민국 정부가 한 거고, 그 공무원들이 한 거고, 그 산하기관들이 한 것이다. 구분되는 게 아닌데, 박근혜 정부 때 한 것으로 하면서 사실은 반성과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럼 언제든 또 다른 유형으로 재발될 수 있고,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강수길: 세월호 사건 직후 지역 언론사들하고 같이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기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는 끝난 것 같다. 2년 차밖에 안 되는 정권이 이미 끝났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국민 여론이 싸늘하게 식었고, 그걸 지우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블랙리스트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다. 이건 뭐 끝까지 알 순 없지만, 보수신문의 기자들조차도 이미 정권은 끝났다고 느끼는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계속 무리한 일들을 출판 쪽에 혹은 다른 영역에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제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그 일을 다 했잖아요? 그 일을 (문체부와 산하기관) 사람들이 했는데, 누구도 반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조사는 했어요. 도종환 장관이 대표해서 사과하고 했지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했던 사람들 누구도 사과하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일은 했어,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분명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박근혜 정부 때 한 것으로 자꾸 선긋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든 문재인 정부든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고 그 공무원들이 한 것이고 그 산하기관들이 한 거거든요. 구분되는 게 아닌데, 박근혜 정부 때 한 것으로 하고 사실은 반성과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럼 언제든 또 다른 유형으로 재발될 수 있는,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들어요.

○ 피해자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구성

- 강수결은 최영철 시인의 『금정산을 보냈다』가 2015년 세종도서 사업에서 탈락했을 “의아하다”라고 느끼면서도 “세월호 부분이 조금 걸렸었다”라고 털어놓았다. 최영철 시인은 ‘문학나눔’ 사업에서 탈락한 적이 없었던 중견 시인이고, 『금정산을 보냈다』는 2015년 부산을 대표하는 한 권의 책, ‘원북원’으로 뽑힌 시집이다. ‘원북원부산운동’ 사상 시집이 원북 도서로 선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강대표는 세종도서 사업에 지원하면서 “원북원까지 된 책인데 안 될 리는 없다”라고 자신했다고 한다. 당연히 될 것으로 기대했던 책이 탈락하고 나서야 그는 시집에 수록된 「난파 2014」이 마음에 걸렸다는 것이다.
- 「난파 2014」은 세월호 사건의 아픔을 쓴 시로 최영철 시인이 출간 직전에 써서 추가한 것이다. 시인은 ‘부산에 대한 헌사’라고 할 수 있는 전체 시집의 내용에서 세월호에 관한 시 “한편 정도는 추가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한다. 강수결도 『금정산을 보냈다』가 “보수적인 도시에서 투표로 뽑힌 책”이기 때문에 세월호를 다룬 시 한 편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 강수결은 『금정산을 보냈다』가 세종도서에서 탈락한 것은 “아주 예외적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떨어진 작품들을 보면 약간 색깔들이 있었다”라고 말한다. 최영철 시인의 아내인 조명숙 소설가의 작품집에도 세월호 사건을 다룬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도 세종도서에 선정이 안 된 것이다. 그는 세월호를 다룬 시와 소설이 포함된 작품들이 세종도서에 선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심사위원들의 문제 정도로만 짐작하였다. 그동안의 심사관행을 보면, “심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필터링’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이다.
- 그런데,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에 의해 블랙리스트가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강수결은 여전히 의아함이 남는다고 말했다. “시 한 편이, 전체 시집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라는 점 때문이다.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문제에 민감하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60여 편이 실려 있는 시집에서 단 한 편의 시를 문제 삼아 지원에서 배제한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박근혜 정부가 ‘무리한 일’을 벌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질문자: 블랙리스트 피해출판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요?

강수결: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면서 알게 됐죠. 2014년에 『금정산을 보냈다』라는 시집을 산지니 기획 시인선 1호로 냈어요. 최영철 시인이 다른 출판사에서 내려고 했는데 우리가 달라고 했어요. 그때 시는 다 써놓았는데, 세월이 사건이 터져서 급하게 시 한 편을 추가한 거예요. 책 출판하기 직전이니까 시를 순서대로 다 세팅해 놓았는데, 최선생님도 한 편 정도는 추가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신작을 하나 넣자고 하신 거죠.

그리고 출판이 된 다음에 그 책이 2015년에 원복원 부산으로 뽑혔어요. 시는 잘 안 뽑히거든, 소설은 뽑혀도요. 원복원 부산에서 시가 뽑힌 것은 처음이었고, 전국적으로 볼 때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이 투표로 뽑은 책이에요. 부산은 보수적인 도시잖아요. 2015년 당시에 보수적 도시에서 어쨌든 투표로 뽑힌 책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종도서 문학나눔 부문도 신청했는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왜냐면 최영철 선생님의 그동안의 책들은 문학나눔에서 거의 다 뽑혔었거든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책을 내면 창비나 문지라든가 실천문학이라든가 나온 책들도 다 뽑혔고 저희 책도 당연히 뽑힐 거라 예상했어요. **작품성으로 볼 때 전혀 안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좀 의아하다. 그런데 좀, 조금 세월호 부분이 걸렸었어요.** 2014년도 세월호 이후에 정부의 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건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의아하기는 했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런데 **그때 떨어진 작품들이 보면 약간 색깔들이 있었어요. 최영철 선생님 사모님도 소설가인데 그때도 우리가 세월호를 다룬 소설책 하나를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작품도 안 됐었어요.** 나중에 블랙리스트로 적시는 안 됐는데, 심사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필터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면 심사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게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그동안의 심사 관행들을 보면. 그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됐는지는 **그 당시로는 알지 못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의아한, 아주 예외적인, 있을 수 없는 거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최선생님 정도 되면 그동안에는 거의 다 선정이 됐고, 그리고 원복원까지 된 책인데 안 될 리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블랙리스트로 인한 지원 배제라는 알고 나서도) 시 한 편이 시집 전체에서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 블랙리스트 사건의 이전과 이후의 기억과 경험

- 강수길은 경찰의 ‘모니터링’을 경험한 일과 블랙리스트 사건을 경험한 일을 연결하여 기억되고 있었다. 그는 경찰의 ‘모니터링’을 당한 경험과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경험을 연결하여 구술함으로써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충격 경험을 차별화하고자 하였다.
- 강수길에 따르면,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출판계의 동향을 묻는 부산 전역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이전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었다고 한다. 정보과 형사들은 주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에 대해 출판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형사들은 “지역별로 조사해서 경찰청으로 다 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 강수길은 경찰의 동향 파악을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라고 치부하면서도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로 부산 전역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고, 진보적 성향의 도서를 출간할 때는 예민해졌다고 회고한다. 지역 경찰이 특정 후보의 지지와 관련한 출판계의 동향을 조사, 수집하는 “모니터링”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에도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는 “경찰 쪽에서 계속 그런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생각했다.

강수길: 사실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경찰서 정보과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2012년 총선 때도 안 그랬었는데, 대선 때부터 부산지역에 있는 전 경찰서 정보과가 우리 출판사로 와서 “출판계 동향은 어떻느냐”, “아, 이거는 경찰청 쪽에서 정보과로 (지시가 와서) 경찰서 마다 다 하는 거다, 하면서 전화통이 불이 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출판단체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지역 별로 조사해서 경찰청으로 다 보고하라고 해서 자기는 산지니로, 부산지역 대표 출판사니까 물어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압박이 됐죠,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부산 전역의 경찰서에서 정보과 형사라면서 출판사로 전화가 오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었죠. 우리는 특정 노선의 책을 내겠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출판사로서 지역 작가의 책도 내고, 또 지역 작가 아닌 사람들, 다른 지역의 작가나 외국 작가 책도 번역해서 내기도 하고, 다양한 책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진보적인 책도 낼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밤의 눈』 같은 책이 2012년도에 나왔을 때 보도연맹을 다뤘었고 (그 때는) 예민했어요. 어쨌든 박근혜 후보 때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책만 낸 건 아니거든요. 또 보수적인 책도 냈기 때문에, 특정 성향 책만 내는 출판사는 아니기 때문에, 출판은 다양하게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진보적인 책을 냈을 때 규제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그렇게 조직적으로 했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던 거고, 2012년에 그랬는데 2017년도까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2017년 대선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대선 때마다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경찰 쪽에서 계속 그런 모니터링을 한다,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 경찰의 ‘모니터링’은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험이었던 반면, 문체부의 블랙리스트는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강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역을 대표하는 출판사로서 지역출판 진흥을 위해 문체부 및 출판진흥원의 사업에 협력해왔다. 당시 부산에는 출판 관련 지원제도가 없었다. 그는 지자체 차원의 출판지원제도 마련을 제안하였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역 정부가 출판 관련 제도를 만드는 곳은 아니다”라며 문체부와 얘기할 것을 권했다. 그가 2009년부터 문체부 및 간행물

윤리위원회(출판진흥원 전신) 회의에 참여하면서 출판유통 개선에 대한 의견, 간행물윤리위원회의 발전방안, 우수출판콘텐츠 지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2011년에 부산에서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되었을 때는 시청에 부스를 마련하고 외빈을 맞이하는 문체부와 출판진흥원, 지역 정부를 잇는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 강대표는 수년 동안 이러한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문체부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지원을 하는 곳이지, 간섭하는 곳이라는 인상을 전혀 못 받았다”라고 회고한다. 2012년 설립된 출판진흥원의 초대 원장이 낙하산으로 취임하였을 때는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도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이 출판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다.
-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대표에게 블랙리스트 사건은 그동안의 신뢰가 깨진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지원의 색깔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배제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 그는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의 협력 요청을 더 이상 순수한 지원 목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게 됐다. 그는 지역출판 진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서울로, 전주로 뛰어들면서 문체부에 협력해왔지만, 블랙리스트 사건은 출판지원정책이 “정부의 노선이라든가 성향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도개선을 해야” 하는 관리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강수결: 경찰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고, 문체부 경험은 좀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9년도인가 지역출판진흥을 위한 유통 문제 개선을 위한 문체부 주최 회의가 있었어요. 복선도 오고, 교보도 오고, 지역의 출판사로는 제가 가고, 문체부가 서울에 있을 때였는데, 나는 지역출판사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지역출판사가 출판하기 어렵다, 유통시스템이 과주 물류회사를 통해서 가야 하는데 물류비가 어렵다, 그리고 지원제도가 전혀 없다. 문체부는 처음 가봤고, 문체부 과장이 열심히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보고받은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출판진흥원 전에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출판진흥원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제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지역의 목소리를 제가 대표해서 얘기했어요. (나중에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던) ○○○이 당시에는 팀장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우수출판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면 좋겠냐고 해서 저자에게 3백만 원 주고, 출판사에 7백만 원 주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는데, 그게 나중에 그렇게 제도화되었고요. N은 부산에서 열렸던 독서 행사에서 또 만났어요. 2009년 독서진흥법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2011년에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부산에서 독서 관련 행사

를 했거든요. 그때도 저는 부산 출판사를 대표해서 시청에 부스도 마련하고 했었어요. 그때까지는 규제한다는 느낌보다는 지원해주는 제도로, (문체부와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지원하는 곳이지, 간섭하는 곳이라는 인상을 전혀 못 받았거든요, 계속. 처음에는 지원과 관련해서 계속 연락이 왔었는데, 나중에 세종도서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를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원의 색깔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배제도 할 수 있구나, 이 사람들은. 책은 다양하게 낼 수 있는데,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배제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정부의 노선이라든가 성향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도개선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 강수걸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험 이후 지원제도를 통해 추구되는 공공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국가가 출판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이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고, 책은 모든 국민이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데 필수적인 공공재이고 문화이기 때문이다. 출판산업계에서 더 다양한 책을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공공성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출판지원이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공공성은 정책 집행자들만이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독점되고, “출판 쪽은 공공적인 성격이 없는...업자들”로 전락하고 말았다. 다시 말해,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공공성의 주체로서 “국민의 세금이 엉뚱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공공성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출판업자들을 견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지원제도에서 이 프로세스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다.

강수걸: 공공적인 게 과연 뭘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분명한 건 문체부 공무원들, 출판산업진흥원의 직원들이 생각하는 공공성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성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출판은 엄연히 공공적인 일들을 하는 건데, 우리가 시장경쟁을 하긴 해요. 시장경쟁을 치열하게 하지만은 문화라는 것이 갖고 있는 공공성 때문에 국가가 문화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잘 돌아가면 좋지만, 5천 만밖에 안 되는 소수 언어의 출판을 세계적인 출판으로 만들려면 출판산업이 육성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공공적인 시스템을, 도서관 예산을 늘려달라든가, 기구를 만들어달라든가, 유통제도를 개선하게 해달라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답을 해야 하기 위해서 문체부라던지 출판산업진흥원이라던지 이런 데를 내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기구인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나라 걱정은 자기들이 다 하고 출판 쪽은 공공적인 성격이 없는...업자들인 거죠.

지원제도에서 이 프로세스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출판계는 업자, 아니 사익을 추구하

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는 공공성, 공익을 추구하고 저 사람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공공성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서 아, 저 사람들 말을 귀담아들으면 우리 제도가 왜곡돼서 국민의 세금이 엉뚱하게 낭비된다.

-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을 공공성의 유일한 주체로 설정하고 출판인들을 대상화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는 블랙리스트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작동시켰던 프로세스와 정확히 일치한다. 강수걸은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원제도에서 우리와 안 맞는 사람은 배제한 것”인데, 결국은 그것도 지원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지원과 배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출판인들을 “육아매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도 지원과 배제의 효과는 같다.

강수걸: 사실 블랙리스트 사건도 지원제도였잖아요. 지원에 대한 배제,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인 거죠. 세종도서나 우수콘텐츠 지원제도에서 우리와 안 맞는 사람은 배제하는 건데, 그게 지원제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떨 때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지원이든 배제든 출판인들을 목매게 하고, 육아매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 지원과 배제는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피해

- 출판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피해다. 출판사 당 몇 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피해를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강대표는 이러한 시각은 출판산업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말한다. 출판산업은 소규모 출판사의 비중이 압도적이고, 매년 8만 종의 도서가 출판되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소규모 출판사의 입장에서 정부의 지원 사업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절박한 도전이다. 세종도서로 선정되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며, 우수출판콘텐츠로 선정되면 책을 발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배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단순히 지원금 몇 백만 원을 받지 못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강수걸: 출판은 1년에 8만 종이 넘는 책들이 나와서 경쟁하기 때문에 어느 영역보다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사실 안 팔린 책들이 태반이고, 소수의 책만 선택을 받는 건데 그래서 많은 출판사들이 문을 닫기도 하고요. 생존율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생존에 허덕거리는 거죠. 그래서 지원제도 이런 데 더 약할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출판

사들이 규모가 작은 구멍가게 수준인데 우수도서로 뽑힌다던가 우수출판콘텐츠로 뽑힌다던가 하면 책을 내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생존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제가 된다면 타격이 엄청 큰 거죠. 사실 금액으로 볼 때는 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크게 타격받는다곤 말하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출판산업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작은 기업들이 8만 중, 9만 중 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속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면 생존률이 늘어나니까, 몇 백 만 원이라도 지원받으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입맛에 맞춰 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4대강 관련 책을 낸다면, 아, 우수도서에 안 뽑히겠구나...,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 또한 출판계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는 경제적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강대표는 출판인으로서 위축되고, 경영자로서 순치된 것을 가장 큰 피해로 꼽는다. “국가권력이 언제든지 우리를 배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경험은 다양한 책들을 자유롭게 기획하겠다는 출판인의 의지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경영자로서도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 없게 한다. 그는 “전에는 1인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직원들에게, 또는 우리 단체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중립적인, 약간의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정도로 스스로 순치되었다고 느낀다.

강수걸: 저는 좀 위축이 된 것 같아요. 다양한 책들을 자유롭게 기획해야 하는데, 이것이 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80년대는 군부정권에 의한 감시였으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도 언제든지 국가권력이 우리를 배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학습이 되는 거죠. 학습이 되면서 가능한 한 아예 문제 되지 않게 해야겠다. 저는 경영자인데 회사를 어렵게, 직원들에게 월급을 못 주고 이런 상황에 가게는 안 해야 하니까 좀 어느 선에서 순치가 되는 거죠. 출판진흥원이든, 문체부든 요구안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위축되는 게 좀 있어요. (... 전에는 문체부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직원들, 단체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한 중립적인, 약간의 거리두기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많은 피해 출판사들이 소송에 참가 안 한 이유는 그래서였을 거예요. 정부를 상대로 해서 뭔가 한다는 게 비즈니스 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 피해자가 말하는 피해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위한 실천 방안
 - 강수걸은 지역의 피해 출판사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출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이

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어디에서 출판을 하든 국가에 의한 왜곡이나 배제 없이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장치들을 제도화하는 것 피해회복의 우선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강수길: 지역출판사 입장에는 항상 생각하게 되는데 지역에서 출판이 자유가 옛날에는 댔단 말이에요. 80년대만 해도 지역출판사들, 사계절도 광주에서 하다가 민주화에 의해 서울에 온 거잖아요. 부산에도 친구출판사가 있었고, 그런데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책 내는 환경이 더 나빠졌느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한 사회가 된 게 아닌 거죠. 자유롭게 출판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구현되어야 하는데, 시장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있고, 국가에서 왜곡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왜곡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때는 배제하는 왜곡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왜곡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이 정상화되고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유롭게 표현하고 출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당연한 권리인데, 우리 권린데 그게 국가가 주는 게 아니고 주어야 아니고, 천부적으로 내게 주어진 권린데 꼭 국가가 부여해서 하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서 우리 권리를 우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그리고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 강수길은 이러한 차원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급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직원들에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공청회의 형식을 빌려 중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사건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수길: 4.3 관련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고 요즘 진상을 조사하고, 그렇죠? 올해 부마 관련 법도 얼마 전에 통과되고, 시간이 한참 흘러도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블랙리스트는 시간이 가까운 건데도 조사하고 누구도 반성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구조니까, 재발이 안 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르게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든, 산하기관의 팀장이나 담당자라도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이 권한은 내 거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문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자주 공청회를 한다든가, 중간점검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

- 강수걸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자신들만이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엘리트 의식에 가득 차 있는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본 연구과제에서 수행하고 있듯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작업은 문체부와 산하기관 공무원들의 반성과 의식의 전환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수걸: 자신들만이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엘리트 의식에 차 있는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사람들의 의식을 어떻게 바꿀까...? 어떤 사건이 반성하는 계기는 되거든요, 그렇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재발 안 되고 또 다른 형태로 왜곡 안 되게 만들어내는 거. 그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쨌든 가해자 조사를 했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또 피해자 요번에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메아리가 없을 수도, 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죠. 그렇다 하더라도 해놓은 기록을 남겨 놓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3)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한 사회적 기억화 방안

-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한 피해의 범위와 유형
 - 강수걸의 구술을 통해 본 출판 블랙리스트의 피해는 경제적 피해만이 아니라, 출판인으로서 위축되고, 경영자로서 순치되는 심리적 피해를 동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는 다양한 책을 자유롭게 출판하고자 하는 출판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자, 지원제도에 대한 의존과 순응적 태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 심층 인터뷰 분석을 피해사례의 특징과 해결 방안
 - ① 출판 지원과 배제가 지닌 양면성을 인식하고 문화적 ‘공공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출판진흥원과 문체부, 출판업계 종사자들 간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
 - 강수걸은 출판 지원과 배제는 ‘동전의 양면’으로서 같은 프로세스로 작동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이 공공성을 추구할 권리를 독점하였기 때문에 지원도 배제도 동일한 프로세스로 출판인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출판인들의 요구와 활동 또한 공공성의 추구라는 점을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이 분명히 인식하고 협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출판계의 블랙리스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②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매뉴얼 마련, 추진 사업들에 대한 중간 점검, 피해자 목소리의 기록 등을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들로 실행해야 한다.

사. 미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윤동희·한상훈의 심층 인터뷰 분석

1) 개요

○ 구술자: 윤동희·한상훈

- 구술자 윤동희는 2017년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이하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으로부터 특정 작품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여 작품 발표의 기회를 빼앗긴 미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다.
- 구술자 한상훈은 사건 발생 당시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대구지회(약칭 대구민예총) 사무국장으로써 대구아트스퀘어 사건에서 배제당한 작가들과 함께 사건을 공론화하고 해결하는데 앞장서 온 활동가이자 문화기획자다. 윤동희는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작품을 배제하였던 대구아트스퀘어 예술감독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는 등 2차 가해로 인해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았다. 심리적 회복 중인 상태에서 그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한상훈과 함께 구술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구술자가 관여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

- 사건번호 2017시5[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
-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번호 2017시5[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신청인 박문철의 경우, 2017. 10. 13.자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 회의에서 출품작(‘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주민께’)이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드’를 특정 정치적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전시에서 부당하게 배제·차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신청인 윤동희의 경우 실무진 회의에서 박정희 前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작품 <망령>에 대해 제외를 요청받은 사실, 신청인 이은영 또한 실무진 회의를 통해 설치작품 <바다 위로 밤이 걸어온다>의 작가노트에서 ‘세월호’가 언급되는 부분에 수정을 요청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 프로젝트에서는 특정작품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한 배제가 시행되었다고 판단된다.¹⁰⁸

○ 심층 인터뷰 일정

- 윤동희와 한상훈의 구술인터뷰는 2021년 3월 2일 윤동희의 작업실에서 진행되었다.
- 두 구술자는 인터뷰 전에 전달한 공통 질문에 대해 피해 예술인과 대책위원회 활동가의 입장에서 대구아트스퀘어 사건에 대한 각자의 경험과 기억, 의견을 말하였다.

¹⁰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2-6 미술·기타』. 168~169쪽.

2) 피해자가 말하는 블랙리스트 사건

○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 윤동희는 대구아트스퀘어 사건을 관료제의 폐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관료화된 시스템이 예술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술가가 시민들로부터 받아야 할 “칭찬과 비난과 이야기들” 까지도 공무원들이 자기들 몫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검열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검열이 가능한 것은 “돈 자체가, 기금이 다 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관료들이 관리하기 때문”이다. 예술가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시민들의 예술 향유를 위한 세금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관료화된 시스템에서는 어떤 예술가라도 검열을 당할 수 있고,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대구아트스퀘어 사건을 바라보는 그의 입장이다. 그는 관료화된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대구지역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정말 아, 답이 없다. 답이, 답이 없다”라고 한탄한다. 예술의 공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제 시스템에서 공무원들은 예술가의 성과보다는 서류를, 시민들의 향유권보다는 “자기들 밥그릇에 손해 가지 않게 하려는” 검열이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

윤동희: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사건은 일단, 관료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관료화된 어떤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고, 그 관료화된 시스템이 예술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벌어졌던 문제인 것 같은데, 예술이라는 건 결국에는 작가 개인이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작가 개인도 사회에 살고 있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며, 그 이야기를 공공의 장소에서 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공공의 장소에서 펼쳤을 때 칭찬과 비난과 이야기들은 작가가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알아서, 돈 자체가, 기금이 다 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관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근데 또 역으로 보면 이거 다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특히나 대구는 진짜 심한 것 같고, 대구문화재단도 그게 너무 심하고, 네. 그전에도 그렇게 알고는 있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 생각하는 수준이 정말 아, 답이 없다. 답이,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성과가 중요한데 관료들은 서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술의 성과는) 우리는 시민들의 몫이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든 자기들 밥그릇에 손해 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관료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 대구아트스퀘어 사건을 바라보는 한상훈의 시각도 윤동희와 유사하다. 예술에 대한 공무원들의 소양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다. 대구지역 문화예술과 공무원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내용을 근거로 작품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건지도 몰랐고”, “문제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말하면서도 “돈을 우리가 대니까 우리 행사다.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검열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부응하여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일은 주로 예술감독이나 큐레이터가 맡는다. 이들 역시 검열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공무원들의 요구를 충실히 따름으로써 자신들의 앞날을 보장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아트스퀘어 사건은 예술지원에 대한 이해와 소양이 부족한 공무원들의 관료적 사고와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수주받아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민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검열이 일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한상훈: 보통 문화예술 관련 예산들을 시에서 홍보비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그냥 자기들이 검열해도 된다는 마인드가 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예술감독들이 보통은 관변예술가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걸 검열하면 이분이 시립예술단의 뭘 맡는다는가 이렇게 코스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원하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큐레이터들이나, 예술감독들이 있는 거잖아요. (대구아트스퀘어 사건에서) 이분 역시도 그 코스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했던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된 거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는 남의 이야기인 거죠.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문화예술과장하고 직원들 네 명이 저하고 만났어요. 과장이 제일 처음 하는 이야기가, “저는 예술 하나도 모릅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건지도 몰랐고, 그냥 뻥뻥이로 오다 보니까 자기가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분 역시도 이게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문화예술과에 올 때는 소양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게 다른 데서는 다 조정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을 우리가 대니까 우리 행사다.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 피해자 관점에서 본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구성

- 대구아트스퀘어 사건에서 배제당한 <망령>은 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고 싶은 욕구에서 작가가 박정희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과 사건들의 재조합을 통해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는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상훈은 <망령>을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초상화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안에 망령처럼 있는 박정희”가 드러나도록 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망령>은 대구아트스퀘어 사건 이전 봉산문화회관, 대구미술관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전시되었던 작품이다.

질문자: <망령>이라는 작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동희: 2012년에 전시했던 작품인데, 그때 딱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 직전에 전시 오픈한 거고

저는 또 이렇게 지역에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었으니까. 사회를 보는 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되게 궁금하고 알고 싶 어졌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도대체 누군지, 알긴 알지만,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나 인물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리스트를 짝 뽑고, 사건을 뽑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건들을 나열해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뽑아서, 그 얼굴을 그리고 지우는 작업을, 목탄으로 그리고 지우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그건 계속 돌아가고 있고, 거꾸로 돌려서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회색 얼굴에서 얼굴이 생기는 거니까. 거기는 이제 비디오로 밑에 깔아놓고, 위에는 이제 그게 이제 자세히 보면 얼굴이 나와 있는데, 멀리서 보면 이제 다 음영이죠. 그걸 조합을 해서.

한상훈 :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초상화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안에 망령처럼 있는 박정희.

- 윤동희는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의 큐레이터인 이민정으로부터 “〈망령〉이라는 작품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외 요청을 받았을 때 보이콧을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고 말한다. 외면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대구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부당한 대우라든지 처사가 있어도 혼자 당하는 일이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저만 속 태우게 되니까” 숙이고 넘어가는 것이 편했던 것이다.
-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달랐다. 윤동희는 “혼자였다면 싸울 엄두를 못 냈을 것”이지만, 박문철, 이은영 등 함께 배제당한 작가들의 의지가 있었고, 한상훈이라는 믿을 만한 활동가가 나섰다. 그래서 행동에 나설 결심을 하게 되었다. 대구시의 문화행정에 대해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자체가 ‘작품’이라는 생각에서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 하지만 윤동희는 당사자로서 싸우는 일이 괴로웠다고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다. 검열에 대응하여 싸우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제 문제니까” 함께 싸우더라도 당사자로서의 고통이 남는다는 것을 싸움의 과정에서 경험해야만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동희: “〈망령〉이라는 작품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좀 불편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중간에 있는 큐레이터 ○○○씨가 솔직하게 해줬어요. 보이콧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한다고 한상훈 사무처장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그냥 하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보이콧을 하면서 사실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되게 귀찮기도 귀찮았고, 대구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저는 대구에서 활동을 별로 하기 싫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당사자가 된 거죠. 당사자가 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 이게 사실을 알고 이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쉽게 하겠다고 했던 거 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당사자가 되어가는 거니까 거기서 저도 피로했습니다. 결국에는 제 문제니까. 같이 싸우는 것은 싸우는 거지만.

만약 저 혼자 이런 상황에 있었으면 싸울 엄두도 못 냈겠죠. 부당한 대우라든지 처사가 있으면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저만 속태우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면 속이든 뭐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그때는 박문칠 감독 문제도 있었고, 이은영 작가 이야기도 있었고, 한처장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해보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항상 대구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 내가 함께 해서 조금이라도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작품의 주제도 항상 그런 거였으니까. 이런 생각과 행동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게 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한상훈 역시 “동희씨나 문칠씨가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사건은 조직 위원회 회의에서 “별정직 공무원 한 명이 이거 문제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예술감독이 이 요구를 조정해보겠다고 나섰다가 뜻대로 조정이 되지 않았고, 큐레이터인 이민정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파트너인 대구미술협회는 블랙리스트가 실행되는 동안 청년 미술가를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안이하게 방치한 책임이 있다.
- 윤동희와 한상훈의 구술은 대구아트스퀘어 사건이 그동안 비화 되지 못하고 묻힌 무수한 사건들 가운데 운 좋게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아트스퀘어 사건은 예외적이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행정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잘못된 관행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만들어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상훈: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나서 시류가 그렇다 보니까, 예술감독이 그렇게 콘셉트를 정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행동하는 의사회’나 이런 것처럼 세계적인 사회모순을 다룬 메시지를 바랬던 건데, ‘사드’라든가, ‘박정희’, ‘세월호’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예술감독은 그걸 꼭 검열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 컨트롤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에서는 요거, 요거, 요거. 요 작품 이렇게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예술감독이 그러면 자기가 다 문제없이 조정하겠다 했는데, 조정이 안 될지는 몰랐던

거죠.

그 행사는 주최가 ‘아트스퀘어’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구미술협회’ 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트스퀘어가 두 조직인데, 미협이 청년미술프로젝트, 대구화랑협회가 아트페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가 같이 하는 건데, 미협 같은 경우에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걸 받는 거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예술적인 성취나 그 사람들 실체하고 관계없이 (관리 차원에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파트너십이 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미협 역시도 보조금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청년미술프로젝트가 되게 큰 행사는 아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이하게 그냥 둔 거죠. 예술감독하고, 미협 사무국장도 그렇게까지 뭐 이걸 가지고 의욕을 낸 건 아니고, 공무원 중에 누가 이야기를 한 거죠. 별정직 공무원 한 명이 이거 문제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된 건데, 그걸 그냥 다 접수한 거죠. 접수해서 실행해 준 거죠. 그런데, 저 역시 동희씨나 문철씨가 없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큐레이터 이민정씨가 이야기를 다 해주면서 비화가 된 거죠.

○ 블랙리스트 사건의 이전과 이후의 기억과 경험

- 운동회는 대구아트스퀘어 사건을 겪으면서 블랙리스트가 “그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수준과 입맛에 따라,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하는 민간 위탁 사업자들에 의해 어느 정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질문자: 박근혜 정부 때는 문제없이 전시되었던 작품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빼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운동회: (블랙리스트가) 그 대통령하고는 전혀 관련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지방에 행정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정치인들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행정 하시는 분들은 정치인들, 선출직들 눈치 보면서 하겠지만, 이 블랙리스트 사건 자체가 그 당시에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건 다 없고. 진짜.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그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고, 굉장히 나이브하잖아요. 굉장히 나이브한 주제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대구미술관에서 전시할 때, <망령>하고, <붉은 방>하고, 세월호 관련된 작업 그 세 개가 다였거든요. 그때 대구시장이 오프닝하고, 미술관 관장이 시장 데리고 쪽 돌잖아요. 대기하라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작품 설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설명하는데 시장 얼굴이 약간 굳으시기 시작하니까 관장님이 자기가 스틸해 갖고 막 설명하는 거야. 있는 말, 없는 말. 가만히 있었죠.

- 한상훈은 대구아트스퀘어 사건 이후에 대구지역의 검열과 압질 사례를 수집하여 공론화했다고 한다. 그는 흥미롭게도 그 사례들이 “검열일 수도 있고 압질일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점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압질이 가능하니까 검열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윤동희는 검열이라는 형태로 예술가들이 받아들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본질이 압질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는 한상훈의 관점에 동의하며 공무원들과 공무원들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은 민간사업자들이 예술가들을 상대로 검열과 압질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보여 줘야 하고, 자기들 킴플레인 걸리면 안 되고 멋진 것만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상훈: (이 사건) 끝나고 나서 대안 행사처럼 축제를 하나 했을 때, 대구에서 검열 내지는 압질 당한 사례를 8개 정도 모아서 알렸어요. 이 사례를 그중 하나로, 메인으로 했었거든요. 1년에 6~8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검열일 수도 있고 압질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두계약 했던 것을 그냥 옳는다던가. 반 정도는 보니까 행정이 직접 하기 보다는 행정 일을 대신해서 하는 분들이 하는 거죠.

윤동희: 검열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본질은 압질이었던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되게 쿨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이걸 보여줬을 때, 시민들이 결국 그걸 보고 느끼고 이게 좋다 나쁘다 시민의 영역으로 가야 하는데 항상 좋은 것만 보여줘야 되고, 자기들 킴플레인 걸리면 안 되고 멋진 것만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생각.

- 대구아트스퀘어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실행된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했고, 배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원회의 인정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대구시의 문화예술행정이 달라진 점은 없다. “일부 거래처를 바꾸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할 뿐이다.
- 한상훈은 일부 거래처를 바꾸는 방식의 수습책으로는 블랙리스트 사건이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심사위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어떻게 나뉘진다”라는 것이 정해지고, “예술가 대부분이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하지 못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블랙리스트는 늘 작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질문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배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고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한상훈: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고 이제 어떤 지원 체계에 대한 대전환이나,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거래처를 바꾸는 식인 거죠. 일부 거래처를 바꾸는 식. 그랬을 때는 뭐 사실 블랙리스트가 또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예총, 민예총 지원금

배분표도 블랙리스트거든요. 심사위원 풀은 블랙리스트는 아니더라도, 심사위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을 어떻게 나눠진다가 정해지는 거고, 예술가 대부분이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하지 못하는 구조. 결국 다 같이 연대를 못하는 이유는, 그 예술가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해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고, 나머지는 자생력을 가지게 한다면 또 목소리를 낼 텐데. 애가 떨어져야 애가 붙고 뭐 이런 구조잖아요. 거기 안에서 (블랙리스트는) 늘 작동할 수 있다고요.

○ 피해자가 경험한 2차 가해와 부수적 피해

- 윤동희는 대구아트스퀘어 사건의 예술감독 김○○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김○○은 ‘사진비엔날레’라는 행사에도 감독을 맡았는데, 그 행사 안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김○○이 내부 구성원들과 풀지 않고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한 데 대해 화가 나서 페이스북에 그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이 일로 소송을 당해 윤동희는 고등법원까지 가는 지리한 공방을 거친 후에야 선고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한상훈은 이 일로 윤동희가 매일 술을 먹고 살이 쪼들 정도로 힘들어했다고 한다.

한상훈: 수사받기 시작했던 것부터 하면 1년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동희씨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내가 왜 이걸 해 가지고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대구아트스퀘어 사건에서도) 어찌 보면 자기가 귀찮아서 전시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거 안 하고도 전시할 수 있고 바쁜데, 소송까지 당하니까 집으로 날라오면 가족들도 보고 하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거 플러스 만 일도 있어서 매일 술 먹었잖아. 살 막 찌고.

- 윤동희는 소송을 견뎌내는 일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동료 작가들이나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을 견뎌내는 일과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허무함을 어떻게든 수습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윤동희: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어쨌거나 제가 뛰어난 건데, 하다 보니까 생기는 진정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틀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주변 사람도 걸려 있고, 저도 걸려 있고 이런 문제가 힘들었어요. 또 제가 힘들었던 것은 동료 작가들이나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대구에서 사회문제를 다루고, 뭐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동네 분위기가 그래요. 젊은 작가들도 동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쉬쉬하고 넘어가고 높은 데 올라가도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동료 작가들의 시선하고, 다음으로는 좀 잘 안 도와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를 피해 갈까 봐. 이해는 하는데

어, 아,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허무한 거죠. 되게 허무하잖아요.

- 한편, 한상훈은 연명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청년예술가들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고통을 준 것이 “그게 더 블랙리스트인 것 같다”로 느낄 정도로 괴로웠다고 회고한다. 피해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동료 예술가들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동료관계를 와해시킨 것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또 다른 부수적 피해라고 할 수 있다.

한상훈: 연명할 사람들을 찾을 때, 청년 단체들이나 청년 예술가들이 많이 했는데, 개들이 되게 괴로웠던 거죠. 개들 입장에서는 이 전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졌으니까 동희씨도 알고 저도 알고 하는데 자기가 되게 곤란해졌다는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우리 편에 설래, 재들 편에 설래, 이런 고통을 준 거죠. 그러니까 동희씨나 문철씨처럼 직접 피해자보다 그런 친구들이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그게 더 블랙리스트인 것 같아요.**

- 윤동희는 소송으로 인한 2차 피해 외에도 대구예술발전소 입주 심사에서 배제를 당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편견에 찬 시선에, 그리고 공무원들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차별하고 배제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었던 것에 또 한 번 좌절했다. 기사를 통해 입주 배제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대응하지 않았을 만큼 그는 상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윤동희: **피해가 한 건 더 있습니다. 3년 전에 대구예술발전소에 제가 입주를 하려고 했거든요. 입주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배제를 당했어요. 그게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때 심사위원 세 분이 계셨고 소장님도 앉아 계셨거든요. 소장님이 배제를 시켰죠. 심사위원 세 분 다 동그라미였고 통과였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시선 때문에 저는 피해를 받은 거죠. 소장님이 대구시 공무원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셨겠죠. 그때 또 한 번 좌절이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이러는 건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러고 난 다음이 그 소장님이 관두고 난 다음에 그게 기사로 터졌어요. 그 기사 났을 때 저는 대응을 안 했어요.**

- 피해자가 말하는 피해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위한 실천 방안
 - 윤동희는 피해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었던 심리적 고통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려야만 했기 때문에 인터뷰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눈에 띄게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다. 그는 예술가로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안 내키고” 마음을 수습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회복

과 사회적 기억을 말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에게 블랙리스트는 예술 의지를 다 꺾어놓고, 순화시켜서 결국에는 예술가 스스로 검열하도록 만들어버린 사건이다. “예. 재미없게 사는 거죠”라는 그의 말은 회복 가능성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윤동희가 예술가들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유일한 조치는 “대구시장이 사과”하는 것이다. 대구시장은 여전히 ‘슈퍼 갑’ 이고 자신의 생각을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은 “무슨 나부랭이 취급”이나 받는 상태에서는 피해회복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에게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질문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피해 예술가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와 사회적 기억을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윤동희: 아직 저는 이게 진행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판결도 끝나고, 다 끝났지만, 아직 바뀐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마음으로 수습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안 내키고, 사실 그래요.

회복을 위해서는 기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기억을 모든 시민하고, 예술가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해자도 그렇고요. ‘블랙리스트 사건’ 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의 자유라든지, 예술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꺾어놓고 순화시키거나. 결국에는 스스로 검열하게끔 만드는 거죠. 예. 재미없게 사는 거죠. 뭐.

그리고 저는 진짜 대구시장이 사과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요. 예. 대구시장이 이동진씨. 사과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생각이 맞다 생각하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슈퍼 갑이기 때문에, 대화해 볼 그런 것도 없고, 저는 무슨 나부랭이 취급받고.

- 한상훈은 피해 예술인들의 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첫째는 당장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선언’ 과 함께 지원체계에 대한 대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공무원에 대한 소양 교육과 검열 또는 갑질의 사례를 수집하고 기록하여 “반면교사로 삼는” 매뉴얼의 개발이다.

한상훈: 당장 지원 체계에 대한 대전환이 어렵다면, 공무원 소양 교육이나 검열 또는 갑질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개발하는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검열했던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도 있지만, 이게 나쁘지 않지만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해의 정도가 달라서? (윤동희 :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해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1년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번역센터처럼, 예술가의 언어를 행정에서 이해 못하고, 행정의 언어를 예술가는 이해를 못하

기 때문에, 약간 통역센터처럼, 그런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제3지대가 존재해야 된다. 왜냐하면 갑을관계가 보통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검열이다. 갑질이다에 대한 공무원 매뉴얼들. 과거에 있었던 문제적 사건들을 아카이빙해서 반면교사로 삼는, 이 흑역사를 기록하는 것 같은 게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수집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좀 선언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블랙리스트 문제도 그렇고, 그 뒤에 이제 생기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훈이 너무 없었던 거 아닌가. ‘문화다양성 선언’ 이런 것처럼, 그런 선언적인 부분이 있고 나서야, 이제 지역도 천천히 변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안 하면 이게 언제 가능할 거냐 이런 생각까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3)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한 사회적 기억화 방안

○ 심층 인터뷰 분석을 통한 피해의 범위와 유형

- 피해 예술가인 윤동희의 구술은 대구아트스퀘어 사건 자체로 인한 충격보다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대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이 가중되어 현재는 작업을 해야 할 의욕마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 그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해결을 위해 다른 예술가들과 연대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에서 당사자로서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지만, 가해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매일 술을 마셔야만 견딜 수 있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고, 동료 작가들과 친구들로부터 받는 시선의 불편함, 그동안 쌓아왔던 인간관계가 깨지는 허무함 등을 경험했다. 전시를 위해 입주하고자 했던 기관으로부터 또다시 배제 당함으로써 그는 또다시 좌절을 겪어야 했다. 예술가로서 그가 입은 가장 치명적인 피해는 작업할 의욕을 잃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대구아트스퀘어 사건은 의욕적인 작품활동으로 주목받았던 한 청년 예술가의 삶과 의지를 파괴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중대하다.
- 대구아트스퀘어 사건은 배제를 당한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배제를 당하지 않은 동료 작가들에게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드는 고통을 주었다. 한상훈은 동료 작가들이 겪은 고통이 “블랙리스트인 것 같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들의 고통은 말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와 정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 심층 인터뷰 분석을 피해사례의 특징과 해결 방안

- ① 지역 정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되는 블랙리스트에 대한 인식과 대안적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 대구아트스퀘어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실행되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발생하였다는 점, 지역 정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되어온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배제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이 다른 블랙리스트 사건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블랙리스트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 대구아트스퀘어 사건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운동회가 희망하였던 것처럼 사건의 책임자인 대구시장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 ③ 예술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과 검열 및 갑질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 그 다음으로는 예술에 대한 이해와 예술지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바꾸는 소양 교육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공무원들과 예술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사업자의 검열과 갑질 사례 수집을 매년 시행하며, 이를 근거로 블랙리스트 재발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6.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및 회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

가. 피해 예술인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을 위한 조직 및 자원 마련

- 블랙리스트 사건을 피해자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피해자 심층 인터뷰 및 구술 채록 작업은 피해자를 사건의 주체의 자리에 놓음으로써, 심리적 치유효과와 고통의 사회적 인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피해자를 대상화시키지 않고, 피해자의 참여 보장을 통한 주체화의 과정이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 실태 조사 진행 및 심층 인터뷰를 위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주체,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조직, 사업에 소요되는 자원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정을 통해 자원 마련의 근거가 만들어져야 한다.
- ‘(가칭)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구술프로젝트단’을 구성하고, 구술 인터뷰 수행자들의 필수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피해자 관점에서 이뤄진 ‘사회적 기억 및 기록’을 기반으로 출판물, 영상물, 온라인 콘텐츠 등이 만들어져, 블랙리스트 사건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재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나. 피해 예술인 심리 치료 상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 피해자 예술인이 주체가 되어 집담회, 좌담회 등을 개최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 예술인 사이의 공감과 위로가 이뤄질 수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 예술인이 치료 대상자가 아니라 피해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청된다.
-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의 곤란, 창작 경향의 급격한 변화, 무기력감, 창작 현장 으로부터 이탈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최대 희망사항은 창작 활동을 통한 피해 극복이다. 피해 예술인들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벗어나 창작 활동에 이르도록 하는 심리 치료 목표의 설정과 적용이 필요하다.

다. 피해 예술단체 및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국가 기구의 공식적 사과

-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들은 국가 기구, 가해 공공기관, 가해 공무원들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있다. 일회성 사과로 일단락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한은 지속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블랙리스트 사건의 가해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 등급위원회, 한국공연예술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 국립극단, 국립국악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연극인복지재단, 국립현대무용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의 기관에서 피해 예술인에 대한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공식 사과 필요하다.
-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국가기구의 사과는 국가 폭력의 공식적 인정이다. 국가 기구의 공식 사과가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기에, 피해자 구제 조치의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라. 사회적 기록 확산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제안한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데이터의 손실과 훼손 없이 무제한적인 복제가 가능하고, 전송이 전파가 자유로우며,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전환 및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사건을 기억들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의 상황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의 특징은 ‘현재 진행형의 피해’이다. 그렇기에 피해 상황의 실시간 업데이트

- 이트와 공유, 상향식 기억의 수집, 사회적 기억의 의미 공유 및 확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디지털 아카이브 이용자들은 사건의 의미를 내면화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을 확산하는 작업을 디지털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다. 피해자의 ‘사회적 기억 및 기록’을 디지털 아카이브 이용자들이 학술논문, 문학작품, 음악, 회화, 공연 예술 등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공간에서 소셜 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의미를 생산할 수 있다.

마.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의무 교육

-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 위해서는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이고 프로그램화된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
- 법정 의무교육인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예방 교육처럼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무원 및 직원들도 블랙리스트 사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매년 교육 이수를 하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와 피해자 중심의 사건 기록 통해 교육 교재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온라인 동영상 강의 콘텐츠 개발 및 업데이트가 요청된다.
- 신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서약서 서명 날인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문화예술 분야의 업무처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바.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 및 실천 프로젝트 지원 사업

-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들은 피해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예술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전체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 사업 진행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피해 예술인들이 예술작품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의 실상을 미적으로 표현해내는 작업을 장려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문화 예술적 재현을 통해 예술인들이 트라우마 극복과 작품 활동 재개를 승화의 차원에서 이뤄내도록 지원한다.
-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는 영화·공연예술·문학·미술·음악·무용·전통예술 등 모든 장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 극복이 전체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 ‘표현의 자유’ 예술 실천 프로젝트 공모 및 연구조사 활동 지원 공모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의 주체적인 예술 실천과 현재 진행형의 피해사례 조사 및 피해 극복 방안 연구가 지속성을 갖도록 한다.

-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 예술 실천 프로젝트, 연구조사 활동 지원은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과 연계해 대중적인 공유 및 향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사.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

-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긍정적 예술 에너지로 승화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페스티벌이 필요하다.
-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를 통해 ‘표현의 자유’ 예술작품 공모 사업 선정작에 대한 상영, 공연, 전시 등을 진행한다. 블랙리스트 사건과 예술 실천 프로젝트 진행한다.
- 문화예술인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평등적 관계 형성 및 일반 시민의 참여의 장 마련을 통해 예술적 긍정성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을 극복한다.
-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의 확산과 예술인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

아. ‘표현의 자유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포럼 및 매체 간행

-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적 기억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정기 포럼 및 온·오프라인 매체를 간행한다.
- 피해자가 대상화되지 않고 주체가 될 수 있는 포럼, 매체,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해 피해자의 치유와 명예 회복,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다.
- 예술지원 기관과 예술인의 신뢰회복 및 민주주의적 관계 설정을 위한 상시적인 상호 소통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정기 포럼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예술인과 예술지원 기관, 예술인과 공무원의 수평적 관계 형성에 기여한다.

자. ‘예술인 권리 보장 위원회’(표현의 자유 예술인 재단)의 상설 기구화 및 사업 기금 조성

- ‘예술인 권리 보장법’ 등 법적 근거를 통해 ‘예술인 권리보장 위원회’(혹은 ‘표현의 자유’ 예술인 재단)를 상설기구로 설립하여 운영한다.
- 기관의 사업 기금 통해 ‘표현의 자유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지속적 활동 보장을 보장한다. 기관에서는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의 피해 회복,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활동 등 진행한다.
- 기관에서 ‘표현의 자유’ 예술 공모 사업, ‘표현의 자유’ 주간 행사 운영, 매체 발간 및 정기

포럼 개최와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

- 예술인 권리 보장에 관한 예술 활동 지원과 연구조사 기관으로서 조직을 운영한다.

차. '표현의 자유 예술 공원' 조성

-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은 유형의 공간을 통해 피해 기억과 기록이 미래 세대에 실질적으로 전수되기를 희망한다.
- '표현의 자유 예술 공원' 을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혹은 '표현의 자유' 예술인 재단)이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 '표현의 자유 예술 공원' 은 '사회적 기록 확산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의 서버 공간이다.
- '표현의 자유 예술 공원' 은 '표현의 자유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위한 제반 예술 학술 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전시, 공연, 창작 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카.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생애 추적 조사, 지원 연구

- 블랙리스트 사건의 트라우마로 인해 예술 활동의 중단, 곤란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연구 조사를 5년 주기, 혹은 10년 주기로 진행하는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
- 생애 추적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이 한국문화예술계, 한국시민사회에 미친 영향 파악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 1937년 하버드대 연구진 75년간 생애 추적 조사 사업 진행 사례 참조한다. 이를 통해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설계한다.
- 특정 '정책을 가장한 국가 범죄' 가 문화예술인의 생애에 미친 영향을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하여,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중요한 토대가 되도록 한다.

7.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미현 외. 2017.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Ⅱ: 관리와 활용』. 선인
- 김귀옥. 2014. 『구술사 연구: 방법과 실천』. 한울아카데미
- 김연주. 2012. 『여성주의 역사쓰기: 구술사 연구방법』. 아르케
- 김수진. 200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 이재경 · 윤택림 · 이나영 외. 2012. 『여성주의 역사쓰기: 구술사 연구방법』. 아르케
- 이호신. 2017.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 Ⅱ: 관리와 활용』. 선인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5. 『당꼬라고요?: 강제동원 구술기록집 I』.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정신대연구회 등편. 1995.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한울
- 정신대연구회 등편. 2003.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 조용성. 2014. 『구술사 아카이브 구축 길라잡이: 기획과 수집』. 선인
- 제민일보(濟民日報) 4·3 취재반. 1994~1998. 『4·3은 말한다 1~5』. 전예원
- 제주4·3연구소 편. 2019.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각
- 하금철 외. 2019. 『아무도 내게 꿈을 묻지 않았다』. 오월의 봄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회 공편. 2001.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3』. 한울
- 416세월호참사작가기록단. 2019.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세월호의 시간을 건너는 가족들의 육성기록』. 창비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역사비평사

2. 정부간행물

- 김명혜 외. 2002. 『그 말을 어디다 다할꼬: 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집』. 여성가족부
- 김현주 외. 2016.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사료 조사 및 D/B화 사업』 보고서.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술자료 재정리 자료집』. 여성가족부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2019.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문화체육관광부

3. 논문

- 김명훈. 2014. 「기억과 기록: 사회적 기억 구축을 위한 기록학의 연구」. 『기록학연구』 42

- 김성례. 2001. 「국가폭력의 성정치학: 제주 4·3 학살을 중심으로」. 『흔적』 2
- 김소연. 2019. 「예술행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 김영. 2015. 「밀양 765kv 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대한 젠더 분석: 젠더 점핑의 과정과 원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1-2
- 김영·설문원. 2015. 「구술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사회운동 참여의 맥락: 밀양 765kv 송전탑건설 반대운동에 참여한 여성 주민들의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 김영범. 1999.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사회과학연구』 6-3
- 김영범. 2003. 「기억에서 대항기억으로, 혹은 역사적 진실의 회복: 기억투쟁으로서의 43문화운동서설」. 『민주주의와 인권』 3-2
- 김영희. 2017. 「구술기억과 서사적 표상: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반대운동 참여자들의 구술서사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42
- 김영희. 2018. 「5·18 기억서사와 여성의 목소리」. 『페미니즘 연구』 18-2
- 김은실. 2016. 「4·3 홀어명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 『한국문화인류학』 49-3
- 김응중. 2011.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에 나타난 기억의 개념」. 『프랑스사 연구』 24
- 김익한. 2014. 「‘세월호 기억저장소’를 만들자」. 『역사비평』. 12~24쪽
- 김호연. 2012. 「역사리텔링과 상흔의 치유: 구술사 활용을 중심으로」. 『人文學研究』 21
- 권귀숙. 2001.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35-5
- 남미숙·유승호. 2019. 「사회적 기억과 플라뇌르적 시선: ‘밀양 송전탑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3-1
- 박구병. 2010. 「진실화해위원회 이후: 아르헨티나와 페루의 배·보상과 추모 정책」. 『Revista Iberoamericana』. 21.1.
- 박상관. 2019. 「제주 4·3에 대한 여성의 기억서사와 순경각시」. 『Journal of Korean Culture』 45
- 박소현. 2019. 「예술행정과 검열의 정치: 아이치트리엔날레, 평화의 소녀상, 블랙리스트」. 『위협받는 예술, 위기의 민주주의』. 문화연대 토론회자료집,
- 박현선. 2020. 「재난, 아카이브, 이미지: 재난 기억의 문화적 실천」. 『한국극예술연구』 68
- 박현선. 2020. 「위험한 기억과 글로벌 검열 문화-〈아이치트리엔날레 2019〉와 한국의 블랙리스트 사태」. 『사이間SAI』 28
- 박현숙. 2014. 「여성 전쟁 체험담의 역사적 트라우마 양상과 대응방식」. 『통일인문학』 57
- 송주형. 2015. 「구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 세월호 참사 관련 구술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 신경아. 2013. 「여성노동자의 생애이야기에 나타난 ‘개인’의 의식」. 『젠더와 문화』 6-2
- 신동희·김유승. 2016.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기록과 기억의 이론적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 신동희·김유승. 2016.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 양수조. 2009. 「증언을 통해 본 일본군 위안부 실태」. 『충청문화연구』 2
- 양현아. 2006. 「증언을 통해 본 한국인 ‘군위안부’ 들의 포스트식민의 상흔(Trauma)」. 『한국여성학』 22
- 엄찬호. 2012. 「과거사 청산과 역사의 치유」. 『인문과학연구』 33
- 엄찬호. 201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분노와 치유」. 『인문과학연구』 36
- 염미경. 2005. 「여성의 전쟁 경험과 기억: 좌익 관련 여성유족의 구술생애사」. 『정신문화연구』 28-4
- 유재춘. 2010. 「인문치료학에서 역사학의 역할: 역사의 효능과 인식 갈등의 치유 문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26
- 유철인. 2004. 「구술된 경험 읽기: 제주 4·3 관련 수행인 여성의 생애사」. 『한국문화인류학』 37-1
- 육영수. 2011. 「상흔의 역사에서 치유의 역사학으로: 3가지 유형」. 『4·3과 역사』 11
- 윤은하·김유승. 2016.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 윤택림. 2011. 「구술사 인터뷰와 역사의 상흔: 진실 찾기와 치유의 가능성」. 『인문과학연구』 30
- 윤택림. 2011. 「치유를 위한 자기 서사: 한 실향민 여성 구술 생애사와 자서전 비교」. 『구술사연구』 2-2
- 이나영. 2016. 「페미니즘 인식론과 구술사의 정치학: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50-5
- 이양구. 2019. 「피해자의 눈으로 본 블랙리스트 사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 이용기. 2010. 「‘새로운 민중사’의 모색과 구술사 방법론의 활용」. 『역사문화연구』 37
- 이용재. 2010. 「프랑스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장소>에 대한 고찰」. 『프랑스연구』 제23호
- 이진아. 2019. 「블랙리스트 사태가 문화예술계에 남긴 상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4: 블랙리스트 사태의 총체적 조망』
- 정근식. 2013.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억 연구의 궤적: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13-2

- 정근식. 2003. 「항쟁의 기억과 영상적 재현」. 『민주주의와 인권』 3-2
- 차경희·김경신. 2017. 「구술 생애사를 통해 본 여성 활동가들의 여성주의 정체성 형성 과정」. 『젠더와 문화』 10-1
- 최정기. 2018. 「5·18 국가폭력 및 항쟁과 구술조사: 증언 불가능성에 대한 도전: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에 대한 비판적 성찰」. 『민주주의와 인권』 18-2
- 한정훈. 2011. 「한 여성 빨치산의 구술생애담을 통해 본 정체성의 서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0
- 함한희. 2010. 「한국여성과 전쟁」. 『역사 비평』 5월호.
- 홍영의. 2014. 「4·16 참사 기억·기록운동의 전개과정과 의의」. 『제6회 기록인 대회 발표문』

4. 학위논문

- 박찬희. “재난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2019. 서울
- 정영란.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통해본 주제기록관(special subject repository)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2003. 서울

5. 번역서

- 도미니크 라카프라. 2008. 육영수 외 역. 『치유의 역사학』. 푸른역사
- 알라이다 아스만. 2003. 변학수 외 역.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출판부
- 일본의 미술평론가연맹의 성명서(あいちトリエンナ—レ2019における表現の不自由展. その後の中止に対する意見表明, 2019. 8. 7). 2019. 이명원 역. 「평화의 소녀상과 아베의 극우 강권통치」. 『위협받는 예술, 위기의 민주주의』. 문화연대 토론회자료집
- 주디스 버틀러. 2016. 유민석 역. 『혐오 발언』. 알렙
- 폴 톰슨 외. 2010. 윤택림 편역.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아르케

6. 원서

- Carrillo, Arturo. 2006. 『Justice in Context: The Relevance of Inter-American Human Rights Law and Practice to Repairing the Past』
- Hirsch, Marianne. 2012.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Writing and Visual Culture of the Holocaust』. New York: Columbia UP
- Casey, Edward S. 2004. 「Public memory in place and time.」 Framing public memory 68: 17-44
- Majewska, Ewa. 2017. 「Censorship as the Formative Mechanism of Neoliberal Culture?: The

- Productive Function of Prohibition」. Polish Theatre Journal 1-2 (3-4)
- Mintcheva, Svetlana, and Robert Atkins. 2006. 『Introduction: Censorship in camouflage』. Mintcheva & Atkins (eds), Censoring Culture, The New Press, New York
 - Oakley, Ann. 1981. 「Interviewing women: A contradiction in terms.」 Doing feminist research 30,6: 1
 - Phillips, Kendall R., et al. 2004. 『Framing public memory』.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Paez, Dario, Nekane Basabe, and Jose Luis Gonzalez. 1997. 「Social processes and collective memory: A cross-cultural approach to remembering political events」. Collective memory of political events: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147-174
 - Quinn, Patrick M. 1977. 「The archivist as activist」. Georgia Archive 5.1: 4

6. 기사(보도자료)

- [2002.4.6.] 임인자,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반세기의 상처>, 『씨네21』
- [2017.6.29.] 민족문제연구소,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증언집 『빼앗긴 어머니를 그리며』 출간”
- [2019.9.26.] 설동준. 「상담을 통해 들여다본 예술인의 삶: 조현섭 (사)한국심리학회 회장」. 『예술 경영』 432호
- [2019.10.17.] 한겨레. “블랙리스트 피해자 절반 “트라우마 시달려””
- [2020.11.13.] 뉴스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사업’ 예산...야 “정쟁 유발””
- [2020.12.11.] 프레시안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해야 한다”
- [2020.12.18.] 미디어오늘. “文대통령 “죄책감 든다”고 했던 블랙리스트 사건 ‘실종’”
- [2021.1.14.] 뉴스1. “문화예술인들 “박근혜는 블랙리스트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7. 홈페이지

- “예술 자유를 수호하며Defending Artistic Freedom”이라는 구호 아래 운영되는 프리뮤즈 홈페이지(<https://freemuse.org>)
- “[A] new global culture is emerging, one where censorship, attacks, prosecutions and other practices of silencing views one disagrees with is becoming the norm, driven both by governments and supported by large groups of people in society. Freemuse Report “The State of Artistic Freedom,” Freemuse, 2018

부록 3.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추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21.11.3.)**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추진을 위한 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  페이스북 생중계

일 시 2021. 11. 3.(수) 14:00~

공동주최 블랙리스트 이행협치추진단
국회의원 도종환, 박경, 유정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추진 현장간담회 자료집

□ 간담회 개요

- (행 사 명)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추진을 위한 토론회”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국회 도종환 의원, 박정 의원, 유정주 의원
- (일시/장소) 11.3.(수) 14:00~16:00 / 국립극단(온라인 병행)
- (참 석 자) 문체부 블랙리스트 이행협치추진단, 관련 연구용역 수행자(중앙대학교 오창은 교수), 현장 예술인*(공연, 시각, 문학, 영화 등) 등
* 코로나19 상황 고려, 진행(1)·발제·제언자(3), 최소인력(5)은 제외하고 줌(ZOOM)회의를 이용한 온라인 참여, 일반 참여자는 문체부 페이스북 생중계를 통해 시청

□ 주요 내용

- (목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21.9.)으로 구체화 된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연계 사업 예산반영 필요성 등 논의

구 분	내 용	비 고
여는 말 14:00~14:05('05)	• 개최 목적 및 참석자 소개	• 진행자 (협치단 정윤희 위원)
인사말씀 14:05~14:15('10)	• 문체부 장관(영상) • 국회의원(도종환, 박정, 유정주 의원 / 영상)	• 문체부 • 국회 의원실
추진경과 공유 14:15~14:25('10)	• 이행협치추진단 활동 및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관련 경과보고	• 발제자 (협치단 김미도 위원)
연구용역 발제 14:25~14:50('25)	•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주요 내용 발제	• 발제자 (중앙대 오창은 교수)
휴식 시간 및 장내 정리 14:50~15:00('10)		
종합토론 15:00~15:50('50)	•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추진”을 위한 제언 • 현장 참여자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기관) 문체부 협치추진단장(문예실장), 문예위 인력개발위원장(문예위 블랙TF위원), 영진위 사무국장, (현장) 임인자(전 서울변방연극제 예술감독), 남인우(연출가), 원승환(인디스페이스 관장), 정원욱(대한출판문화협회 연구원)	• 제언자 (협치단 이양구 위원) • 참석자 전원
마무리 15:50~16:00('10)	• 간담회 주요 내용 정리 및 향후 추진계획 설명	• 진행자 (협치단 정윤희 위원)

[참고]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명단

성 명	주요경력
김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극평론가협회 회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백서발간소위 위원장
이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연출가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 진상조사위 전문위원
정윤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 문화인천네트워크 활동, 미술가
현 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당 대표 • 사진가
한승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 한국문화정책학회 회장 • 한국정책학회 회장
황승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 예술인 복지재단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위원

추진경과 공유

-김미도 위원-

이행협치추진단 경과보고

1. 주요 활동(2018.8~2021.1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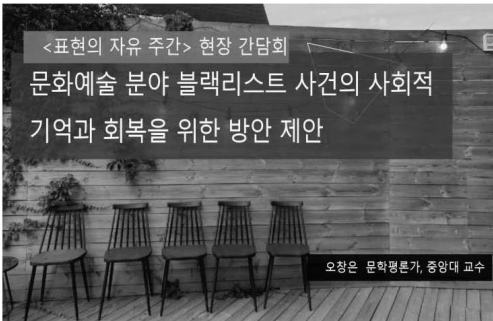
- 2018.8.20.~2021.11. 현재까지 총 33차 회의 개최
- 법제도, 문화행정,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예술교육진흥원·한국출판문화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제도개선 등 총 31개 과제(85개 세부과제)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 문체부 및 산하기관에서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교육 점검
- 블랙리스트 소송 관련 대응 현황 공유

2. 주요 성과(2019.12~2021.11 현재)

- 2019.12.2. “팝업씨어터 공개 사과 이후,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업사업을 시작하며” 공청회 개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개선, 아르코예술극장 극장장·미술관장 개방형 직위 전환
- 예술위 ‘팝업씨어터’ 사건,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사건 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
- 국립극단 ‘날아가버린 새’ 사건 후속조치 점검, 국립극단 자체 백서 제작 등 국립극단과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공유
- 2021.3.10.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율운영 보장’ 공동 선언
- 2021.7.28. 한국영상자료원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사과문 게재 및 추가 입장 발표
- 2020.12~2021.4. ‘사회적 기업사업’ 연구용역 추진 및 완료
- 2021.8.3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2021.11.3.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주간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발제

-오창은 교수-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오창은(문학평론가, 중앙대 교수)

공동연구원 : 박현선(연세대), 정원욱(대한출판문화협회)

연구보조원 : 김현주(중앙대)




- 1)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억화를 통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 방지
- 2)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기록
- 3) 피해자 심층 인터뷰와 구술 채록 통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
- 4) 예술 현장 및 예술 지원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 요구됨
- 5) 공공부문의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시민사회의 문화예술 역량을 민주적으로 강화



2. 왜 '문화예술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이 필요한가

- 1)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를 가시화하고, 실체화하고, 구체화하기
- 2)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록으로 고통의 현장 포착하기
- 3) 블랙리스트 사건의 명료화와 예술가들의 내적 무기력감 극복 방안 마련하기



3. 사회적 기억 작업은 어떻게 이뤄졌는가

- 1) 기억사회학
 - (1) '사회적 기억'은 '사회적 틀'을 통해 획득·인지·배치되는 집합적-사회적 현상으로서 집합 기억(collective memory)'에 접근
 - (2) '기억의 장소(les lieux de memoire)'는 "사람들이 회상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기억이 작동하는 곳"임

- 8 -

(3) '문화적 기억(das kulturelle Gedächtnis)'은 집단 구성원의 공동성을 상징적으로 전달해주는 '문화구성체(die kulturelle Formation)'가 집단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의미(Gemeinsinn)' 전달

(4) 한국에서 기억사회학의 관점은 기억 투쟁, 대항 기억 형성을 위한 담론적 실천으로 행해짐

- 2) 구술사 연구
 - (1) 구술사 연구는 기억으로 쓰는 역사라는 점에서 역사적 기억에 대항하여 사회적 기억 구성
 - (2) 구술사는 ① 역사적 기록을 남기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에 접근, ② 쌍방향적 과정의 특징, ③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행동에 대한 내면의 동기 파악, ④ 문화사, 일상사, 지방사, 부문사 등 유효, ⑤ 침묵의 기억에서 구술자를 해방하거나 치유 역할 수행에 장점을 지님

(3) 한국의 구술사 연구는 여성주의 인식론과 접목되면서 여성주의 역사 쓰기를 시도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3) 기록관리
 - (1)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록', '사회적 기억을 내포한 기록'은 재발방지와 피해자 회복이라는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함
 - (2) 사회적 기록은 주체의 다양성, 생산한 기록의 고유성, 사건 발생 맥락의 다양성이 포착됨

- 9 -

- (3) 사회적 기록은 다양한 기억을 가진 기억 주체들의 인식론적 차이, 기억 주체의 변화에 따른 기록 생산 메커니즘의 차이를 안고 있음
- (4) 기록관리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기억'을 정의하고, 사회적 기억을 기록하는 아키비스트의 책임이 강조됨

4. 사회적 기억 사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 1) 사회적 기억사업을 통한 피해자 개인 회복 효과
- 2) 문화예술의 민주주의적 실천 효과
- 3) 사회적 기억의 창조적 활용 및 미래세대 전수

5.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국내 사례



- 1) 일제 강점기 군위안부 및 강제 동원 관련 사회적 기억
- 2) 정부 기관의 일제 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 동원 피해자 관련 구술사업
- 3) 한국전쟁 경험·제노사이드 피해자 구술
- 4)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구술
- 5) 사회적 참사 및 재난 피해자 기억 기록

- 6) 사회갈등·사회시설 폭력 피해자 관련 기록
- 7) 노동운동 관련 기록
-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코뮤제기록원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6.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국외 사례



- 1)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
- 2) 일본 3.11 재난 참사
- 3) 아르헨티나 '실종자진상규명국가위원회'와 페루의 '진실진실화해위원회'
- 4)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등 사회적 기억화 사업
- 5) '프리뮤즈'(Freemuse) 운동 및 아이치트렌엔날레 '표현의 부자유권' 등 예술표현의 자유



7.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국내외 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에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27

- 4) 구술 기록 및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조직, 관련 위원회 구성, 트레이닝 프로그램 기획도 함께 필요함
- 5) 피해자 중심의 구술과 기록을 통한 사회적 기억은 충분한 기획과 자료 수집,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 활용 등을 통해서 계획되고 보완되어야 함
- 6) 구술 및 심층인터뷰 자료에 대한 활용은 자료집, 해제집, 온-오프 아카이브 및 다양한 콜렉션, 박물관, 구술생애사 기록집, 전시, 영상제작, 공연 등을 포함함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에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28

- 1) 희생자가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 사업이 활발히 전개됨
- 2) 국내외 피해 사례들에서 구술과 증언, 아카이빙을 통한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기억화는 피해자 자신의 서사화와 적극적인 기억행위를 촉발함으로써 고통의 치유와 신뢰 회복을 가능하게 함
- 3) 사회적 기억화 작업은 피해자와 희생자뿐만 아니라 참여자와 아키비스트들의 개인적, 집단적 윤리성과 전문성, 상호 연대를 견제 조건으로 함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에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20

- 7) 국내외 피해사례들의 사회적 기억화 작업은 넓은 의미에서 시민과 민주 사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교육적 절차를 성문화하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문화적 실천방안으로 확대되어야 함
- 8) 블랙리스트의 사회적 기억은 소설, 연극, 영상,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집합기억을 형성해야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에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24



8.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록작업을 위한 제안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에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26

- 2) 사회적 기록작업의 윤리적, 법적 문제 및 수행자의 필요 역량 분석
- 3) 사회적 기록작업의 윤리적 문제
- 4) 사회적 기록작업의 법적 문제
 - (1) 프라이버시 침해
 - (2) 명예훼손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에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27

1) 사회적 기록작업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까?

- (1) 신청사건 우선 선정
- (2) 희망자 우선 선정
- (3) 이름 없는 피해예술인들의 목소리 듣기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에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26



9. 사회적 기억 사업의 추진 과정과 제안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에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29

<중> [가칭]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구술 프로젝트단 구성

- 1) 기획단계 : 입장 및 범위 설정 → 분석 → 설계 → 평가
- 2) 실행(수집)단계 : 심층면담(인터뷰) 전 준비 → 면담진행 → 면담후속작업
- 3) 정리 및 분류 단계 : 등록, 평가, 분류, 기술 → 보존 및 매체 변화 조치
- 4) 활용단계 : 웹서비스 제공, 도구서 작성·제공, 간행물 발간, 연구사업, 교육 및 문화콘텐츠

기획단계 (사업 개시 1년)

- 구술기록 수집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수행자도 참여할 문화예술인 모집
- 신규 수행자 필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 구술자료 수집 예비단계: 자료 조사 및 현장 조사
- 구술자료의 2차적 활용 방안 수립
- 자료관 구축 방안 마련 및 문체부 소장 자료의 사본 제공 방안 수립
- 1년차 활동 보고서 발간·배포

실행(수집)단계 (사업 개시 2~3년)

- 구술기록의 수집
- 수행자 풀 유지 관리
- 구술인터뷰 전 준비
- 구술인터뷰 진행
- 구술인터뷰 자료 입수
- 연차별 활동 보고서 발간·배포

정리 및 분류단계 (사업 개시 4년)

- 구술기록의 정리 및 분류
- 구술인터뷰 자료 등록
- 구술인터뷰 자료 평가
- 구술인터뷰 자료 분류
- 구술인터뷰 자료의 2차적 활용 방안에 따른 자료의 가공 및 공개
- 구술자료 보존·활용
- 사회적 기록 작업의 성과 발표를 포함한 공청회 개최
- 연차별 활동 보고서 발간·배포

활용단계 (사업 개시 5년)

- 구술 프로젝트단 활동 평가 및 향후 과제
- 구술 프로젝트단 활동 평가 및 보고서 발간·배포
- 웹서비스 제공, 도구서 작성·제공
- 간행물 발간, 교육 및 문화콘텐츠 가공·활용
- 심포지엄 등을 통한 향후 과제 제시

10.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및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1) 피해 예술인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을 위한 조직 및 자원 마련
- 2) 피해 예술인 심리 치료 상담
- 3) 피해 예술단체 및 예술인 개인에 대한 국가 기구의 공식적 사과
- 4) 사회적 기록 확산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정리 및 분류단계 (사업 개시 4년)

- 구술기록의 정리 및 분류
- 구술인터뷰 자료 등록
- 구술인터뷰 자료 평가
- 구술인터뷰 자료 분류
- 구술인터뷰 자료의 2차적 활용 방안에 따른 자료의 가공 및 공개
- 구술자료 보존·활용
- 사회적 기록 작업의 성과 발표를 포함한 공청회 개최
- 연차별 활동 보고서 발간·배포

활용단계 (사업 개시 5년)

- 구술 프로젝트단 활동 평가 및 향후 과제
- 구술 프로젝트단 활동 평가 및 보고서 발간·배포
- 웹서비스 제공, 도구서 작성·제공
- 간행물 발간, 교육 및 문화콘텐츠 가공·활용
- 심포지엄 등을 통한 향후 과제 제시

- 5)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개발 방지 의무 교육
- 6)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 및 실천 프로젝트 지원 사업
- 7)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
- 8) ‘표현의 자유와 블랙리스트 개발 방지’를 위한 포럼 및 매체 간행

- 9) ‘예술인 권리 보장 위원회’(표현의 자유 예술인 재단)의 상설 기구화 및 사업 기금 조성
- 10) ‘표현의 자유 예술 공원’ 조성
- 11)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생애 추적 조사, 지원 연구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27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이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28



제언 및 종합토론

-이양구 위원-

표현의 자유 주간 사업 등 추진을 위한 제언

○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면서 책임규명 이행계획, 제도개선 권고, 후속조치 권고안 이행을 위해서 이행협치추진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행협치추진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이었다.

■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

- 블랙리스트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기구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교훈을 사회적으로 기억·기록·보존·전승하는 사업 및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함.

(백서 3권 163쪽)

○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제안사항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 및 회복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제안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 예술인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을 위한 조직 및 자원 마련
2. 피해 예술인 심리 치료 상담

3. 피해 예술단체 및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국가 기구의 공식적 사과
4. 사회적 기록 확산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5.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의무 교육
6.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 및 실천 프로젝트 지원 사업
7.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

○ 제안 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

1. 피해 예술인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을 위한 조직 및 자원 마련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가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사회적 기억사업은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기록하는 작업이다. 피해 예술인이 당사자가 되어 사건을 재구성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연구진이 제안한 ‘(가칭) 블랙리스트 사회적 기억을 위한 구술프로젝트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피해 예술인 심리 치료 상담

그동안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들에 대한 심리 치료나 상담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하였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동료상담 개념을 활용하여, 연구진이 제안한 피해예술인들이 주도하는 집담회, 좌담회 등을 통해 피해 예술인 사이의 공감과 위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피해 예술단체 및 예술인 개개인에 대한 국가 기구의 공식적 사과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중 하나인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는 대통령 차원의 명백한 책임 인정과 사과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편 국가 기관의 공식적인 책임 인정과 사과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사회적 기록 확산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연구진이 제안한,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 및 기록 사업’을 시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또한 지속될 필요가 있다.

5. 문화예술 공공기관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의무 교육

이행협치추진단을 통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보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기로 되었으나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6. ‘표현의 자유’ 예술 작품 공모 및 실천 프로젝트 지원 사업

문화예술인들이 예술 표현 활동을 통하여 블랙리스트 사건을 기억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블랙리스트 실행 당사자인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표현의 자유 예술작품 공모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기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제안한 바대로 ‘표현의 자유’ 예술 실천 프로젝트 공모 및 연구조사 활동 지원 공모도 병행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7.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

연구진이 제안한 바대로 ‘표현의 자유’ 예술 주간 행사를 통해 ‘표현의 자유’ 예술작품 공모 사업 선정작, 예술 실천 프로젝트, 관련 학술 연구 발표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8. 포럼 및 매체 간행

연구진이 제안한,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적 기억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정기 포럼 및 온·오프라인 매체 간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권리보장위원회 및 사업 기금 조성

연구진이 제안한 ‘예술인 권리 보장법’은 통과되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 및 표현의 자유 관련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사업 기금도 안정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10. ‘표현의 자유 예술 공원’ 조성 및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생애 추적 조사, 지원 연구

장기적으로는 연구진이 제안한 ‘표현의 자유 예술 공원’ 및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생애 추적 조사’ 등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당면 과제

위 제안 사항들 중에서 차기년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표현의 자유 주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스스로 기억의 주체가 되어 표현의 자유 소재 창작품들에 대한 공모 사업, 관련 학술 연구, 피해자 목소리 아카이빙 등을 수행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표현의 자유 주간을 통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시급하게는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위한 별도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기억 책임을 자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예술현장이 회복되고,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행한 과거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 소개

김미도

연극평론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백서발간 소위원회 위원장)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위원

오창은

문학평론가,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연구학과 교수 및 다빈치교양대학 교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 필진(제4권)

「문화예술 분야 블랙리스트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문체부, 2020) 연구책임자

윤성천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간사(백서발간 소위원회)

이양구

극작가, 연극연출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 전문위원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위원

이원재

문화운동가, 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위원(제도개선 소위원회 위원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정윤희

미술작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추진 TF 위원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위원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문체부 자체평가위원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위원

현린

사진가,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전)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위원

황승흠

국민대학교 교수

예술인권리보장법 입법추진 TF 위원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위원

제1장. 총론

제1절. 이행협치추진단의 설치 배경과 목적 및 설치 과정	윤성천
제2절. 이행협치추진단의 주요 경과	김미도

제2장. 이행협치추진단의 조직구성 및 활동

이양구

제1절. 조직 체계와 구성
제2절. 회의별 주요 안건 및 제도개선 주요 점검 내용

제3장. 이행협치추진단의 주요 성과

제1절. 문화행정 관련 제도개선 결과와 남은 과제들	한승준
제2절. 기관별 제도개선 이행 점검 결과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양구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현 린
3. 영화진흥위원회	정윤희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양구
5. 한국콘텐츠진흥원	황승흠
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현 린
7. 국립극단	이양구
8. 한국영상자료원	정윤희
9. 영상물등급위원회	정윤희
제3절. 법제도 관련 제도개선 결과와 남은 과제들	황승흠

제4장. 이행협치추진단 활동의 종합적 의의

제1절. 예술현장과 문체부의 소통 및 민관협치의 성공적 모델	정윤희
제2절.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억사업과 그 의미	오창은
제3절. 이행협치추진단의 성과와 한계	이원재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백서

초판 1쇄 인쇄 2022년 10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22년 10월 31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책임편집 김미도, 김태희

편집 및 인쇄 도서출판 연극과인간

01047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25길 61

2000년 2월 7일 제6-0480호

(02) 912-5000

(02) 900-5036

www.worin.net

© 문화체육관광부, 2022.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ISBN 979-11-6357-475-0 93300

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